

대한민국정부



제18415호(그2) 2014. 12. 23.(화)  
2014.12.23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조 약】**

○조약제2216호(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 2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조약

2014년 9월 11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dward Fast 캐나다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양국이 발효에 합의한 날짜인 2015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윤병세

외교부장관

## ◎조약 제2216호

###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캐나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특별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및 지역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폭 넓은 국제 협력의 촉매가 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지역 및 양자간 협력 기제 하의 그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을 증진하며,

그들의 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장되고 확고한 시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근로 조건 및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한 증진과 보호가 호혜적인 사업 활동의 촉진을 유도할 것을 인정하고,

무역에 대한 왜곡을 축소하고,

그들의 무역을 관할할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호 유리한 규정을 수립하고,

사업 기획과 투자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상업적 체제를 보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환경에 관한 법과 규정의 집행을 향상시키고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환경 보호와 보전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집행하고, 노동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이 그들의 문화 정책을 보전하며,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문화 산업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적시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1.3 조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경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의무의 범위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영역 내의 지역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역정부에 의해 취하여진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제21장(분쟁해결)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다른 협정의 참조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참조하거나, 참조로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그 참조는 그러한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불가분의 일부인 관련 주석, 주해, 의정서, 부속서, 부록 등을 포함한다.

제 1.6 조  
문화 협력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세계 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서로의 경쟁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문화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합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에 합의한다. 미래의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섭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문화유산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이다.

4. 제 23.2 조(개정)는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제 8 장(투자) 및 제 21 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 규정은 제 2 항에 따라 협상되는 협정을 포함하여 이 조에 적용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촉진

양 당사국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생산과 공급망의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8 조

일반적 적용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란 제20.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과세를 말하며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추가세 또는 추가금의 형태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 라. 수입수량제한 및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GPA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4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조치는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공기업의 국가별 정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6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상의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이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을 말한다.

제 1.9 조  
국가별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단일 공화국인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주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주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주를 말하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리고 누나부트를 포함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부속서 1-가  
다자간 환경협정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1) 캐나다의 영토, 상공, 내수 및 영해

2)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6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5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대륙붕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벌중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79년 6월 22일 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6월 29일, 1992년 11월 25일, 1997년 9월 17일, 1999년 12월 3일 개정판)

나.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다.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채택된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라.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 1 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한다.

- 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 또는
- 나. 최혜국 적용 관세율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그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특혜관세도 부여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외의 자국의 관세를 수정하는 것
- 나.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 다. 이 협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모든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2.4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제 12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 나. 언론매체 또는 음향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 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

고

라.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인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다.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담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달리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sup>1</sup>

마.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바. 그 상품이 그 인의 출국 시 또는 1년 이내 일시 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그 밖의 더 긴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라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sup>1</sup>다른 형태의 통화 담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담보는 이 호에서 언급된 담보 요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비통화 형태의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담보는 그 당사국이 사용하는 기존 형태의 담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 임대 또는 전서 또는 시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라. 그 상품이 일시 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4. 상품이 제 1 항에 따라 무관세 일시 반입이 허용되고 당사국이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모든 부과금, 그리고

나. 자국 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부과금 또는 벌금

5. 제 8 장(투자) 및 제 9 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당사국은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당사국은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의무의 해체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특정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 인쇄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에 그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1. 부속서 2-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up>2</sup>
- 2. 한쪽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7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1994 년도

<sup>2</sup>이 항은 외국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수입되고,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외국 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재수입되지 않는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GATT 제 11 조에 따른 경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를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2. 양 당사국은 제 1 항에 따라 통합된 1994 년도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가격 요건 및 수입가격 요건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3.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 4.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가격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한쪽 당사국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자동차 상품에 관한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그 비당사국이 원산지인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부여한다.

**제 2.10 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 1. 한쪽 당사국은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세관 사용자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2.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어떤 것도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8 조를 변경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 2.11 조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은 그들의 상호무역에서 양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 평가 규칙을 규율한다.

**제 2.12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1.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어느 상품의 총수입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와 합치하게,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제 1 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지며, 부속서 2-라에 정의된 대로 관세가 부과된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지된다.
- 4.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

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제 7 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 또는
- 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5. 각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한 후 60 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 2.14 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당사국은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 후, 그리고
- 나.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제 2.13 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 1. 부속서 2-사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 2.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그리고

나. 수입하는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기업이나 인은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 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사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회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제 4 절  
상품무역위원회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어느 때에도 회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가.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제안을 검토한다.

다. 이 장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그리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에 합치되도록 이 협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공동위원회에 제안한다.

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관세 또는 비관세 문제를 검토한다.<sup>3</sup> 그리고

마. 다음이 제기한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 1) 한쪽 당사국, 또는
- 2) 제 4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3. 위원회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그러한 회부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 20.1 조(공동위원회)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이 장의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90 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때에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당사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사안이라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가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장의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취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이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원산지 판정이나 사전심사결정을 내리거나, 이 협정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대로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

<sup>3</sup> 양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라벨링 및 정의를 포함한 아이스와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한다.

8.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절  
정의**

**제 2.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어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자료가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필름 또는 기록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하고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에 열거된 상품을 말하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이 협정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미화 1 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에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부속서 2-가

제 2.2 조 및 제 2.7 조에 대한 예외

제 1 절  
한국의 조치

1.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에 의한 조치, 그리고
- 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캐나다의 조치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한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대하여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을 포함한 조치
  - 1) 원목의 수출
  - 2) 적용가능한 지방정부 법령에 따른 미가공 어류의 수출
  - 3) 관세율표에 언급된 관세상품분류코드 제 9897.00.00 호, 제 9898.00.00 호 및 제 9899.00.00 호에 해당하는 금지 세번 상품의 수입
  - 4) 2001 년 「소비세법」 및 2002 년 제 22 장 개정본의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수 알코올에 대한 캐나다의 소비세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49 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그리고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관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리 또는 개조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sup>4</sup>을 만드는 작업이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세 철폐 양허표란 부속서 2-라의 규정을 말한다.

<sup>4</sup>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만드는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인 작업이나 공정은 미완성 상품의 수리가 아니다. 상품의 구성부품은 수리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속서 2-나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 5) 연안무역법 S.C.(1992년, 제 31 장)에 따라 캐나다의 연안 무역에서 선박의 사용, 그리고
- 6) 와인 및 증류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캐나다에 의한 조치

3. 제 2 항가호 1 목에 대하여, 캐나다는 원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절차가 투명하고 대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출입허가법」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그러한 제안의 공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캐나다는 원목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 절차가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원목의 수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며, 원목 수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세계무역기구에 따라 해결된다.

1. 양 당사국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국제통상 공무원, 규제 공무원 및 원목 수출의 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 가. 임산물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나.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다. 세계무역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산물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속서 2-다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는
  - 가. 규제, 국제무역 및 산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부 관료를 포함한다.
  - 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한다.
  -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포럼이 된다.
  - 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동차 대화체와 같은 자동차 상품 사안을 다루는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2.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3. 소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라  
관세 철폐

제 1 절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1. 양 당사국 간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여 각 당사국의 각각의 관세상품분류체계에 규정된 것이다.
2.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66.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33.3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0 퍼센트
  -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4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2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0 퍼센트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철폐로부터 제외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1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9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1.8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2.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3.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4.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5.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6.4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3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8.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9.1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0 퍼센트

3. 이 부속서, 부속서 2-바, 부속서 2-사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 가. 이행 1 년차란 제 23.4 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너. 이행 1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더. 이행 1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러. 이행 1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머, 이행 1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버, 이행 2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 서, 이행 2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4. 상품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2011 년 1 월 1 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율로 한다.

5. 제 2.3 조에 따라 관세 철폐의 목적상,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양허 단계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0.001 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1 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제 2 절**

**한국에만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6. 이 절은 이 부속서에 첨부된 한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가. 단계별 양허유형 G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6.7 퍼센트

6) 이행 6 년차: 0 퍼센트

나. 단계별 양허유형 H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5.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71.4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7.1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42.9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6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4.3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0 퍼센트

다. 단계별 양허유형 I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2 년차에 기준세율의 8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7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7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라. 단계별 양허유형 J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2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9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단계별 양허유형 K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8 년차에 기준세율의 12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0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바. 단계별 양허유형 L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25 퍼센트로 인하되고, 잔여 관세는 9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50.6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45.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39.4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1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22.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6.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1.2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6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사. 단계별 양허유형 M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9 년차부터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0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50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5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아. 단계별 양허유형 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7.5 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2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 관세는 7.5 퍼센트로 유지되고, 이행 10 년차부터는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75.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75.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5.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75.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75.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75.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75.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50.0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5.0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자. 단계별 양허유형 O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1.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3.3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6.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8.3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1.7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3.3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16.7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8.3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차. 단계별 양허유형 P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2.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4.6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6.9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9.2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1.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3.8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6.2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8.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30.8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23.1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15.4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7.7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0 퍼센트

카. 단계별 양허유형 Q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6.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53.3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46.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4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33.3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6.7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20.0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13.3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6.7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다.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4.4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8.9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7.8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72.2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6.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61.1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55.6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44.4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38.9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3.3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7.8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22.2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16.7 퍼센트
- 16) 이행 16 년차: 11.1 퍼센트
- 17) 이행 17 년차: 5.6 퍼센트
- 18) 이행 18 년차: 0 퍼센트

과. 단계별 양허유형 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5년차까지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87.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62.5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50.0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7.5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5.0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12.5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하. 단계별 양허유형 T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7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4.2
이행 2 년차	3.5
이행 3 년차	2.8
이행 4 년차	2.1
이행 5 년차	1.4
이행 6 년차	0.7
이행 7 년차	0

거. 단계별 양허유형 U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3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3.3
이행 2 년차	1.6

이행 3년차	0
--------	---

너. 단계별 양허유형 X의 품목에 대하여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대한민국의 양허표 LX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사항에 규정된 약정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캐나다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 부속서 2-마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한국의 영역에서 캐나다의 영역으로 재반입되고,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89 류의 다음 상품에 대하여, 캐나다는 그러한 상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가치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901.10.10호
- 제8901.10.90호
- 제8901.20.10호
- 제8901.20.90호
- 제8901.90.91호
- 제8901.90.99호
- 제8902.00.10호
- 제8904.00.00호
- 제8905.10.00호
- 제8905.20.10호
- 제8905.20.20호
- 제8905.90.10호
- 제8905.90.90호
- 제8906.90.91호
- 제8906.90.99호

## 부속서 2-바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한국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품목

##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 2.12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 이 될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1.10.0000 호, 제 0201.20.1000 호, 제 0201.20.9000 호, 제 0201.30.0000 호, 제 0202.20.1000 호, 제 0202.20.9000 호, 제 0202.30.0000 호, 제 1602.50.1000 호 및 제 1602.50.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21,217	21,854	22,509	23,18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40.0	40.0	40.0	40.0	40.0	30.0	30.0	30.0	30.0	30.0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b>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b>										
HSK 세번	72.0	72.0	72.0	72.0	72.0	54.0	54.0	54.0	54.0	54.0
1602.50.1000, 1602.50.9000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b>발동수준(메트릭톤)</b>	23,880	24,596	25,334	26,094	26,877	해당없음
<b>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b>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24.0	24.0	24.0	24.0	24.0	0
<b>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b>	43.2	43.2	43.2	43.2	43.2	0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	--	--	--	--	--	--	--	--	--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19.1000 호 및 제 0203.1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b>발동수준(메트릭톤)</b>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8,972	9,331	9,704
<b>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b>	22.5	22.5	22.5	22.5	22.5	15.8	14.6	13.5	12.4	11.3

이행년도	11	12	13	14
<b>발동수준(메트릭톤)</b>	10,092	10,496	10,916	해당없음
<b>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b>	10.1	9.0	7.9	0

다.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b>발동수준(메트릭톤)</b>	545	567	589	613	638	663	690	717	746	77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5.0	25.0	25.0	25.0	17.5	16.3	15.0	13.8	12.5
----------------------	------	------	------	------	------	------	------	------	------	------

이행년도	11	12	13	14
발동수준(메트릭톤)	807	839	87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11.3	10.0	8.8	0

라.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메트릭톤)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0.0	17.5	15.0	12.5	0

마.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1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메트릭톤)	00	08	19	34	52	73	99	28	60	97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퍼센 트)	45. 0	45. 0	45. 0	45. 0	45. 0	33. 8	33. 8	33. 8	33. 8	33. 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	4.8 38	4.9 83	5.1 33	5.2 87	5.4 45	5.6 09	5.7 77	5.9 50	6.1 29	6.3 13	해 당 없 음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후지사과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의 총메트릭톤이다.

바. 아래에 포함된 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20.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223	230	237	244	251	259	266	274	282	291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45. 0	45. 0	45. 0	45. 0	45. 0	33. 8	33. 8	33. 8	33. 8	33. 8
--------------------------	----------	----------	----------	----------	----------	----------	----------	----------	----------	----------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9	318	327	337	347	358	369	380	391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퍼센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동양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배의 총메트릭톤이다.

사. 아래에 포함된 걸보리 및 쌀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1003.00.9010 호 및 제 1003.00.902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 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324	324	324	324	324	243	243	243	243	243
② 1003.00.902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224.8	224.8	224.8	224.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194	194	194	194	194	0
② 1003.00.9020	179.7	179.7	179.7	179.7	179.7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3 항을 참조할 것.

아.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 세번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발동수준 (메트릭톤)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304	304	304	304	304	228	228	228	228	228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4 항을 참조할 것.

자. 아래에 포함된 꺾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 세번 제 0713.32.9000 호

부속서 2-사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에 기술된 물량의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238	298	357	417	476	500	524	547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119	186	268	36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412	403	394	385	376	338	325	311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55	40	25	15	해당 없음			

이행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571	595	619	643	666	690	71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297	283	217	199	180	162	143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천연꿀

2.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
2	105
3	110
4	115
5	120
6	125
7	130
8	135
9	140
10	145
11	150
12	155
13	160
14	165
15	170
16	175
17	180
18	185
19	190
20	195
21	200

이행 2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200 메트릭톤으로 한다.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운영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0409.00.0000호

겉보리 및 쌀보리

3.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14	연간 2,500
15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로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 할당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해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사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003.00.9010호 및 제1003.00.9020호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4.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품목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9	연간 5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 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아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맥아

5.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3,000
2	14,200
3	15,400
4	16,600
5	17,800
6	19,000
7	20,200
8	21,400
9	22,600
10	23,800
11	25,000
12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이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6항자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O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107.10.0000호

식용대두(IP)

6. 가. 마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0
2	7,500
3	10,000
4	12,500
5	15,000
6	15,400
7	15,800
8	16,200
9	16,600
10	17,000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17,000 메트릭톤으로 한다.

한국연식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가공업자들의 협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협회는 나호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협회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나. 그 협회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배분한다. 서면신청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운송을 위하여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협회는 수입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사기관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라.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로서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01.00.9010호 및 제1201.00.9090호

사료용 식물(기타)

7.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20,000
2	25,000
3	30,000
4	35,000
5	40,000
6	45,000
7	50,000
8	55,000
9	55,000
10	무제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당해 연도의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14.90.9090호

동물용 보조사료

8.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
2	600
3	700
4	700
5	800
6	800
7	900
8	900
9	1,0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당해 연도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2309.90.2099호 및 제2309.90.9000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제 3.2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제 3.3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또는
  -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됨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그 영역에서 전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그리고 영해의 외측 한계선 내에서 수행된 수렵, 뿔 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1 부에 따라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4 조  
가치 평가

차.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충분한 생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치 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부속서 3-가에 명시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2. 제 8701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상품의 순원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4. 제 2 항에 따라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의 생산자는

가.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측,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나.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 상품에 그 총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그 총 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측,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그 총 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또는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라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범주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의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다.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라.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범주

6. 제 4 항에 따라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 8706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 1) 그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다만 그 상품은 그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나. 가호에 언급된 평균은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어떤 상품 또는 모든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 제 3.5 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1.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정의의 목적상 제 3.12 조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비원산지 구성상품과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으로의 수입 당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가격으로서, 필요한 경우 수입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치, 또는

나. 국내 거래인 경우, 그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재료 가치”란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

칙에 따라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재료 가치를 말한다. 만약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경우, “원산지 재료 가치”는 제 2 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가치가 될 것이다.

**제 3.6 조**  
**자가생산 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어떠한 자가생산 재료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자가생산 재료의 가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 또는

나. 그 자가생산 재료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의 합

**제 3.7 조**  
**누적**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

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 3.3 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차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 3.8 조**  
**최소허용수준**

이 장의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다만,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 3-가의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0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원사의 총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로 간주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61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그러한 모든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4 부속서 3-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1. 재료 또는 상품이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모든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은 다음에 의하여 식별된다.

가. 각각의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특정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에 걸쳐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10 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통칙 3 에 따라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하여, 상품의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이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구성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비원산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11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2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 3.10 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용기, 팔레트, 또는 유사한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간접 재료**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의 최종 구성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와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안전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5 조  
영역 원칙**

1.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재반입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그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제 3.16 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

**제 3.17 조  
적용과 해석**

이 장의 목적상,

- 가. 품목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 나. 제 3.3 조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해석의 통칙에 따라 호 또는 소호의 상품분류체계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 다. 이 장에 따라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이 원칙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정되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 2)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 3)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 3.20 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제 3.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이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을 고려하여 이 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제 4.14 조(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에 따른 검토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근거와 연구자료와 더불어 수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19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제 3.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류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분류된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관세 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인정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당사국에 등재된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외국등록 나용선으로, 그 외국에

의 등록이 용선 기간 동안 정지된 선박을 의미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구성요소, 부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의미한다.

순원가란 총 비용에서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란 제 3.4 조제 4 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란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서, 비슷한 만기가 적시된 적용 가능한 국제율 보다 700 베이스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그 밖의 비용이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기간비용이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 같이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그러한 비용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비용이란 상품의 생산에 연계된 그러한 비용을 말하며 재료 가격, 직접 노동비와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제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밧 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란 상황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로열티란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저작권,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도면 또는 기밀 제조법 또는 공정

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종류의 지불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은 제외한다.

가. 장소를 불문한 직원교육, 그리고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공구 제공, 다이 세팅,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유사한 컴퓨터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서비스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이란 다음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가. 판매 또는 마케팅 촉진, 미디어 홍보, 광고 또는 시장 조사, 선전 또는 시범용 재료, 전시, 판매 회의, 무역 전시 또는 박람회, 현수막, 마케팅 전시, 무료 견본, 판매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인쇄물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인쇄물, 가격 목록, 서비스 매뉴얼 또는 판매 지원 정보), 로고 및 상표의 설립 또는 보호, 후원, 도매 또는 소매 재고 비용, 접대

나. 판매 또는 마케팅 장려금, 소비자, 소매판매자 또는 도매판매자 리베이트, 제품 장려금

다.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을 위한 보수 또는 봉급, 판매 수수료, 상여금, 수당(예: 의료, 보험 또는 연금), 여행 또는 생활경비, 회비 또는 전문적 수수료

라.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의 채용 또는 훈련, 또는 고객을 위한 종업원의 판매 후 훈련.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마. 제조물 책임보험

바.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사무 용품.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조정된 가격

- 아.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및 유통 센터의 임대료 또는 감가상각비
- 자. 손해보험료, 세금, 공공 요금 또는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또는 유통센터의 수리 또는 유지비.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 차. 보증수리를 위하여 생산자가 다른 인에게 한 지불

자가생산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 및 포장비용이란 운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상품을 직접 선적지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준비 및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 규정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를 말한다.

영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2 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경계까지의 바다 부분을 말한다.

총 비용이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총 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벌어들인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래가격이란 상품의 생산자의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서, 「관세평가협정」의 제 8 조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특히 수수료, 생산 지원, 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이 정의의 목적상 제 3.10 조 및 부속서 3-가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을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 가.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당시 거래가격, 또는
- 나. 그 상품의 관세가격

필요한 경우,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와 같이 그 상품이 생산지를 떠난 이후에 발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특성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 요건 또는 기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4 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규정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포함한다.

마. “그 군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군 이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한다.

바. 다음의 표현은

- “그 호 내에서의 변경”,
- “그 소호 내에서의 변경”,
- “이들 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이들 소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의 (상품)으로 변경” 또는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 중 하나의 (상품)으로 변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동일 호(또는 소호)의 다른 상품 또는 재료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사. 두 개 이상의 규정이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선택규정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

- 1)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 가능한 첫 번째 규정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 2) 선택규정에 의해 허용된 유일한 세번변경은, 그 규정의 시작 부분에 명시된 세번변경과 더불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변경이다.
- 3)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선택규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고,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서 다시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4) “인지 상관없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란 4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4 단위를 말한다.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6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6 단위를 말한다.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낸다.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보다 생산이 더 수행된 경우에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3.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최대 비원산지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제 3.8 조의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그러한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비율은 최소허용기준의 사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이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아니하는 호에 분류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제 3.3 조제 2 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최종 상품생산에 사용되고 이 부속서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고려될 것이다.

5.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중고상품에도 적용된다.

제 2 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 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脛肉)
02.01 - 0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7.11 - 02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4 - 0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1 - 0210.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10.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3 류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fingerlings)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 3 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03.01 - 0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1 - 0308.90	그 소호 또는 다른 소호 내에서 혼제되지 않은 물품에서 혼제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 0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901.90 호 또는 제 2106.90 호의 낙농 조제품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7 - 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 0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5 - 05.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8 - 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원예작물은 비당사국에서 수입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또는 그 밖의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 0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塊莖)
07.01 -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21 - 0901.22	이 상품군 이외의 모든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11 - 090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4.21 - 09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10.80 호 또는 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11-090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7 - 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류	곡물
10.01 - 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 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2 류	채유(採油)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 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류	락(lac),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 1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 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 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제 15 류)
제 15 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15.01 - 15.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1 - 151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1 - 151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물개 또는 물개 생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진 생산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 - 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제 16 류	육류·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 1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306 호부터 제 0308 호까지의 혼제된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 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6.10 - 1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도우(doughs)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2 - 1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 -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 2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11 -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8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1 - 2009.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크랜베리(cranberry)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10 - 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09.60 호, 제 0904.21 호 또는 제 0904.2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고추장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된장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2 류	음료·주류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가 함유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3 - 2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30	이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2203 호부터 제 2208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알코올 농도가 물품의 전체 알코올 농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208.40 -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 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동물 사료용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 및 시멘트
25.01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 및 회(灰)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p>주 1:</p>	<p>제 2707 호와 제 2710 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불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주 2:</p>	<p>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p>
<p>주 3:</p>	<p>제 2710 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 2710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01 - 27.06</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07.10 - 2707.91</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2707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p>

<p>2707.99</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페놀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페놀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p>
<p>27.08 - 27.09</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10</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이 류의 주 1 과 주 2 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 변경된 것, 또는</p> <p>직접혼합의 결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11.11 - 2711.13</p>	<p>이들 소호 중 하나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11.14 - 2711.19</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2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1.21</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1.29</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2 호부터 소호 제 2711.2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2</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13.11 - 2713.12</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2713.20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주 3부터 주 5까지는 이 류의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주 1 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류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 3: 화학반응	<p>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주 4: 정제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주 5: 분리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801.10 - 280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10 - 28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70 - 28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1 - 281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1 -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20 - 281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10 - 281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7 - 2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9.10 - 285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9 류	제 29 류 유기화학품
주 1:	이 류의 주 3부터 주 6까지는 그들 주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주 1 에도 불구하고, 이 류의 원산지규정에서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다.

<p><b>주 3 : 화학반응</b></p>	<p>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b>주 4 : 정제</b></p>	<p>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p>
<p><b>주 5 : 이성체 분리</b></p>	<p>이 류의 상품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b>주 6 : 분리금지</b></p>	<p>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p>2901.10 - 2942.0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b>제 30 류</b></p>	<p><b>의료용품</b></p>
<p>3001.20 - 3002.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3.10 - 3003.90</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30.04</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003 호 또는 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5.10 - 3005.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6.10 - 3006.7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6.91</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006.92</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b>제 31 류</b></p>	<p><b>비료</b></p>
<p>31.01 - 31.0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b>제 32 류</b></p>	<p>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p>
<p>3201.10 - 3202.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3</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4.11 - 3204.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6.11 - 3206.5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7 - 32.1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3301.12 - 33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2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2 - 3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1 - 340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진분, 글루(glue), 효소
3501.10 - 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1 -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20 -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3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2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3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5.10 - 3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7 - 3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10 - 3809.9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11 - 381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 - 3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905.3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905.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2905.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8.21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1 - 382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28 류부터 37 류까지, 제 40 류 또는 제 90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 39 류-제 40 류)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의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상품의 전체 폴리머 중량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9.16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4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4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4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40.07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 41 류-제 43 류)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 4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1 - 41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1 - 4104.49	소호 제 4104.11 호 또는 소호 제 4104.19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30	소호 제 4105.10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2	소호 제 4106.2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2	소호 제 4106.3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 변경된 것, 또는  이 소호 또는 다른 호의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부터 크러스트 원피로 변경된 것
4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2	소호 제 4106.9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2 - 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쥘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 44 류-제 46 류)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및 판지와 이들의 제품(제 47 류-제 49 류)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 4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11- 4704.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5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제 50 류	견
50.01 - 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4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 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6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11 - 5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2 류	면
52.01 - 5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4 - 5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 - 5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 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6 - 5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9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 5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7 - 5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 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8 - 5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12 - 5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 5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8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 57.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 5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07 호, 제 5308 호, 제 5310 호 또는 제 5311 호, 제 54 류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 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01 – 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봉제 또는 다른 결합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모양을 갖추기 위해 편직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2.01 – 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주: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3.01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5111 호부터 5113 호까지, 제 5208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10 호, 제 5311 호, 제 5407 호, 제 5408 호,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 제 5801 호부터 제 5803 호까지, 제 5903 호 또는 제 6001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 – 6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직물 또는 실이 별도로 분류된다면 직물 또는 실에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상품이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냅마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냅마 이외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새로운 냅마 이외의 상품이 당사국 내에서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 64 류-제 67 류)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4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4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40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603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6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6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6.02 -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7 류	조제 깃털과 솜털 및 깃털이나 솜털의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깃털 또는 솜털 제품으로 변경된 것
67.02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 68 류-제 70 류)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91 - 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 - 70.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11 - 70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7019.52 호 또는 소호 제 7019.5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19.52 - 70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 71 류)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10 - 7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 - 7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1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제 72 류	철강
72.01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 7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11 - 730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9 - 73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 - 7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08 - 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1 - 73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1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20 - 7315.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6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1.11 - 7321.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2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10 - 732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 - 73.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74 류</b>	<b>구리와 그 제품</b>
74.01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1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5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75 류</b>	<b>니켈과 그 제품</b>
75.01 - 7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1 - 75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1 - 750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두께가 0.15 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닳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5.07 - 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76 류</b>	<b>알루미늄과 그 제품</b>
76.01 - 7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10 - 76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 - 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0 - 7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5 - 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78 류</b>	<b>납과 그 제품</b>
78.01 - 78.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1 - 78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소호 제 7804.11 호의 뒷면을 닳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8.06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b>제 79 류</b>	<b>아연과 그 제품</b>
79.01 - 7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4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뒷면을 닳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9.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b>제 80 류</b>	<b>주석과 그 제품</b>
80.01 - 8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3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b>제 81 류</b>	<b>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b>
8101.10 - 81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82 류</b>	<b>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 및 포크, 이들의 부분품</b>
<b>주 :</b>	<i>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비금속의 손잡이는 그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i>

8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10 -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2.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2.39 - 8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3 - 8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10 - 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소호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의 물품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9 -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8 - 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1 - 82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4 호 또는 소호 제 8211.9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4 - 8211.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2 - 8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214.20 호의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5.10 - 82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5.91 -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3 류	<b>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b>
8301.10 - 83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1.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1.6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1.60 - 830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2 - 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5.10 - 8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6 -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8.10 -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9 - 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11.10 -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84 류-제 85 류)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1 - 8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10 -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소호 제 84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10 - 8406.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7.10 -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11 - 841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1.91 -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10 - 84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10 - 8415.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10 - 841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1 - 842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21 - 842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91 -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11 - 842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10 - 842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10 - 8424.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 - 84.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3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8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10 -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1 -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10 -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10 - 843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91 -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10 - 843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10 - 843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9.91 -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1 - 844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3.91 - 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4 - 84.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11 - 84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10 -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10 - 845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5.30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8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11 - 8467.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7.91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10 - 847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7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7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7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10 - 847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10 - 847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10 - 847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10 -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2.10 - 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2.91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8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30 - 848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10 - 848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10 - 848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10 - 8504.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4.40 - 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5.11 - 8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6.10 - 850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7.10 - 850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8.11-85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8.7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8.7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9.40 -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0.10 - 8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1.10 -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2.10 -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4.10 - 851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10 - 85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11 - 8517.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10 - 851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518.30 호의 세트에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2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2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21.10 - 85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2 - 8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25.50 - 85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8525.80 호의 자이로스테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8526.10 - 8527.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8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30.10 - 8530.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31.10 - 85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10 - 853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38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35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3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39.10 - 853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8540.11 - 854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0.91 - 854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1.10 - 854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10 - 854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11 -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5 -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6.03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607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6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607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6.07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

87.01 - 87.06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또는 제 94 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또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 이상인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8707.10 - 8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내에서 또는 그 소호들 간에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8.10 - 87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들 중 하나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9.11 - 87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호 제 87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호 제 87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1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714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7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71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10 - 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호 제 8714.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호 제 8714.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호 제 87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호 제 87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88 류</b>	<b>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b>
8801.00 - 88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89 류</b>	<b>선박과 수상 구조물</b>
89.01 - 8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b>제 18 부</b>	<b>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0 류-제 92 류)</b>
<b>제 90 류</b>	<b>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b>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0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11 - 9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 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10 - 9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9007.10 호의 자이로스태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1 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91 -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50 - 901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3.10 -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7.10 - 90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8.11 - 90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3 - 902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19 - 902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29 - 90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10 - 902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7.20 - 902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50 - 902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10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1.10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2.10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91.01 - 9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08 - 9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111.10 - 91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3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92.01 - 9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제 93 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30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93.01 - 9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3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6.21 - 9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제 94 류	가구,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401.10 - 94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403.10 - 940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405.10 - 94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5.91 -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이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4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11 - 95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5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506.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506.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6.32 - 9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7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6 류	잡품
96.01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9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6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6 류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6.21 - 96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6.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6.3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7.11 - 9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7.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7.2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8.10 - 96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60 -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9 - 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이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3.10 - 96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4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4 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제 1 절 원산지 증명

#### 제 4.1 조 원산지 증명서

1.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그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5</sup>

3.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sup>5</sup> 한국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캐나다의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4. 제 3 항은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정한 대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자국 영역으로의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6. 제 3 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최소 2 년 동안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원산지의 증명으로 인정된다.

7.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

#### 제 4.2 조 수입 관련 의무

1.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것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를 작성할 것

다.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라.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며, 그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마. 수입자는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수입자가 제 1 항마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4.6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 을 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상품이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 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로 납부되었던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제 4.3 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수입, 또는

나. 상품이 수입되는 영역의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의 수입

다만, 그 수입은 제 4.1 조 및 4.2 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제 4.1 조제 3 항나호 3 목에 따라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한 자국 영역의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그 밖의 요구된 서류를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서가, 허위 진술 또는 표시에 관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동등한 법적 결과를,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가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부정확한 증명에 관련하여 제 1 항나호에 따른 서면 통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행정 및 집행

제 4.5 조  
기록유지요건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더 긴 기간 동안 다음에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기록을 자국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 1)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 2)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 3)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4)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서류, 그리고

나.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청하는 기록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

관을 통해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
- 나. 제 4.5 조가호에 언급된 기록의 검토 및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2. 제 1 항나호에 따른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 다음에 대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2)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 3)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대사관, 그리고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3. 제 2 항에 언급된 통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 다. 검증 방문 예정일자 및 장소
- 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포함하여, 예정된 검증 방문의 목적과 범위
- 마.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 바. 검증 방문을 위한 법적 권한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예정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그 방문의 대상이 되었을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 방문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은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검증 방문의 연기만을 이유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8.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검증 방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그 방문 동안 참석할 한 명 또는 두 명의 참관인을 지정하도록 허락한다. 다만,

가. 그 참관인들은 참관인이 아닌 방식으로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참관인들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방문의 연기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치 평가, 미소기준 계산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는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내의 적용가능하고,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11. 당사국에 의한 검증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행위유형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충족한다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인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 3 장(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때까지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보류할 수 있다.

**제 4.7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8 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장 하에서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력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그 정보를 받은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한다.

2. 이 장 하에서 수집된 비밀 정보는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결정에 대한 행정 및 집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획득된 정보는 제 3 장(원산지 규정)과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은 그러한 사용을 미리 통보 받을 것이다.

**제 4.9 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관련된 자국 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4.2 조제 2 항, 제 4.4 조제 3 항 및 제 4.6 조제 7 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법에 따라 그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사전심사결정

제 4.1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을 신속하게 발급한다.

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발생한 생산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나.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순원가에 기초한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

다.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하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라.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품목분류, 실행 관세율 또는 수입관련 적용 가능한 어떠한 조세, 또는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그 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그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이후, 통일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다. 사전심사결정이 그 심사를 요청한 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신청이 다음의 대상인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 관세행정기관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검증

나.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재심 또는 관세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다. 자국 국내법에 따른 자국 영역 내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5. 제 7 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신청된 상품의 자국 영역 내로의 수입에 대하여 그 결정의 발급일자부터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부터 사전심사결정을 적용한다.

6. 사실과 상황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하여 일관적인 대우를 제공한다.

7.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사전심사결정이 다음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1) 사실

2) 사전심사결정의 대상인 상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3)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의 적용, 또는

4)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규칙의 적용

나. 사전심사결정이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라.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또는

마. 사법적 결정 또는 자국 국내법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8.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발급된 일자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에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사전심사결정을 발급받은 인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일자 이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인이 그 심사결정을 선의로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90 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 일자를 연기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내린 상품의 가치평가를 조사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의 경우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사전심사결정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작업이 사전심사결정이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과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 가치 산정 또는 비용 할당을 위한 근거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증빙 자료와 계산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한지 여부

1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10 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1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 진술했거나 누락했거나, 또는 그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4 절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의 재심 및 불복청구

제 4.11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 또는

나. 제 4.10 조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2. 제 19.3 조(행정절차) 및 제 19.4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 언급된 재심 및 불복청구 권한이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관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제 5 절  
통일규칙**

**제 4.12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그 각각의 법, 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 내에 통일규칙의 모든 변경 또는 추가를 이행한다.

**제 6 절  
협력**

**제 4.13 조  
협력**

1.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결정, 조치 및 심사결정을 한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들)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가. 제 4.6 조에 따라 실행되는 검증의 결과로써 발급된 원산지 결정

나.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또는 가치, 또는 원산지 결정의 대상인 상품의 순원가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인 할당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심사결정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인지하는 결정

다. 앞으로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격하게 수정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제 4.10 조에 따른 사전심사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심사결정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그러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에 있어서 협력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그 각각의 관세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집행,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세관상호지원 협정 또는 그 밖의 관세 관련 협정에 따른 집행

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의 조화, 정보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정보 구문의 수락 및 정보 교환과 같은 관세 관련 사안

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세 분석 기법의 조화 및 관세 분석소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관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 및 사용자를 위한 모의 심사 환경 실습과 같은 관세 관련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마. 무역 및 사업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개발

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일관적으로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검증 표준 및 체계의 개발

사.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대우 및 원산지 국가 표기의 목적상 수입되고 수출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환, 그리고

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이라 한다)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WCO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체계」 및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APEC 모범조치」에 규정된 것과 같은 상호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 제 4.14 조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 3 장(원산지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제안을 검토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을 시의 적절하게 준비하고 이러한 변경을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반영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과 부속서 2-라(관세 철폐), 또는

2) 부속서 2-라(관세 철폐) 그리고 국가 상품분류체계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마.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모든 합의된 변경 또는 추가에 대한 공동위원회 통보, 그리고

바. 다음 사항의 합의를 위한 노력

1)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된 해석, 적용 및 행정

2)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변경 또는 추가

3) 한쪽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기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그리고

4)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관세 관련 사안

제 7 절  
무역원활화

제 4.15 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상 무역의 원활화 및 다자적 기반의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추진 협력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기반으로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 가. 절차는 수입자 및 수출자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그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간소화된다.
  - 나. 절차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국제무역조치 또는 국제표준에 근거한다
  - 다. 반입 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도록 한다.
  - 라. 무역원활화 조치는 또한 국가적 요건의 효과적 집행과 준수를 통하여 인을 보호하는 체계를 지원한다.
  - 마. 그러한 과정에 관계되는 직원 및 절차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반영한다.
  - 바. 당사국의 절차에 대한 상당한 변경의 전개는, 이행에 앞서 그 당사국의 무역 공동체 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한다.
  - 사. 절차는 주목할만한 거래에 관한 준수 노력에 집중하도록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자 및 수출자의 자발적인 의무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기술 지원 및 모범 사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 4.16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제한, 통제, 규율 및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 반출에 제공되는 절차
  -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도착 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제한, 통제, 규율 또는 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최초의 도착 지점에서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자국 국내법에 따라,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를 납부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sup>6</sup>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 시간, 일주일 7 일 반출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sup>6</sup>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중립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할당, 보건 관련 또는 공공 안전 요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또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당국이 반출되는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자국 각 기관의 요건이, 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신하는 관세당국이 이러한 요건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요구된 모든 자료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시키는 조치를 한다.

6. 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전자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 및 사업공동체와의 협의수단을 마련한다.

#### 제 4.17 조

#####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신속한 반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 공동체 간 전자적 정보교환을 규정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나. 그러한 전자적 정보교환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 대 정부 간 국제무역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간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WCO의 관세정보표준 및 WCO의 관련 권고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정보요소와 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 제 4.18 조

##### 위험 관리

양 당사국은 저위험 상품의 반출 과정 및 절차를 원활히 하고 간소하게 하며, 고위험 상품의 반출에 대한 통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모든 수입 요건의 준수를 위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모든 반입화물을 검사하기 보다는, 자국의 검사 및 반출 절차 및 사후 검증 절차를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것은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는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 4.19 조

##### 특송 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 화물을 위한 신속한 세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세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의 「세관에 의한 특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특송 화물을 도착 시 반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특송 화물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사전 전자정보의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특송 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마. 중량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리고,

바. 당사국의 법규와 합치하며, 그 당사국이 결정한 저가의 상품 반입을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규정한다.

제 4.20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일반 기관 요건 및 반입 절차, 운영 시간 및 질의를 위한 연락처를 포함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요건에 관련된 자국의 모든 법규, 규정 및 행정적 성격의 고시를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히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위험 평가의 수행에 관련된 법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을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정의

제 4.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 관련 법 및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를 말한다.

특송 화물이란 WCO 의 「세관에 의한 탁송품 즉시반출 지침」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동일한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는 관련 없는 외형적 사소한 차이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관해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입자를 말한다.

간접 재료란 제 3.14 조(간접 재료)의 “간접 재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재료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상품의 순위가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순위가”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생산자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말한다.

통일규칙이란 제 4.12 조에 따라 수립된 “통일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계산을 위한 목적상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위한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적

이 장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범 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 조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5.4 조  
분쟁해결

이 장은 제 21 장(분쟁 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5.5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될 때,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합을 조정하는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위원회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며, 당사국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 회합에 자국의 관련 정부 당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5.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관리는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 양자간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 나. 각 당사국의 조치 및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 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같은 다자 및 국제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증진한다.
  - 마. 기술적, 제도적 협력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및 검토를 장려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 바. 양 당사국 간에 제기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한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첫 회합에서 위원회의 절차 규칙을 마련한다. 이후,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제 6 장**  
**표준 관련 조치**

**제 6.1 조**  
**적용범위**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입규격, 그리고
  -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2 조**  
**의무의 범위**

1. 제 1.4 조(의무의 범위)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중앙정부에만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장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sup>7</sup> 및 지방정부 그리고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 6.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그 밖의 국제 협정의 확인**

<sup>7</sup> 이 장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다른 협정과와의 관계)에 더하여,

가.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상호 확인한다.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 그리고 부속서 1 과 3 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4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관련 조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2. 양 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회원국인 그 밖의 지역 및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상호 확인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에 있어 협력한다.

가. 지역 및 국제 표준화 기구 내 회원 자격을 통해서와 같이, 각 당사국의 표준화 기관이 적절한 경우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나. 정부 이외의 양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 기구가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적합성평가 기구와의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

다. 관련 국제 표준과 지침을 기초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라. 그 각각의 인정제도 또는 기관 간 관련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결과의 수용을 증진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을 위한 협정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5. 이 협정에 통합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4 조 및 제 5.4 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 교환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6.5 조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지역 및 지방정부가 이 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한다.

가. 의료 장비 분야에서 표준 관련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것

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사용을 촉진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중복일 수 있는 시험 과 인증 요건을 축소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APEC 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 2 단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 년 내에,

한국은 제 2 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 라. 저압 장비 분야에 있어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 표준의 부합화 및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각 당사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요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국가 인증기관이 관련 전기 안전요건 국가인증을 위한 기초로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것
- 마. 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체(ILAC)와 아시아 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AP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 따라, 한국 인정기구(KOLAS)와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수용을 촉진하는 것
- 바.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연구 결과 및 시험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국 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NRC-IRC),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간에 협력을 장려하는 것. 신뢰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캐나다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이 협력 약정에 관해 협상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제품 분야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의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제 6.6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시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제안한 기술 규정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만, 그 분석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 단계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제 3 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5.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을 위하여 최소 6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규정에 대한 자국의 영향 분석서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의견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10 조에 따라 수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문의처에 전송할 수 있다.

7.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또는 답변의 요약, 자국이 최종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한 날 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제 6.7 조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시장에 허용한다.

안전기준의 반영 또는 동등성

2. 한국은 다음을 준수하는 캐나다를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용하는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KMVSS"<sup>8</sup>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 가. 부속서 6-가에 기재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FMVSS"라 한다)과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그 개정본의 조건에 따라 그 협정 부록 2-다-3 표 1 에 기재된 UN 규정<sup>9</sup>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sup>10</sup>

한국이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KMVSS 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한국은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

<sup>8</sup>KMVSS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에 상용하는 표준을 말한다.  
<sup>9</sup>이 조의 목적상, UN 규정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의 1958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sup>10</su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제 2 항나호와 합치되게 UN 규정의 준수를 수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UN ECE 형식승인서는 적합성의 추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형식승인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이 승인된 형식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은 캐나다에 알린다. 이 각주는 제 4 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캐나다의 자동차 상품을 상용하는 K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3. 캐나다는 다음을 준수하는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용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CMVSS"<sup>11</sup>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 가.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용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1)에 기재된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 나.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용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2)에 기재된 UN 규정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CMVSS 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캐나다는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한국의 자동차 상품을 상용하는 C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4. 제 2 항 및 제 3 항에 언급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 가. 자동차 상품이 자국의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되고 표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up>11</sup> CMVSS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용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을 말한다.

나. 제작사가 자기 인증한 자동차 상품을 포함하여, 자동차 상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는지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 1)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또는
- 2)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규정된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각 당사국은 해당 상품이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 따라 그 자동차 상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해 자동차 상품을 자국의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과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라. 표준이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표준이나 방식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수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안전 수준보다 더 낮은 안전 수준을 규정하거나 캐나다의 경우, 북아메리카 통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또는 규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의 반영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준이나 규정을 자국의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지속적으로 달리 수용한다.

5. 당사국이 제4항라호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수정을 통보한다. 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수정으로 인해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및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의 동등성을 달리 수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고려 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에 따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적합조사

6.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하여 제작사 또는 수입자가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합조사에 관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작사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7. 양 당사국은 관련 세계기술규정, 또는 국제표준화기관이 발표한 그 밖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이하 통칭하여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라 한다), 또는 존재하는 경우 그 관련 부분을, 그러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5.4 조의 적용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사국에 부적절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적절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에 대한 적합조사 절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sup>12</sup>. 당사국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적합조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신기술

8.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sup>12</sup> 이 항의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은 당사국이 해당 표준 또는 규정을 인용하거나 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한 표준 또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조사 절차와 관련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다.

이유로 자국에서의 그 상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9. 한쪽 당사국이 자동차 상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상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자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국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그 통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협력

10.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또는 그 승계기관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상품 사안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8 조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6-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 및 관련 규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 및 촉진하는 것
- 나. 표준 관련 조치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 다. 표준 관련 조치와 우수규제관행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당사국의 모든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마.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사.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이 장의 조항 이행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대로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차.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 회 회합한다.

제 6.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자동차 상품이란 다음의 제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 부속서 6-가

가. 트랙터 (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 (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우수규제관행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 수행을 위한 지침 원칙」(2005)에 정의된 우수규제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 관련 조치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말한다.

제 6.7 조제 2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sup>13</sup>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충돌시 승객 보호	정면	FMVSS 208	KMVSS 제 102 조제 1 항, 제 3 항
	측면	FMVSS 214	KMVSS 제 102 조제 1 항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FMVSS 204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2 호
충돌시 연료노출 방지		FMVSS 301	KMVSS 제 91 조제 1 항
충돌시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3 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FMVSS 207	KMVSS 제 97 조
머리지지대		FMVSS 202a	KMVSS 제 26 조, 제 99 조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KMVSS 제 104 조제 2 항
실내충격시 승객보호 (계기판넬, 좌석등받이, 팔걸이, 햇빛가리개)		FMVSS 201	KMVSS 제 88 조, 제 98 조, 제 100 조, 제 101 조

<sup>13</sup>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용하는 KMVSS
범퍼 충격흡수		49 CFR Part 581	KMVSS 제 93 조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FMVSS 111	KMVSS 제 108 조
조향장치 충격흡수		FMVSS 203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옆문 강도		FMVSS 214	KMVSS 제 104 조제 1 항
천정 강도		FMVSS 216a	KMVSS 제 92 조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FMVSS 210	KMVSS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103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등화장치	설치기준	FMVSS 108	KMVSS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7 조
	전조등	FMVSS 108 <sup>14</sup>	KMVSS 제 38 조, 제 48 조제 3 항, 제 106 조제 1 호

<sup>14</sup> 가스방전식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조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용하는 KMVSS
안개등 <sup>15, 16</sup>		SAE J583 (2005 년 9 월판) 및 SAE J1319 (2005 년 5 월판), 또는 그러한 표준에 대한 개정본	KMVSS 제 38 조의 2, 제 106 조제 2 호
후퇴등		FMVSS 108	KMVSS 제 39 조, 제 106 조제 3 호
차폭등		FMVSS 108	KMVSS 제 40 조, 제 106 조제 4 호
번호등		FMVSS 108	KMVSS 제 41 조, 제 106 조제 5 호
후미등		FMVSS 108	KMVSS 제 42 조, 제 106 조제 6 호
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1 항, 제 106 조제 7 호
보조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2 항, 제 3 항, 제 106 조제 8 호

<sup>15</sup> 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적용 가능한 SAE 표준을 준수하는 그러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sup>16</sup> 가스방전식 전면안개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면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면안개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방향지시등	FMVSS 108 <sup>17</sup>	KMVSS 제 44 조, 제 106 조 제 9 호
	보조방향지시 등	FMVSS 108	KMVSS 제 44 조, 제 106 조 제 10 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FMVSS 108	KMVSS 제 48 조제 4 항, 제 106 조제 11 호
운전자의 시계범위		FMVSS 111	KMVSS 제 50 조제 1 항, 제 2 항, 제 94 조제 1 항
원동기 출력		ISO 1585 <sup>18</sup>	KMVSS 제 111 조
시계 확 보 장치	창닫이기	FMVSS 104	KMVSS 제 51 조제 2 항, 제 109 조제 1 호
	서리제거장 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2 호
	안개제거장 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3 호
	세정액분사 장치	FMVSS 104	KMVSS 제 109 조제 4 호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FMVSS 124	KMVSS 제 87 조
연료 소비율		40 CFR Part 600	KMVSS 제 111 조의 4 제 1 항, 제 2 항제 1 호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FMVSS 135	KMVSS 제 15 조제 1 항, 제

<sup>17</sup> 이 동등성은 황색 또는 호박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sup>18</sup> 이 동등성은 내연기관(구동전동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3 항, 제 8 항, 제 90 조제 1 호
타이어 파열	FMVSS 110	KMVSS 제 88 조의 2
차실내장제 연소성	FMVSS 302	KMVSS 제 95 조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FMVSS 201	KMVSS 제 111 조의 3

## 부속서 6-나

표 1

제 6.7 조제 3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sup>19, 20</sup>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용하는 CMVSS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01	CMVSS 101
앞면유리 서리제거 및 안개 제거	FMVSS 103	CMVSS 103
앞면유리 창닦이기 및 세정	FMVSS 104	CMVSS 104
유압 및 전기식 제동장치	FMVSS 105	CMVSS 105
브레이크호스	FMVSS 106	CMVSS 106
등화장치 및 반사기	FMVSS 108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타이어	FMVSS 109	CMVSS 109
타이어선택 및 립	FMVSS 110	CMVSS 110
후드걸쇠장치	FMVSS 113	CMVSS 113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	FMVSS 114	CMVSS 114

자동차식별번호	49CFR565	CMVSS 115
자동차 브레이크액	FMVSS 116	CMVSS 116
동력구동 창문, 칸막이 및 지붕판넬장치	FMVSS 118	CMVSS 118
승용차 타이어를 제외한 특정 타이어	FMVSS 119	CMVSS 119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용 타이어선택 및 립	FMVSS 120	CMVSS 120
공기식 제동장치	FMVSS 121	CMVSS 121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22	CMVSS 122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23	CMVSS 123
가속제어장치	FMVSS 124	CMVSS 12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FMVSS 126	CMVSS 126
통학버스의 보행자안전장치	FMVSS 131	CMVSS 131
경량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35	CMVSS 135
경량자동차용 신규레이디얼 플라이타이어	FMVSS 139	CMVSS 139
승객보호	FMVSS 201	CMVSS 201
머리지지대	FMVSS 202	CMVSS 202
운전자 충격보호	FMVSS 203	CMVSS 203
조향컬럼 후방이동	FMVSS 204	CMVSS 204
창유리	FMVSS 205	CMVSS 205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CMVSS 206

<sup>19</sup>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sup>20</sup> 양 당사국은 CMVSS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용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본에 이 부속서의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좌석부착장치	FMVSS 207	CMVSS 207
정면충돌 승객보호	FMVSS 208	CMVSS 208
좌석안전띠 어셈블리	FMVSS 209	CMVSS 209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CMVSS 212
범퍼(승용자동차)	49 CFR 581	CMVSS 215
천정 강도	FMVSS 216	CMVSS 216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CMVSS 219
전복 보호	FMVSS 220	CMVSS 220
연료장치 보존성	FMVSS 301	CMVSS 301
내장재 연소성	FMVSS 302	CMVSS 302
전해질 누출 및 감전보호	FMVSS 305	CMVSS 305
실내트렁크해제	FMVSS 401	CMVSS 401
지속자동차	FMVSS 500	CMVSS 500

표 2

제 6.7 조제 3 항나호에 언급된 목록<sup>15</sup>

대상	UN 규정	상응하는 CMVSS
전조등	UN-R 98	CMVSS 108
전조등	UN-R 112	CMVSS 108
전조등	UN-R 113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소음	UN-R 51	CMVSS 1106
이륜자동차의 소음	UN-R 41	CMVSS 1106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UN-R 11	CMVSS 206
이모빌라이저	UN-R 116 (이모빌라이저에 한 함)	CMVSS 114
전후방보호장치(범퍼)	UN-R 42	CMVSS 215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UN-R 78	CMVSS 122
전조등	UN-R 8	CMVSS 108
전조등	UN-R 20	CMVSS 108
전조등	UN-R 31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57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72	CMVSS 108

<sup>15</sup> 양 당사국은 CMVSS 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본에 이 부속서의 UN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율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 정부 간에 자유무역협정 표준관련조치 장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협상과정에서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 설치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제 6.5 조제 2 항사호(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 발효일부터 지체 없이 이 분야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이 한국과 캐나다에 의하여 설치될 것으로 동의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서한에 관련하여 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회답 서한에 의하여 한국 대표단이 위 양해를 공유한다는 귀하의 확인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서명/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2014년 9월 22일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및 모든 후속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야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7.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그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은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 정부 간에 이 자유무역협정 표준관련조치 장에 관한 귀하의 2014년 9월 22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제 6.5 조제 2 항사호(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지체 없이 이 분야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이 한국과 캐나다에 의하여 설치될 것이라는 양해를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 대표단과 공유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서한에 관련하여 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다음 조건 및 제한은 제 1 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에 적용된다.

- 가.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절차의 개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관련한 협의 요청을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러한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절차개시일 후 1년 이내에 적용한다.
- 다.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1항과 제2항 및 제7.3조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은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단계적 관세 철폐에 관한 부속서 2-라(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 3. 가.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당사국은(이하 "조치적용 당사국" 이라 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 나.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다. 가호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나호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 3 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 개월 동안 실행되지 아니한다.

**제 7.3 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예비관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광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당사국이 그 광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 일까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동안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 7.5 조제 4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 7.5 조제 4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 7.2 조제 1 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7.2 조제 2 항다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4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그 상품의 과도기간 동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제 7.5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 규정, 결정 및 판정의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에서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관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부정판정은 그러한 재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게 그 당사국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4 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7.6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

당사국은 제안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제 21.6 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가.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고, 이러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한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나.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sup>21</sup>

<sup>21</sup> 제 2 항 및 제 4 항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이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킴을 확인한다.

통보 및 협의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최소 부과

3. 가. 양 당사국은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보다 적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 1) 한국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 2) 캐나다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은 부과될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액을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으로 할지, 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지를 캐나다 국내법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약속

4.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당국이 약속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법과 절차에 관한 서면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외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3 절  
무역구제위원회

제 7.8 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제7.7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이 무역구제 사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마.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 바.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1) 국제무역협상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 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 4 절  
정의  
제 7.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란

-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7.2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에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 가.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종료 후 10년, 또는
-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5년

제 8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8.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다. 제 8.8 조, 제 8.10 조 및 제 8.16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 및 당국,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국의 비정부기구

### 제 8.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을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8.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제 8.4 조 최혜국 대우<sup>22,23</sup>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 제 8.5 조 대우의 최소기준<sup>24</sup>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제 1 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이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제 1 항의 의무는

<sup>2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에 의해 부여된 대우를 말한다.

<sup>2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언급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대우는 국제 조약 또는 무역 협정에 규정된 이 장의 제 2 절에서와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24</sup> 이 조는 부속서 8-가에 따라 해석된다.

- 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제 1 항의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은 이 조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8.6 조  
손실에 대한 보상**

- 1.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 2. 제 1 항은 제 8.9 조제 5 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 8.3 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 1.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8.8 조  
이행요건**

1.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sup>25</sup>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공급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
-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sup>25</su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3 항에 따른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이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 1 항바호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그 조치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이익의 지속적 수령이 다음의 어떠한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4. 제 3 항은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이익의 지속적인 수령이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sup>26</sup>

5. 제 1 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1 조에 따라,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 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나. 당사국의 경쟁 관련 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관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 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sup>27</sup>

6. 다음의 규정.

가.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인조프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sup>2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또는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 1 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sup>27</sup>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다.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 및 제 3 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8.9 조  
비합치 조치**

1.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 정부
- 2)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sup>28</sup>,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sup>29</sup>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sup>28</sup>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29</sup>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2.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제 16.6 조(내국민대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조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 8.3 조, 제 8.4 조 및 제 8.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증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8.10 조  
투자와 환경**

1.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적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자국 영역 내 설립, 획득, 확장 또는 보유를 위한 장려로서 그러한 조치들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공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장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제 8.11 조 수용 및 보상<sup>30</sup>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 나. 비차별적인 방식일 것
- 다. 적법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 1 항라호에 언급된 보상은

-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라.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마.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또는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로 지불된다.

3. 영향 받은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수용 당사국의 사법적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한 그 경우와 그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수용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유한다.

4.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한다.

### 제 8.12 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sup>3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11 조는 부속서 8-나에 따라 해석된다.

마. 제 8.6 조 및 제 8.11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자유사용가능 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송금은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련된 자국 국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5.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투자에 기인한 소득, 수익, 이윤 또는 그 밖의 액수를 송금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송금 실패를 이유로 그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제 5 항은 당사국이 제 4 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제 4 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그러한 송금을 달리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는 현물수익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13 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한쪽 당사국의 기관이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장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 중 하나에게 지불을 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을 위하여 그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 또는 명의에 대한 대위변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기관은 그 투자에 관해 모든 상황에서 그 투자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이 그렇게 승인한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 8.14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8.15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 8.3 조는 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 8.3 조 및 제 8.4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 그 투자자의 투자에 그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투자자 또는 그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인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은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6 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영업하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 기업들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지지된 원칙 성명서를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관행과 내부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 환경, 인권, 공동체 관계 및 반부패와 같은 쟁점을 다룬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8.17 조  
목적**

제 21 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은 투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8.18 조  
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를 제외한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투자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제 8.19 조  
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이 절에 따른 중재에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를 제외한 제 1 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하고, 그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비지배적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야기한 동일한 사건에 기인하여 제 8.18 조에 따라 청구한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청구가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경우, 그 청구들은 제 8.28 조에 따라 설립된 중재관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이해가 그 결과로서 저해될 것이라고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재관정부에 의하여 함께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3.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8.20 조  
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의사 통보"라 한다)를 청구 제기 전 최소한 90 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전달한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청구가 제 8.19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업의 명칭 및 주소
-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한다. 관련될 수 있는 증거의 예는 재산 증서, 기업설립증서, 주권 및 합작투자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제 8.21 조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 당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 3 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8.22 조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선행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8 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해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청구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 대한 지분에 손실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경우, 그 기업이,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 8.18 조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9 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 이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 8.19 조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의와 포기는 분쟁당사국에 전달되며, 중재 청구 제기에 포함된다.

4. 제 1 항마호 또는 제 2 항마호에 따른 기업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그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규정된 어떤 선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 8.24 조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동의는 무효화된다.

**제 8.23 조  
중재 청구 제기**

1. 부속서 8-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8.22 조에 규정된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중재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 규칙이 중재를 규율 한다.

제 8.24 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 1 항에 규정된 동의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2 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 2 조

제 8.25 조  
중재인

1.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ICSID 의 일반적인 중재 보수가 적용된다.

제 8.26 조  
사무총장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1. 당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의장 중재인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2.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이외의 중재판정부가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8.27 조  
중재인 임명 합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9 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이 아닌 다른 근거에 기초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 가. 분쟁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동의한다.
- 나. 제 8.18 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제 8.19 조제 1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 8.28 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복수의 청구가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중재판정부가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이름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4. 분쟁당사자는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5. 사무총장은 요청의 접수 후 60 일 이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중재인 패널 명부에서 임명된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중재인이 그 패널 명부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임명은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한다.

6. 중재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2 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을 포함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요청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7. 제 6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이름이 기재된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8.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9.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제 2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8.29 조  
비분쟁당사국에 대한 통보

분쟁당사국은 의사 통보와 중재 통보 및 청구서와 같은 그 밖의 문서 사본을 그러한 문서가 분쟁당사국에 송달된 후 30 일 이내에 비분쟁당사국에 송달한다.

제 8.30 조  
문서

1. 비분쟁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다음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었던 증거 사본
- 나.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 사본,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의 서면 주장 사본

2.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1 조  
비분쟁당사국의 참여

1.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고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심리에서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2 조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2.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고려한다.

**제 8.33 조  
절차 언어**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 캐나다가 분쟁당사국인 경우, 불어와 영어

2. 교신, 입장제출, 증언 및 서류 증거는 번역 없이 중재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될 수 있다.

**제 8.34 조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이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5 조  
중재 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쟁당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그러한 문서를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 통보

나. 중재 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8.28조, 제8.31조 및 제8.36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2.2조(국가 안보)와 제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어떠한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그 정보를 다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러한 보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또한 제출한다. 편집본만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는 정보를 제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는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그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

5.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모든 관련 비편집 문서들을 자국의 각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인들이 그러한 문서들에 포함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제 8.36 조  
비분쟁당사자에 의한 입장제출**

1. 서면입장제출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 주요 거주를 가진 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속서 8-라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인은 신청 시 그 입장을 첨부한다.

2. 신청인은 모든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서면 진술을 송달한다.

3.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적절한 일자를 지정한다.

4.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한 허가 부여 여부 결정시,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의 정도를 고려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 특정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관련 사실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부에게 도움이 될 정도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 범위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비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5.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들이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6.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회신하기 위한 적절한 일자를 지정한다. 그 일자까지 비분쟁당사국은 제8.31조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제시된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다를 수 있다.

7.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를 부여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 입장을 다루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입장을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는 그 중재에서 더 이상의 입장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제8.35조에 따른 심리 및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 관련 조항은 이 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심리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규율한다.

**제 8.37 조  
준거법**

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8.38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부속서 II 또는 부속서 III에 규정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 8.37 조제 2 항에 더하여,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석 결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9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40 조  
잠정 보호 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 8.18 조 또는 제 8.19 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제 8.41 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제 1 항을 조건으로, 제 8.19 조제 1 항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의 판정은 그 금전적 손해배상과 이자가 그 기업에 지불될 것을 명시한다.

나. 재산의 원상회복의 판정은 원상회복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3.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 8.42 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 3 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6.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절차가 제 5 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 1 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43 조  
절차 및 그 밖의 사안

중재에 제기된 청구 시점

1. 청구가 이 절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시점은 다음 시점으로 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중재 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2 조에 따른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규정된 중재 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2.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그 당사국에게 송부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국제법무과,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Office of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nada Justice Building  
284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8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분쟁당사국은 변론, 반소, 상계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 8.44 조  
제외**

이 절과 제 21 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은 부속서 8-바에 언급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정의**

**제 8.4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비밀 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및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공개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개정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ICSID** 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 년 3 월 18 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의장권,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그리고 비공개 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일정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sup>31</sup>
-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 바. 지식재산권, 그리고
- 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sup>32</sup>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란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투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sup>33</sup>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sup>31</sup>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sup>3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sup>3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의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때와 같이 투자자가 언급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이중 시민권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시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 자연인이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투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ICSID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송금이란 국제적 지불을 포함한다.

중재판정부란 제 8.23 조 또는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8-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8.5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 8.5 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

부속서 8-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 가.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다.
-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실시키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 다.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sup>34</sup>, 그리고

<sup>3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 부속서 8-다

## 중재 청구 제기

- 3)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여 선의로 채택되고 적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sup>35</sup>.

1. 투자자 또는 기업이 각각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의 소송절차에서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캐나다의 투자자는

가. 제 8.18 조에 따라 그 투자자 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 8.19 조에 따라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캐나다의 투자자 또는 캐나다의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서 동일한 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은 캐나다의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된다.

4. 한국의 투자자는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명령적, 선언적 또는 그 밖의 비상 구제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sup>3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적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8-라

비분쟁당사자들의 입장

1.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 신청은,

- 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 및 그 밖의 연락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타자로 다섯 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적절한 경우, 회원자격 및 법적 지위(예: 회사, 무역 협회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구), 일반 목적, 활동의 성격, 그리고 어떠한 모조직(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청인을 지배하는 어떠한 조직을 포함하여)을 포함하여 신청인을 기술하여야 한다.
- 라. 신청인이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마. 입장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였던 정부, 인, 또는 조직을 밝혀야 한다.
- 바. 신청인이 중재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이 서면 입장에서 거론하였던 중재의 사실 또는 법적인 구체적인 쟁점을 밝혀야 한다.

아. 제8.36조제4항에서 명시된 요소들을 언급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입장을 수락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 중재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비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입장은,

가. 입장을 제출한 인에 의하여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나. 간결하여야 하며, 모든 부록을 포함하여 타자로 20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쟁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진술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라. 분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안만 거론하여야 한다.

부속서 8-마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 8.42 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8-바

분쟁 해결의 배제

「캐나다 투자법」상 심사에 따라 그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허용 여부에 관한 캐나다의 결정은 이 장의 제2절 또는 제21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적용 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제,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또는 지역정부, 또는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나. 중앙 또는 지역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로 당사국의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4조 및 제9.7조는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sup>36</sup>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0.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 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또는
- 3)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

다.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또는 보증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sup>3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9.4 조 및 제 9.7 조의 적용은,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을 포함한 이 장은 제 8 장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9.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9.4 조  
시장접근

당사국은 자국의 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sup>37</sup>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9.5 조  
현지주재

<sup>37</sup> 이 목적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쪽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9.6 조  
비합치 조치

1. 제 9.2 조부터 제 9.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sup>38</sup>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sup>39</sup>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2조부터 제9.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부속서 9-가는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관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9.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GATS 제6조제4항의 국내 규제와 관련된 상호 의무에 주목하며, GATS 제6조제4항에 따라 모든 필요한 규범의 수립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확인한다. 그러한 규범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채택되는 한도 내에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규범들을 검토한다.

제 9.8 조  
인정

<sup>38</sup>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sup>39</sup>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9.3조는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 내 관련 기관이 체결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이 다음을 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교섭을 개시하는 것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일부터 12 개월 내에 회합하는 것

다.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을 위하여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고

라. 협정 또는 약정의 타결 이후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7. 제 6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협정 또는 약정이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정을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제 9.9 조  
임시 면허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2. 제 9.8 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을 개시하는 것

-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회합하는 것
- 다.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협상에 있어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고
- 라. 양 당사국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에 의한 그러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 3. 제 2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4.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비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존재를 신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합의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제 9.10 조**  
**혜택의 부인**

-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 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9.11 조**  
**지불 및 송금**

-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 및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 및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그러나 제 8.45 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9.12 조

정의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하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공급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sup>40</sup>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공급

<sup>40</sup>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이 조들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할 것이 요구되는 대우는 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관련서비스까지

부속서 9-가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협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의 수립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또한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부속서 9-나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할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확장된다.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 는 GATS 제 17 조 및 제 2 조 각각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9-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위한 지침

서설

이 부속서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을 개시하는 정부, 협상 주체 또는 그 밖의 주체에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양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용될 것을 의도한다. 지침은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이하 "MRA"라 한다)의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부속서에 기재된 사례들은 예시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사례들의 목록은 예시적이며, 한정적인 것을 의도하지도 아니하고 양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의 승인을 의도하지도 아니한다.

제 1 절

협상의 수행 및 관련 의무

서설

제 9.8 조의 양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이 절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규정한다.

협상의 개시

1.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협상을 개시하는 의도
- 나. 논의에 관여하는 주체 (예를 들면, 정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기관 또는 그러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또는 달리 권한이 있는 협회)
- 다.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접촉선
- 라. 협상의 주체(적용 대상 특정 활동), 그리고
- 마. 예상되는 협상의 개시 시점 및 제 3 자의 관심표명을 위한 예시적 일자

결과

2. 당사국에 의한 MRA 타결시, 그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새로운 MRA 의 내용, 또는

나. 기존의 MRA 에 대한 증대한 수정사항

후속조치

3.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 의한 후속조치는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가. 협상의 수행 및 MRA가 이 장의 규정, 그리고 특히 제9.8조와 합치되는 것,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이 제9.8조제7항에 따라 MRA의 이행과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채택하고 행위를 취하는 것

단일 협상주체

4. 단일 협상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단일협상주체를 설립하도록 장려된다.

제 2 절  
MRA 의 형식 및 내용

서설

이 절은 MRA 협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합의되는 경우 MRA 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규정한다. 이 절은 당사국이 MRA 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 전문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참여자

5. MRA 는 다음을 명백히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 MRA 의 당사자 (예를 들어, 정부, 국가 전문적 기관 또는 협회)

나. MRA 의 당사자 이외에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 그리고 MRA 에 관한 그들의 지위, 그리고

다. MRA 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위 및 권한 분야

MRA 의 목적

6. MRA 의 목적은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 의 적용범위

7. MRA 는 다음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특정 직업 또는 직함, 그리고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전문적 활동의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
- 나. 관련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
- 다. 인정 메커니즘이 자격, 출신 국가에서 획득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에 기초하는지 여부, 그리고
- 라. 관련 전문직에 대한 임시적 접근, 영구적 접근, 또는 양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가. 요구되는 최소 교육수준 (입학 요건, 학업기간 및 전공을 포함한다)
- 나. 요구되는 최소 경력수준 (면허취득 전 직무 훈련 또는 감독하의 전문 실습의 위치, 기간 및 조건, 그리고 윤리 및 징계 기준의 체계를 포함한다)
- 다. 통과된 시험, 특히 직업능력의 시험
- 라. 현지국에서 인정되는 본국 자격의 한도, 그리고
- 마. 예를 들어, 일정 기관에서 발급된 특정 학위 또는 증명서 목록을 나열함으로써, 또는 일정 자격수준의 보유로 일부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거나 다른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출신 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인증되는 특정 최소요건을 언급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인정할 준비가 된 자격

141

MRA 규정

8. MRA는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인정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과 MRA의 당사국 간 합의된 동등성 수준을 명백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MRA의 정확한 조건은,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MRA가 수립된 기초에 따른다. MRA 당사국의 다양한 지역 관할권에서의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상이한 점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는 MRA 당사국의 한 지역 관할권에서 부여된 인정의 다른 지역관할권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정의 적격성 - 자격

9. MRA가 자격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의 적격성 - 등록

10. MRA가 출신 국가의 규제당국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 결정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그러한 인정을 위한 적격성이 확립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11. 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예를 들어, 현지국에서의 자격요건, 또는 현지 법, 관행, 기준 및 규제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 부족함이 있는 경우)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현지국에서의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요구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나.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 는 그 요건들이 수반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직성 검사, 현지국 또는 출신 국가에서의 추가 실습, 실무 훈련, 그리고 시험에 사용되는 언어)

이행 메커니즘

12. MRA 는 다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가. MRA 의 규정을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규칙 및 절차를
- 나. 양 당사자간 대화 및 행정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 다. MRA 에 따른 분쟁의 중재수단

13. 개별 신청자의 대우를 위한 지침으로서, MRA 는 다음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 면허발급 절차, 현지국에서 충족되어야 할 추가적 요건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각 당사자의 중요 접촉선
- 나. 현지국의 관련 당국에 의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절차의 기간

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및 제출되어야 하는 형식, 그리고 신청시한

라. 자격 및 면허와 관련하여 출신 국가에서 발급되는 서류 및 증명서의 접수

마. 관련 당국에 이의제기 또는 관련당국에 의한 검토 절차, 그리고

바.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수수료

14. MRA 는 또한 다음의 약속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조치에 대한 요청이 신속히 처리될 것

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준비 시한이 제공될 것

다. 모든 시험 또는 검사가 합리적인 주기로 준비될 것

라. MRA 의 조건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가 현지국 또는 기관의 비용에 비례할 것, 그리고

마. 실무 훈련을 위한 현지국에서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지국의 모든 약속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현지국에서의 면허 및 그 밖의 규정

15. 적용 가능한 경우.

가. MRA 는 또한 적격성의 확립에 이어 면허를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 및 조건, 그리고 그러한 면허가 수반하는 사항들(면허 및 그 내용, 전문직 기관의 회원자격, 전문직 또는 학문적 직함의 사용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격 이외의 면허요건은,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사무실 주소, 설립 요건 또는 주거 요건
- 2) 언어 요건
- 3) 신원 및 재정상태의 증명
- 4) 전문직 손해보험
- 5) 상품명 또는 회사명칭의 사용을 위한 현지국 요건에의 합치, 그리고
- 6) 예를 들어 독립성과 양립 불가성과 같은 현지국 윤리에의 합치

다.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MRA 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적용될 관련 법과 규정(징계 조치, 재정적 책임, 의무 등)
- 2) 전문직에 대한 징계 관할권 및 모든 결과적인 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직무 규범과 전문직 기준의 시행
- 3) 직무능력의 지속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
- 4) 전문직의 등록 철회를 위한 기준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그리고
- 5) MRA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국적 및 거주 요건 관련 규정

*MRA 의 개정*

16. MRA 가 검토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의 세부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2일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9.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2014년 9월 22일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9.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14년 9월 22일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서명/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sup>41</sup>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sup>4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급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2014년 9월 22일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sup>42</sup>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sup>4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 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양 당사국의 부속서 I의 유보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 11.10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양 당사국의 부속서 I의 유보 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 11.10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제 10 장  
금융서비스

제 10.1 조  
적용범위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  
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안 비니  
캐나다 수석대표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8장(투자) 및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제8.10조(투자와 환경),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제8.14조(혜택의 부인), 제8.15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 9.10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및 제8.14조(혜택의 부인)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9.11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국내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0.5 조제 1 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도록 요구되는 대우란,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sup>43</sup>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국경 간 무역<sup>44</sup>

<sup>43</sup> 이 복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sup>44</sup>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 를 정의할 수 있다.

3.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신금융서비스<sup>45</sup>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sup>45</sup>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외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0.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up>46</sup>

-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비합치 조치

-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sup>4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sup>47</sup>,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sup>48</sup>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sup>49</sup>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제9.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sup>47</sup>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48</sup>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sup>4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 제 10.10 조

## 예외

1.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정부조달)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50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8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8.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sup>50</sup> 양 당사국은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자국 시장에서 건전성 요건에 합치되게 신금융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 10.6 조가 국경 간 금융서비스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제 10.11 조

##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공표)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0.12 조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0.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가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가. 일방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0.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0.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0-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 그리고

다. 제10.19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0.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어떠한 요청에 대하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관련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요건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이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8 조

분쟁해결

1. 제21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1.7조(패널 구성)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1.7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의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 패널의 의장 이외에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21.7 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제21.11조(불이행-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10.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에 따른 청구를 제8장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고 분쟁 당사국이 제10.10조에 따른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을 위하여 그 사안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10.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0.18조에 따라 구성되며 그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60일 기간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될 수 있다.

**제 10.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 (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또는

2) 손해보험

나. 제보험 및 재해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물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4)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또는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치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그리고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

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 8.45 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sup>51</sup>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가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금융기관은,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

<sup>51</sup>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의 설치를 인가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한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10-가  
국경 간 무역

는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캐나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기술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기술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 1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기술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그리고 신용 조회 및 분석

4. 제 3 항은 외국은행과 그 계열사중 한국도, 1991 년 「은행법」 c. 46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에 금융 기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5.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제재보험

다. 상담<sup>52</sup>, 위험평가<sup>53</sup>, 제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6. 제 5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7.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sup>54</sup>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편드운용, 간접투자 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sup>52</sup>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sup>53</sup>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sup>54</sup> 제7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캐나다

1. 제2항을 조건으로, 캐나다는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
- 2) 신탁 서비스, 그러나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신탁 보유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서비스

2.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이 약속은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그러한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그러한 조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이 약속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캐나다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또는 그 기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 약속의 목적상, 캐나다에서 집합투자기구란 관련 증권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되거나 등록된 투자펀드 또는 펀드 운용 기업을 말한다.

한국

6. 한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7.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이 일단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8. 제1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9.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각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정보의 이전

10.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세정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가. 개인 정보,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나. 건전성 고려<sup>55</sup>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다만, 그러한 권리가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호에 따른 고려사항은 소비자 민감 정보의 보호 및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이 절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기록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11.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현재 구성된 대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국은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정부기관이며, 한국의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을 인정한다.

<sup>5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통신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2. 이 장은 공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한 통신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한쪽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관할권 하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1.2 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1.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사실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국경 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제 5 항 및 제 6 항을 조건으로, 그러한 기업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사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와 상호접속하거나, 또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라.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 22.1 조(일반적 예외)에 더하여, 그리고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하여, 또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자신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I 또는 II 에 따라 당사국의 유보에 의하여 제한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6. 제 5 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이용에 대한 제한

나.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라.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마. 시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러한 망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바.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11.3 조  
허가 절차

1.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를 위한 조건

2.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허가 거부  
의 경우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알릴 것이다.

제 11.4 조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경쟁보장장치

-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 2. 위의 제 1 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상호접속

-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하는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 4.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 5.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11.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 11.6 조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

-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제 9.4 조(시장접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자국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기초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1.7 조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8 조  
집행**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국내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금전적 벌칙,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제 11.9 조  
국내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제 19.3 조(행정절차)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제외한 제11.2조 및 제11.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조치에 대하여 그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한다.

**재검토**

2.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에 그 판정 또는 결정의 재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신청은 그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재고는 다음에 관한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 또는

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의 수립과 적용

**사법심사**

4.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독립적인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불복청구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제 11.10 조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된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

- 1)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부착하는 데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나.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제 11.11 조  
규제적용 면제**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규제적용의 자체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하는 경우

**제 11.12 조  
부가 서비스의 공급조건**

1. 당사국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요금표를 제출할 것

라. 자사 망을 특정 고객 또는 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전송 망 이외의 또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1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1.14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이란 제1.8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또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또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간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기업이 그 기업 내에서, 또는 그 자회사, 지점,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계열사와, 또는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 소통하는 통신을 말하나,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에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중단점이란 이용자의 구역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의 최종 경계를 말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정의된 망 중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통신 전송 서비스로서,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수반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전보,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의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
-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제8장(투자)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 또는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고객 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상 체고를 통하여, 또는 그 저장 및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 12 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제 12.1 조 일반원칙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 제 12.2 조 일반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2.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자 또는 기업인이나 자연인의 입국 또는 노동을 허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12.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는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공중 보건, 안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기업인의 일시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기업인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한다.

**제 12.4 조  
정보의 제공**

1. 양 당사국에 대해 일시 입국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이 장에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해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을 허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한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12.5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설치한다.

가. 한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심사과  
과장,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부  
이민실  
일시거주정책과  
과장,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2. 접촉선은 제12.4조에 기술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장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일년에 한 번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정의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그리고

라. 이 장의 개정 제안

**제 12.6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하여 제21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통상적인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및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19장(투명성), 제20장(제도 규정 및 행정) 및 제23장(최종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부속서 12-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 절  
상용방문자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그 기업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계약 및 체류 기간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한다.

독립 전문가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 또는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부여된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서, 전문적 수준의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영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인은 그 직업을 위하여 규정된 필수 교육을 소지하거나, 인증 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성 개발 중인 경영 연수생이란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업 내 활동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면허를 가진 피고용인으로서, 기업 내에서 고위 간부직 준비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할 의도로 일시적 직무 과제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전에 계획된 전문직 서비스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전문가의 입국 전에 그 조건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공급될 전문직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란 부록 12-가-2에 명시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영구적 거주 의도가 없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신분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그러한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당사국은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에 대한 구두 신고를 통상적으로 수용한다. 그 당사국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을 입증하는 고용주로부터의 서한을 충분한 증거로 통상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5. 각 당사국은 감독자,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 영역과 입국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8. 각 당사국은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으로서, 임원 또는 관리자, 전문가 또는 전문성 개발 중인 경영 연수생으로서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 또는 지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 입국을 부여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

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입국 신청일 직전 3년 내 1년간 그 기업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것을 그 기업인에 요구할 수 있다.

9.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4 절**  
**전문가**

1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2에 규정된 직업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상용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가인 기업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신분의 증명, 그리고
- 나. 그 기업인이,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또는 독립 전문가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분야에서 사전에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12.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

부록 12-가-1  
상용 방문자

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5 절  
배우자

14. 각 당사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인의 배우자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관련 고용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제공한다.

15.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6.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배우자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배우자에게 비자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연구 및 설계

독립 연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작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마케팅

독립 연구 또는 분석,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마케팅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박람회 참석하는 무역 박람회 및 홍보 인력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그러나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아니하는,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구매자

유통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거나, 그 영역에서 내림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싣고 운송하는 운송업자

판매 후 또는 임대 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임대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판매 또는 임대 에 부수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그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훈련하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그리고 감독자

부록 12-가-2  
전문가 목록

## 일반 서비스

전문가 수준에서 상용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경영 및 감독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금융 서비스 인력(보험업자, 은행가 또는 투자 중개인)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 중개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번역가 또는 통역사

## 독립 전문가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건축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엔지니어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경영 컨설턴트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수의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계약서비스 공급자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회계사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공인전문 회계사(CPA), 공인회계사(CA), 공인일반회계사(CGA) 또는 공인관리회계사(CMA)
보험 계리인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및 전문 보험 계리인 협회의 회원
농경도양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건축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조경사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양봉가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회계 감사관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CPA, CA, CGA 또는 CMA
생물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p>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물학자</li> <li>2. 생물학자</li> <li>3. 생태학자</li> <li>4. 발생학자</li> <li>5. 동물학자</li> <li>6. 효소학자</li> <li>7. 병리학자</li> </ol>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8. 세균학자		
9. 유전학자		
10. 조직학자		
11. 기생충학자		
12. 인간생리학자		
13. 병리학자		
14. 면역학자		
15. 균류학자		
16. 박물학자		
17. 생리학자		
18. 바이러스학자		
19. 혈청학자		
20. 식물병리학자		
21. 작물과학자		
22. 해부학자		
23. 선대학자		
24. 세포화학자		
25. 생태생물학자		
26. 어류학자		
27. 선충학자		
28. 골해부학자		
29. 곤충학자		
30. 전염병학자		
31. 생화학자		
32. 식물육종가		
33. 동물육종가		
34. 가금과학자		
35. 토양과학자		
36. 식품과학자		
37. 동물과학자		
38. 동물학자		
39. 낙농과학자		
화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학위**	학사 학위
엔지니어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산림 감독관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지구과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고생물학자		
2. 암석학자		
3. 퇴적학자		
4. 지진학자		
5. 층서학자		
6. 빙하학자		
7. 수리지질학자		
8. 수리학자		
9. 광물학자		
10. 해양학자		
11. 석유물리학자		
12. 제4기학자		
13. 화산학자		
14. 야금학자		
원예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경영 컨설턴트	학사 학위***	학사 학위***
기상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물리과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대학원 학위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물리학자		
2. 천문학자		
3. 공기역학자		
4. 우주학자		
5. 연구과학자		
6. 방사선생물물리학자		
7. 유동학자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삼림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도시 및 토지 이용 계획가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수의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정보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분석가 및 데이터 관리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분야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및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엔지니어 모빌리티 포럼(EMF) 면허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정보시스템전문가(ISP) 지정 또는 인정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터의 면허 또는 지정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양방향 미디어 개발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EMF 면허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정보 시스템 전문가(ISP) 지정 또는 인정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터의 면허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설계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EMF 면허	캐나다 정보 시스템 전문가(ISP) 지정 또는 인정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터의 면허 또는 지정

\* 건축 서비스 제공은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한다.

\*\* 양국에서 법률의 충돌이 없는 경우, 캐나다 전문가가 캐나다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의 고객 또는 고용주가 캐나다 전문가의 요건이 충족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제공하면 한국의 교육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가 요구될 수 있다.

제 13 장  
전자상거래

제 13.1 조  
적용 범위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금융서비스), 제11장(통신) 및 제14장(정부조달)을 포함한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제11.2조(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13.2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사회 및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촉진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국의 국내 규제들의 명확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나.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 지침, 모델 계약 및 행동규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와 신용을 촉진하도록 민간 부문에 의한 자율 규제를 장려하는 것

다.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라. 국제 및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이 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및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마.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전자 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금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치, 또는

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무역보다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더 제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제 13.3 조  
관세

1.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3.4 조  
개인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제 13.5 조  
중이 없는 무역 행정**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3.6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제 13.7 조  
협력**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가.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 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뢰, 전자통신 안보, 전자인증, 지식재산권 및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라. 민간 부문이 행동 강령, 모델 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간 포럼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제 13.8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또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3.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적으로 전달된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한 전달을 말한다.

디지털 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무역을 말한다.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확인한다.

제 14.2 조  
기존의 권리와 의무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상의 양 당사국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3 조  
적용범위

1. 제5조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외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의 부속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를 참조 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부속서 14-가부터 14-사까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과의 일관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에 통합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제23.2조(개정)에 언급된 개정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된다.

제 14.4 조  
수정 및 정정

1.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14-가의 정정, 부속서 14-가로부터의 기관의 철회 또는 부속서 14-가의 그 밖의 수정(이하 “수정”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이하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4-가로부터 그 기관의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장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의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기관의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을 채택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  
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  
하는 경우

#### 제 14.5 조 추가 교섭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장 접근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 제 14.6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의 진행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상호 관심 사안을 추구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양자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촉진

나. 관련 정보의 교환

다. 시장 접근 확대 추구, 또는

라.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3. 제 2 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부 당국을 문의처로서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 제 14.7 조 발효

이 장은 양 당사국을 위한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일 또는 제 23.4 조(발효)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발효한다.

부속서 14  
부속서 14-가

## 한국 양허표-중앙정부기관

기준가:	상품	원화 100,000,000 원
	서비스	원화 100,000,000 원
	건설서비스	5,000,000 SDR

## 기관 목록: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문화재청
4. 방위사업청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해양경찰청(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
9. 관세청
10. 산림청
11. 특허청
12. 기상청
13. 병무청
14.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16. 교육부
17. 고용노동부
18. 환경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외교부
21. 여성가족부
22. 법제처
23. 보건복지부
24. 법무부
25. 국토교통부

26. 국방부
27. 해양수산부
28. 국가보훈처
29. 미래창조과학부
30. 안전행정부
31. 기획재정부
32. 산업통상자원부
33. 통일부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 소방방재청
36. 국가인권위원회
37. 경찰청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38. 국세청
39. 국무조정실
40. 국무총리비서실
41. 조달청(주해 3)
42. 농촌진흥청
43. 중소기업청
44. 통계청
45. 대검찰청

## 부속서 14-가에 대한 한국의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 이 장은 조달청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이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캐나다 양허표 -연방정부기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아래 기준가에 따라 이 부속서에 나열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기준가:	상품	100,000 캐나다 달러
	서비스	100,000 캐나다 달러
	건설서비스	5,000,000 SDR

기관 목록:

1. 대서양 캐나다 기회청 (자체계정)
2.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3.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
4.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
5. 캐나다 국세청
6. 캐나다 공무원 교육원
7. 캐나다 직업 보건 안전 센터
8. 캐나다 식품검사청
9. 캐나다 인권위원회
10. 캐나다 보건연구소
11. 캐나다 정부간회의 사무국
12.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13. 캐나다 핵안전 위원회
14.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 위원회 (자체계정)
15.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안전위원회
16. 캐나다 교통청 (자체계정)
17. 저작권 위원회
18. 캐나다 교정청
19. 법원행정국
20. 농업 및 농산 식품부
21. 캐나다 문화재부
22. 시민권 및 이민부
23. 고용 사회개발부
24. 재무부
25. 해양수산부
26. 외교통상개발부
27. 보건부
28. 캐나다 원주민 및 북부지역 발전부
29. 산업부
30. 법무부
31. 국방부
32. 천연자원부
33. 공공안전방재부
34. 공공근로 및 정부서비스부(자체계정)
35. 환경부
36. 교통부
37. 보훈부
38. 서부경제다양성부(자체계정)
39. 군인정착관리관
40. 전역자토지법관리관
41. 캐나다 퀘벡주 경제발전처
42. 이민 및 난민위원회
43. 캐나다 도서 및 국가기록물관
44. 국립 전장위원회
45. 국립 에너지 위원회 (자체계정)

- 46. 국립 농작물 위원회
- 47. 국립 가석방 위원회
- 48.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 49. 캐나다 과학 기술 연구 위원회
- 50. 북부 송유관청 (자체계정)
- 51. 감사원
- 52. 선거관리관실
- 53. 연방법무관무관실
- 54. 공식언어관무관실
- 55. 여성치위조정관실
- 56. 총독비서실
- 57. 캐나다 사생활 보호관실
- 58. 금융기관감독관실
- 59. 캐나다 공원국
- 60. 특허 약가 검토위원회
- 61. 추밀원 사무처
- 62. 캐나다 공공보건청
- 63. 공공서비스위원회
- 64. 공공서비스노동관계위원회
- 65. 캐나다 대법원 호적처
- 66. 경쟁재판등기처
- 67.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 68.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외부검토위원회
- 69.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공공고충처리위원회

- 70. 사회인문과학 연구위원회
- 71. 캐나다 통계청
- 72. 캐나다 교통항소법원
- 73. 재무위원회 비서실

*부속서 14-가에 대한 캐나다 의 주해*

부속서 14-가에 나열된 어떠한 기관도 하부기관을 창설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부속서 14-나  
상품

## 한국 양허표

1.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부속서 14-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3조 1항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범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설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장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소독제
6850	각종 특수화학물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7350	식탁용 식기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장은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 1 항의 적용에 따라,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한 해양수신부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장은 아래 기재된 연방 공급분류(FSC)표에 기술된 상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FSC	설명		
22	철로장비	47	파이프, 튜브, 호스 그리고 이음쇠
23	자동차, 트레일러 그리고 자전거 (2310 의 버스, 2320 및 2330 의	48	밸브
군용	트럭 및 트레일러, 2350 의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기존	49	유지 및 수리점용 장비
에	2320 으로 분류되었던 2355 의 바퀴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은	52	측정공구
제	외한다)	53	하드웨어 및 연마재
24	트랙터	54	조립식 구조물 및 비계
25	차량 관련 장비 구성요소	55	목재, 목공 제품, 합판 및 단판
26	타이어와 튜브	56	건설 및 건축 자재
29	엔진 부품	61	전선, 전력 및 배전 장비
30	기계 동력 전송 장비	62	조명기구 및 램프
32	목재작업 기계 및 장비	63	경보 및 신호 시스템
34	금속 작업 기계	65	의료, 치과 및 수의 장비 및 보급품
35	서비스 및 무역 장비	66	기구 및 실험용 장비(6615: 자동 항법 체계 및 항공 자이로 구성품 및 6665: 위험 감지 기구 및 장치는 제외한다)
36	특수 산업 기계	67	사진 장비
37	농업 기계 및 장비	68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38	건설, 광산, 채굴 및 고속도로 유지 장비	69	훈련 보조물 및 장치
39	물자 취급 장비	70	일반적 목적의 데이터 자동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보급품 및 지원 장비(7010: 자동데이터처리장비(ADPE) 환경설정은 제외한다)
40	줄, 케이블, 체인 그리고 이음쇠	71	가구
41	냉장 및 공기조절 장비	72	가정 및 상업용 비품 및 기기
42	소방, 구조 및 안전 장비(4220: 해양 구조 및 다이빙 장비 그리고 4230: 오염제거 및 주입 장비는 제외한다)	73	음식 조리 및 급식 장비
43	펌프 및 압축기	74	사무용 기계, 문서 편집 시스템 및 녹화 장비
44	용광로, 화력발전소, 건조 설비 및 원자로	75	사무용 보급품 및 장비
45	배관, 가열 및 위생 설비	76	책, 지도 및 기타 출판물 (7650: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제외한다)
46	정수 및 하수 처리 장비	77	악기, 축음기 및 가정용 라디오
		78	레크레이션 및 운동 장비
		79	청소 장비 및 보급품
		80	솔, 페인트, 밀봉제 및 접착제
		81	용기, 포장 및 포장 보급품
		85	세면도구
		87	농업용 보급품
		88	산 동물
		91	연료, 윤활유, 기름 및 왁스
		93	비금속 제조물
		94	비금속 원료
		96	광석, 광물 및 이들의 1 차 제품

부속서 14-다  
서비스

## 한국 양허표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다.

<i>GNS/W/120</i>	<i>CPC</i>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 인승 미만의 승용차에 한한다)

GNS/W/120	CPC	설명	GNS/W/120	CPC	설명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에 한한다)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8814*	임업 부수 서비스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한다)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음성 녹음)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1.F.p.	875	사진 서비스	6.D.	9404*, 9405* 9406*, 9409*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에 한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GNS/W/120	CPC	설명	CPC	내용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633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 서비스
9.A	6431	오락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641	호텔 및 유사 숙박 서비스
9.B	7471	여행 대행 및 여행 운영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한다)	642-643	식음료 제공 서비스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821	자가 혹은 임차 재산 관련 부동산 서비스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8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서비스
11.F.b.	71233*	컨테이너 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841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842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시스템 분석, 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유지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843	처리, 표 작성 및 설비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 해운중개서비스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 통관서비스	849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11.I.		철도화물운송주선	861	법률 서비스(외국법 및 국제법에 한한 자문 서비스)
			862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863	세무 서비스(법률 서비스는 제외한다)
			874	건물 청소 서비스
			876	포장 서비스
			883	시추 및 현장 서비스를 포함한 광업 부수 서비스
			94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유사한 서비스
			7471	여행 대행업 및 여행 운영 서비스
			7512	상업적 쿠리어 서비스(복합 모드를 포함한다)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7523	전자메일

**부속서 14-다에 대한 한국의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대로 "일부분" 을 가리킨다.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 2 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에 따른다. 연방 기관에 대한 이 장의 이행 목적상, 캐나다는 "공통 분류 체계" 를 사용할 것이다.

2. 이 장은 다음의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코드와 프로토콜 변환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7523	음성 메일
8660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86602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외한다)
8671	건축설계서비스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86731의 교통 인프라 터키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제외한다)
8674	도시 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8676	품질관리 및 점검을 포함한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FSC 58 관련 및교통 설비는 제외한다)
8814	산림관리를 포함한 산림 및 벌목 부수 서비스
8861 부터 8864 까지 및 8866	금속 생산품, 기계 및 설비에 부수된 보수 서비스
83106 부터 83109 까지에 한함	기계 및 설비와 관련한 운영자 미포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83203 부터 83209 까지에 한함	개인 및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86501	일반적 경영 자문 서비스
86503	마케팅 관리 자문 서비스
86504	인적 자원 관리 자문 서비스
86505	생산 관리 자문 서비스

*부속서 14-다에 대한 캐나다의 주해*

1. 이 장은 GATS 의 캐나다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2. 캐나다의 통신 서비스 적용범위는 공중 통신 전송 네트워크의 공급자로부터 임대한 기초 통신 설비의 공급을 위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한정된다.
3.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정부시설 또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정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이 소유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
  2. 공익사업
  3. 비행장, 통신 및 미사일 설비에 관련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4. 선박 건조 및 수리 그리고 관련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5.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및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구매한 것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그리고
  6. 해외주둔 군병력 지원관련 서비스 조달

부속서 14-라  
건설 서비스

한국 양허표

정의:

-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중앙품목분류 제 51 부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의 모든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운영·이전(이하 "BOT" 라 한다)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 2. BOT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이다.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BOT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건설서비스의 목록:

CPC 설명

51 건설업

부속서 14-라에 대한 한국의 주해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 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캐나다 양허표

b)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에 따라, 이 장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제 51 부의 모든 건설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c) 2.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준설 서비스, 그리고

나. 연방 교통부에 의한, 또는 대신하여 조달되는 건설 서비스

부속서 14-마  
일반 주해

## 한국 양허표

1. 부속서 14-다에 기재된 서비스는 다른쪽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다른쪽 당사국이 그 서비스를 부속서 14-다에 포함시킨 한도에서만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캐나다 양허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부속서 14-가부터 14-라까지를 포함하여 이 장에 적용된다.

1.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선박건조 및 수리
  2. 도시철도 및 도시 교통 설비, 체계, 구성요소 및 그에 포함된 자재뿐만 아니라 철 또는 강철 자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3. FSC 58(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4. 농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농산물,  
그리고
  5. 조달 계약의 부분을 이루는 또는 부수적인 교통 서비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소기업 및 소수자 소유 기업을 위한 할당분
  - 나. 원주민에 대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조치. 이 장은 1982년 「헌법」의 제 35 절에 따른 캐나다 원주민의 기존 원주민의 권리 또는 조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국제 협정에 따른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또는 개발을 위하여의 도된 계약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에 따라 해석된다.
  - 가. 캐나다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조달은 정부의 직접적 혜택 또는 사용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계약적 거래로 정의된다. 조달 과정은 조달기관이 조달 요건에 대하여 결정한 이후에 시작하여 낙찰까지 포함하여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과 다른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 간 조달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기관에 의하여 낙찰될 계약이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부속서 14-가의 연방 기관에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예외는 승계 기관이나 기관군 또는 기업이나 기업군에게 이 제안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또한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14-바  
공고의 공표

한국의 경우, [www.g2b.go.kr](http://www.g2b.go.kr) 상의 한국 온라인 E-정부조달 시스템(KONEPS)  
또는 필요시, [gwanbo.korea.go.kr](http://gwanbo.korea.go.kr) 상의 전자 관보

캐나다의 경우, <https://buyandsell.gc.ca/>상의 정부 전자 입찰 서비스(GETS)

부속서 14-사  
기준가 조정

1.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필요시에 양 당사국간 협의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2.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결정에 관한 위원회 GPA/1, 부속서 3 에 있는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발효 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초 조정일부터 시작하여 매 2 년마다 조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15 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 15.1 조  
경쟁법과 경쟁정책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증진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때때로 각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따라 자국이 취하는 집행조치는 투명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로부터의 배제는 투명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배제가 자국의 최우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국의 배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의 경쟁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상호 법적지원, 통보,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경쟁법 집행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
  4.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의 어떠한 형태도 이용될 수 없다.
- (2)

제 15.2 조  
독점<sup>56</sup>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독점을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up>56</sup> 이 조 및 제 15.3 조의 목적상, "유지하다"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정되고 발효일에 존재함을 말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려고 의도하고 그 지정이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지정 당사국은,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지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민간 소유 독점 또는 자국이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정부독점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러한 독점이 그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 나.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sup>57</sup>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관련 시장<sup>58</sup>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sup>59</sup>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 다. 관련 시장<sup>60</sup>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 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라. 자국 영역내 비독점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에 있어, 그런 관행이 적용대상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 관행에 관여하는 데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sup>5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 조건은 개정될 수 있다.

<sup>5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sup>59</sup> 이 규정은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다호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sup>6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4. 제3항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3 조

공기업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공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공기업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공기업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제 15.4 조

가격차별

제 15.2 조 및 제 15.3 조는 가격차별이 공급 및 수요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5.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임한이란 입법적 부여,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하여,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하다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독점을 설립·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달을 의미하고, 정부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독점이란 당사국의 중앙 정부 또는 다른 그러한 독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 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분야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엄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식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비차별적 대우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15-가  
공기업의 국가별 정의

제 16 장  
지식재산

제 15.3 조제 3 항의 목적상, “공기업” 이란,

제 16.1 조  
목적

- 가.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미 내에서의 공적 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행정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상당하는 모든 주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주법에 따라 통합된 상응하는 실체를 말한다.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발상, 기술 및 창의적인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교역 및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 다.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간 균형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 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제 16.2 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을 지칭한다.

제 16.3 조  
국제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지식재산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 16.4 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제 16.6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3.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일반적인 법 집행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하 “WPPT”라 한다)에 따라 이 장에서 특별히 부여된 내국민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제1항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제 16.5 조  
공중 보건 사안

제 16.7 조  
소진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장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이 장은 양 당사국이 지식재산권의 소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제 16.8 조  
정보의 공개

이 장은 당사국에게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거나 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공개로부터 면제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6.9 조  
상표

유명 상표

상표 보호

1. 당사국은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sup>61</sup>

5. 당사국은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상표가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의 소유자에게 구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

가. 등록여부

나.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 여부, 또는

다. 유명성에 대하여 이미 인정받았는지 여부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 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

6.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 제 6 조의 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sup>62</sup>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표권에 대한 예외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sup>61</sup> 당사국은 표지에 대하여 적절한 표현 또는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sup>62</sup>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상표의 명칭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공중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상표 등록 및 출원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10.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정보체계를 제공한다.

11.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 16.10 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sup>63</sup>

1. 캐나다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그리고 “이천쌀” 과 그 각각의 번역어인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Icheon Rice” 의 지리적 표시<sup>64</sup>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sup>65</sup>을 규정한다.

<sup>63</sup> 이 조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sup>6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한쪽 당사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복합 명칭의 개별 명칭은 그 개별 명칭이 관련 상품을 위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 그 당사국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sup>65</sup> “법적수단” 은 지리적 표시권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추가조치 없이 이러한 용어가 인정되는 것과 제16.13조제1항부터 제16.13조제4항까지, 제16.13조제6항 및 제16.13조제7항과 일치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제16.18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따라 민사조치 또는 국경조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관련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인삼 또는 쌀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한국은 “캐나다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라이 위스키” 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증류주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또는 선의로 사용되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에서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원산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조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지 등과 같은 집행 문제를 논의한다. 양 당사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보호에 이의제기 및 취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그 당사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상표가 그 당사국내에서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그 등록일이 부정적 사용이 그 당사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6.11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나.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다.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이하 “WCT”라 한다), 그리고

라. WPPT

저작권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과 실연<sup>66</sup> 및 음반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상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sup>67, 68, 69</sup>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3.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sup>70</sup>

기술조치의 보호

4.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sup>71</sup>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sup>66</sup> 이 장의 목적상, “실연”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sup>67</sup>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저작물 또는 특정한 분류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사안임을 재확인한다.

<sup>68</sup> 제한 및 예외에 관한 모든 합의의사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재된 협정 및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권에 적용 가능한 WCT와 WPPT의 합의의사록은 이 항에도 적용된다.

<sup>69</sup> 당사국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sup>70</sup> 당사국은 WPPT에 따른 이러한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sup>71</sup> 이 조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당사국의 국내법에 포함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적용범위를 저해함이 없이,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이 보호복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암호화 또는 스크램블과 같은 관련 접근통제나 보호 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5. 제 4 항에 언급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가. 자국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 1)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것, 그리고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공중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나. 다음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만 있는 것

6.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이 항들을 이행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에 상호운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장치, 제품, 구성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의무는 없다.

7. 제4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8. 전자적 권리관리정보<sup>72</sup>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9. 제8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8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

<sup>72</sup> 이 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을 말한다.

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다. 위의 가호 그리고 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이러한 정보의 어느 것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

지할 수 있다. 제8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민사 또는 형사 범죄로 한다.

- 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수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 나.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신 또는 재배포하는 것

각 당사국은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구성된 민사 위법에 대하여 그 신호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2 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sup>73</sup>,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그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sup>73</sup>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 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다.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6.13 조**

**지식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적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절차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 유지, 또는 적용되는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그러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참여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다.

3.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침해의 심각성, 제 3자의 이익, 그리고 적용 가능한 조치, 구제 및 처벌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sup>74</sup>*

<sup>74</sup> 당사국은 비공개정보의 보호를 이 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sup>75</sup>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조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금지 명령*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인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연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이 조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권리자의 승인 없는 정부의 사용 또는 정부가 승인한 제 3자의 사용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를 보상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그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2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 이 조에 따른 구제가 적용되거나 이러한 구제가 당사국의 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 배상<sup>76,77</sup>*

<sup>75</sup>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 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다.

<sup>7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침해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의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sup>7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 10 항부터 제 12 항까지의 구제가 병행해서 명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sup>78</sup>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상실된 이익 또는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여 권리자가 제시하는 정당한 가치 측정 방법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다.

11.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이익을 제10항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최소한 저작물·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 가. 법정손해배상액
- 나. 침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기에 충분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sup>79</sup>, 또는
- 다. 적어도 저작권의 경우, 추가적 손해배상

<sup>78</sup> 당사국은 또한 상표 비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권리자가 제 10 항부터 제 14 항까지에 규정된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sup>79</sup> 이 호에 언급된 추정은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권리자의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제3자에게 실제로 양도된 상품의 수량에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하였을 상품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액수
- 나. 합리적인 로열티, 또는
- 다. 최소한, 침해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한 일괄지급

13. 당사국이 제12항가호에 언급된 구제 또는 제12항나호에 언급된 추정을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가 제10항과 제11항에 언급된 구제의 대안으로서 그러한 구제나 추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1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상표 및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적절한 변호사 보수,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구제*

15. 최소한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과 상표위조상품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사법당국이 가지도록 규정한다.

16.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에 대하여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17. 당사국은 제15항 및 제16항에서 기술된 구제가 침해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 관련 정보*

18. 면책 특권, 정보원에 대한 기밀보호 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침해자 또는, 그 대안으로서 침해 혐의자에게 최소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규정된, 침

해자 또는 침해 혐의자가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침해 또는 침해 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및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 3 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 또는 침해혐의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찰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잠정조치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찰권을 행사하는 제 3 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나.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존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으로 수행된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의심상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 및 도구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서는 침해와 관련된 원본 또는 사본 형태의 증거서류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당국이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잠정조치를 위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6.14 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국경조치의 적용범위

1.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제 51 조 각주 14 의 적용대상인 상품을 포함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환적<sup>80</sup> 화물 또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규정을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국가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권리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이 조에 언급된 국경 조치를 취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은 또한 권리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척권 조치*

5. 각 당사국은 수출과 수입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권리자에 의한 신청*

6. 각 당사국은 수입과 수출 화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sup>80</sup> "환적" 은 통관 절차에서의 다음의 화물 또는 상품의 이동을 의미한다.

가. 세관 통제하의 한 세관사무소에서 다른 세관사무소로의 운송, 또는

나. 세관 통제하의 수입과 수출 모두를 담당하는 세관사무소 구역 내에서의 수입 운송수단에서 수출 운송수단으로의 이동

7.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이 조에 기술된 절차를 남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을 기각, 중지,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6 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요청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상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담보가 피고가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의 결정*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에 기술된 절차의 개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구제*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 결정에 따라 침해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11.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2.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결정에 따라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수수료

13.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기술된 절차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산정되는 신청수수료, 보관수수료, 또는 폐기수수료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정보 공개

14. 각 당사국은 사생활 보호 또는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저해함 없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상품을 보유하거나 압수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권리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 정보는 상품의 명세와 수량,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상품의 원산지국 및 상품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량 탁송물품과 개인 휴대품

15. 각 당사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되거나 소량의 탁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 16.15 조

형사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영화관에서의 상연으로부터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무단 복제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처벌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장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칙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합치하는 벌금형<sup>81</sup>뿐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압수, 몰수 및 폐기

4.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의심 상품과 위법혐의행위에 사용된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 증거, 그리고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당사국이 제 4 항에 언급된 명령의 전제요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압수의 목적상 그 품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품목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몰수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상표위조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sup>8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동시 부과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상품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최소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재료, 도구, 또는 자산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8.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압수, 그리고

나.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몰수

저작권에 의한 형사 집행

9.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수사나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6 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 이 장에 규정된 범위의 각 당사국의 민·형사 집행 절차는 침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수단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가입자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업계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당한 행위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하면서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sup>82</sup>

제 16.17 조

협력

<sup>82</sup> 예를 들어, 당사국의 법을 저해함이 없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유지

1. 제 16.1 조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에 합의한다. 협력 영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특허,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및 인접권
- 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및 인접권
- 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라. 지식재산 관리, 등록 및 개발
- 마.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분야 지식재산 보호
- 바. 지식재산 교육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 사. 특히 위조 방지 및 불법 복제와 같은 상호 공유 관심사에 대한 비당사국과 관련한 사안
- 아.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 자. 지식재산 및 개발, 그리고
- 차. 지식재산에 관한 상호 관심 있는 그 밖의 사안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지식재산 분야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각각의 기관 간 접촉의 발전을 촉진,
- 나. 다음의 정보를 교환

- 1)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각 당사국의 정책, 법규, 활동과 경험
- 2)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등록을 증진할 목적의 지식 재산 시스템의 이행, 그리고
- 3)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이니셔티브

다.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접촉선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라. 각 당사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경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하도록 전문가를 교환

마. 비당사국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 대화 그리고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의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바. 관련 학술 및 연구 기관간의 교류 촉진,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

제 16.18 조

지식재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3.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나. 제16.19조에 따른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감독한다.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 16.19 조

협 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지식 재산에 관한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 당사국이 간주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틀 내에서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가. 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3. 양 당사국이 제2항의 협의에 따른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7 장  
환경

제 17.1 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 법을 규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한다.

제 17.2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환경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제17.3조에 언급된 협정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7.3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 및 협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각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제 17.4 조  
환경보호에 유익한 무역

양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포함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7.5 조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사, 공소, 규제 또는 준수의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을 반영하거나 또는 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된 다른 환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선의의 결정의 결과일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 달리 이탈하겠다고 체의하지 아니한다.

제 17.6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 목적의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 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7.7 조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제 17.10 조  
협력**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상호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대중 및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환경협의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협력 이행을 감시한다.

**제 17.11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접촉선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자국 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대표자로 구성된다.
3. 협의회는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며, 적절한 경우, 이 장에 따른 진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의 발효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제 17.12 조  
정부간 협의**

1. 양 당사국은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과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sup>83</sup> 요청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적시하고, 제기된 문제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협의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해결책은 공개된다.

<sup>83</sup> 제17.5조제1항의 협의는 무역 또는 투자 효과가 심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그러한 사안에 제한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자국법에 따라 이용가능하고, 공정·공평·투명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에서의 공청회는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법집행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자가 그 당사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하여 제 2항에 언급된 절차와 그 범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제 2항에 언급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6. 제19.3조(행정절차) 및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8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자국의 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법에 대하여서 다른 쪽 당사국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표하거나 미리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제19.1조(공표)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9 조  
정보 공개**

1. 각 당사국은 대중에게 환경법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 거주 또는 설립된 인의 문의를 접수하고 고려함을 규정한다.

제 17.16 조  
캐나다 주에의 적용

제 1,4 조(의무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에 대한 이 장의 적용은 부속서 17-나에 따른다.

제 17.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란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법령 또는 규제 규정,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말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전 및 보호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천연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취나 개발, 또는 자급자족이나 원주민의 수확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된다.

제 17.13 조  
전문가 패널<sup>84</sup>

1. 사안이 제17.12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제17.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120일 후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은 “환경 장의 관련조항에 비추어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다.<sup>85</sup> 패널위원 선정에 대하여는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2.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이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결정할 경우,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권고에 대한 양 당사국간 합의 결과는 신속하게 공개된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대한 이행은 협의회에 의하여 점검된다.

3.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그리고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17.14 조  
정보 보호

이 장은 당사국에게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공개가 금지되거나 면제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7.15 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sup>84</sup> 전문가 패널을 요청하기 전에, 당사국은 패널 검토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sup>8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권고만을 포함하고 무역제한나 벌칙과 같은 구제의 사안을 다루지 아니한다.

부속서 17-가  
전문가 패널과 관련된 절차

-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전문가 패널은 3 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각 당사국은 1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다.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추가 7 일 이내에 자국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 2. 의장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 명의 후보 이름을 제공한다. 그 명단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된다.
  - 나. 요청 당사국은 그 명단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명단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후보자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단은 가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 후 37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3명의 후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의장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 중에서 추가 7일 이내에 추천으로 선정된다.
- 3. 패널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들은 환경법 또는 이 장에서 다루는 사안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정부와도 연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와 부속서 21-다(모범 절차규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각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 나. 양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관련 정보나 전문성이 있는 비정부기구, 기관 및 개인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 다. 각각의 패널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가 개최되고, 심리는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된다.
-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가 선정된 후 1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사실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명시하고, 사안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전문가 패널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적절한 경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최종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그 최종보고서를 공개한다.

부속서 17-나  
캐나다 주에의 적용

1. 이 협정의 발효 후, 캐나다는 주의 관할 영역 내에서의 사안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구속되는 주를 명시한 서면 선언문을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그 선언문은 한국이 수령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캐나다는 자국 선언문에 대한 수정 6 개월 이전에 이를 한국에 통보한다.
4. 캐나다는 위에 언급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7.12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 18 장  
노동

제 18.1 조  
공동약속 성명

양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 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한다)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한다.

제 1 절  
의무

제 18.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인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며 자국의 노동정책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보호를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한다.<sup>86</sup>

-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나.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의 철폐
-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sup>86</sup>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이 조에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의 보호를 자국의 노동법에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
- 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고용기준
- 바.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예방
- 사. 직업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그리고
- 아.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비차별

**제 18.3 조  
보호수준 저하 금지**

면제 또는 이탈이 제18.2조에 규정된 권리에 불합치할 경우,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18.2조를 이행하는 자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8.4 조  
정부집행 조치<sup>87</sup>**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부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가. 감독관의 임명 및 교육
- 나. 준수여부의 감시 및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의 조사

<sup>87</sup> 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작위 또는 무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과 분쟁의 사안이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기록보관 및 보고 요구
- 라. 작업장의 노동규정을 다루기 위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장려
- 마. 조정, 화해 및 중재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장려, 그리고
- 바. 자국 노동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의 시의 적절한 개시

2. 각 당사국은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당사국 노동법의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청할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요청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고려함을 보장한다.

**제 18.5 조  
사적 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다음의 권한을 가진 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 가. 그 당사국의 노동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인의 노동권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 나. 그 당사국의 노동법 또는 노동권 위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권한

**제 18.6 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항나호, 제18.4조제1항바호 그리고 제18.5조에 언급된 조사 또는 절차가

- 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 나. 이러한 절차의 적절한 운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 공개되고,
- 다. 불합리한 수수료, 지연 또는 시간 제한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의 본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적절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제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 제 18.7 조 정보공개

각 당사국은 집행 및 준수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 제 2 절 제도적 장치

#### 제 18.8 조 장관급 노동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회를 설치한다.
2.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장에 따른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협의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또는 협의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경험에 비추어 이 장의 운영 및 유효성을 검토한다.

#### 제 18.9 조 국가 접촉선

각 당사국은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내에 국가접촉선(이하 "NPC" 라 한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외교문서를 통하여 자국 접촉선의 연락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 제 18.10 조 공중의견제출제도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노동법 사안에 대한 공중의견의 제출 및 접수를 규정하고, 그 목록을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가.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사안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 그리고

다. 제 1 절상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8-나에 따른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안을 검토한다.

#### 제 18.11 조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제도에 대한 각 당사국의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 협력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 제 18.12 조 일반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NPC에 서면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협력,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3. 양 당사국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18.13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제 3 절 의무검토 절차

#### 제 18.13 조 노동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장관급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응답한다.
2. 각 당사국은 개인 및 상업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제기된 사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고려중인 사안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한 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보고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고서는 장관의 수령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 선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고서 준비에 있어 그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와 협력한다.
4. 노동협의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종결된다.

#### 제 18.14 조 검토패널<sup>88,89</sup>

1. 노동 협의 종결 이후에, 협의를 요청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검토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sup>88</sup> 상호주의 원칙을 인정하며, 검토패널 요청 전에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가 자국영역 내 자국 노동력의 합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sup>89</sup>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이 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회부하여야 할 것이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 그 사안이 노동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이 절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중단한다.

4. 검토는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 제 18.15 조 패널위원

1. 검토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가. 노동 또는 유관 분야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및 올바른 판단력에 기초하여 선정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3.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한다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해임된 패널위원

선정 시 사용되었던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이 선정된다. 기한은 양 당사국이 그 패널위원을 해임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기산된다.

4. 개인은 그 또는 그와 제휴관계에 있는 인 또는 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검토에 관하여 패널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5.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패널위원은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 제 18.16 조 검토패널을 위한 정보

1. 양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검토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입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검토패널은 관련 정보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협회, 대중 그리고 인에게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 제 18.17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8.16조에 따라 패널에게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18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사실의 조사결과

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의 의무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관정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어부에 관한 관정, 그리고

다.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한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패널위원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패널은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4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5. 그러한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검토패널은 자체발의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보고서의 재검토, 그리고

다. 검토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

#### 제 18.18 조 최종 보고서

1. 검토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의견을 포함하여,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3. 검토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90일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이내에 검토패널의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 후, 양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결정할 수 없거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그 조건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부속서18-마에 따라 금전적 평가액의 산정 및 지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패널이 재소집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절 일반규정

#### 제 18.19 조 집행원칙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18.20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불합치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였음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제 18.21 조 국내절차의 보장

각 당사국의 재판소의 결정 또는 서류 중인 결정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는 이 장에 따른 수정 또는 재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8.22 조**  
**정보 보호**

1.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로 확인된 정보를 받은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 또는 독점성을 보호한다.
2. 이 장에 따라 검토패널에게 제공된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 제32항(비밀 유지)에 따라 취급된다.

**제 18.23 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합의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또는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가진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의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8.24 조**  
**분쟁해결**

당사국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8.2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적법절차**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그 사안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로, 그 절차의 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방어하고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그 결정이 그러한 정보 또는 증거에 근거함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은 강제적인 군 복무, 특정한 시민의 의무, 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도소 노역 그리고 비상시에 요구된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노동법**이란 제18.2조에서 규정된 노동원칙과 권리를 시행하고 보호하는 법,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제를 말한다.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이란 양 당사국에서 동일한 일반적 대상을 권리, 보호 또는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노동법을 말한다. 그렇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법이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이란 자연인, 기업 또는 사용자나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부속서 18-가

협력활동

1. 제18.9조에 따라 설치된 NPC는 노동협력활동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역할을 한다.
2.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 가. 노동 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마. 국제노동기구선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3. 양 당사국간의 협력활동은 다음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공통관심의 정책사안 및 그것의 효과적인 적용: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고용의 비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업상 보건 및 안전, 작업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근로기준, 근로계약, 그리고 이주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 관행 및 이행
  - 나. 노사관계: 노사정간 협력 형태 및 분쟁해결
  -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실업지원 프로그램
  - 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및 훈련
  - 마.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 바. 노동통계,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4. 제3항에 따라 합의된 협력활동은 다음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다.
  - 가. 연수와 그 밖의 기술교류를 포함하는 대표단, 전문 직업인 및 전문가교류
  - 나. 발간물 및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정보, 표준,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최적 관행의 교환
  - 다.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 라. 합작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 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 바. 노동관련 사안에 대하여 ILO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 내에서의 협력,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교류 또는 협력
5.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견해를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부속서 18-나  
공중의견제출제도

NPC에 공중의견을 제출하는 인의 권리와 관련되는 각 당사국의 공중의견제출 절차는 특히 다음을 명시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의견의 수락과 관련된 요건

- 1)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내 재판소에서 구제가 추구되었고 그러한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내 재판소의 절차가 제18.5조에 합치하여야 한다.
-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 3) 사소하거나, 경솔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의견의 제출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4) 의견은 이전에 제출된 의견과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이전의 의견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

나. 다른 쪽 당사국과의 조기 협의가 있을 것

다. 최종보고서는 제출자,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그리고

라.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것임을 공표하는 경우와, 최종 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부속서 18-다

의무의 범위

1. 이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캐나다는 그 관할 지역내의 사안에 관하여 캐나다가 구속될 주의 목록과 함께 서면 선언문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선언문은 한국에 전달 시 효력을 발생하며, 캐나다 내의 내부적 권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선언문을 수정하기 6개월 이전에 한국에 통지한다.
2. 캐나다는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으로, 또는 그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3절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한국은 그 주가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주의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제3절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3항의 적용범위내의 사안에 관하여 제18.14조에 따라 검토패널이 소집된 날보다 더 늦지 아니하게, 제18.18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검토 패널의 권고 또는 부속서18-마에 따라 결정된 캐나다와 관련된 금전적 평가가 캐나다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또는 관련 주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한국에 통지한다.
5.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부속서 18-라  
검토패널과 관련된 절차

검토패널선정절차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각 당사국은 검토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20일 이내에 한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이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인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다. 다음의 절차는 의장의 선정에 적용된다.
    - 1)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 3명의 이름을 제공한다. 그 이름들은 검토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제공된다.
    - 2) 요청 당사국은 그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이름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그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이름들은 1목에 따라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또는 검토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5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3)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2목에 따른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3명의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25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즉시 요청한다.

절차규칙

2. 제21.8조(절차규칙)에 따른 절차규칙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 각각을 위한 별도 예산에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그 예산에 균등하게 기여한다.

패널 위임사항

4. 양 당사국이 검토패널이 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 1 절 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18.17 조제 1 항 및 제 18.17 조제 2 항에 따라 조사, 판정 및 권고함”

## 부속서 18-마

## 금전적 평가액

1. 검토패널은 제18.18조제4항에 따른 요청이 전달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 집된다. 검토패널은 재소집 이후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의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또는 불이행이 달리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부정적 판정을 내리는 경우 및 재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패널은 제18.14조제1항의 의미 내에서의 불이행 또는 조치계획의 불이행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무역효과에 동등한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검토패널은 다음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토패널의 최종 보고서 이후 그 당사국이 그러한 불이행 시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울인 선의의 노력, 그 당사국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진실된 이유와 같은 감경요인,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이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의 만연성 및 지속 기간과 같은 가중요인

3. 금전적 평가액은 협의회에 의하여 지정된 이자가 붙는 기금에 지불되며 협의회의 지시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4. 제2항에 따라 검토패널이 금전적 평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90일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재소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금전적 평가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금전적 평가액은 요청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후 120일부터 시작하여 양 당사국의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검토패널 결정일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불된다.

5. 검토의 대상이었던 당사국이 불이행을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검토패널은 그 통보시부터 60일 이내에 재소집되고 그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캐나다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은 캐나다가 제4항에 따른 통보 후 180일 이내에 그 통보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상기 제2항에 따른 검토패널 판정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검토패널의 판정은, 제출시,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법원의 명령이 된다.

다. 한국은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 집행을 위하여, 그 법원에 부속서 18-다의 제4항에 따라 검토패널의 판정이 승부된 캐나다의 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캐나다에서 약식절차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그 법원이 검토패널 판정의 사실 또는 해석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그 판정을 내린 검토패널에 회부하고 그 검토패널의 결정은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마.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은 국내법에 따른 채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명령은 채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한국은 자국영역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을 규정한다.

제 19 장  
투명성

제 19.1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19.2 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최대한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제 19.3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9.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가호에 언급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될 것

제 19.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제2항나호에 언급된 결정이 문제가 된 행정조치와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19.5 조  
투명성 제고에 관한 협력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자·지역·다자 포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 19.6 조  
상품 및 서비스의 비차별적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정책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19.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20 장 제도 규정 및 행정

### 제 20.1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 나. 이 협정의 일반적인 기능을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정교화를 감독한다.
  - 라.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마.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 바. 제21장(분쟁해결)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사.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 가.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 및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이 협정과 관련한 해석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나. 비정부 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 및 부속서 1-가(다자간 환경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마. 분쟁해결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제 3 항라호에 언급된 개정은 국내적으로 필요한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가 승인하는 권한에 따라 작업한다.
6. 공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정한다.
7.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으로 개최된다.
8.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 제 20.2 조 협정 조정자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협정 조정자(이하 "조정자" 라 한다)를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협정 조정자는
  - 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 나. 공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설치를 공동위원회에 권고한다.
  - 다.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
  - 라.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통보 및 정보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대로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조정자는 필요시 회합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조정자 특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그 요청 접수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속서 20-가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

1. 설치된 위원회는
  - 가. 상품무역위원회
  - 나.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 라.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
  - 마. 무역구제위원회
  - 바. 금융서비스위원회
  - 사. 정부조달 위원회
  - 아. 지식재산 위원회, 그리고
  - 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2. 설치된 소위원회는
  - 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그리고
  - 나. 자동차제품무역소위원회
3.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작업반은  
건축 제품 및 관련 조립에 관한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작업반
4. 설치된 그 밖의 기구는
  - 가. 환경협의회, 그리고
  - 나. 장관급 노동 협의회

부속서 20-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캐나다의 이익,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모든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제 21 장  
분쟁해결

제 1 절  
분쟁해결

제 21.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1.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분쟁해결 규정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다. 또는
- 다.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한다.

제 21.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한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통상 협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어느 분쟁해결절차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제1.3조(다자간 환경협정과 관계)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그 사안이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이후로는 오직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1.4 조  
협 의**

1.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자동차상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을,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부속서 2-다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상품 무역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행된 협의를 통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5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부패성 제품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 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독점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상 양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주 선, 조 정 및 중 개**

1. 양 당사국은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을 취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2.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수립된 절차는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연관된 절차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1.6 조  
패 널의 설 치**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를 이용함으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 (a)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5일, 또는
  - (b) 제21.4조제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서면 통보 접수시 설치된다.

2. 제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을 적시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제 21.7 조  
패 널 구성**

1. 이 절에서 “접수일” 이란 한쪽 당사국의 제21.6조제1항에 언급된 패널 설치를 위한 서면통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날을 말한다.
2.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각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패널위원 1명을 임명하고, 패널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역할을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한 후보자를 4명까지 추천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자국의 패널위원 임명과 의장 역할을 수행할 추천된 후보자를 통보한다.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5. 양 당사국은 접수일 후 60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5 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의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이 기간 내에 양 당사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7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인 4 일 이내에,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의장이 선정된다.

6.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30 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 일 이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4 항에 따라 임명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양 당사국은 대체자 임명에 신속하게 합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전에 의장으로 추천된 나머지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에 의한 선정을 통하여 임명된다. 남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 3 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추천하고, 의장은 그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그러한 경우, 패널 위원 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에 시작하여 대체자가 선정된 날로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이 중단된다.

7. 각 패널위원은

- 가. 국제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 한다.
-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마.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8. 패널위원이 제7항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를 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된다.

**제 21.8 조  
절차규칙**

1.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은 부속서 21-다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보충적인 절차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절차 규칙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 나. 사호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그러한 정보가 패널에 제출된 후 언제라도 대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 (c) 각 당사국이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 (d) 사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 (e)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하겠다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개하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패널이 고려할 것
- 바. 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입장 및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 사. 비밀정보<sup>90</sup>의 보호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서면 통보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1.9조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

4. 제소 당사국이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5.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조치의 부정적 효과의 정도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정도에 대하여 패널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6.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패널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sup>90</sup> 제22.2조(국가 안보) 및 제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규정된 대로, 패널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규정에서 확인되는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7. 패널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관정할 수 있다.
- 8. 제21.9조의 의미상의 패널의 조사·관정 및 권고는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9. 패널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 절에 따른 패널 절차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21.9 조  
패널 보고서**

-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패널은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조, 제 32조, 제 33조를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해석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패널에 제출된 정보와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3. 3명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패널은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관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당사국의 이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나 침해가 있는지 여부, 또는
  - 다. 패널 위임사항에 포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 4.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조사결과와 관정의 기본적 근거를 포함한다.
- 5.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다.
- 6.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후,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자신의 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는

다.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7. 패널은 최초 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7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 8. 제 21.8 조 및 부속서 21-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최초 보고서는 비밀로 한다.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그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날부터 15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다.

**제 21.10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관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 2.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제거하거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양 당사국이 분쟁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를 제거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대신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
- 3.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제 21.11 조  
불이행-혜택의 정지**

- 1. 제소 당사국의 보상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제21.10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보상이 제21.10조제3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되지 아니한 경우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로 30일,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이 경과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 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  
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또는
  - 나. 각 경우에 맞게, 가호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관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후에 그 정지를 이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경우,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1항가호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제공한 서면통보의 수령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패널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패널이 그 설치일부터, 또는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대체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25일 이내에 단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예외로,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하여 채택되는 절차와 발행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패널 판정에 합치하는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기 위하여 철회 또는 수정된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때까지 제소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 21.12조  
이행 검토**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의 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그 조치의 이 협정과 합치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서 그 사안을 분쟁해결 패널(이하 "이행패널"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접수되면 이행패널이 설치된다.<sup>91</sup> 이행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그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적시하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제공한다.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 패널은, 가능한 한도에서,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

<sup>91</sup> "존재 또는 -와의 합치성" 과 "-의 준수를 위해 취하여진 조치" 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이행패널은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상의 관련 있는 법리를 고려한다.

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이행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 및 발행된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제21.11조에 따라 혜택을 정지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절차 동안 그러한 혜택의 정지를 지속할 수 있다. 이행패널은 최종보고서에 그러한 정지가 종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된 혜택의 규모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1.13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절차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대응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제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1.14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21.15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도에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1-가  
무효화 및 침해

1.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의미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

나. 제 9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다. 제 14 장(정부조달)

이 장 제1절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 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에 따른 관련 법리를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제 22.1 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한도에서, 제 1 항 가호, 또는

나. 제 1 항 나호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제 22.6 조(문화 산업)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서 제 1 항 가호, 나호 및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나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후보자**란 제21.7조에 따라 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마.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그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은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만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5.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

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0.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한쪽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2. 패널위원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패널위원의 의무*

15. 모든 전임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 유지*

16.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련되거나 절차 동안 획득된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7. 패널위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다  
모범 절차 규칙

적용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절차 규칙은 이 장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에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후보인은 제21.7조에 따라 패널 구성원으로서의 선정을 고려 중인 자연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1.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에 의하여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1.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조직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한쪽 당사국은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 및 각 패널위원에게 제공한다. 그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제출된다.

8.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국 또는 캐나다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의 개시

10.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라 패널위원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시부터 7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하거나 접촉한다.

11. 양 당사국은 합의된 패널 위임사항을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2 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최초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3 명의 패널위원 임명 후 20 일 이내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 입장의 전달일 후 20 일 이내에 반박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 절차의 수행

13.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조인이 그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 16.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 17.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 18. 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심리*

- 19.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20.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실시되며, 첫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 21.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 22.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 23.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 다.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및 법원서기, 그리고
  -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문인만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 24.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또는 발언을 할 사람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패널에 전달한다.
- 25.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 26.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 27.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28.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심리 후 가능한 조속히 양 당사국에게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 29. 각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충적인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의*

- 30.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패널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 31. 한쪽 당사국은 패널 질의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에게 전달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비밀 유지*

- 32. 제25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그 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

하여 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서면 입장의 비밀 본을 패널에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 후 15일 이내에 그 입장에서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33.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 또는 개인 패널위원과 의사소통하지 아니한다.

34. 제13항을 조건으로, 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외부조언자의 서면 입장

35.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 입장은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고, 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36. 그 서면 입장은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한 그 제출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해야만 한다.

37. 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5항 및 제36항에 합치하는 모든 서면 입장을 관정에 목록화한다. 패널은 이러한 서면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관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5항 및 제36항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서면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긴급사건

38. 제2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번역 및 통역

39.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10항에 언급된 회합 보다 더 늦지 않게 양 당사국은 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0. 양 당사국이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신의 서면 입장을 다른 쪽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국은 구두 입장을 양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41. 패널 판정은 양 당사국이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2. 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43. 당사국은 제40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기한 계산

44. 제9항의 적용을 이유로, 당사국이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과 다른 날에 문서를 접수한 경우,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부터 기산된다.

제 22 장

예외

제 22.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 관련 조치), 제7장(무역구제) 및 제13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

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제13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제8장(투자)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 22.2 조

#### 국가 안보

이 협정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밀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또는 그 밖의 안보 시설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그 밖의 제품·재료·서비스 및 기술의 밀거래 및 거래와 관련되는 조치

2) 전시에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3)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 폭발장치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또는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제 22.3 조

####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은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 및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8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및 제2.9조(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 4. 제2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가. 제9.2조(내국민 대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5조(국경 간 무역)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는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최혜국 대우), 제9.2조(내국민 대우) 및 제9.3조(최혜국 대우)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 5. 제 4 항은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그 개정 시점에 제4항에 언급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바. 공평하고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과세 체계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거나 과세의 기피 또는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 양 당사국의 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8.8조(이행요건)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7. 제8.11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이 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 투자자는 제8.11조(수용 및 보상)를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에 따른 청구의 근거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투자자는 제8.20조(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정 당국에 회부한다. 지정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8.23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8. 이 협정은 공개될 경우 납세자의 세무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당사국 법에 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22.4 조

##### 송금

1.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은 한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sup>92</sup>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

<sup>92</sup> 한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캐나다와 사전에 조율할 것이다.

나. 물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규제 자산<sup>93</sup>에 관하여 한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캐나다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사. 부속서 I·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한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8.3조, 제9.2조,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 제9.3조, 제10.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아.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sup>94</sup>, 그리고

2)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캐나다와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제 22.5 조

정보 공개

1. 이 협정은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각료급 정부 행정기관의 심의 및 정책 결정 과정, 개인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에 대한 금융 사무 및 계좌를 보호하는 당사국의 법에 반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과정 중에 자국 경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특별 취급을 받거나 공개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6 조

문화 산업

<sup>9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캐나다 투자자에 의하여 한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sup>94</sup>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이 협정은 제1.6조(문화 협력) 및 제2.3조(관세철폐)상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7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면제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중복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도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한 의무면제 결정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이 협정에 또한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합치 조치를 이유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제8장(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2절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2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경쟁위원회,
-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문화 산업이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 가.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판,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단순한 인쇄 또는 조판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함

-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전시
- 라. 음악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 배포 또는 판매
- 마.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 통신
- 바. 라디오·텔레비전 및 케이블 방송사업, 또는
- 사.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지정 당국이란

-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재정부 조세정책 담당 차관보를 말한다.
-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분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란

-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50조 및 제62조의 범위내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경쟁법」 제29절의 범위내의, 또는 모든 승계 규정상의, 정보를 말한다.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 및 조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2-가  
과세 및 수용

- 가. 제1.8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서 정의된 “관세”, 또는
- 나. 그 정의에 대한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8-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 라. 그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3 장  
최종규정

제 23.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3.2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3.3 조  
유보

이 협정은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적 선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 23.4 조  
발효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7조(발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두 번째 통보일부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23.5 조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고 하는 의도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부부터 6 개월 후에 종료된다.

제 23.6 조  
정본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한국어본, 영어본 및 불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 년 9 월 22 일 오타와에서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_\_\_\_\_  
대한민국을 위하여

\_\_\_\_\_  
캐나다를 위하여

## 부속서 I

##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 한국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라. 제 8.8 조(이행요건)
-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 의무는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다. 조치<sup>95</sup>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8.9 조제 1 항다호 및 제 9.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5 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sup>9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b>부속서 I</b>		<b>2. 분야</b>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
<b>한국의 유보목록</b>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 9.5 조)
<b>1. 분야</b>	건설 서비스	<b>조치</b>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법률 제 11919 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 조부터 제 63 조까지, 제 65 조의 2 및 제 65 조의 3(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 9.5 조)	<b>유보내용</b>	<b>국경 간 서비스무역</b>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b>조치</b>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2012 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616 호,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0 호, 2013.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782 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 조(별표 1)(대통령령 제 24417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 조(안전행정부령 제 3 호, 2013.3.23)	<b>3. 분야</b>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b>유보내용</b>	<b>국경 간 서비스무역</b>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b>조치</b>	자동차관리법 제 20 조, 제 44 조, 제 44 조의 2, 제 45 조, 제 45 조의 2 및 제 53 조(법률 제 11929 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8 조, 제 83 조, 제 87 조 및 제 111 조(국토교통부령 제 24 호, 2013.9.6)

<p>유보내용</p>	<p>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1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지정정비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4. 분야</p> <p>관련의무</p> <p>조치</p> <p>유보내용</p>	<p>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p> <p>시장접근(제 9.4 조)</p> <p>현지주재(제 9.5 조)</p> <p>담배사업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p> <p>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 조(대통령령 제 24519 호, 2013.4.26)</p> <p>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7 조 및 제 7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131 호, 2010.3.3)</p> <p>추세법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법률 제 11873 호, 2013.6.7)</p> <p>추세법 시행령 제 9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p> <p>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2-68 호, 2012.10.1)</p> <p>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3-15 호, 2013.4.1)</p>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p>
-------------	---	--	--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아니한다. 또는
-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제(제 9.5 조)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제(제 9.5 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법률 제 11860 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보건복지부령 제 193 호, 2013.4.17)	조치	약사법 제 42 조 및 제 45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 31 조의 2(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 인은 한국에서 1 개의 영업소를 초과하여 개설하지 아니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6 조(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 4 조 및 제 12 조(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63 호, 2013.4.18)  의료기기법 제 15 조(법률 제 12107 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0 조(총리령 제 1016 호,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 조(법률 제 11508 호, 2012.10.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5 조(총리령 제 1010 호, 2013.3.23)  식품위생법 제 24 조,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1819 호, 2013.5.2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3 조 및 제 24 조(대통령령 제 24800 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3 조 및 제 36 조(별표 14)(총리령 제 1041 호, 2013.1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제 6 조의 2(법률 제 11984 호, 2013.7.30)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8.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제(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약사법 제 2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 22 조의 2(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조치	철도사업법 제 5 조, 제 6 조 및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법률 제 12025 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 8 조(법률 제 12023 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 개 이상의 약국을 설치할 수 없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 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 12345 호, 2014.1.28)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1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 4 조(법률 제 11647 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1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해운법 제 24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2092 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 (해양수산부령 제 1 호, 2013.3.24) 도선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 3 조 및 제 31 조(법률 제 11756 호, 2013.4.5)	조치	항공법 제 2 조, 제 3 조, 제 6 조, 제 112 조, 제 113 조, 제 114 조, 제 129 조, 제 132 조 및 제 135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2, 제 15 조, 제 278 조, 제 278 조의 3, 제 296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기업이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p>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1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사용서비스
<p>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는 당해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 8.3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부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는 지점 간 운항 서비스, 관광비행 서비스 및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포함한다.</p>	조치	<p>항공법 제 3 조, 제 6 조 및 제 134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p> <p>항공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p>
	유보내용	<p>투자</p> <p>항공기 사용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하지 아니한다.</p> <p>가. 외국 국민</p> <p>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p> <p>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p>

다.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및 관측,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그리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를 포함한다.

## 14.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73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주차장법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 36 조(법률 제 12045 호, 2013.8.13)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서비스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9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306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 제 24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1933 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 조, 제 34 조 및 제 41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19 호, 2013.7.11)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21 조 및 제 87 조(법률 제 12035 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4 조(법률 제 5385 호, 1997.8.28) 전파법 제 13 조 및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p data-bbox="443 831 656 863"><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 data-bbox="443 927 1077 1054">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442 호, 2013.3.23) 제 3 조에 따라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 data-bbox="443 1094 1077 1238">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p> <p data-bbox="443 1326 1077 1469">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p>	유보내용	<p data-bbox="1453 831 1749 863"><b>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b></p> <p data-bbox="1453 943 2069 1015">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된다.</p> <p data-bbox="1453 1094 2069 1278">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한다.</p> <p data-bbox="1453 1366 2069 1469">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p>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 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 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제(제 9.5 조)	관련의무	현지주제(제 9.5 조)
조치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 조(법률 제 11866 호, 2013.6.4)</p>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p>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 제 66 조 및 제 68 조(대통령령 제 23919 호, 2012.6.29)</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및 제 2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조치	<p>의료기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2107 호, 2013.8.13)</p> <p>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2 조 및 제 24 조(총리령 제 1016 호, 2013.3.23)</p>
유보내용	<p><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유보내용	<p><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20.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조치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 및 제 64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p>	조치	<p>해양과학조사법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법률 제 12091 호, 2013.8.13)</p> <p>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 조(법률 제 10524 호, 2011.4.4)</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p>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변호사법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법률 제 11825 호, 2013.5.28)  법무사법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법률 제 8920 호, 2008.3.21)  공증인법 제 10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1823 호, 2013.5.28)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 5 조,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및 제 7 조 의 4(법률 제 10321 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15 조 및 제 19 조(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 6 조 및 제 10 조(고용노동부 령 제 78 호, 2013.3.23)
유보내용	<p><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다.</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 은 그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 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 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6 번째 유보 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유보내용	<p><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 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 사여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 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 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p>

<p><b>23. 분야</b>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p> <p><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p> <p><b>조치</b> 변리사법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6 조의 3(법률 제 11962 호, 2013.7.30)</p> <p><b>유보내용</b>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하지 아니한다.</p> <p>변리사 1 인은 1 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p>	<p><b>24. 분야</b>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p> <p><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p> <p><b>조치</b>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p> <p><b>유보내용</b>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지 아니한다.</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7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	--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II 한국의 유보목록의 38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 25.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 조치

세무사법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제 16 조의 4 및 제 20 조(법률 제 11610 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 97 조(대통령령 제 24824 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0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325 호, 2013.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1 조(대통령령 제 24574 호, 2013.6.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5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323 호, 2013.2.23)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 20 조 및 제 22 조(국세청 훈령 제 1761 호, 2009.8.24)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지 아니한다.

26.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관세사법 제 3 조, 제 7 조 및 제 9 조(법률 제 10570 호, 2011.4.8)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52 조의 4(법률 제 11882 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9 조의 2 및 제 1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84 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온전법 제 7 조(법률 제 11896 호, 2013.7.16)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법률 제 11782 호, 2013.5.22)	
조치	<p>건축사법 제 2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령 제 22 조 및 제 2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3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법률 제 12299 호, 2014.1.21)</p> <p>기술사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법률 제 11928 호, 2013.7.6)</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p> <p>건설기술관리법 제 25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p> <p>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91 조 및 제 108 조(대통령령 제 24390 호, 2013.2.20)</p> <p>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8 조(국토교통부령 제 4 호, 2013.4.1)</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 조 및 제 54 조(법률 제 11943 호, 2013.7.17)</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5 조, 제 46 조 및 제 47 조(대통령령 제 24596 호, 2013.6.11)</p>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9.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30.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방송법 제 13 조 및 제 73 조(법률 제 12093 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4632 호, 2013.6.21)	조치	직업안정법 제 19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3 조(대통령령 제 24076 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18 조 및 제 36 조(고용노동부령 제 72 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1668 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3853 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고용노동부령 제 64 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선원법 제 109 조, 제 110 조, 제 112 조, 제 11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제 142 조 및 제 14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 5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되지 아니한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 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31.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 조치

경비업법 제 3 조 및 제 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4 조(대통령령 제 24419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3 조(안전행정부령 제 20 호, 2013.10.22)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 가. 시설경비
- 나. 호송경비
- 다. 신분보호
- 라. 기계경비, 그리고
- 마. 특수경비

3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제(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및 제 138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304 조 및 제 305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 3 조, 제 4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36 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 조(대통령령 제 24847 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1622 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65 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 1 조 및 제 2 조(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최소 50 퍼센트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최소 절반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제영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II의 한국의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34.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 30 조 및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법률 제 11770 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35.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 (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4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24628 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4 조 및 제 18 조(고용노동부령 제 57 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분야	수의 서비스	37.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의사법 제 17 조,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4 및 제 22 조의 5(법률 제 11354 호, 2012.2.22) 민법 제 32 조(법률 제 11728 호, 2013.4.5)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2 조(법률 제 11915 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 조(법률 제 11713 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7(법률 제 11464 호, 2012.6.1) 지하수법 제 29 조의 2(법률 제 11803 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 68 조(법률 제 11750 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 5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법률 제 11965 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 조(대통령령 제 24543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분야	공연 서비스	39.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조치	공연법 제 6 조 및 제 7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6 조(대통령령 제 23759 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 4 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 94 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 799 호, 2013.10.10)	조치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및 제 10 조(대통령령 제 24183 호, 2012.11.20) 전파법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0.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41.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8.8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 조(총리령 제 1022 호, 2013.3.23)	조치	양곡관리법 제 12 조(법률 제 11641 호, 2013.3.22) 축산법 제 30 조 및 제 3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중자산업법 제 142 조(법률 제 11704 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59 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14 조 및 제 20 조의 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3-29 호 2013.5.16)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9.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시장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42.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sup>1</sup>

####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7 조(대통령령 제 24697 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2 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17 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 6-2 조(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3-40 호, 2013.12.4)

#### 유보내용

#### 투자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sup>1</sup>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 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 43.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sup>1</sup>

##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 11 조(2013.8.9)

##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sup>1</sup> 부속서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캐나다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8.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9.2조(내국민대우)
- 나. 제8.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대우)
- 다. 제8.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라. 제8.8조(이행요건)
- 마. 제9.4조(시장접근), 또는
- 바. 제9.5조(현지주제)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조치<sup>1</sup>는, 표시된 곳에서 유보내용 요소에 의해 한정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그 유보사항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취하여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9조제1항가호 및 제9.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9조제1항다호 및 제9.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9.2조(내국민 대우), 제9.3조(최혜국 대우), 제9.4조(시장접근) 또는 제9.5조(현지주제)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8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제(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제(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77호 임시중앙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 제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 번호를 말한다.

부속서 I  
캐나다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이행요건 (제 8.8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 28 (1st Supp.)  유보내용 요소 제 8 항부터 제 12 항까지에 의해 한정되는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인이 아닌 자가 다음과 같은 캐나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투자감독관의 검토를 조건으로 한다.  가. 자산이 5 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직접 인수

니하는 한 이행될 수 없다. 이 결정은 다음에 요약된 대로 그 법에 명시된 6 개 요소에 따라 이루어 진다.

가. 고용,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부속품·서비스의 사용, 캐나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여, 캐나다 내 경제활동의 수준과 성격에 대한 투자의 효과

나. 투자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참여 정도와 중요성

다. 캐나다에서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개발 및 제품혁신에 대한 투자의 효과

라. 캐나다 내 산업 또는 산업들 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투자의 효과

마. 투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이 밝힌 산업, 경제 및 문화적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투자와 산업, 경제 및 문화적 국가정책과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바. 투자의 국제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력에 대한 기여

5. 순익 결정을 내릴 때, 장관은, 제안된 인수가 캐나다에 순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신청인이 설명한 계획을, 투자감독관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또한 검

나. 자산이 5 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그리고

다. 5 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5 천만 캐나다 달러 사이의 자산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이 해당 거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권이 인수되는 모든 실체들의 자산 가치의 50 퍼센트 초과에 해당되는,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2. 이 유보의 목적상,

“비캐나다인” 은 캐나다인이 아닌 개인,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캐나다인” 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 내의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캐나다 투자법」 에 명시된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3. 이에 더하여, 통상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는, 캐나다 문화유산이나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정된 종류의 사업활동을 하는 신규회사의 구체적인 인수나 설립은, 총독이 공익을 위하여 검토를 승인하는 경우, 검토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캐나다 투자법」 에 따른 검토 대상인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 을 담당하는 장관이 투자자 캐나다에게 순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

토 대상인 제안된 인수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약정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준수를 지시하는 법원명령이나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인정되는 그 밖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6. 상기된 검토 대상이 아닌 캐나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비캐나다인은 투자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캐나다 회사의 총자산가치가 적용 가능한 기준액 이상인 경우, 투자감독관은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한국 투자자에 의한 그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 인수”를 검토할 것이다.

8. 제 13 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된 더 높은 검토 기준은 문화산업분야의 인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제 8.45 조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이 지배하는 실체인 투자자만이 더 높은 검토 기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제 8 항에 명시된 분야 외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11. 제 8.8 조(이행요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상 투자 인수 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의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양도인과 관계되는 캐나다 국내에 있는 국민이

나 기업에게 양도하기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12. 이 유보사항 제 11 항에 규정된 기술이전과 관련된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제외하고,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된다.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에서의 생산의 입지, 연구·개발 수행, 근로자 고용 또는 훈련, 또는 특정 설비의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하여,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모든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한국 투자자를 위한 검토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액은 2014 년에 354 백만 캐나다 달러이다. 그 후 매년 1 월 장관이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그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연조정 =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

----- x 전년도 결정금액

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가장 최근의 연속 4 분기 동안의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해 전년의 상응하는 기간의 연속 4 분기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상기에 언급된 목적 상, 금액은 가장 가까운 백만 달러로 반올림될 것이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유보내용 요소에 규정됨.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들에 의한 기업 또는 그들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고위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부과나 이 유보에 명시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기존의 조치이다. 그리고

- 나. “공기업”은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유보내용	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는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 주식의 발행·양도 및 소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회사가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특정 법에 따른 캐나다인 소유권 또는 지배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캐나다인 소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합의 없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고 공개시장에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된다.</li> <li>2.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캐나다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인이 되거나, 금융 중개업자 및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및 그 밖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투</li> </ol>

차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캐나다인 소유요건을 협동조합이 충족하도록 허락하기 위하여서, 협동조합의 투자주식이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발행되거나 양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규정한다. 투자지분의 소유나 지배가 협동조합이 캐나다인 소유권이나 지배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소유 투자지분 수의 제한 또는 투자지분의 소유권의 금지를 규정한다.

3. 본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인은 「캐나다 회사 규정, 2001」이나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 정의된 “캐나다인”을 의미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캐나다 법인법, R.S.C. 1970, c. C-32 특정회사 설립에 관한 의회특별법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회사법」은 대부분의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사의 25 퍼센트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그런 회사의 이사가 4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분야의 회사의 경우 단 순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가 요구된다: 우라늄 광업, 서적출판 또는 유통, 서적판매가 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인 경우 서적판매, 그리고 영화 또는 영상 유통. 유사하게, 「의회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최소 캐나다인 소유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는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보유하도록 요구된다.

하여 1869년 6월 22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합작주식회사에 적용된다.

2. 「캐나다 회사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개인을 의미한다.

3.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캐나다에서의 수익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총수익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이사가 이사의 1/3보다 많을 필요는 없다.

4. 「캐나다 협동조합법」에서는 이사의 2/3 이상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 이사의 최소 25퍼센트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협동조합 이사가 3명에 불과한 경우, 최소 1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5. 「캐나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개인과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으로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정의된다: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자

6. 「캐나다 법인법」 제 4장에 따라, 특별법 상 회사의 선출 이사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 거주자이고 영연방 국가 시민권자여야 한다. 본 요건은 「의회 특별법」에 의

분야	모든 분야	나.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기관, 또는
하위분야		다.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산업분류		규제대상 토지는 앨버타주의 토지를 의미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가. 앨버타 정부 토지
조치	시민권법, R.S.C. 1985, c. C-29	나. 도시, 읍, 신도시, 마을 또는 하계마을 내의 토지, 그리고
	외국인토지소유규정, SOR/79-416	다. 광산 또는 광물
유보내용	투자	
	<p>1. 「외국인토지소유규정」은 「시민권법」 및 「농업 및 휴양용 토지소유법」, RSA 1980, c. A-9 에 따라 제정된다. 앨버타에서,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합하여 최대 20 에이커를 포함하는 최대 2 필지로 구성되는 규제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p>	
	2. 이 유보의 목적상,	
	자격이 없는 인은 다음의 인을 의미한다.	
	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연인	

분야	모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코 유한책임회사(이전의 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비거주자 자연인 1명당 15퍼센트, 합하여 25퍼센트,</li> <li>• 노르디온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합하여 25퍼센트</li> <li>• 세라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49퍼센트, 그리고</li> <li>• 캐내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25퍼센트</li> </ul>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2. 이 유보의 목적상, "비거주자" 는 다음을 포함한다.
조치	<p>에어캐나다 공공참여법, R.S.C. 1985, c. 35(4th Supp.)</p> <p>캐내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매각승인법, S.C. 1986, c. 20</p> <p>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구조조정 및 매각법, S.C. 1988, c. 41</p> <p>노르디온 및 세라트로닉스 매각승인법, S.C. 1990, c. 4</p>	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유보내용	투자	나. 캐나다 밖에서 설립되거나, 형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회사
	<p>1.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들" 은 각 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특정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제한은 개별주주들에게 적용되며, 다른 회사의 경우 제한은 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캐나다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퍼센트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또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제한은 다음과 같다.</p>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기관 또는 외국 국가 또는 그러한 정부를 대신하여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합하여 25퍼센트,</li> </ul>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나 실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마. 신탁,
		1) 과반수가 캐나다 거주자인 자연인의 이익을 위한 연금기금의 운영을 위한 신탁을 제외하고, 나호부터 라호까지

- 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에 의해 설립된 신탁, 또는
- 2)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가 실질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신탁, 그리고
- 바. 마호에 언급된 신탁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수출입허가법, R.S.C. 1985, c. E-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연인,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캐나다 지점만이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통제를 조건으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통과 승인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관세사	하위분야	면세점
산업분류	SIC 7794 관세사 CPC 749 기타 지원 및 보조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SIC 65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소매점 (면세점에 한함) CPC 631, 632 (면세점에 한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관세법, R.S.C. 1985, c. 1 (2nd Supp.) 관세사면허규정, SOR/86-1067	조치	관세법, R.S.C. 1985, c.1(2nd Supp.) 면세점규정, SOR/86-107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에서 면허받은 관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가. 자연인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나. 회사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 파트너십은 캐나다 국민 또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인 회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자연인은 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나.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다. 캐나다에 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라. 면허 신청 연도 전년에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2.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는

- 가. 캐나다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 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캐나다 국민이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문화재 수출입과 관련된 검사 서비스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96321 유적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박물관 서비스(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8790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사업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유보유형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문화재 수출입법, R.S.C,1985, c. C-5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캐나다 거주자나 캐나다에 있는 기관만이 「문화재 수출입법」 목적 상 문화재 전문검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기관은 공적으로 소유되고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며,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대상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이거나, 캐나다에 본사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무소를 캐나다에 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특허대리인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특허대리점에 포함) CPC 8921 특허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특허법, R.S.C. 1985, c. P-4 특허규칙, SOR/96-4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허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상표대리인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상표대리점에 한함) CPC 8922 상표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상표법, R.S.C. 1985, c.T-13 상표규정, SOR/96-195; SOR/2007-91, s.1	조치	캐나다 석유자원법, R.S.C. 1985, c.36 (2nd Supp.) 영토토지법, R.S.C. 1985, c.T-7 연방부동산법, S.C. 1991, c.50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상표청에서 상표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상표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유보내용	투자  1. 이 유보는 적용 가능한 조치에 정의된 대로 “국경 지대” 및 “연안지역” (주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발급되는 생산면허에 적용된다.  2. 석유 및 가스 생산면허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분야	에너지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1.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따라, “복지계획”은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을 이행하도록 승인받기 위하여 장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2. “복지계획”은 캐나다인의 고용 및 경쟁을 통하여 복지계획에 기재된 제안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평한 기회를 캐나다 제조사, 컨설턴트, 계약자 및 서비스회사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3.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의해 고려되는 복지계획은, 혜택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가 훈련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갖거나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에 사용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관이 신청자에게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치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 S.C. 1992, c.35 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라,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보존법, R.S.C. 1985, c. O-7		4.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 협약」을 실행하는 법에 포함된다.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 28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법, 1998, c.5, s.20 및 석유 및 가스법, RSY 2002, c.162 를 포함하여,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		5.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그리고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에 포함될 것이다. 이 유보의 목적상, 이러한 협약들은 일단 체결되면 기존의 조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구 노스웨스트 준주의 승계 준주로서 누나부트에 적용되거나 그에 의해 채택된 실행조치를 포함하여,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 실행조치		

6.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석유자원협약 실행법」 및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은 복지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계획이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가. 계획을 제출하는 회사나 기타 기구는, 연안 지역에서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주에 적절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사무소를 설립한다.

나. 주에서 이행될 연구·개발 및 주에서 제공될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지출을 한다.

다. 주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정시가, 품질, 납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법에 따라 복지계획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혜택 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이 소유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나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복지계획에 포함되도록 또한 요구할 수 있다.

8. 또한, 캐나다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개발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캐나다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 S.C. 1990, c.41

유보내용

투자

1.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에 따라, 캐나다와 하이버니아 사업소유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사업소유주가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계획”의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의 특정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복지계획”은 부속서 1의 캐나다 유보목록, I-CA-19 쪽부터 21쪽까지에 자세히 설명된다.

2. 또한, 캐나다는 하이버니아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캐나다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전하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분야	에너지	분야	전문직, 기술 및 특화 서비스
하위분야	우라늄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SIC 0616 우라늄광산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2 감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28 (1st Supp.)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우라늄 광업분야 비거주자 소유권 정책, 1987	조치	은행법, S.C. 1991, c.46 보험회사법, S.C. 1991, c.47 신용협동조합법, S.C. 1991, c.48 신탁 및 대부회사법, S.C. 1991, c.45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비캐나다인”의 우라늄광업권 소유권은 최초생산단계에서 49퍼센트로 제한된다. 광업권이 「캐나다 투자법」에서 정의된대로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2. 총독의 승인을 조건으로, 광업권 소유에 있어서 캐나다인 참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정책으로부터의 면제가 허용된다. 1987년 12월 23일 전에 이행되고, 허용된 소유권 수준을 초과한, 비캐나다인에 의한 광업권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비캐나다인에 의한 소유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은행은 은행의 감사로 회계 법인을 선정하도록 요구된다. 회계 법인은 「은행법」에 규정된 대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되는 자격요건 중에는, 법인의 2명 이상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과, 법인과 은행에 의해 감사를 수행하도록 공동으로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포함된다.  2.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 또는 대부회사는 자연인이거나 회계 법인인 감사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의 감사인은 「보험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신탁 및 대부회사법」에 규정된 대로, 각 경우에 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요구되는 자격 중에는, 감사인으로 임명된 인이 캐나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있다. 회계 법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법인과 금융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73 항공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아래 유보내용에 규정된 대로, 특수항공서비스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3 조)
조치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10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2 장, 제 2 부 "항공기 표시 및 등록"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그리고 제 7 장 "상업 항공서비스"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 항공법」은 제 55 절에서 "캐나다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 '캐나다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의 의미 내 영주권자, 캐나다 정부 또는 그러한 정부의 대리인,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며, 최소

75 퍼센트 또는 총독이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그보다 적은 퍼센터지의 의결권있는 지분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되는 회사나 그 밖의 실체를 의미한다..”

「항공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은 「캐나다 운송법」에 따른 “캐나다인”의 정의를 참조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업 항공서비스의 캐나다인 운영자가 캐나다 등록 항공기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은 캐나다 항공 운영자 증명서를 취득하고 “캐나다의” 항공기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운영자가 캐나다인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인”만이 다음과 같은 상업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국내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들 간 또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또는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에 있지 아니한 지점 간의, 항공서비스)
- 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항공서비스협정에 따라 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정기 항공서비스)
- 다. 「캐나다 운송법」에 따라 부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부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부정기 항공서비스)
- 라. “특수항공서비스” (항공지도제작, 항공측량, 항공촬영, 산물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항공 순찰, 항공 관측, 비행 훈련, 항공 관광 및 항공작물살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외국인은 캐나다 등록 항공기의 등록된 소유주가 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캐나다 항공규정」에 추가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나 캐나다인 소유권 및 지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항공기 사용의 상당 과반수(최소 60 퍼센트)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인 용도의 항공기만을 등록할 수 있다.

「캐나다 항공규정」은 또한 “비캐나다인”인 회사에 등록된 외국 등록 민간항공기가 12 개월 기간 동안 최대 90 일만 캐나다에 위치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외국 등록 민간 항공기는, 민간운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용도로 제한된다.

분야	운송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하위분야	육상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않음. 제 9.12 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산업분류	SIC 456 트럭운송산업 SIC 4572 도시간 및 지방 운송시스템산업 SIC 4573 통학버스 운영산업 SIC 4574 전세 및 관광버스 서비스산업 CPC 7121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2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부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3 철도를 제외한 육상화물운송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제 5 장 “내공성” 제 6 장 “일반 운항 및 비행 규칙”, 그리고 제 7 장 “상업항공서비스”	조치	S.C. 2001, c. 13 에 의해 개정된 자동차 운송법, R.S.C. 1985, c.29 (3rd Supp.),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 10 관세, 1997, c. 3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등록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내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수리, 정비 또는 유지보수 활동은 캐나다 항공규제요건을 충족하는 인(즉,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 및 항공기 유지보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캐나다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 외부에 위치한 인에게는 증명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에 등록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제조되거나 관세가 납부된 트럭 또는 버스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만이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 간 트럭 또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운송	1. 캐나다에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나 해당 선박을 독점 점유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 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기타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의 의미 내의 영주권자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다. 선박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가 활동 중인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1)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회사 2)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지점의 캐나다내의 직원이나 이사, 또는 3)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관리회사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2. 용선주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선체용선된 외국에서 등록된 선박은 선박의 등록이 등록국에서 정지된 동안은 임차기간동안 캐나다에 등록될 수 있다.
조치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영주권자, 또는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	운송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하위분야	수상운송		선장, 항해사, 기술자, 그 밖의 특정 선원은 캐나다 등록 선박에서 근무하기 위한 요건으로 운송부 장관이 부여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산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해운법, 2001, S.C. 2001, c. 26 해상인사규정, SOR/2007-115		

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5년 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CPC 74520 수로안내 및 선박접안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로안내법, R.S.C. 1985, c. P-14  
일반 수로안내규정, SOR/2000-132  
대서양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4  
로렌시아 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8  
오대호 수로안내규정, C.R.C., c. 1266  
태평양 수로안내규정, C.R.C., c. 127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 의 유보목록, II-CA-11 쪽을 조건으로, 캐나다 영토의 의무수로안내수역에서 수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지역 수로관리국에서 발행하는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가 요구된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이러한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도선사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발급받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면허

분야	운송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 수상운송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조치	해운동맹면제법, 1987, R.S.C. 1985, c. 17(3rd Supp.)	조치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해운동맹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영업하는 캐나다 지역에 공동으로 사무소나 대리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운동맹은 운송인들이 수상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요금과 조건을 규제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해양운송인들의 조합이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II-CA-9 쪽에서 10 쪽까지에 규정된 「연안무역법」에 따른 금지는, 미국정부가 소유하는 상품을 캐나다 영토에서 원거리조기경보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미국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통신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실제 캐나다인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하위분야	통신운송망 및 서비스 무선통신	다. 기간통신사업자 이사회에 최소 80 퍼센트가 캐나다인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산업분류	CPC 752 통신 서비스	2. 다음의 예외는 이 유보에 적용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가. 국제해저케이블면허에 따라 영업하는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 까지 허용된다.
조치	통신법, S.C. 1993, c. 38 캐나다 통신사업자 소유권 및 지배규정, SOR/94-667 무선통신법, R.S.C., 1985, c. R-2 무선통신규정, SOR/96-484	나. 캐나다인 서비스공급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무선위성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다만,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20 퍼센트의 직접투자와 33.3 퍼센트의 간접투자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를 의결권 있는 지분의 누적합계 46.7 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고정위성시스템은 캐나다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모든 지점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라. 위성승인에 따라 영업하는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마.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공급으로부터의 소득(제열사로부터의 소득 포함)이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 연간수입 총액의 10 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모든 주 및 준주의 모든 기존 비합치조치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투명성만의 목적상, 부록 1-가는 지역정부수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비구속적 목록을 규정한다.

부록 1-가  
캐나다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목록<sup>98</sup>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p>거주: 서스캐처원, 브리티시 컬롬비아,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엔레브라도, 매니토바, 앨버타</p> <p>현지주재: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엔레브라도, 매니토바, 온타리오</p>
건축설계서비스	<p>거주: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엔레브라도</p> <p>회사형태: 프린스 에드워드섬은 비거주자 회사에게 파트너십에서 종사자의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p>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거주: 서스캐처원, 브리티시 컬롬비아,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앨버타
도시계획 및 조정건축 서비스	거주: 뉴펀들랜드엔레브라도, 서스캐처원
부동산 서비스	거주: 앨버타, 퀘벡, 유콘, 매니토바, 브리티시 컬롬비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

<sup>98</sup> 본 문서는 투명성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속력이 있는 목록은 아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는 캐나다의 2005년 5월 서비스 수정 조건 세안(TN/S/O/CAN/Rev.1, 12 May 2005)이다.

	구한다.
그 밖의 사업 서비스	<p>거주: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p> <p>현지주재: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p>
유통 서비스	<p>시민권: 퀘벡,</p> <p>현지주재: 퀘벡,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노바스코샤,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p> <p>경제적 수요 심사: 프린스 에드워드섬</p>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p>거주: 앨버타,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p> <p>거주/시민권: 앨버타,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퀘벡</p> <p>현지주재: 온타리오, 퀘벡</p> <p>조세: 온타리오는 비거주자가 20 퍼센트의 토지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p>

	<p>펀들랜드앤레브라도.</p> <p>현지주재: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앨버타</p>
경영컨설팅서비스	거주: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톨 리파이닝(Toll refining)	이행요건: 온타리오는 비(卑)금속이 캐나다에서 처리 또는 정련될 것을 요구한다.
직업소개 및 파견 서비스	현지주재: 온타리오
조사 및 경비 서비스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p> <p>현지주재: 온타리오</p>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p>거주: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롬비아,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p> <p>시민권: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니토바</p> <p>현지주재: 서스캐처원</p> <p>훈련요건: 온타리오는 토지측량사의 경우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을 주 내에서 완료하도록 요</p>

부속서 II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8.8 조(이행요건)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도로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u>경제적 수요 심사</u> : 브리티쉬 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
도로운송서비스 (화물운송)	<u>현지주재</u> : 퀘벡  <u>경제적 수요 심사</u> :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2012) 제 4 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2. 제 8.18 조 및 제 8.19 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 8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그리고
-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고려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재(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반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 8 장(투자) 제 2 절이 준용되며,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 8 장(투자) 제 2 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 1 항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채(제 9.5 조)
유보내용	<b>투자</b>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이행된다.  제 10.9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 10.2 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b>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b>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5.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	7. 분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p> <p>이행요건(제 8.8 조)</p> <p>현지주재(제 9.5 조)</p>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p> <p>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p> <p>이행요건(제 8.8 조)</p> <p>현지주재(제 9.5 조)</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p>

8. 분야

모든 분야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한국은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제 2 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9.6 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 9.5 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 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 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 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 운송</p>

10.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11.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12.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채(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채(제 9.5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2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 8.8 조제 1 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13.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14.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 data-bbox="448 443 739 475">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 data-bbox="448 555 1075 659">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448 715 1075 818">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1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3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유보내용	<p data-bbox="1460 419 1756 451">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 data-bbox="1460 531 2078 595">한국은 쌀, 인삼, 그리고 홍삼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1496 675 1688 707">가. 중개서비스</p> <p data-bbox="1496 786 1989 818">나.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p> <p data-bbox="1496 898 1688 930">다. 소매서비스</p>

15.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16.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7.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쌀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9.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속하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대하여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이 배타적 권리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도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그러한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지해하지 아니한다.

23.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4.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10 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 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5.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이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20 번째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	27.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8.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29.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p data-bbox="448 446 750 481"><b>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b></p> <p data-bbox="448 558 1075 702">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448 758 1075 861">한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유보내용	<p data-bbox="1456 343 1505 378"><b>투자</b></p> <p data-bbox="1456 462 2083 566">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0. 분야	신문 발행	31.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지해하지 아니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2.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3.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4.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35. 분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유보내용	<p>투자</p> <p>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 36.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캐나다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법무회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 내에 있는 법무회사를 말한다.

37.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제(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공인회계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캐나다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 38.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캐나다 세무법인이 캐나다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1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세무사”란 캐나다

39. 분야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사업 서비스	4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 9.1 조(적용범위)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 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나. 제 10 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한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 부록 II-가

## GATS 제 16 조에 적용되는 한국 분야

다음 분야/하위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p> <p>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 부속서 II

##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 캐나다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캐나다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대우)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8.8 조(이행요건)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마. 유보내용은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바. 기존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4.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보다 우선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 77호 임시중앙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제 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SIC) 번호를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 부속서 II

#### 캐나다의 유보목록

분야

원주민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권리 또는 우선권을 한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한국 서비스공급자에게는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캐나다법 1982 스케줄 B(U.K.), 1982, c. 11 인 헌법 (Constitution Act), 1982

분야	모든 분야	분야	어업
하위분야		하위분야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산업분류	SIC 031 어업 SIC 032 어업 부수 서비스 CPC 882 어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한국 투자자들 또는 그들의 투자가 임해지를 소유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외국 어선이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것 및 그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기존의 조치	어업법, R.S.C. 1985, c. F-14 연안어업보호법, R.S.C. 1985, c. 33 연안어업보호규정, C.R.C. 1978, c. 413 상업어업면허정책 캐나다 어업분야 외국인 투자정책, 1985

분야	정부제정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증권	하위분야	
산업분류	SIC 8152 금융 및 경제 행정	산업분류	
유보사항 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 또는 캐나다 지역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 또는 그 밖의 종류의 채무증권을 한국 국민이 취득,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집단에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제정행정법, R.S.C. 1985, c. F-11	기존의 조치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법 집행과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수리, 정비, 유지보수 설비의 승인 및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그 밖의 관련 항공제품에 대하여 수행된 작업에 관한 그런 설비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 국가의 조직, 항공당국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선택적으로 협정이나 약정을 교섭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산업분류	SIC 4129 그 밖의 중건설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에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2 항구 및 항만 운영산업 (정박, 적재 및 그 밖의 항구에서의 선박운영에 한함)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내항 항만 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아래 유보내용 부분에 규정된 그 밖의 상업적 성격의 해양 활동
기존의 조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사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선서비스에 적용된다.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관세법, R.S.C. 1985, c. 1 (2nd Supp.)

관세 및 소비세 역외적용법, R.S.C. 1985, c. C-53

### 기존의 조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다음을 포함하여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직접적으로 또는 캐나다 외부의 장소를 경유하여, 캐나다 영역 내의 또는 캐나다 대륙붕 위의 지점 간, 선박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것. 그러나 캐나다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에만 관련된 상품 또는 여객의 운송, 그리고
- 나. 선박이 캐나다 영역 내에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및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과 관련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이 유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서비스공급자의 현지주재요건, 외국 선박에 임시 연안해상운송 면허를 발행하는 기준 및 외국선박에 발급되는 연안해상운송 면허 수의 제한과 관련된다.

분야	운송	서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약정 및 그 밖의 공식 또는 비공식 약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p>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p> <p>SIC 4542 페리 산업</p> <p>SIC 4543 해양예인산업</p> <p>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p> <p>SIC 4551 해상화물취급산업</p> <p>SIC 4552 항구운영산업</p> <p>SIC 4553 해양구난사업</p> <p>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p> <p>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p> <p>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p> <p>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p> <p>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p> <p>상호 관심 구역에서의 상업적 성격의 그 밖의 해양활동</p>	기존의 조치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캐나다는, 오염통제(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요건 포함), 안전항해, 바지선검사기준, 수질, 수로안내, 구난, 약물남용규제 및 해양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관심 구역에</p>	

분야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해양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CPC 8676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주제(제 9.5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캐나다를 대신한 선박의 범정 검사 및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1994 년 1 월 1 일 전에 시행되었거나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다음과 관련하여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어업,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 부록 II-가

## GATS 제 16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캐나다의 분야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제 16 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감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li>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li> </ul>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감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li>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li> </ul>
건축설계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건축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시장접근(제 9.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의 목적으로만,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명시된 대로 수정된다.

기존의 조치

	<p>-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p> <p><u>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건설팅 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p> <p><u>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공동체/도시계획</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부동산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공인감정인</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엔지니어링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건설팅 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p> <p><u>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건설팅 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p> <p><u>엔지니어</u></p> <p>-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건설팅 엔지니어</u></p>

경영컨설팅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농학자</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u>전문행정가 및 공인 경영 컨설턴트</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전문 행정 기업</p> <p><u>산업관계 상담가</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농학자</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조사 및 경비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u>회사 및 직원 정보 조사</u></p> <p>-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 퍼센트 및 개인 소유 지분 10 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p>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토지 측량가</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p> <p><u>지각조사서비스</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u>과학기술분야전문가</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u>화학자</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토지측량가</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p> <p><u>지각조사서비스</u></p> <p>-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기타 사업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u>인증 통 · 번역사</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p> <p><u>인증 통 · 번역사</u></p> <p>-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u>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u></p> <p>-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 퍼센트 및 개인 지분 10 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p>
<p>쿠리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 경제적 수요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노바스코샤, 매니토바</p>
<p>일반 토목 건축공사</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u>건설</u></p>

	<p>- 수력발전소 개발허가 신청인 및 보유자는 온타리오에 설립되어야 한다.</p>
<p>도매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어류가공품 마케팅(노바스코샤): 노바스코샤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장관승인을 필요로 한다.</p>
<p>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p> <p>- 연안해운 제한</p>
<p>도로여객운송</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u>도시 간 버스 운송 및 정기 서비스</u></p> <p>- 공공의 편익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프린스 에드워드섬</p>
<p>도로화물운송</p>	<p>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p> <p><u>고속도로 화물운송</u></p> <p>- 공공의 편익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p>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 10.2 조(내국민 대우)
    - 2) 제10.3조(최혜국 대우)
    -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 2 절에서는,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 10.5 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 10.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공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섬, 노바스코샤
통신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노바스코샤: 어떠한 인도 마리타임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리미티드의 주식을 1,000 주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제 1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 의무는 제 4 항에 규정된 대로, 제 10.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 의무는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 1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10.9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0-나(구체적 약속)에 비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 2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 10.5 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 10.2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비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0.10 조제 I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 9.2 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 10.5 조제 1 항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 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sup>99</sup>.
3. 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의 지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0.9 조제 1 항다호는 제 10.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 10.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up>99</sup> 예를 들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 부속서 III

## 한국의 유보목록

## 제 1 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 제 91 조 및 제 100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유보내용	<p>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거래자나 투자중개자의 2 명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p> <p>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 및 은행에 의하여 판매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규제함으로써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규제한다.</p>

2. 분야	금융서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10804 호, 2011.6.15)
하위 분야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11569 호, 2012.12.18)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11180 호, 2012.1.17)
정부수준	중앙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 10912 호, 2011.7.25)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11369 호, 2012.2.22)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 11473 호, 2012.6.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695 호, 2011.5.19)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11442 호, 2012.5.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140 호, 2011.12.31)	납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 10801 호, 2011.6.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10711 호, 2011.5.24)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11461 호, 2012.6.1)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 10959 호, 2011.7.25)	전자서명법(법률 제 10465 호, 2011.3.29)
	선원법(법률 제 11141 호, 2011.12.31)	변호사법(법률 제 10922 호, 2011.7.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169 호, 2012.1.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874 호, 2011.7.21)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 11344 호, 2012.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916 호, 2011.7.2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343 호, 2012.2.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394 호, 2012.3.21)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 10458 호, 2011.3.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 10660 호, 2011.5.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580 호, 2011.4.1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9740 호, 2009.5.27)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10866 호, 2011.7.21)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 11196 호, 2012.1.17)	관광진흥법(법률 제 10599 호, 2011.4.14)
	도로교통법(법률 제 11298 호, 2012.2.10)	케도운송법(법률 제 11060 호, 2011.9.16)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 10893 호, 2011.7.21)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091 호, 2012.9.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136 호, 2010.3.17)

세무사법(법률 제 11610 호, 2013.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 11235 호, 2012.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276 호, 2012.2.1)

우주손해배상법(법률 제 8852 호, 2008.2.29)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 10447 호, 2011.3.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96 호 2012.7.20)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247 호, 2012.12.21)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303 호, 2012.2.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 11461 호, 2012.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048 호, 2011.9.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8 호, 2009.2.3)

주택법(법률 제 11590 호, 2012.12.18)

항공법(법률 제 11244 호, 2012.1.26)

해운법(법률 제 11480 호, 2012.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1037 호, 2011.8.4)

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 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유보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

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비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체가 9 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보유 비율을 10 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라.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체 또는 관련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이거나 금융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15 조,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및 제 16 조의 2(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은행법 시행령 제 1 조의 6, 제 5 조, 제 9 조, 제 10 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 및 제 8 조의 2(법률 제 10361 호, 2010.6.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6 조의 3(대통령령 제 23644 호, 2012.2.2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 <sup>100</sup> ” 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sup>100</sup>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은행법 제 5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p> <p>은행법 시행령 제 24 조의 8 및 별표(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p> <p>은행업감독규정 제 5 조의 4, 제 11 조 및 별표(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31 호, 2012.12.26)</p>	조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373 조, 제 375 조, 제 379 조 및 제 386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p>
유보내용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 위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유보내용	<p>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그 밖의 대체 거래체제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p>

6. 분야	금융서비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 및 제 294 조부터 제 323 조까지(법률 제 11758 호, 2013.4.5)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8 조, 제 323 조의 2, 제 323 조의 3, 제 323 조의 10 및 제 378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한국의 공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중앙의 동등기관만이 증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 조(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조치	은행법 제 62 조 및 제 63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은행법 시행령 제 25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
유보내용	비전문 투자자 및 일부 전문 투자자 <sup>101</sup> 가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이나 외국 파생상품시장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투자중개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유보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5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sup>101</sup>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2.3)의 기관투자자는 제외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회사의 실체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 7 조(법률 제 11545 호, 2012.12.11) 상호저축은행법 제 6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 조(법률 제 11410 호, 2012.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4 조, 제 258 조, 제 263 조 및 제 355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 조(법률 제 10465 호, 2011.3.29)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11407 호, 2012.3.21)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되지 아니한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 30 조(법률 제 11461 호, 2012.6.1)

유보내용

한국에서 특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나. 다음을 포함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정부수준

중앙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그리고

조치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 10303 호, 2010.5.17)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공공자산 및 특정조세의 면제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 11501 호, 2011.9.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10924 호, 2011.7.25)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11532 호, 2012.12.11)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11320 호, 2012.2.17)

유보내용

한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 (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협,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13. 분야	금융서비스	1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8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16 조(법률 제 10924 호, 2011.7.25)</p> <p>농업협동조합법 제 49 조(법률 제 11532 호, 2012.12.11)</p> <p>수산업협동조합법 제 51 조(법률 제 11320 호, 2012.2.17)</p>	<p>주택법 제 75 조(법률 제 11243 호, 2012.1.26)</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2 항(국토해양부령 제 554 호, 2012.12.21)</p>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으로 한다.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 절

1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11407 호, 2012.3.21)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1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17. 분야	금융서비스	1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한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이 다음을 보장하면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모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보전하는 것, 그리고  나.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캐나다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하는 것

부록 III-가

제 10.2 조 또는 제 10.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0.10 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1. 다음의 조치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가.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1 조의 2 및 제 11 조의 3(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15 조 및 제 16 조(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나.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 조 및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다.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 2 조(금융통화위원회, 1999.8.19)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대통령령 제 23987 호, 2012.7.24)}

가.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 (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법률 제 11407호, 2012.3.21)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8호, 2009.9.30)}

나.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거래자 또는 투자중개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바.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법률 제 11410 호, 2012.3.21)}

사.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 27 조,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및 제 41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아.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 3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보험업법 제 105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자.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까지, 그리고 제 7-36 조부터 제 7-39 조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그리고

차.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 30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12.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1 조의 2 및 제 15 조(법률 제 11544 호, 2012.12.11)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제 9 조(대통령령 24076 호, 2012.8.31)}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2. 다음의 조치는 제 10.10 조제 1 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 10.2 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 9 조제 3 항(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25 조의 2(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그리고
- 나. 외국보험사의 한국의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 75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1. 이 부속서의 캐나다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 1 절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제 10.9 조제 1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 1)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 2)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 3)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 10.5 조 (국경간 무역), 또는
  - 5)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 2 절에서는,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 10.5 조(국경간 무역) 또는

제 10.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2. 제 1 절의 각 유보는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 1 항나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내용 요소에 의하여 한정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이 부속서의 캐나다 유보목록의 다른 절에 따라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참조사항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의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는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 1 항다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 1 절 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취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특정 언급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 2 절 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들보다 우선한다.

6.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 10.5 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

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 두주

1. 이 유보목록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서,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의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나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 1 절 또는 제 2 절에 유보사항으로 조치가 열거되는 것은 제 10.10 조(예외)에 따라 신중함을 이유로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로서 달리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0.9 조제 1 항다호는 제 10.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고, 제 10.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III 캐나다의 유보목록

#### 제1절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조치	은행법 s.s. 159(2) 보험회사법 s.s. 167(2) 신탁 및 대부회사법 s.s. 163(2) 신용협동조합법 s.s. 169(2)
유보내용	금융기관 이사들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인 거주자일 것이 요구된다.

분야	금융 서비스	제2절	
하위 분야	전체	분야	금융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최혜국 대우(제 10.3 조) 국경간 무역(제 10.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8 조)	하위 분야	전체
정부수준	지역	유보유형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조치		유보내용	캐나다는 GATS상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16/Suppl.4/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유보내용	모든 주 및 준주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전체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서 삭제:  7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가 널리 보유되고, 캐나다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3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가 널리 보유되고, 캐나다의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에서 삭제: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캐나다 은행법」 별표 I 은행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장관 승인 없이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20 퍼센트,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유보내용

캐나다는 15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시중은행지점과 대출은행지점이 캐나다 예금보험공사의 회원기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분야	금융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정부수준	연방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지점을 설립하도록 승인된 외국 은행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또한 외국대출지점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정부수준	연방 및 지역
		유보내용	캐나다는 국경 간 증권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FREE TRADE AGREEMENT****BETWEEN****THE REPUBLIC OF KOREA****AND****CANADA**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CANADA** (“Cana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solved to:

**STRENGTHEN** the special bond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their peoples;

**CONTRIBUT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and regional trade and to provide a catalyst to broa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D** on their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other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instruments of cooperation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REATE** an expanded and secure market for the goods and services in their territories, as well as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RECOGNISE** that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ill be conducive to the stimulation of mutually beneficial business activity;

**REDUCE** distortions to trade;

**ESTABLISH** clear, transparent, and mutually advantageous rules to govern their trade;

**ENSURE** a predictable commercial framework for business planning and investmen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nterprises in global markets;

**UNDERTAKE** each of the preceding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reflecting their desire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nd strengthen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matters;

**PROTECT**, enhance, and enforce basic workers’ rights, and strengthen cooperation on labour matter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RVE** their flexibility to safeguard the public welfare;

**PROMOTE** cultural cooperation and recognise that the Parties have the right to preserve, develop, and implement their cultural policies and to support their cultural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AFFIRM** their commitment to respect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dentif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VE AGREED** as follows:

## CHAPTER ONE

###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 Section A – Initial Provisions

##### Article 1.1: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Consistent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and Article V of GATS,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WTO Agreement and other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 Article 1.3: Relation t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the event of an inconsistency between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an agreement listed in Annex 1-A, a Party is not precluded from taking a particular measure necessar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 agreement listed in Annex 1-A,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 Article 1.4: Extent of Obligations

1. Each Party is fully responsible for the observance of al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observance of this Agreement by sub-nation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within its territory.

2. For greater certainty, the provisions of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may be invoked in respect of measures affecting the observance of this Agreement taken by sub-national governments with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If a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Establishment of a Panel) has ruled tha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has not been observed, the responsible Party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its observance. The provisions relating to suspension of benefits or other obligations apply in cases whe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secure such observance.

##### Article 1.5: Reference to Other Agreements

Where this Agreement refers to or incorporates by reference other agreements or legal instruments in whole or in part, those references include related footnotes, interpretative and explanatory notes, protocols, annexes, appendices, *et cetera* that are integral parts of the agreements or legal instruments.

##### Article 1.6: Cultural Cooperation

1. The Parties agree to promote cultural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benefit from each other's competitive strengths in the development of content for the global market. In this regard, the Parties endeavour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and carry out joint initiatives in various cultural spheres, such as audiovisual coproductions.

2. Recognising that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to an intensific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the Parties agree to consider the negotiation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Such a future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3.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would be negotiat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which a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Korea and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for Canada,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4. Article 23.2 (Amendments) does not apply to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y amendments to that agreement shall be done by mutual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5.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do not apply to matters covered by this Article, including an agreement negotiated pursuant to paragraph 2.

#### Article 1.7: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in the Automotive Sector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promot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utomotive sector, which allows the Parties to realise the benefits of global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 Section B – General Definitions

####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Commission** means the Joint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20.1 (Joint Commission);

**customs duty** includes any customs or import duty and a charge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including a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 (a)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2 of the GATT 1994, or any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 respect of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of the Party, or in respect of goods from which the imported good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 (b)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and consistent with WTO oblig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c) a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and
- (d) a premium offered or collected on an imported good arising out of any tendering system in respect of the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and tariff rate quota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days** means calendar days, including weekends and holiday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means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tained in Annex 2 to the WTO Agreement;

**enterprise** means an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r governmentally-owned or controlled, including a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or other association;

**existing** means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GATS**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contained in Annex 1B to the WTO Agreement;

**GATT 1994**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GPA** means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contained in Annex 4 to the WTO Agreement;

**Harmonized System (HS)**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cluding it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Section Notes, Chapter Notes and subheading Notes;

**heading** means any four-digit number, or the first four digits of a number, used in the nomenclature of the Harmonized System;

**measure** includes a law, regulation, procedure, requirement or practice;

**national** means a natural person who is:

- (a) for Korea, a Korean national under Korean legislation; and
- (b) for Canada,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under Canadian legislation;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on 10 June 1958;

**originating** means qualifying under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or an enterprise;

**person of a Party** means a national of a Party, or an enterprise of a Party;

**Safeguard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means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nnex A of the SPS Agreement;

**SP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state enterprise** means, except as set out in Annex 15-A (Country-Specific Definitions of State Enterprise),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a Party;

**subheading** means any six-digit number, or the first six digits of a number, used in the nomenclature of the Harmonized System;

**tariff classification** means the classification of a good or material under a chapte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TRIP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ained in Annex 1C to the WTO Agreement;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ea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 December 1948;

**WTO** mea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TO Agreement** means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ne on 15 April 1994, or any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 Article 1.9: Country-Specific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national government** means:

- (a) for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 (b) for Canada, the Government of Canada;

**sub-national government** means:

- (a) for Korea, as a unitary Republic, the term sub-national government does not apply; and
- (b) for Canada, provincial, territorial, or local governments;

**province** means:

- (a) for Korea, the term province does not apply; and
- (b) for Canada, a province of Canada, and includes the Yukon and the Northwest Territories and Nunavut; and

**territory** means:

- (a) for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s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and
- (b) for Canada,
  - (i) the land territory, air space, internal waters and territorial sea of Canada;
  - (ii)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Canada, as determined by its domestic law, consistent with Part 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ne at Montego Bay on 10 December 1982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and
  - (iii) the continental shelf of Canada, as determined by its domestic law, consistent with Part VI of UNCLOS.

**Annex 1-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a)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done at Washington on 3 March 1973, as amended on 22 June 1979.
- (b)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done at Montreal on 16 September 1987, as amended 29 June 1990, as amended 25 November 1992, as amended 17 September 1997, as amended 3 December 1999.
- (c)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done at Basel on 22 March 1989.
- (d) 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done at Rotterdam on 10 September 1998.
- (e)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done at Stockholm on 22 May 2001.

**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Article 2.1: Scope and Coverag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is Chapter applies to trade in goods of a Party.

**Section A – National Treatment**

**Article 2.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a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ative notes, or an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2.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pursuant to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sub-national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that sub-national government accords to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3.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measures set out in Annex 2-A.

**Section B – Tariffs**

**Article 2.3: Tariff Elimination**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arty shall not increase an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2-D.

3. Each party shall apply to an originating good the lesser of:

- (a) The tariff rate applicable under its Schedule to Annex 2-D; or
- (b) The most-favoured-nation (MFN) applied tariff rate.

4.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a goo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accelerat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an originating good shall supersede a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their Schedules for that good when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domestic legal procedures.

5.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 (a) modify its tariffs outside this Agreement on goods for which no tariff preference is claimed under this Agreement;
- (b) increase a customs duty to the level established in its Schedule to Annex 2-D following a unilateral reduction; and
- (c) maintain or increase a customs duty as authorised by this Agreemen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or any agreement under the WTO Agreement.

#### Article 2.4: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1. Each Party shall grant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for the following good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gardless of their origin and regardless of whether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are availabl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 (a) professional equipmen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business activity, trade, or profession of a business person who qualifies for temporary entry under Chapter Twelve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b) equipment for the press or for sound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d cinematographic equipment;
- (c) goods imported for sports purposes and goods intended for display or demonstration; and
- (d) commercial samples and advertising films and recording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arty shall not condition the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of a good under paragraph 1(a), (b), or (c), other than to require that the good:

- (a) be imported by a national or resident of the other Party who seeks temporary entry;
- (b) be used only by or under the personal supervision of that person in the exercise of the business activity, trade, profession, or sport of that person;
- (c) not be sold or leased while in its territory;
- (d) be accompanied by a bond in an amount no greater than the charges that would otherwise be owed on entry or final importation, or by another form of security, releasable on exportation of the good, except that a bond for customs duties shall not be required for an originating good<sup>1</sup>;
- (e) be capable of identification when exported;
- (f) be exported on the departure of that person or within another period of time that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temporary admission within one year, or such other longer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and practices of the Party; and
- (g) be imported in no greater quantity than is reasonable for its intended use.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arty shall not condition the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of a good under paragraph 1(d), other than to require that the good:

- (a) be imported only for the solicitation of orders for goods, or services provid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sup>1</sup> If another form of monetary security is used, it shall not be more burdensome than the bonding requirement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If a Party uses a non-monetary form of security, it shall not be more burdensome than existing forms of security used by that Party.

- (b) not be sold, leased, or put to use other than for exhibition or demonstration while in its territory;
- (c) be capable of identification when exported;
- (d) be exported within a period of time that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temporary importation; and
- (e) be imported in no greater quantity than is reasonable for its intended use.

4. If a good is temporarily admitted duty-free pursuant to paragraph 1 and a condition that the Party imposes pursuant to paragraphs 2 and 3 has not been fulfilled, a Party may impose:

- (a) the customs duty and any other charge that would be owed on entry or final importation of the good; and
- (b) any other charges or penalties provided under its domestic law.

5. Subject to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 each Party shall allow a container used in international traffic that enters its territor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exit its territory on a route that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economic and prompt departure of that container;
- (b) a Party shall not require a bond or impose a penalty or charge only by reason of a difference between the port of entry and the port of departure of a container;
- (c) a Party shall not condition the release of an obligation, including a bond, that it imposes in respect of the entry of a container into its territory, on its exit through a particular port of departure; and
- (d) a Party shall not require that the carrier bringing a containe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to its territory be the same carrier that takes such container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rticle 2.5: Duty-Free Entry of Certain Commercial Samples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Each Party shall grant duty-free entry to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and to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gardless of their origin, but may require that:

- (a) the commercial samples be imported only for the solicitation of orders for goods, or services provid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 (b) the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be imported in packets, each of which contains no more than one copy of the material, and that neither the materials nor the packets form part of a larger consignment.

#### **Article 2.6: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Annex 2-E, a Party shall not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at good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repair or alteration could be performed in its territory.<sup>2</sup>

2. A Party shall not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imported temporari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sup>2</sup> This paragraph does not cover goods imported in bond, into foreign trade zones, or in similar status, that are exported for repair and are not re-imported in bond, into foreign trade zones, or in similar status.

## Section C – Non-Tariff Measures

### Article 2.7: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xc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a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XI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ative notes, or an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GATT 1994 rights and obligations incorporated by paragraph 1 prohibit, in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y other form of restriction is prohibited, export price requirements and, except as permitted in enforcement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orders and undertakings, import price requirements.

3. If a Party adopts or maintains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from, or exportation to, a non-party of a good,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the Party from:

- (a) limiting or prohibiting the importation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f a good of that non-party; or
- (b) requiring as a condition of export of a good of the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at the good not be re-exported to the non-party, directly or indirectly, without being consum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4. If a Party adopts or maintains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 good from a non-party,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avoiding undue interference with, or distortion of, pric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arrangements in the other Party.

5. Paragraphs 1 through 4 do not apply to the measures set out in Annex 2-A.

### Article 2.8: Expor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on the export of a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less the duties, taxes, or charges are also adopted or maintained on the good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 Article 2.9: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or Internal Taxes and Emissions Regulations

With respect to internal taxes and emissions regulations related to automotive goods, each Party shall accord to the product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accorded to the like products originating in a non-party, including as provided in any free trade agreement with that non-party.

### Article 2.10: Customs User Fees

1.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a customs user fee or other similar charge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f a good of the other Party that is not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2. The Parties affirm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modifies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as it applies between them.

### Article 2.11: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r any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shall govern the customs valuation rules applied by the Parties to their reciprocal trade.

### Article 2.12: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1. Notwithstanding Article 2.3, a Party may impose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in the form of a higher import duty, consistent with paragraphs 2 through 7,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listed in its Schedule to Annex 2-F, if the aggregate volume of imports of a good in a year exceeds a trigger level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2-F.

2. The duty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prevailing most-favoured-nation (MFN) applied rate, or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the tariff rate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2-F.

3. The duty impos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set according to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2-F and shall only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year, as defined in Annex 2-D, in which it has been imposed.

4. A Party shall not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and at the same time apply or maintain, with respect to the same good:

- (a) a safeguard measure under Chapter Seven (Trade Remedies);
- (b)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or
- (c) a measure under any agricultural safeguard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5. Each Party shall implement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in a transparent manner. Within 60 days after imposing a measure, the Party applying the measur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shall provide it with relevant data concerning the measure. 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exporting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6.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rticle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review in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or in a sub-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14.

7. A Party shall not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 (a)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pecified in the agricultural safeguard provisions of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2-F; and
- (b) that increases the in-quota duty on a good subject to a tariff rate quo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Q").

#### **Article 2.13: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Qs**

1. A Party that has established TRQs as set out in Annex 2-G shall implement and administer these TRQ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ive notes, and the *WTO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and any other WTO agreement.

2. A Party shall ensure that:

- (a) its procedures for administering its TRQs are transparen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imely, non-discriminatory, responsive to market conditions, minimally burdensome to trade, and reflect end user preferences; and
- (b) an enterprise or a person of a Party that fulfils the importing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shall be eligible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a quota allocation under the TRQs.

3. Over the course of each yea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publish, in a timely fashion on its designated publicly available Internet site, administration procedures, utilisation rates, and remaining available quantities for each of the TRQs.

4.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new or modified administration of TRQs established in Annex 2-G prior to its application.

5. A Party shall make every effort to administer its TRQs in a manner that allows importers to fully utilise them. On the writte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discuss a Party's administration of its TRQs at the next meeting of Committee on Trade in Good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ider prevailing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n the discussions.

#### **Section D – Committee on Trade in Goods**

##### **Article 2.14: Committee on Trade in Good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Trade in Good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2. The Committee shall meet periodically, and at any other time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or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shall:

- (a)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by the Parties of this Chapter;
- (b)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review proposed modifications of or additions to this Chapter;
- (c) recommend to the Commission modifications of or additions to this Chapter, and to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o conform with any change to the Harmonized System;
- (d) consider any tariff or non-tariff issue raised by either Party<sup>3</sup>; and
- (e) consider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by the Parties of this Chapter raised by:
  - (i) a Party; or
  - (ii) any sub-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4.

3. If the Committee fails to resolve a matter referred to it within 30 days of such referral, either Party may request a meeting of the Commission under Article 20.1 (Joint Commission).

4. Upon written request of a Party, a sub-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convene a meeting of relevant officials from each Party within 90 days or at a mutually agreed time for discussions with a view to resolving issu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and its Annexes. The sub-committee may refer to the Committee any matter for its consideration.

5.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modifications of, or additions to, this Chapter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Commission agrees on the modification or addition.

6.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issuing a determination of origin or an advance ruling relating to a matter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r from taking other action it considers necessary, pending a resolution of the matter under this Agreement.

<sup>3</sup> The Parties agree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icewine including labelling and definit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7.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Sub-Committee on Trade in Forest Products as set out in Annex 2-B.

8.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Sub-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as set out in Annex 2-C.

## Section E – Definitions

### Article 2.1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dvertising films and recordings** means recorded visual media or audio materials, consisting essentially of images or sound, showing the nature or operation of a good or service offered for sale or lease by a person established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provided that those materials are of a kind suitable for exhibition to a prospective customer but not for broadcast to the general public, and provided that they are imported in a packet that contains no more than one copy of each film or recording and that does not form part of a larger consignment;

**agricultural goods** means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1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with any subsequent changes agreed in the WTO to be automatically effective for this Agreement;

**automotive good** means all forms of motor vehicles, systems, and parts thereof falling under Chapters 40, 84, 85, 87, and 94 of the Harmonized System, except for the following goods:

- (a) tractors (in HS 8701.10, 8701.20, 8709.11, 8709.19, and 8709.90);
- (b) snow mobiles and golf carts (in HS 8703.10); and
- (c) construction machinery (in HS 8413.40, 8425.11, 8425.19, 8425.31, 8425.39, 8425.41, 8425.42, 8425.49, 8426.11, 8426.12, 8426.19, 8426.20, 8426.30, 8426.41, 8426.49, 8426.91, 8426.99, 8427.20, 8428.10, 8428.20, 8428.31, 8428.32, 8428.33, 8428.39, 8428.40, 8428.60, 8428.90, 8429.11, 8429.19, 8429.20, 8429.30, 8429.40, 8429.51, 8429.52, 8429.59, 8430.10, 8430.20, 8430.31, 8430.39, 8430.41, 8430.49, 8430.50, 8430.61, 8430.69, 8431.10, 8431.31, 8431.39, 8431.41, 8431.42, 8431.43, 8431.49, 8474.10, 8474.20, 8474.31, 8474.32, 8474.39, 8474.80, 8474.90, 8479.10, 8701.30, 8704.10, 8705.10, 8705.20, 8705.40, and 8705.90);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means commercial samples having a value, individually or in the aggregate as shipped, of not more than US\$1, or the equivalent amount in the currency of a Party, or so marked, torn, perforated or otherwise treated that they are unsuitable for sale or for use except as commercial samples;

**consumed** means:

- (a) actually consumed; or
- (b) further processed or manufactured so as to result in a substantial change in value, form, or use of the good or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duty-free** means free of customs duties;

**goods imported for sports purposes** means sports requisites for use in sports contests, demonstrations, or train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s are imported;

**goods intended for display or demonstration** includes their component parts, ancillary apparatus, and accessories;

**goods of a Party** means domestic products as understood in the GATT 1994 or goods as the Parties may agree, and includes originating goods of that Party;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means those goods classified in Chapter 49 of the Harmonized System, including brochures, pamphlets, leaflets, trade catalogues, yearbooks published by trade associations, and tourist promotional materials and posters, that are used to promote, publicise, or advertise a good or service, are essentially intended to advertise a good or service, and are supplied free of charge;

**repair or alteration** does not include an operation or process that either destroy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good or creates a new or commercially different good<sup>4</sup>; and

**tariff elimination schedule** means the provisions of Annex 2-D.

<sup>4</sup> An operation or process that is part of the production or assembly of an unfinished good into a finished good is not repair of the unfinished good; a component of a good is a good that may be subject to repair or alteration.

## Annex 2-A

### Exceptions to Articles 2.2 and 2.7

#### Section A – Measures of Korea

1. Without prejudice to Canada's right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s 2.2 and 2.7 shall not apply to:

- (a) actions by Korea authoris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and
- (b) a measure that Korea applies to address market disruption pursuant to procedures that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WTO Agreement.

#### Section B – Measures of Canada

2. Without prejudice to Korea's right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s 2.2 and 2.7 shall not apply to:

- (a) a measure, including that measure's continuation, prompt renewal, or amendment, in respect of the following:
  - (i) the export of logs;
  - (ii) the export of unprocessed fish pursuant to applicable provincial legislation;
  - (iii) the importation of any goods of the prohibited provisions of tariff items 9897.00.00, 9898.00.00, and 9899.00.00 referred to in the Schedule of the *Customs Tariff*;
  - (iv) Canadian excise duties on absolute alcohol used in manufacturing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Excise Act*, 2001, S.C. 2002, c.22, as amended;

(v) the use of ships in the coasting trade of Canada pursuant to the *Coasting Trade Act*, S.C. 1992, c. 31; and

(vi) the internal sale and distribution of wine and distilled spirits; and

(b) actions by Canada authoris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3. With respect to paragraph 2(a)(i), Canada shall ensure that procedures under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IPA”) controlling the export of logs are transparen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hall notify Korea in writing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EIPA that relates to controls on the export of logs within 30 days of publication of such proposals. Canada will endeavour to ensure that EIPA procedures controlling the export of logs continue to be applied in a manner that does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respect of the export of logs, the Parties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any dispute regarding a matter relating to the export of logs shall be settled under the WTO.

## Annex 2-B

### Sub-Committee on Trade in Forest Product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Sub-Committee on Trade in Forest Products. The Sub-Committee shall include officials from each of the Partie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officials, regulatory officials, and those responsible for controls on the export of logs, and may include or consult with interested parties.

2. The Sub-Committee shall:

- (a)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that may affect trade in forest products;
- (b) at the request of a Party, discuss a matter related to trade in forest products between the Parties;
- (c) endeavour to promote cooperation relating to trade in forest products in such international fora as the WT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 (d) take any other action, as the Parties may agre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s they apply to trade in forest products.

3. The Sub-Committee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a Party.

4. The Sub-Committee shall report relevant activities and outcomes regularly to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5. If a Party considers that Sub-Committee discussions have failed to resolve a matter related to trade in forest products, that Party may, on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 Annex 2-C

## Sub-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Sub-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that shall:
  - (a) include government officials with expertise in automotive issues from each of the Parties, including regulatory,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ficials;
  - (b)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that may affect a matter related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 (c) at the request of a Party, consult on a matter related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of a Party;
  - (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be the sole forum for consideration of a matter related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of a Party;
  - (e) endeavour to promote cooperation in such international fora addressing automotive goods issues as the W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APEC Automotive Dialogue; and
  - (f) take any other action, as the Parties may agre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s they apply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2. The Sub-Committee may include or consult with other experts, stakehold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he Parties deem necessary and appropriate.
3. The Sub-Committee shall meet annually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a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4. The Sub-Committee shall report relevant activities and outcomes to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as the Parties deem necessary and appropriate.

## Annex 2-D

## Tariff Elimination

## Section A – Staging Categories Applicable to both Parties

1. The classification of goods between the Parties is that set out in each Party's respective tariff nomenclature in conformity with the Harmonized System.
2. As provided in each Party's Schedule attached to this Annex, the following staging categories apply to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by each Party pursuant to Article 2.3.2:
  - (a)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A** in a Party's Schedule shall be eliminated entirely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b)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B** in a Party's Schedule shall be removed in three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hree.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each Party'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66.7%
(ii)	Year two:	33.3%
(iii)	Year three:	0%
  - (c)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C** in a Party's Schedule shall be removed in five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five.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each Party'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80%
-----	-----------	-----

(ii)	Year two:	60%
(iii)	Year three:	40%
(iv)	Year four:	20%
(v)	Year five:	0%

- (d)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D** in a Party's Schedule shall be removed in 10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each Party'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0%
(ii)	Year two:	80%
(iii)	Year three:	70%
(iv)	Year four:	60%
(v)	Year five:	50%
(vi)	Year six:	40%
(vii)	Year seven:	30%
(viii)	Year eight:	20%
(ix)	Year nine:	10%
(x)	Year ten:	0%

- (e)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E** in a Party's schedule are exempt from tariff elimination;

- (f)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F** in a Party's schedule shall be removed in 11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elev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each Party'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0.9%
-----	-----------	-------

(ii)	Year two:	81.8%
(iii)	Year three:	72.7%
(iv)	Year four:	63.6%
(v)	Year five:	54.5%
(vi)	Year six:	45.5%
(vii)	Year seven:	36.4%
(viii)	Year eight:	27.3%
(ix)	Year nine:	18.2%
(x)	Year ten:	9.1%
(xi)	Year eleven:	0%

3.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Annexes 2-F, 2-G, and a Party's Schedule:

- (a) *Year on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s provided in Article 23.4 (Entry into Force);*
- (b) *Year two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c) *Year thre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d) *Year four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e) *Year fiv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f) *Year six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g) *Year sev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h) *Year eight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sev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i) *Year nin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eigh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j) *Year t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ni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k) *Year elev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l) *Year twelv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elev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m) *Year thir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twelf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n) *Year four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thir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o) *Year fif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our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p) *Year six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f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q) *Year seven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six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r) *Year eigh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seven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s) *Year nineteen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eigh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t) *Year twenty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ninete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 (u) *Year twenty-one means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4. The base rate of customs duty for an item shall be the most-favoured-nation customs duty rate applied on January 1, 2011.

5. For the purpose of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interim staged rates shall be rounded down, except as set out in each Party's Schedule attached to this Annex, at least to the nearest tenth of a percentage point or, if the rate of duty is expressed in monetary units, at least to the nearest 0.001 of the official monetary unit for Canada, and at least to the nearest 1 of the official monetary unit for Korea.

#### Section B – Staging Categories Applicable only to Korea

6. This Section applies only to goods listed in Korea's Tariff Schedule, which is attached to this Annex.

Staging Categories:

- (a)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G** shall be removed in six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six.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 |                   |       |
|-------------------|-------|
| (i) Year one:     | 83.3% |
| (ii) Year two:    | 66.7% |
| (iii) Year three: | 50.0% |
| (iv) Year four:   | 33.3% |
| (v) Year five:    | 16.7% |
| (vi) Year six:    | 0%    |
- (b)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H** shall be removed in seven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sev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 |                   |       |
|-------------------|-------|
| (i) Year one:     | 85.7% |
| (ii) Year two:    | 71.4% |
| (iii) Year three: | 57.1% |
| (iv) Year four:   | 42.9% |
| (v) Year five:    | 28.6% |
| (vi) Year six:    | 14.3% |

- (vii) Year seven: 0%
- (c)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I** shall be reduced by 5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y 8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wo, by 10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each year from years three through nine, and by 17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 |                    |     |
|--------------------|-----|
| (i) Year one:      | 95% |
| (ii) Year two:     | 87% |
| (iii) Year three:  | 77% |
| (iv) Year four:    | 67% |
| (v) Year five:     | 57% |
| (vi) Year six:     | 47% |
| (vii) Year seven:  | 37% |
| (viii) Year eight: | 27% |
| (ix) Year nine:    | 17% |
| (x) Year ten:      | 0%  |
- (d)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J** shall be reduced by 5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rough year two, by 7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each year from years three through five, by 10 percent of the base rate in each year from years six through eight, by 17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nine, and by 22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 |                    |     |
|--------------------|-----|
| (i) Year one:      | 95% |
| (ii) Year two:     | 90% |
| (iii) Year three:  | 83% |
| (iv) Year four:    | 76% |
| (v) Year five:     | 69% |
| (vi) Year six:     | 59% |
| (vii) Year seven:  | 49% |
| (viii) Year eight: | 39% |
| (ix) Year nine:    | 22% |
| (x) Year ten:      | 0%  |
- (e)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K** shall be reduced by 5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rough year two, by 7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each year from years three through five, by 10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each year from years six through seven, by 12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eight, by 17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nine, and by 20 percent of the base rat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 |                   |     |
|-------------------|-----|
| (i) Year one:     | 95% |
| (ii) Year two:    | 90% |
| (iii) Year three: | 83% |
| (iv) Year four:   | 76% |
| (v) Year five:    | 69% |
| (vi) Year six:    | 59% |

(vii)	Year seven:	49%
(viii)	Year eight:	37%
(ix)	Year nine:	20%
(x)	Year ten:	0%

- (f)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L shall be reduced to 25 percent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e remaining duty shall be removed in nine equal annual stages,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50.6%
(ii)	Year two:	45.0%
(iii)	Year three:	39.4%
(iv)	Year four:	33.7%
(v)	Year five:	28.1%
(vi)	Year six:	22.5%
(vii)	Year seven:	16.9%
(viii)	Year eight:	11.2%
(ix)	Year nine:	5.6%
(x)	Year ten:	0%

- (g)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M shall remain at base rates during years one through eight and from year nine removed in four equal annual stages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welve.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100%
(ii)	Year two:	100%

(iii)	Year three:	100%
(iv)	Year four:	100%
(v)	Year five:	100%
(vi)	Year six:	100%
(vii)	Year seven:	100%
(viii)	Year eight:	100%
(ix)	Year nine:	75%
(x)	Year ten:	50%
(xi)	Year eleven:	25%
(xii)	Year twelve:	0%

- (h)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N shall be reduced to 7.5 percent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e customs duty shall remain at 7.5 percent during years two through nine and from year ten removed in three equal annual stages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in year twelve.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75.0%
(ii)	Year two:	75.0%
(iii)	Year three:	75.0%
(iv)	Year four:	75.0%
(v)	Year five:	75.0%
(vi)	Year six:	75.0%
(vii)	Year seven:	75.0%
(viii)	Year eight:	75.0%
(ix)	Year nine:	75.0%
(x)	Year ten:	50.0%

- (xi) Year eleven: 25.0%
- (xii) Year twelve: 0%
- (i)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items in staging category **O** shall be removed in 12 eq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welve.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1.7%
(ii) Year two:	83.3%
(iii) Year three:	75.0%
(iv) Year four:	66.7%
(v) Year five:	58.3%
(vi) Year six:	50.0%
(vii) Year seven:	41.7%
(viii) Year eight:	33.3%
(ix) Year nine:	25.0%
(x) Year ten:	16.7%
(xi) Year eleven:	8.3%
(xii) Year twelve:	0%

- (j)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P** shall be removed in 13 eq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hirte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2.3%
(ii) Year two:	84.6%
(iii) Year three:	76.9%

- (iv) Year four: 69.2%
- (v) Year five: 61.5%
- (vi) Year six: 53.8%
- (vii) Year seven: 46.2%
- (viii) Year eight: 38.5%
- (ix) Year nine: 30.8%
- (x) Year ten: 23.1%
- (xi) Year eleven: 15.4%
- (xii) Year twelve: 7.7%
- (xiii) Year thirteen: 0%

- (k)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Q** shall be removed in 15 eq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fifte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3.3%
(ii) Year two:	86.7%
(iii) Year three:	80.0%
(iv) Year four:	73.3%
(v) Year five:	66.7%
(vi) Year six:	60.0%
(vii) Year seven:	53.3%
(viii) Year eight:	46.7%
(ix) Year nine:	40.0%
(x) Year ten:	33.3%
(xi) Year eleven:	26.7%

(xii) Year twelve:	20.0%
(xiii) Year thirteen:	13.3%
(xiv) Year fourteen:	6.7%
(xv) Year fifteen:	0%

(l)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R** shall be removed in 18 eq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eighte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94.4%
(ii) Year two:	88.9%
(iii) Year three:	83.3%
(iv) Year four:	77.8%
(v) Year five:	72.2%
(vi) Year six:	66.7%
(vii) Year seven:	61.1%
(viii) Year eight:	55.6%
(ix) Year nine:	50.0%
(x) Year ten:	44.4%
(xi) Year eleven:	38.9%
(xii) Year twelve:	33.3%
(xiii) Year thirteen:	27.8%
(xiv) Year fourteen:	22.2%
(xv) Year fifteen:	16.7%
(xvi) Year sixteen:	11.1%
(xvii) Year seventeen:	5.6%

(xviii) Year eighteen: 0%

(m)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December 1 through April 30 in each of years one through fifteen, customs duties shall be eliminated entirely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May 1 through November 30, customs duties shall remain at the base rate during years one through seven and from year eight removed in eight equal annual stages,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fifteen. For greater certainty, the rate of duty as a percentage of the base rat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shall be as follows:

(i) Year one:	100%
(ii) Year two:	100%
(iii) Year three:	100%
(iv) Year four:	100%
(v) Year five:	100%
(vi) Year six:	100%
(vii) Year seven:	100%
(viii) Year eight:	87.5%
(ix) Year nine:	75.0%
(x) Year ten:	62.5%
(xi) Year eleven:	50.0%
(xii) Year twelve:	37.5%
(xiii) Year thirteen:	25.0%
(xiv) Year fourteen:	12.5%
(xv) Year fifteen:	0%

(n) rates of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T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abl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seven.

Year	Rate of Customs Duties (%)
Year One	4.2
Year Two	3.5
Year Three	2.8
Year Four	2.1
Year Five	1.4
Year Six	0.7
Year Seven	0

(o) rates of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U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abl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year three.

Year	Rate of Customs Duties (%)
Year One	3.3
Year Two	1.6
Year Three	0

(p) no obligations regarding customs duties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items in staging category X.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Korea's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its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set out in the WTO document WT/Let/492 (Certification of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Schedule LX-Republic of Korea) dated April 13, 2005, and amendments thereto.

Schedule of Korea

(TARIFF SCHEDULE ATTACHED AS SEPARATE VOLUME)

Schedule of Canada

(TARIFF SCHEDULE ATTACHED AS SEPARATE VOLUME)

## Annex 2-E

##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For the following goods of HS Chapter 89 that re-enter the territory of Canada from the territory of Korea, and are registered under the *Canada Shipping Act*, Canada may apply to the value of repair or alteration of such goods, the rate of customs duty for these goods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2-D:

- 8901.10.10
- 8901.10.90
- 8901.20.10
- 8901.20.90
- 8901.90.91
- 8901.90.99
- 8902.00.10
- 8904.00.00
- 8905.10.00
- 8905.20.10
- 8905.20.20
- 8905.90.10
- 8905.90.90
- 8906.90.91
- 8906.90.99

## Annex 2-F

##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 Agricultural Safeguard List for Korea

*Subject Goods, Trigger Levels, and Maximum Duties*

1. This Annex sets out those originating goods that may be subject to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under Article 2.12, the trigger levels for applying such measures, and the maximum duty that may be applied each year for each such good.

2.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or maintained after the date the safeguard duties set out below are zero.

(a) For beef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and 1602509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b>Trigger Level (MT)</b>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21,217	21,854	22,509	23,185
<b>Safeguard Duty (%)</b>										
HSK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30.0	30.0	30.0
<b>Safeguard Duty (%)</b>										
HSK 1602501000, 1602509000	72.0	72.0	72.0	72.0	72.0	54.0	54.0	54.0	54.0	54.0

Year	11	12	13	14	15	16
<b>Trigger Level (MT)</b>	23,880	24,596	25,334	26,094	26,877	N/A
<b>Safeguard Duty (%)</b>						
HSK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24.0	24.0	24.0	24.0	24.0	0
<b>Safeguard Duty (%)</b>						
HSK 1602501000, 1602509000	43.2	43.2	43.2	43.2	43.2	0

(b) For pork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203191000 and 0203199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b>Trigger Level (MT)</b>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8,972	9,331	9,704
<b>Safeguard Duty (%)</b>	22.5	22.5	22.5	22.5	22.5	15.8	14.6	13.5	12.4	11.3

Year	11	12	13	14
<b>Trigger Level (MT)</b>	10,092	10,496	10,916	N/A
<b>Safeguard Duty (%)</b>	10.1	9.0	7.9	0

(c) For pork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203291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b>Trigger Level (MT)</b>	545	567	589	613	638	663	690	717	746	776
<b>Safeguard Duty (%)</b>	25.0	25.0	25.0	25.0	25.0	17.5	16.3	15.0	13.8	12.5

Year	11	12	13	14
<b>Trigger Level (MT)</b>	807	839	873	N/A
<b>Safeguard Duty (%)</b>	11.3	10.0	8.8	0

(d) For pork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203299000

Year	1	2	3	4	5	6
<b>Trigger Level (MT)</b>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N/A
<b>Safeguard Duty (%)</b>	25.0	20.0	17.5	15.0	12.5	0

(e) For apples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808100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b>Trigger Level (MT)</b>	3,600	3,708	3,819	3,934	4,052	4,173	4,299	4,428	4,560	4,697
<b>Safeguard Duty (%)</b>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Year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b>Trigger Level (MT)</b>	4,838	4,983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6,129	6,313	N/A
<b>Safeguard Duty (%)</b>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The trigger level is the total metric tonnes of all non-fuji varieties of apples being imported.

(f) For pears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808201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Trigger Level (MT)	223	230	237	244	251	259	266	274	282	291
Safeguard Duty (%)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Year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rigger Level (MT)	300	309	318	327	337	347	358	369	380	391	N/A
Safeguard Duty (%)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The trigger level is the total metric tonnes of all non-Asian varieties of pears being imported.

(g) For unhulled and naked barley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1003009010 and 1003009020

Year	1	2	3	4	5	6	7	8	9	10
Trigger level (MT)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Safeguard Duty (%)										
① 1003009010	324	324	324	324	324	243	243	243	243	243
② 100300902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224.8	224.8	224.8	224.8

Year	11	12	13	14	15	16
Trigger level (MT)	2,500	2,500	2,500	2,500	2,500	N/A
Safeguard Duty (%)						
① 1003009010	194	194	194	194	194	0

② 1003009020	179.7	179.7	179.7	179.7	179.7	0
--------------	-------	-------	-------	-------	-------	---

For quantities entered at or below the safeguard duty trigger level, see paragraph 3 of Annex 2-G.

(h) For flour, meal, powder, 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1105100000 and 1105200000

Year	1	2	3	4	5	6	7	8	9	10	11
Trigger level (MT)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N/A
Safeguard Duty (%)	304	304	304	304	304	228	228	228	228	228	0

For quantities entered at or below the safeguard duty trigger level, see paragraph 4 of Annex 2-G.

(i) For adzuki beans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0713329000

Year	1	2	3	4	5	6	7	8
Main Safeguard Trigger Level (MT)	238	298	357	417	476	500	524	547
Intermediate Safeguard Trigger Level (MT)	119	186	268	364	N/A			
Main Safeguard Duty (%)	412	403	394	385	376	338	325	311
Intermediate Safeguard Duty (%)	55	40	25	15	N/A			

Year	9	10	11	12	13	14	15	16
Main Safeguard Trigger Level (MT)	571	595	619	643	666	690	714	N/A
Main Safeguard Duty (%)	297	283	217	199	180	162	143	0

For greater certainty, for years one through four, all quantities entered at or below the Intermediate Safeguard Trigger Level shall enter duty-fre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nd all quantities entered above the Intermediate Safeguard Trigger Level and at or below the Main Safeguard Trigger Level shall enter at the Intermediate Safeguard Duty listed in the table above.

Beginning with year five, all quantities entered at or below the Main Safeguard Trigger Level shall enter duty-fre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In any year, all quantities entered above the Main Safeguard Trigger Level shall enter at the Main Safeguard Duty listed in the table above.

## Annex 2-G

###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Qs

1. This Annex sets out modifications to the Harmonized Schedule of Korea (HSK) that reflect the TRQs that Korea shall apply to certain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originating goods of Canada included under this Annex shall be subject to the rates of duty set out in this Annex in lieu of the rates of duty specified in Chapters 1 through 97 of the HSK.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HSK, originating goods of Canada in the quantities described in this Annex shall be permitted entry into the territory of Korea as provided in this Annex. Furthermore, any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imported from Canada under a TRQ provided for in this Annex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in-quota amount of any TRQ provided for such goods elsewhere in the HSK.

#### *Honey, natural*

2.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100
2	105
3	110
4	115
5	120
6	125
7	130
8	135
9	140
10	145
11	150
12	155
13	160
14	165
15	170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6	175
17	180
18	185
19	190
20	195
21	200

After year twenty-one, the in-quota quantity will be 200 metric tonnes annually.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or its successor, using an auction on a quarterly basis (December, March, June, and Septembe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E as specified in paragraph 2(e) of Annex 2-D.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 0409000000.

*Unhulled and naked barley*

3.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14	2,500 (per year)
15	Unlimited

These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or its successor. The Corporation shall allocate licenses on written applicat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between the first business day and the last business day of the first month of each year.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exceeds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be allocated on a prorated basis.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is less than the total quantity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continue to be available throughout the year. Each license allocated by the Corporation is valid for a period of 90 days from the date of allocation, and unused licenses shall be surrendered to the Corpor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90-day period and reallocated to applica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surrende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safeguard duty listed in subparagraph (g) in Annex 2-F.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1003009010 and 1003009020.

*Flour, meal, powder, 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

4.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9	500 (per year)
10	Unlimited

These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or its successor. The Corporation shall allocate licenses upon written applicat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between the first business day and the last business day of the first month of each year.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exceeds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be allocated on a prorated basis.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is less than the total quantity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continue to be available throughout the year. Each license allocated by the Corporation is valid for a period of 90 days from the date of allocation, and unused licenses shall be surrendered to the Corpor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90-day period and reallocated to applica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surrende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safeguard duty listed in subparagraph (h) in Annex 2-F.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1105100000 and 1105200000.

Malt

- 5.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13,000
2	14,200
3	15,400
4	16,600
5	17,800
6	19,000
7	20,200
8	21,400
9	22,600
10	23,800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1	25,000
12	Unlimited

These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or its successor. The Corporation shall allocate licenses upon written applicat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between the first business day and the last business day of the first month of each year.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exceeds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be allocated on a prorated basis. If the total amount of originating goods applied for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year is less than the total quantity available within the TRQ, licenses shall continue to be available throughout the year. Each license allocated by the Corporation is valid for a period of 90 days from the date of allocation, and unused licenses shall be surrendered to the Corpor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90-day period and reallocated to applica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surrende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O as specified in paragraph 6(i) of Annex 2-D.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 1107100000.

Soybeans for Human Consumption, Identity Preserved

- 6.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e)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5,000
2	7,500
3	10,000
4	12,500
5	15,000
6	15,400

Year	Quantity (Metric Tonnes)
7	15,800
8	16,200
9	16,600
10	17,000

After year ten the in-quota quantity will be 17,000 metric tonnes annually.

An association of soybean processors, which includes the Korea Federation of Soybean Curd Industry Cooperatives, Korea Soy Sauce Industrial Cooperative,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and other appropriate associations representing processors of soybeans, shall administer this TRQ through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The association shall allocate the TRQ as set out in subparagraph (b) and the Corporation shall automatically issue import licenses for quantities that the association allocates.

- (b) The Association shall allocate the TRQ in response to written applications from importers accompanied by signed letters of intent to purchase identity preserved soybeans, for delivery no earlier than seven months after an importer applies for an allocation. The Association shall begin allocating the TRQ no later than 1 April of the year prior to the year of importation. Each license is valid for the entire quota year for which it is issued. When requested by the importer, shipments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from an independent third-party inspector certifying that the product meets the specifications listed in subparagraph (d) for identity-preserved soybeans.
- (c)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E as specified in paragraph 2(e) of Annex 2-D.

- (d) **Identity Preserved Soybeans** means a shipment of soybeans that are not less than 95 percent of any single variety of soybean, and with not more than one percent of foreign material. Identity Preserved Soybeans shall not be shipped in bulk, but shall be shipped in bags or containers.
- (e) Subparagraphs (a) through (d)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1201009010 and 1201009090.

*Fodder, Other*

7.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below,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20,000
2	25,000
3	30,000
4	35,000
5	40,000
6	45,000
7	50,000
8	55,000
9	55,000
10	Unlimited

These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the Korea Feed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llocated through import licenses. Registered mixed feed producers, registered feed ingredients producers, and the livestock breeders are eligible to receive a TRQ quantity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24 months and the quantity requested for the yea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D as specified in paragraph 2(d) of Annex 2-D.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 1214909090.

*Supplementary Feeds, Animal*

8. (a) The aggregate quantity of goods entered under the provisions listed in subparagraph (c) shall be duty-free in any year specified herein, and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below for Canada in each such year: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500
2	600
3	700
4	700
5	800
6	800
7	900
8	900
9	1,000
10	Unlimited

These TRQ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and the Korea Feed Milk Replacer Association,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llocated through import licenses based on performance of the previous 24 months and the quantity requested for the year.

-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D as specified in paragraph 2(d) of Annex 2-D.
- (c) Subparagraphs (a) and (b) apply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2309902099 and 2309909000.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rticle 3.1: Originating Good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a good is originating under this Agreement if:

- (a) the good satisfies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i)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s defined in Article 3.2;
  - (ii) the good has undergone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or
  - (iii)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and
-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under this Chapter.

**Article 3.2: Wholly Obtained**

The following goods are considered wholly obtained and therefor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a) mineral goods and other non-living natural resources extracted or taken from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b) vegetable goods grown and harves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c) live animals born and entirely rais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d) goods obtained from live anim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e) good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or fishing conducted within the land territory, internal waters, a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f) fish, shellfish, and other marine life taken from the sea,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ial seas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a vessel registered, recorded, or listed with a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 (g) goods produced on board a factory vessel from the fish, shellfish, or other marine lif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f), provided that the factory vessel is registered, recorded, or listed with a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 (h) goods, other than fish, shellfish, and other marine life, taken or extracted from the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provided that the Party or person of the Party has rights to exploit that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in accordance with Part XI of UNCLOS;
- (i) goods taken from outer space, provided they are obtained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and not process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 (j) 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production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k) components recovered from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 used goods are fit only for such recovery and the components recovered therefrom have undergone a process necessary to ensure their good working condition; and
- (l) good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k), or from their derivatives, at any stage of production.

#### Article 3.3: Sufficient Production

1.A good is considered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production and therefore is originating when the conditions set out for that good in Annex 3-A are fulfill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re satisfied.

2. Notwithstanding Annex 3-A and except for a good of Chapters 1 through 21, headings 39.01 through 39.15 or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a good is considered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production and therefore is originating, provided that:

- (a) the good cannot satisfy the conditions in Annex 3-A because both the good and one or mor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are classified in the same subheading, or heading that is not further subdivided into subheadings; and
- (b)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lassified in the same subheading, or heading that is not further subdivided into subheadings, as the good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 Article 3.4: Value Test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where Annex 3-A specifies a value test to determine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the good is originat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does not exceed a given percentage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s specified in Annex 3-A.

2. For the purposes of a good of headings 87.01 through 87.08, at the choice of an exporter or a producer of such goods, the good is originat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does not exceed the given percentage of either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or the net cost of the good.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for the purposes of a good of headings 87.01 through 87.06, at the choice of an exporter or a producer of such goods, the good is originat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s not less than a given percentage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4.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net cost of a good under paragraph 2, the producer of the good may:

- (a) calculate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subtract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of all those goods, and then reasonably allocate the resulting net cost of those goods to the good;

- (b) Calculate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reasonably allocate the total cost to the good, and then subtract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portion of the total cost allocated to the good; or
- (c) reasonably allocate each cost that forms part of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e good so that the aggregate of these costs does not include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or non-allowable interest costs.

5.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net cost of a good of headings 87.01 through 87.05 under paragraph 4, the producer may average its calculation over its fiscal year using any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n the basis of either all motor vehicles in the category or only those motor vehicles in the category that are export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 the same model line of motor vehicles in the same class of vehicles produced in the same plan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b) the same model line of motor vehicles produced in the same plan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c) the same model line of motor vehicle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d) the same class of motor vehicles produced in the same plan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 (e) any other category as the Parties may agree.

6.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net cost under paragraph 4 for a good of headings 87.06 through 87.08 produced in the same plant, the producer may:

- (a) average its calculation,
  - (i) over the fiscal year of the motor vehicle producer to whom the good is sold;
  - (ii) over any quarter or month, provided that the good was produced during the quarter or month forming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r

(iii) over the automotive material producer's fiscal year;

- (b) calculate the averag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eparately for any or all goods sold to one or more motor vehicle producers; or
- (c) calculate the average in subparagraph (a) or (b) separately for those goods that are export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rticle 3.5: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1. If a non-originating material undergoes sufficient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he resulting good is originating and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 contained therein when that good is used in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another good.

2.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3.6.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and non-originating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3.12 and in Annex 3-A, means:

- (a) the transaction value or the customs value of the materials at the time of their importation into a Party, adjusted, if necessary, to include freight, insurance, packing, and all other costs incurred in transporting the materials to the place of importation; or
- (b) in the case of domestic transactions, the value of the material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the same manner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such modifications as may be required.

3.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3.6.2,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mean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aterial by the producer in the Party where the producer is 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good is produced. If there is no price paid or payable,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will be the value 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2(b).

#### **Article 3.6: Self-Produced Materials**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a good, a producer of a good may, at the producer's choice, designate any self-produced material as a material to be taken into

account as an originating or non-originating material, as the case may be,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satisfies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rules of origin.

2. The value of a self-produced material shall be:
  - (a)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e producer of the good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at self-produced material; or
  - (b) the sum of all costs that comprise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at self-produced material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at self-produced material.

**Article 3.7: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is,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if:
  -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3.8: De Minimis**

Notwithstanding Article 3.3 and except for a good of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a good is considered originating, where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which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fulfil any other condition set out in Annex 3-A,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provided that:

- (a) if the rule of Annex 3-A applicable to the good contains a 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the value of those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A good of Chapters 50 through 60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does not originate because certain non-originating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do not fulfil the conditions set out for that good in Annex 3-A, is considered originating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yarns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good.

3. A good of Chapters 61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does not originate because certain non-originating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at good do not fulfil the conditions set out for that good in Annex 3-A, is considered originating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yarns in that componen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4. Except as provided in Annex 3-A,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1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Article 3.9: Fungible Materials and Goods**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material or good is an originating material or good, any fungible material or good shall be distinguished by:
  - (a) physically separating each fungible material or good; or
  - (b) using any inventory management method recognised in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Party in which the production is performed or otherwise accepted by that Party in which the production is performed.

2. Once a particular inventory management method is selected under paragraph 1, that method shall continue to be used for those fungible materials or goods throughout the fiscal year of the person that selected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 **Article 3.10: Sets or Assortments of Goods**

Except as provided in Annex 3-A, a set or assortment of goods, as referred to in General Rule 3 of the Harmonized System, is originating, if:

- (a) all of the component goods, including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are originating; or
- (b) when the set or assortment of goods contains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including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goods, including any non-originating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he set or assortment of goods, does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or assortment of goods.

#### **Article 3.11: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delivered with a good that form part of its standard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are considered originating if the good originates and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whether all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ndergo the applicable conditions set out in Annex 3-A, provided that:

- (a) the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are not invoiced separately from the good; and
- (b) the quantities and value of the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are customary for the good.

#### **Article 3.12: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Except as provided for in Article 3.10 and in Annex 3-A,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in which a good is packaged for sale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whether all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ndergo the applicable conditions as set out in Annex 3-A.

#### **Article 3.13: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Packing materials, containers, pallets, or similar articles, in which a good is packed for shipment is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at good.

#### **Article 3.14: Indirect Material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the origin of indirect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testing or inspection of that good, but which have not entered into the final composition of the good, or which have been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or the operation of equipment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including:

- (a) energy and fuel;
- (b) tools, dies, and moulds;
- (c) spare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 (d) lubricants, greases, compounding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r used to operate equipment and buildings;
- (e) gloves, glasses, footwear, clothing, safety equipment, and safety supplies;
- (f) equipment, devices, and supplies used for testing or inspecting goods; and
- (g) any other goods that are not incorporated into the good but the use of which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an reasonably be demonstrated to be part of that production.

#### **Article 3.15: Principle of Territoriality**

1. The conditions for acquiring originating status set out in Articles 3.1 through 3.20 must be fulfilled without interrup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originating good exported from a Party to a non-party shall, when returned, be considered originating if it is demonstr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concerned that the returning good:

- (a) is the same as that exported; and

- (b)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beyond that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while in that non-party or being exported.

#### **Article 3.16: Transit and Transshipment**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is non-originating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good:

- (a) undergoes no further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 (b) remains under the customs control while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 (c) does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 **Article 3.17: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 (a) the basis for tariff classification is the Harmonized System;
- (b) if applying Article 3.3.2,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heading or subheading under the Harmonized System provides for both a good and the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s made on the basis of the nomenclature of the heading or subheading and the relevant Section or Chapter Not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c) in applying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under this Chapter:
  - (i)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pply to domestic transactions, with any modifications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as they would apply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 (ii)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ake precedence over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the extent of any difference; and
- (iii) the definitions in Article 3.20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definitions in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the extent of any difference.

#### **Article 3.18: Discussions and Modifications**

1. The Parties shall discuss regularly to ensure that this Chapter is administered effectively, uniformly, and consistently with the spirit and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cooperate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Chapter Four (Origin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2. A Party that considers that this Chapter requires modification to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production processes or other matters may submit a proposed modification along with supporting rationale and any studies to the other Party for consideration and any appropriate action pursuant to Article 4.14 (Rules of Origin and Customs Committee).

#### **Article 3.19: Common Guidelines**

The Parties shall discuss whether to develop common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Chapter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Article 3.2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hapt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means a chapter of the Harmonized System;

**classified** means the classification of a good under a particula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customs value** means the value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ungible goods** or **fungible materials** means goods or materials that are interchangeable for commercial purposes and whose properties are essentially identical;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means accounting principles accepted and commonly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regard to the recording of revenues, expenses, costs, assets, and liabilitie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These principles may encompass guidelines for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detailed standards, practices, and procedures;

**good** means merchandise, product, article, or material;

**listed with a Party** means a foreign registered vessel bare-boat charter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of a Party and whose registration in the foreign country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the charter;

**material** means an ingredient, component, part, or other good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net cost** means total cost minus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net cost of a good** means the net cost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a good using one of the methods set out in Article 3.4.4;

**non-allowable interest costs** means interest costs incurred by a producer that exceed 700 basis points above the applicable national government rate identified for comparable maturities;

**non-originating good** or **non-originating material** means a good or material, respectively, that does not qualify as originating;

**originating good** or **originating material** means a good or material, respectively, that qualifies as originating;

**other costs** means all costs recorded on the books of the producer that are not product costs or period costs, such as interest;

**period costs** means those costs, other than product costs, that are expensed in the period in which they are incurred, such as selling expenses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producer** means a person who engages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product costs** means thos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and includes the value of materials, direct labour costs, and direct overhead;

**production** means a method of obtaining goods, including growing, mining, harvesting, fishing, raising, trapping, hunting, manufacturing, processing, assembling, or disassembling a good;

**reasonably allocate** means to apportion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royalties** means payments of any kind, including payments under technical assistance or similar agreements, mad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r right to use any copyright,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patent, trademark, design, model, plan, or secret formula or process, excluding those payments under technical assistance or similar agreements that can be related to specific services such as:

- (a) personnel training, without regard to where it is performed; and
- (b) if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ngineering, tooling, die-setting, software design and similar computer services, or other services;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means costs related to:

- (a) sales or marketing promotion; media advertising; advertising or market research; promotional or demonstration materials; exhibits; sales conferences, trade shows, or conventions; banners; marketing displays; free samples; sales,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literature (product brochures, catalogues, technical literature, price lists, service manuals, or sales aid information); establishment or protection of logos and trademarks; sponsorships; wholesale or retail restocking charges; entertainment;
- (b) sales or marketing incentives; consumer, retailer, or wholesaler rebates; merchandise incentives;
- (c) salaries or wages; sales commissions; bonuses; benefits (for example, medical, insurance, or pension benefits); travelling or living expenses; membership or professional fees;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personnel;

- (d) recruiting or training of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personnel, or after-sales training of customers' employees, if those costs are identified separately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 good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r cost accounts of the producer;
- (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f) office supplies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 goods, if those costs are identified separately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 good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r cost accounts of the producer;
- (g) telephone, mail, or other communications, if those costs are identified separately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 good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r cost accounts of the producer;
- (h) rent or depreciation of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fices and distribution centres;
- (i) property insurance premiums, taxes, utilities, or repair or maintenance of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fices or distribution centres, if those costs are identified separately for sales promotion, marketing or after-sales service of good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r cost accounts of the producer; and
- (j) payments by the producer to other persons for warranty repairs;

**self-produced material** means a material produced by a producer of a good and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shipping and packing costs** means the costs incurred in packing a good for shipment and shipping the good from the point of direct shipment to the buyer, excluding costs of preparing and packaging the good for retail sale;

**tariff provision** means a Chapte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territorial sea** means an area of the sea extending up to a limit of 12 nautical miles from baselin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t II of UNCLOS;

**total cost** means product costs, period costs, and other cost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tal cost does not include profits earned by the producer,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tained by the producer, or paid out to other persons as dividends, or taxes paid on those profits, including capital gains taxes;

**transaction value** mean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a good or material with respect to a transaction of the producer of the good,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aragraphs 1, 3 and 4 of Article 8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include, *inter alia*, such costs as commissions, production assists, royalties, or license fees; and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ets or assortments of goods of Article 3.10 and of Annex 3-A, means:

- (a) the transaction value of a good when sold by the producer at the place of production; or
- (b) the customs value of that good

adjusted, if necessary, to exclude any costs incurred subsequent to the good leaving the place of production, such as freight and insurance.

## Annex 3-A

## Product Specific Rules

## Section A – General Interpretative Notes

1.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ing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this Annex:

- (a) the specific rule, or specific set of rules,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heading, subheading, or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is set out immediately adjacent to that heading, subheading, or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 (b) a requirement of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any other condition set out in a specific rule applies on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 (c) reference to weight in the rules for goods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4 of the Harmonized System means dry weigh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Harmonized System;
- (d) the expression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means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other heading (or subheading) within the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to which the rule is applicable;
- (e) the expression “a change from any heading outside that group” or “a change from any subheading outside that group” means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except from any other heading (or subheading) within the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to which the rule is applicable;

(f) the expression:

- “a change from within that heading”;
- “a change from within that subheading”;
- “a change from within any one of these headings”;
- “a change from within any one of these subheadings”;
- “a change to (a good) of (a tariff provision) from within that (tariff provision)”;
- “a change to (a good) of any one of (tariff provisions) from within that (tariff provision)”;

means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r material of that same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g) where two or more rules are applicable to a heading, subheading, or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and the alternative rule contains a phrase commencing with the words “whether or not”:

- (i) th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the phrase commencing with the words “whether or not” reflects the change specified in the first rule applicable to the heading, subheading, or group of headings or subheadings;
- (ii) the only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ermitted by the alternative rule, in addition to th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at the beginning of that rule, is the change specified in the phrase commencing with the words “whether or not”;
- (iii) unless otherwise specified, only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at the beginning of the alternative rule, and specified again in the phrase commencing with the words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iv) the value of any non-originating materials satisfying the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the phrase commencing with the words “whether or not” shall not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h)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chapter** means a chapter of the Harmonized System;

**heading** means any four-digit number, or the first four digits of any number, used in the nomenclature of the Harmonized System;

**section** means a sec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and

**subheading** means any six-digit number, or the first six digits of any number, used in the nomenclature of the Harmonized System.

2. A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set out in this Annex represents the minimum amount of production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the resulting good to achieve originating status. A greater amount of production than that required by the rule for that good will also confer originating status.

3. Where a rule of this Annex applicable to a good contains both a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nd a 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the *de minimis* provision of Article 3.8 permits the us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do not satisfy the tariff change requirement, as long as the value of such materials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However,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under no circumstances may the 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s set out in the rule be exceeded through the use of the *de minimis* provision.

4. Where a rule of this Annex applicable to a good contains both a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nd a 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one or mor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re classified in the same subheading or heading that is not further subdivided into subheadings, as the good itself, Article 3.3.2 may be used. Article 3.3.2 provides that, in such instances,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lassified as or with the good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Given that the resulting good qualifies as originating in its own right,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ontained therein when that good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is particular instance, only the value of any other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final good and that satisfy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the rule of this Annex would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final good.

5. The product specific rules set out in this Annex also apply to used goods.

## Section B – Specific Rules of Origin

		0210.99	A change to goods of fowls of the species <i>Gallus domesticus</i> (chickens)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fowls of the species <i>Gallus domesticus</i> (chickens) of heading 01.05; or
<b>SECTION I</b>	<b>LIVE ANIMALS; ANIMAL PRODUCTS (Chapters 1 – 5)</b>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b>	<b>Live Animals</b>	<b>Chapter 3</b>	<b>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b>
01.01 – 01.06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2</b>	<b>Meat and Edible Meat Offal</b>	<b>Note:</b>	<i>Aquaculture goods of Chapter 3 raised from non-originating seed-stock such as eggs, fry, fingerlings, or larva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i>
02.01 – 02.06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3.01 – 03.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207.11 – 0207.1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fowls of the species <i>Gallus domesticus</i> (chickens) of heading 01.05.	0306.11 – 0308.90	A change to a smoked good from a non-smoked good within that subheading or any other subheading; or
0207.24 – 0207.6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02.08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4</b>	<b>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b>
0209.1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4.01 – 04.06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dairy preparations of subheading 1901.90 or 2106.90.
0209.9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fowls of the species <i>Gallus domesticus</i> (chickens) of heading 01.05.	04.07 – 04.1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210.11 – 0210.9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5</b>	<b>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b>

05.01 – 05.0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5.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1.
05.05 – 05.06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5.07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1 or 3.
05.08 – 05.1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SECTION II</b>	<b>VEGETABLE PRODUCTS (Chapters 6 – 14)</b>
<b>Note:</b>	<i>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goods grown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treat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even if grown from seed, bulbs, rootstock, cuttings, slips, or other live parts of plants imported from a non-Party country.</i>
<b>Chapter 6</b>	<b>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b>
06.01 – 06.0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6.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06.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7</b>	<b>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b>

07.01 – 07.1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8</b>	<b>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b>
08.01– 08.1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9</b>	<b>Coffee, Tea, Maté and Spices</b>
0901.11 – 0901.1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901.21 – 0901.22	A change from any subheading outside this group.
0901.9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9.02 – 09.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904.11 – 0904.12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2103.90.
0904.21 – 0904.2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 0710.80 or 2103.90.
09.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906.11 – 0906.1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0906.2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09.07 – 09.1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0</b>	<b>Cereals</b>
10.01 – 10.08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1</b>	<b>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b>
11.01 – 11.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10.06.
11.05 – 11.0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2</b>	<b>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b>
12.01 – 12.1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3</b>	<b>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b>
13.01 – 13.0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14</b>	<b>Vegetable Plaiting Materials;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b>
14.01 – 14.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SECTION III**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Chapter 15)**

**Chapter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5.01 – 15.1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515.11 – 1515.1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515.21 – 1515.5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12.
1515.9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516.10	A change to a product obtained entirely from seal or seal products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1516.20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5.17 – 15.2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SECTION IV</b>	<b>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Chapters 16 – 24)</b>	1901.10	A change to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or
<b>Chapter 16</b>	<b>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b>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16.01 – 16.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901.20	A change to mixes and doughs containing more than 2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or
16.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moked goods of heading 03.06 through 03.08.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b>Chapter 17</b>	<b>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b>	1901.90	A change to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or
17.01 – 17.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10.06 or rice products of heading 11.02 through 11.04.
17.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18</b>	<b>Cocoa and Cocoa Preparations</b>		
18.01 – 18.0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9.02 – 19.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18.03 – 18.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19.04 – 19.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1806.10 – 1806.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b>Chapter 20</b>	<b>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b>
<b>Chapter 19</b>	<b>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b>	20.01 – 20.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009.11 – 2009.3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2009.41 – 2009.8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2009.90	A change to cranberry juice mixtures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21</b>	<b>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b>
21.0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21.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103.10 – 2103.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103.90	A change to hot pepper past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 0709.60, 0904.21 or 0904.22;  A change to bean past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12.01;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subheading.
21.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1.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dairy preparations of subheading 1901.90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21.06	A change to preparations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dairy preparations of subheading 1901.90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or 1302.19.
<b>Chapter 22</b>	<b>Beverages, Spirits and Vinegar</b>
22.0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2202.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202.90	A change to beverages containing milk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dairy preparations of subheading 1901.90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heading.
22.03 – 22.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208.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208.30	A change from within this subheading or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 total alcoholic volum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22.03 through 22.08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volume of the total alcoholic strength of the good.

2208.40 – 220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2.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23</b>	<b>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b>
23.01 – 23.08	<i>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i>
2309.10	<i>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i>
2309.90	<i>A change to preparations used in animal feeding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04.01 through 04.06 or dairy preparations of subheading 1901.90 containing more than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r</i>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24</b>	<b>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b>
24.0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24.02 – 24.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SECTION V</b>	<b>MINERAL PRODUCTS (Chapters 25 – 27)</b>
<b>Chapter 25</b>	<b>Salt; Sulph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b>

25.01 – 25.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26</b>	<b>Ores, Slag and Ash</b>
26.01 – 26.2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27</b>	<b>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b>
<b>Note 1:</b>	<i>For the purposes of headings 27.07 and 27.10,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i>
	<i>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i>
	(a) <i>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i>
	(b) <i>the eliminating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i>
	(c) <i>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i>
<b>Note 2:</b>	<i>For the purposes of heading 27.10, either of the following processes confers origin:</i>
	(a) <i>Atmospheric distillation – A separation process in which petroleum oils are converted, in a distillation tower, into</i>

*fractions according to boiling point and the vapour then condensed into different liquefied fractions; or*

- (b) *Vacuum distillation – Distillation at a pressure below atmospheric but not so low that it would be classed as molecular distillation.*

**Note 3:**

*For purposes of heading 27.10, “direct blending” is defined as a refinery process whereby various petroleum streams from processing units and petroleum components from holding/storage tanks combine to create a finished product, with pre-determined parameters, classified under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non-originating material constitutes no more than 25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27.01 – 27.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707.10 – 2707.9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heading 27.07,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to phenols of subheading 2707.99 from any other good of subheading 2709.99 or any other sub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or

27.08 – 27.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subheading 2707.99 from phenols of subheading 2709.99 or any other sub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as a result of one of the processes specified in Notes 1 and 2 to this Chapter; or  A change as a result of direct blending, provided that the non-originating material constitutes no more than 25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2711.11 – 2711.13	A change from within any one of these subheadings or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 non-originating feedstock constitutes no more than 49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2711.14 – 2711.1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2711.29.	
2711.21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2711.11.	
2711.2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2711.12 through 2711.21.	
27.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713.11 – 2713.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713.20 A change from within that subheading or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 non-originating feedstock constitutes no more than 49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271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7.14 – 27.1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Chapters 28 – 38)**

**Chapter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Note 1:** *Notes 3 through 5 of this Chapter confer origin to a good of any heading or subheading in this Chapter.*

**Note 2:**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of this Chapter.*

**Note 3: Chemical Reaction**

*A good of this Chapter that results from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a) *dissolution in water or in another solvent;*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Note 4: Purification**

*A good of this Chapter that is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results in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of the impurities.*

**Note 5: Separation Prohibition**

*A good that undergoes a change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one or more materials from a man-made mixture shall not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unless the isolated material underwent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2801.10 – 2803.0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2804.10 – 2804.6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804.70 – 2804.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2805.11 – 2813.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28.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815.11 – 2815.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815.20 – 2815.3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2816.10 – 2816.4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28.17 – 28.1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2819.10 – 2853.0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Chapter 29      Organic Chemicals**

**Note 1:**      *Notes 3 through 6 of this Chapter confer origin to a good of any heading or subheading in this Chapter,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ose notes.*

**Note 2:**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of this Chapter.*

**Note 3:**

**Chemical Reaction**

*A good of this Chapter that results from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 (a) *dissolution in water or in another solvent;*
-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Note 4:**

**Purification**

*A good of this Chapter that is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results in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of the impurities.*

**Note 5: Isomer Separation**

*A good of this Chapter,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Note 6: Separation Prohibition**

*A good that undergoes a change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one or more materials from a man-made mixture shall not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unless the isolated material underwent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2901.10 – 2942.0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Chapter 30 Pharmaceutical Products**

3001.20 – 3002.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006.92.

3003.10 – 300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006.92; or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heading 30.03,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006.92,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any other subheading within heading 30.03 does not exceed 4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30.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30.03 or subheading 3006.92.

3005.10 – 3005.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006.92.

3006.10 – 3006.7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006.92.

3006.9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006.92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Chapter 31 Fertilisers**

31.01 – 31.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Chapter 32 Tanning or Dyeing Extracts; Tannins and Their Derivatives; Dyes, Pigment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aints and Varnishes; Putty and Other Mastics; Inks**

3201.10 – 3202.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2.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204.11 – 3204.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2.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206.11 – 3206.5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2.07 – 32.1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3</b>	<b>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b>
3301.12 – 330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3.02 – 33.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4</b>	<b>Soap,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ashing Preparations, Lubricating Preparations, Artificial Waxes, Prepared Waxes, Polishing or Scouring Preparations, Candles and Similar Articles, Modelling Pastes, “Dental Waxes” and Dental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Plaster</b>
3401.11 – 3401.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401.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402.90.
3402.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402.12 – 3402.1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402.2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3402.90.
3402.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403.11 – 3403.9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4.04 – 34.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5</b>	<b>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Enzymes</b>
3501.10 – 350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502.11 – 3502.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502.20 – 3502.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5.03 – 35.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6</b>	<b>Explosives; Pyrotechnic Products; Matches; Pyrophoric Alloys; Certain Combustible Preparations</b>
36.01 – 36.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7</b>	<b>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b>
37.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37.02.
37.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37.01.
37.03 – 37.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38</b>	<b>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b>	38.2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01 – 38.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2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28 through 37, 40, or 90.
3805.10 – 3806.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8.2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07 – 38.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09.10 – 3809.93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8.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11.11 – 381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38.12 – 38.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2905.31; or  A change from subheading 2905.3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2905.3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38.21 – 38.2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3823.11 – 3823.7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b>SECTION VII</b>	<b>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Chapters 39 – 40)</b>
		<b>Chapter 39</b>	<b>Plastics and Articles Thereof</b>
		39.01 – 39.1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non-originating polymer content of heading 39.01 through 39.15 does not exceed 40 percent by weight of the total polymer content of the good.
		39.16 – 39.2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0</b>	<b>Rubber and Articles Thereof</b>
		40.01 – 40.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0.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40.01; or  A change from heading 40.01,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40.01 does not exceed 6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40.07 – 40.1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6.40	A change to tanned hides and skins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from any other heading; or
<b>SECTION VIII</b>	<b>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Chapters 41 – 43)</b>		A change to crust hides and skins from tanned hides and skins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of this subheading or any other heading.
<b>Chapter 41</b>	<b>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b>	4106.9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1 – 41.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4106.92	A change from subheading 4106.91 or any other heading.
4104.11 – 4104.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4.41 – 4104.49	A change from subheading 4104.11 or 4104.19, or any other heading.	41.12 – 41.1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5.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2</b>	<b>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b>
4105.30	A change from subheading 4105.10 or any other heading.	42.01 – 42.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6.2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3</b>	<b>Furskins and Artificial Fur; Manufactures Thereof</b>
4106.22	A change from subheading 4106.21 or any other heading.	43.0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4106.3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3.02 – 43.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106.32	A change from subheading 4106.31 or any other heading.		

<b>SECTION IX</b>	<b>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CORK;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Chapters 44 – 46)</b>	47.05 – 47.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4</b>	<b>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b>	<b>Chapter 48</b>	<b>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b>
44.01 – 44.2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8.01 – 48.2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5</b>	<b>Cork and Articles of Cork</b>	<b>Chapter 49</b>	<b>Printed Books, Newspapers, Pictures and Other Products of the Printing Industry; Manuscripts, Typescripts and Plans</b>
45.01 – 45.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9.01 – 49.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46</b>	<b>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b>	<b>SECTION XI</b>	<b>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Chapters 50 - 63)</b>
46.01 – 46.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50</b>	<b>Silk</b>
<b>SECTION X</b>	<b>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PAPER AND PAPERBOARD AND ARTICLES THEREOF (Chapters 47 – 49)</b>	50.01 – 50.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47</b>	<b>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b>	50.04 – 50.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47.01 – 47.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0.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4703.11– 4704.2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1</b>	<b>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b>

51.01 – 51.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51.06 – 51.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1.11 – 51.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2</b>	<b>Cotton</b>
52.01 – 52.03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52.04 – 52.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2.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52.04 through 52.06.
52.08 – 52.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3</b>	<b>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and Woven Fabrics of Paper Yarn</b>
53.01 – 53.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53.06 – 53.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3.09 – 53.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4</b>	<b>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b>
54.01 – 54.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4.07 – 54.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5</b>	<b>Man-Made Staple Fibres</b>
55.01 – 55.07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55.08 – 55.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5.12 – 55.1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9.01 – 59.09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56</b>	<b>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b>	59.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53.08, 53.10, or 53.11, Chapter 54, or heading 55.09 through 55.16.
56.01 – 56.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59.1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56.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52.05 through 52.07, 54.01, 54.02, 54.04 through 54.06, or 55.08 through 55.11.	<b>Chapter 60</b>	<b>Knitted or Crocheted Fabrics</b>
56.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60.01 – 60.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56.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4 through 52.07, 54.01, 54.02, 54.04 through 54.06, or 55.09 through 55.11.		A change from greige fabric, provided that the greige fabric is dyed or printed and fu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Chapter 57</b>	<b>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b>	<b>Chapter 61</b>	<b>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b>
57.01 – 57.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b>Note:</b>	<i>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a good of this Chapter, the rule applicable to that good shall apply only to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and such component must satisfy the tariff chang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ule for that good.</i>
<b>Chapter 58</b>	<b>Special Woven Fabrics; Tufted Textile Fabrics; Lace; Tapestries; Trimmings; Embroidery</b>	61.01 – 61.17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58.01 – 58.11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A change to a good knit to shape, for which no sewing or other assembly is required, from any other chapter.
<b>Chapter 59</b>	<b>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ndustrial Use</b>		

Chapter 62	<b>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b>	63.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b>Note:</b>	<i>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a good of this Chapter, the rule applicable to that good shall apply only to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and such component must satisfy the tariff chang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ule for that good.</i>		No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at the goods were last collected and packed for shipment in a Party.
62.01 – 62.17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3.10	A change to new rags from any other chapter;
			A change to goods other than new rags from any other heading; or
			No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at the goods other than new rags were last collected and packed for shipment in a Party.
Chapter 63	<b>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b>		
<b>Note:</b>	<i>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a good of this Chapter, the rule applicable to that good shall apply only to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and such component must satisfy the tariff chang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ule for that good.</i>		<b>SECTION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PREPARED FEATHERS AND ARTICLES MADE THEREWITH;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Chapters 64 – 67)</b>
63.01 – 63.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fabric of heading 51.11 through 51.13, 52.08 through 52.12, 53.10, 53.11, 54.07, 54.08, 55.12 through 55.16, 58.01 through 58.03, 59.03, or 60.01 through 60.06.	<b>Chapter 64</b>	<b>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b>
63.06 – 63.07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4.01 – 64.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64.06; or
63.08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either the fabric or the yarn meets the tariff shift rule that would be applicable if the fabric or yarn were classified alone.		A change from heading 64.0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64.06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64.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65</b>	<b>Headgear and Parts Thereof</b>
65.01 – 65.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66</b>	<b>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b>
66.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66.03; or  A change from heading 66.03,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66.03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66.02 – 66.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67</b>	<b>Prepared Feathers and Down and Articles Made of Feathers or of Down;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b>
67.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rticles of feathers or down from within this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67.02 – 67.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SECTION XIII</b>	<b>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WARE (Chapters 68 – 70)</b>
<b>Chapter 68</b>	<b>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b>
68.01 – 68.1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69</b>	<b>Ceramic Products</b>
69.01 – 69.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70</b>	<b>Glass and Glassware</b>
70.01 – 70.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009.1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009.91 – 7009.9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0.10 – 70.1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019.11 – 7019.4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019.51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7019.52 or 7019.59.

7019.52 – 7019.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0.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IV**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Chapter 71)**

**Chapter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7101.10 – 7105.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1.06 – 71.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1.08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1.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1.1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1.11 – 71.1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V**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Chapters 72 – 83)**

**Chapter 72** **Iron and Steel**

72.01 – 72.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Chapter 73** **Articles of Iron or Steel**

73.01 – 73.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04.11 – 7304.3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04.41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304.4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04.51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304.59 – 730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05 – 73.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73.03 through 73.06; or

A change from heading 73.03 through 73.0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73.03 through 73.06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732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3.08 – 73.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2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15.11 – 7315.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73.22 – 73.2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1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7315.1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324.10 – 7324.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7315.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732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732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315.20 – 7315.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732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731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3.25 – 73.2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1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74</b>	<b>Copper and Articles Thereof</b>
73.16 – 73.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4.01 – 74.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321.11 – 7321.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74.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74.11;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2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A change from heading 74.1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74.1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4.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74.08; or

	A change from heading 74.0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74.08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4.15 – 74.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75</b>	<b>Nickel and Articles Thereof</b>
75.01 – 75.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505.11 – 7505.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505.21 – 7505.22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5.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foil, not backed, of a thickness of 0.15 mm or less from within that 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5.07 – 75.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76</b>	<b>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b>
76.01 – 76.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603.10 – 7603.2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6.04 – 76.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6.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76.08; or  A change from heading 76.0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76.08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6.10 – 76.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6.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76.05; or  A change from heading 76.05,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76.05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76.15 – 76.1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78</b>	<b>Lead and Articles Thereof</b>
78.01 – 78.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804.11 – 7804.2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A change to foil, not backed, of subheading 7804.11 from within that sub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78.06 A change to lead bars, rods, profiles, wire,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78.06 from within that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lead bars, rods, profiles, wire,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78.06 or any other heading.

**Chapter 79 Zinc and Articles Thereof**

79.01 – 79.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9.04 A change from within that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79.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foil, not backed, from within that 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79.07 A change to zinc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79.07 from within that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zinc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79.07 or any other heading.

**Chapter 80 Tin and Articles Thereof**

80.01 – 80.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0.03 A change from within that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80.07 A change to tin plates, sheets or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mm, tin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mm, or tin powders or flakes, tin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80.07 from within that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tin plates, sheets or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mm, tin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mm, or tin powders or flakes, tin tubes, pipes o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heading 80.07 or any other heading.

**Chapter 81 Other Base Metals; Cermets; Articles Thereof**

8101.10 – 8113.0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Chapter 82 Tools, Implements, Cutlery, Spoons and Forks, of Base Metal; Parts Thereof of Base Metal**

**Note:** *Handles of base met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of this Chapter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at good.*

82.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2.10 – 8202.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7.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2.09; or
8202.3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202.3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202.3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from subheading 8207.19 or heading 82.0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207.19 or heading 82.0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202.39 – 8202.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7.19 – 820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3 – 82.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8 – 82.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05.10 – 8205.7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11.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2.14 or 82.15;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211.91 through 8211.93, or heading 82.14 or 82.15,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subheading 8211.91 through 8211.93, or heading 82.14 or 82.15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20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within that subheading or subheading 8205.10 through 8205.7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of goods of that subheading or subheading 8205.10 through 8205.70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211.91 – 8211.9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211.94 or 8211.95,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211.94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2.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2.02 through 82.05; or  A change from heading 82.02 through 82.05,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heading 82.02 through 82.05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211.94 – 8211.9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12 – 82.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301.6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214.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301.60 – 8301.7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14.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 set of subheading 8214.20 from within that subheading or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3.02 – 83.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1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305.10 – 8305.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30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305.90 does not exceed 2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215.10 – 8215.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2.11; or  A change from heading 82.11, or subheading 8215.91 or 8215.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heading 82.11, or subheading 8215.91 or 8215.99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30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215.91 – 8215.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3.06 – 83.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83</b>	<b>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b>	8308.10 – 8308.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30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308.90 does not exceed 2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301.10 – 8301.5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301.6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830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3.09 – 83.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311.10 – 8311.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311.90 A change from subheading 831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31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31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VI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Chapters 84 – 85)**

**Chapter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401.10 – 8401.3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401.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2.11 – 8402.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0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0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0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3.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0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0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0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4.10 – 8404.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0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0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0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5.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05.90,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0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0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6.10 – 8406.8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0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0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1.91 – 8411.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2.10 – 8412.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1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07.10 – 840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09; or  A change from heading 84.0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0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3.11 – 8413.8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13.91 or 8413.92,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3.91 or 8413.92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0.11 – 8410.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1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3.91 – 8413.9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4.10 – 8414.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1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1.11 – 8411.8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11.91 or 8411.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1.91 or 8411.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1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5.10 – 8415.83	<p>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1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18.91 or 8418.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8.91 or 8418.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841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8.91 – 8418.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6.10 – 8416.30	<p>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1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p>8419.11 – 8419.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1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841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7.10 – 8417.80	<p>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1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1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p>8420.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20.91 or 8420.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20.91 or 8420.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841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0.91 – 8420.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18.10 – 8418.6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p>8421.11 – 8421.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p> <p>A change from subheading 8421.9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p>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21.9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24.10 – 8424.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21.21 – 8421.3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21.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21.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2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1.91 – 8421.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5 – 84.2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2.11 – 8422.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2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2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2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31; or  A change from heading 84.3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3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2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8 – 84.3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23.10 – 8423.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2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2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2.10 – 8432.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42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3.11 – 8433.6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43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4.10 – 8434.2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43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843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5.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3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8.10 – 8438.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3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6.10 – 8436.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36.91 or 8436.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6.91 or 8436.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6.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36.91 or 8436.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6.91 or 8436.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9.10 – 8439.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39.91 or 8439.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39.91 or 8439.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36.91 – 8436.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9.91 – 8439.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37.10 – 8437.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40.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4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4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3.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3.91 – 8443.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1.10 – 844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4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4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4 – 84.4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heading 84.4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48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8.11 – 8448.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48.20 through 8448.5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48.20 through 8448.5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2.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42.40 or 8442.5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42.40 or 8442.5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48.20 – 8448.5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2.40 – 8442.5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43.11 – 8443.3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43.91 or 8443.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43.91 or	8450.11 – 8450.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5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5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54.10 – 8454.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51.10 – 845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5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5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5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55.10 – 8455.2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55.30 or 845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55.30 or 845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2.10 – 8452.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5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5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5.30 – 845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5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5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66; or  A change from heading 84.6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66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3.10 – 8453.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5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5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59 or 84.66; or  A change from heading 84.59 or 84.6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845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59 or 84.66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from subheading 8467.91 through 8467.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67.91 through 8467.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58 – 84.6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66; or		8467.91 – 8467.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heading 84.6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66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68.10 – 8468.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6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8466.91;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6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6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from subheading 8466.9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66.9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6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6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6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8466.92; or		8470.10 – 847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8466.92,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66.92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73; or
					A change from heading 84.73,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73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6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67.11 – 8467.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74.10 – 8474.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47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847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7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5.10 – 8475.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7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7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9.10 – 8479.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7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7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6.21 – 8476.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7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7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7.10 – 8477.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7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7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1.10 – 848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8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8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7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8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78.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8482.10 – 8482.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82.91 or 8482.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82.91 or 8482.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4.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482.91 – 8482.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86.10 – 8486.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8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8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3.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8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8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83.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82; or  A change from heading 84.82 or subheading 848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82 or subheading 848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483.30 – 8483.6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48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48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b>Chapter 85</b>	<b>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b>
848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5.03; or  A change from heading 85.03,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5.03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484.10 – 8484.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4.06, 84.11, 85.01, or 85.03; or  A change from heading 84.06, 84.11, 85.01, or 85.03,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4.06, 84.11,

	85.01, or 85.03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7.10 – 8507.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4.10 – 8504.3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4.40 – 8504.5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08.11 – 8508.6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8.7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8.7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8.7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5.11 – 8505.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9.40 – 8509.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0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06.10 – 8506.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0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0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0.10 – 8510.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1.10 – 851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2.10 – 8512.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3.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4.10 – 8514.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5.11 – 8515.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6.10 – 8516.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1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7.11 – 8517.7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18.10 – 8518.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heading 85.1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any other subheading within 85.18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8.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to a set of subheading 8518.30 from subheading 8518.10, 8518.21 through 8518.29, or 851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subheading 8518.10, 8518.21 through 8518.29, or 8518.90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subheading 8518.10, 8518.21 through 8518.29, or 851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8.10, 8518.21 through 8518.29, or 8518.90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18.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1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1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price of the good.

8518.5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heading 85.1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heading 85.18 does not exceed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851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5.22; or

A change from heading 85.22,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5.22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21.10 – 852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22 – 85.2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25.50 – 8525.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A change to a gyrostabilized camera of subheading 8525.80 from within that sub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26.10 – 8527.9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28 – 85.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30.10 – 8530.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3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3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3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3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39.10 – 8539.4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3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3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31.10 – 853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3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3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3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3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40.11 – 8540.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40.91 or 8540.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40.91 or 8540.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32.10 – 8532.3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40.91 – 8540.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3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41.10 – 8542.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33.10 – 8533.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43.10 – 8543.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54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54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3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43.7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35 – 85.3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5.38; or  A change from heading 85.38,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5.38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54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44.11– 8544.6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544.7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5.45– 85.4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SECTION XVII</b>	<b>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Chapters 86 – 89)</b>
<b>Chapter 86</b>	<b>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Parts Thereof;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Equipment of all Kinds</b>
86.01 – 86.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6.03 – 86.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6.07; or  A change from heading 86.07,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6.07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6.07 – 86.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87</b>	<b>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b>
<b>Note:</b>	<i>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of heading 87.01 through 87.06 is an originating good, any material of Chapter 84, 85, 87, or 94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the material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i></li> <li>2. <i>the material would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under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of this Agreement i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part of the free trade area established by this Agreement.</i></li> </ol>
87.01 – 87.06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provided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does not excee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or</li> <li>(b) 65 percent of the net cost of the good; or</li> </ol> <p>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provided that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is not less than 3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p>
8707.10 – 870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within or between any of those subheadings,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that heading does not exceed:

	(a)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or
	(b) 65 percent of the net cost of the good.
8708.10 – 8708.9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A change from within any one of those subheadings,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the same subheading as the good does not exceed:
	(a)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or
	(b) 65 percent of the net cost of the good.
8709.11 – 8709.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70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70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70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7.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7.11 – 87.1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87.14; or  A change from heading 87.14,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7.14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714.10 – 8714.9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714.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714.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714.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7.1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8716.10 – 8716.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871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8716.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871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88</b>	<b>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b>
8801.00 – 8803.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88.04 – 88.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Chapter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89.01 – 89.08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SECTION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CLOCKS AND WATCHES;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Chapters 90 – 92)**

**Chapter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90.01; or

A change from heading 90.0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0.0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3.11 – 9003.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0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4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or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within Chapter 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Chapter 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to any other good from subheading 9007.91,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7.91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5.10 – 9005.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0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7.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07.92,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7.92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7.91 – 9007.9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6.10 – 9006.6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06.91 or 9006.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6.91 or 9006.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8.5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0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0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06.91 – 9006.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07.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to a gyrostabilized camera of subheading 9007.10 from within that sub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10.1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10.50 – 9010.6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10.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0.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1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5.10 – 9015.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11.10 – 9011.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901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1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2.1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1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7.10 – 9017.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13.10 – 9013.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1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from subheading 901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1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18.11 – 9021.9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14.10 – 9014.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22.12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901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2.13 – 9022.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2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2.90 does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5.11 – 9025.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22.19 – 9022.21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9025.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5.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2.29 – 9022.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25.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A change from subheading 902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6.10 – 9026.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2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7.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024.10 – 9024.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27.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7.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 change from subheading 9024.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4.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7.20 – 9027.3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24.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7.50 – 9027.80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27.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8.10 – 9028.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28.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8.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8.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29.10 – 9029.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29.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29.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29.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30.10 – 9030.89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9030.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31.10 – 903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3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3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3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32.10 – 9032.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03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3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03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0.3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 Chapter 91

####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91.01 – 91.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91.08 through 91.14; or

A change from heading 91.08 through 91.14,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1.08 through 91.14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1.08 – 91.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111.10 – 911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11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11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11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112.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11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112.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112.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1.13 – 91.1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92</b>	<b>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b>
92.01 – 92.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92.09; or
	A change from heading 92.0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2.0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2.0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IX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Chapter 93)**

**Chapter 93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1 – 93.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93.05; or
	A change from heading 93.05,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93.05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3.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306.21 – 9306.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3.07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Chapters 94 – 96)**

**Chapter 94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9401.10 – 9401.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	-------------------------------------

	A change from subheading 9401.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401.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401.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4.0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403.10 – 9403.8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40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40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40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4.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405.10 – 9405.6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405.91 through 9405.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405.91 through 9405.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405.91 – 9405.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4.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95</b>	<b>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b>
95.03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within that heading,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that heading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5.04 – 95.05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506.11 – 9506.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506.3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506.3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506.3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506.32 – 9506.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5.07 – 95.0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b>Chapter 96</b>	<b>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b>

96.01 – 96.04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08.10 – 9608.4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96.05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or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within Chapter 96,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e value of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Chapter 96 does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A change from subheading 9608.60 through 9608.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608.60 through 9608.99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606.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08.5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608.10 through 9608.4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subheading 9608.10 through 9608.40 does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9606.21 – 9606.2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606.3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606.3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608.60 – 9608.9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06.3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09 – 96.1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07.11 – 9607.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607.2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607.2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6.11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 set from within this heading or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 goods of this heading does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set.
9607.2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12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13.10 – 9613.8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subheading 9613.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613.90 does not exceed 55 percent of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9613.90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14 – 96.18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96.19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SECTION XXI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Chapter 97)**

**Chapter 97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97.01 – 97.06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CHAPTER FOUR**

**ORIGIN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Section A – Certification of Origin**

**Article 4.1: Certificate of Origin**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Certificate of Origin to certify that a good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This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modified as agreed by the Parties.

2. Each Party may requir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for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s completed in, or translated into, a language required under its domestic law.<sup>5</sup>

3. Each Party shall:

- (a) require an exporter in its territory to complete and sign a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ex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an importer may clai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pon importation of the goo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 (b) provide that, when an exporter in its territory is not the producer of the good, the exporter may complete and sign a Certificate of Origin on the basis of:
  - (i) the exporter's knowledge of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ii) the exporter's reasonable reliance on the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r
  - (iii) a completed and signed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good voluntarily provided to the exporter by the producer.

4. Paragraph 3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roducer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to an exporter.

<sup>5</sup> For Korea, English or Korean; for Canada, English or French.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applicable to:

- (a) a single importation of one or more goods into the Party's territory; or
- (b) multiple importations of identical goods into the Party's territory that occur within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as set out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6. The Certificate of Origin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accepted as proof of origin for at least two years, or for a longer period as specified by the importing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signed.

7. Each Party shall accept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has been completed and sign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of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Article 4.2: Obligations Regarding Importations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require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that claim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 (a) reques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an originating good, if required by the importing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 (b) make a written declaration, as prescribed by that Party's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c) have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its possession at the time the declaration is made, if required by the importing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 (d) provide, on the request of that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if required by that customs administration, any other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importing Party; and
- (e) promptly make a corrected declaration in a manner requir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and pay any duties owing where the import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on which a declaration was based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f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claim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 the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if the importer fails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under this Chapter; and
- (b) the importer shall not be subject to penalties for the making of an incorrect declaration if it voluntarily makes a corrected decla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e), provided that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has not initiated a verification of origin pursuant to Article 4.6.

3.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provide that where a good would have qualified as an originating good when it wa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e importer of the good may, within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for a longer period specified by the importing Party's domestic law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ood was imported, apply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ies paid as the result of the good not having been accord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Article 4.3: Waiver of Certificate of Origi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is not required for:

- (a) an importation of a good whose value does not exceed US\$1,000 or its equivalent amount in the Party's currency, or such higher amount as it may establish; or
- (b) an im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the Part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 is imported has waived the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is not part of a series of importations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taken or arrang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s 4.1 and 4.2.

#### Article 4.4: Obligations Regarding Exportation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an exporter in its territory,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has provided a copy of a Certificate of Origin to that exporter pursuant to Article 4.1.3(b)(iii), shall provide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if required, other docu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domestic law, to its customs administration on request; and

- (b)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has completed and signed a Certificate of Origin, and tha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every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give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of a change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2. Each Party:

- (a) shall provide that a false certification by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a good to be export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shall have the same legal consequences,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hat would apply to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for a contravention of it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king of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 (b) may apply such measures as the circumstances warrant where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fails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of this Chapter.

3. A Party shall not impose penalties on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voluntarily provides written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b) with respect to the making of an incorrect certification.

### Section B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 Article 4.5: Record Keeping Requirement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completes and signs a Certificate of Origin must maintain, in its territory, for fiv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signed or for a longer period as specified by the Party, records relating to the origin of a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cluding records associated with:

- (i) the purchase of, cost of, value of, and payment for, the good that is exported from that Party's territory;
- (ii) the purchase of, cost of,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including indirect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that is exported from that Party's territory;
- (iii)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 in which the good is exported from that Party's territory; and
- (iv) other documentation as mutually agreed by both parties; and
- (b) an importer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a good imported into the Party's territory must maintain, in that Party's territory, for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of the good or for a longer period as specified by that Party, record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required by that Party, including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 Article 4.6: Origin Verifications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a Party may, through its customs administration, conduct a verification by means of:

- (a) written questionnaires to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verification visits to the premises of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review the records referred to in Article 4.5(a) and observe the facilitie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or
- (c) other procedures as agreed by the Parties.

2. Before conducting a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paragraph 1(b), the Party shall, through its customs administration:

- (a) deliver a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to conduct the visit:
- (i) to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 (ii)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other Party; and
- (iii) if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the embassy of the other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posing to conduct the visit; and

- (b)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3.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must include:
- (a) the identit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ssuing the notification;
  - (b) the nam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 (c) the date and place of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 (d) the object and scope of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including specific reference to the good that is the subject of the verification;
  - (e) the names and titles of the officials performing the verification visit; and
  - (f) the legal authority for the verification visit.
4. If an exporter or a producer has not given its written consent to a proposed verification visit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notifying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that w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the visit.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on receipt of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an exporter or a producer may, within 15 days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have one opportunity to make a request for a postponement of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to the Party conducting the verification.
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its customs administration receives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y, within 15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postpone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ceipt, or for such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7. A Party shall not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a good based only on the postponement of a verification visit under paragraphs 5 and 6.
8. Each Party shall permit an exporter or a producer of the good that is the subject of a verification visit by the other Party, to designate one or two observers to be present during the visit, provided that:
- (a) the observers do not participate in a manner other than as observers; and
  - (b) the failur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to designate observers shall not result in the postponement of the visit.

9. A Party shall, through its customs administration, when conducting a verification of origin involving a value test, *de minimis* calculation or any other provision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pply those provisions in compli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good was exported.

10. The Party conducting the verification shall provide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that is the subject of the verification with a written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cluding findings of fact and the legal basis for the determination.

11. If verifications by a Party indicate a pattern of conduct by an exporter or a producer of false or unsupported representations that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the Party may withhol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identical goods exported or produced by that person until that person establishes compliance with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 **Article 4.7: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xcept as provided in this Chapter, the importing Party may deny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r recover unpaid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if the good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r if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 **Article 4.8: Confidentiality**

1. Each Party shall maintain,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is Chapter and shall protect tha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that c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persons providing the information. If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i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Party shall notify the Party or person who provided that information.

2.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of customs matters,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person or Party that provided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information that is obtained may be used in an administrative, judicial, or quasi-judici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failure to comply with custom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nd this Chapter. The person or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will be notified in advance of such use.

#### Article 4.9: Penaltie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impos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is Chapter.

2. Articles 4.2.2, 4.4.3, and 4.6.7 are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hat are warranted by the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 Section C – Advance Rulings

#### Article 4.10: Advance Rulings

1. Each Party shall, through its customs administration, provide for the expeditious issuance of written advance rulings,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into its territory, to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or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 the basis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presented by tha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concerning:

- (a) whether materials imported from a non-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as a result of production occurring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b) whether a good satisfies a value test, based on either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r the net cost of the good, as set out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 (c)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satisfies a value test unde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e appropriate basis for value to be applied by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r calculating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d)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unde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 (e)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e good has been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 (f) tariff classification, applicable rate of customs duty, or any tax applicable on importation; or
- (g) other matters as agreed by the Parties.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for the issuance of advance rulings,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formation reasonably required to process an application for a ruling.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ustoms administration:

- (a) during the course of an evaluation of an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may request supplemental information from the person requesting the ruling;
- (b) after it has obtained all necessary information from the person requesting an advance ruling, shall issue the ruling within the amount of time specified in the Uniform Regulations; and
- (c) if the advance ruling is unfavourable to the person requesting it, shall provide that person with a full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ruling.

4. Each Party may provide that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y decline or postpone the issuance of the advance ruling, if an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involves an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 (a) a verification of origin;
- (b) a review by, or appeal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or
- (c)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in its territory.

5. Subject to paragraph 7, each Party shall apply an advance ruling to importations into its territory of the good for which the ruling was requested, beginning on the date of its issuance or a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ruling.

6. Each Party shall provide consistent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s provided that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re identical in all material respects.

7. The issuing Party may modify or revoke an advance ruling:

- (a) if the ruling is based on an error:
  - (i) of fact;
  - (ii)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good or a material that is the subject of the ruling;
  - (iii) in the application of a value test unde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r
  - (iv) i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e good has been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under Article 2.6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b) if the ruling is not in accordance with an interpretation agreed by the Parties regarding 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o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c) if there is a change in the material facts or circumstances on which the ruling is based;

(d) to conform with a modification of 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is Chapter or the Uniform Regulations; or

(e) to conform with a judicial decision or a change in its domestic law.

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modification or revocation of an advance ruling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on which the modification or revocation is issued, or on a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ruling, and shall not be applied to importations of a good that have occurred prior to that date, unless the person to which the advance ruling was issued has not acted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and conditions.

9. Notwithstanding paragraph 8, the issuing Party shall postpone the effective date of the modification or revo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 if the person to which the advance ruling was issued demonstrates that it has relied in good faith on that ruling to its detriment.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f its customs administration examines the value test of a good for which it has issued an advance ruling,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evaluate whether:

(a) the exporter or producer has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dvance ruling;

(b) the exporter's or producer's opera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material facts and circumstances on which the advance ruling is based; and

(c) the supporting data and computations used in applying the basis or method for calculating value or allocating cost were correct in all material respects.

1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f its customs administration determines that a requirement in paragraph 10 has not been satisfied, the Party may modify or revoke the advance ruling if the circumstances warrant.

1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 (a) if the person to which an advance ruling was issued demonstrates that it used reasonable care and acted in good faith in presenting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n which the ruling was based; and
- (b)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a Party determines that the ruling was based on incorrect information,

the person to which the ruling was issued shall not be subject to penalties.

1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f it issues an advance ruling to a person that has misrepresented or omitted material facts or circumstances on which the ruling is based, or has faile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uling, that Party may apply measures that are warranted by the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1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advance ruling remains in effect and will be honoured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material facts or circumstances on which it is bas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 **Section D – Review and Appeal of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Advance Rulings**

##### **Article 4.11: Review and Appeal**

1. Each Party shall grant substantially the same rights of review and appeal of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advance rulings by its customs administration, as it provides to importers in its territory, to a person:

- (a) that completes and signs a Certificate of Origin for a good that has been the subject of a determination of origin; or

- (b) that has received an advance ruling pursuant to Article 4.10.

2. Further to Articles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19.4 (Review and Appeal),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rights of review and appe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access to:

- (a) at least one level of administrative review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office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under review; and
- (b)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taken at the final level of administrative review.

#### **Section E – Uniform Regulations**

##### **Article 4.12: Uniform Regulations**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rough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olicies,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iform Regulat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implement any modification of or addition to the Uniform Regulations within an amount of time as agreed by the Parties.

#### **Section F – Cooperation**

##### **Article 4.13: Cooperation**

1. Each Party shall, in an official language(s), of one of the Parties,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following determinations, measures, and rulings, including, to the extent practicable, those that are prospective in application:

- (a) a determination of origin issued as the result of a verification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4.6;

- (b) a determination of origin that the Party is aware is contrary to a ruling issu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or value of a good, or of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or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costs where calculating the net cost of a good that is the subject of a determination of origin;
- (c) a measure establishing or significantly modifying an administrative policy that is likely to affect future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 (d) an advance ruling, or a ruling modifying or revoking an advance ruling, pursuant to Article 4.10.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s fundamental to facilitating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for reaching a greater degree of trade facilitation.

3. The Parties, through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agree to develop 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under such mutually agreed terms as to the scope, timing, and cost of cooperative measures in customs-related areas.

4. The Parties shall cooperate:

- (a) in the enforcement of their respective customs-related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under any 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or other customs-related agreement to which they are party;
- (b)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for the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flow of trade between them, in customs-related matters such as the collection and exchange of statistics regarding the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goods, the harmonisation of documentation used in trade, the standardisation of data elements, the acceptance of an international data syntax,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c)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harmonisation of customs laboratories method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ersonnel between the customs laboratories;
- (d)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jointly organising training programs on customs-related issues, such as simulated audit environment exercises, for the officials and users who participate directly in customs procedures;
- (e)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chanisms for communicating with the trade and business communities;

- (f)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developing verification standards and a framework to ensure that both Parties act consistently in determining that goods imported into their territories meet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 (g)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o assist each other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valuation, and determination of origin of imported and exported good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country of origin marking purposes; and
- (h)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such international fora a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O")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EC"), to achieve mutually recognised goals such as those set out in the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and APEC Model Measures for Trade Facilitation in RTAs/FTAs.

#### Article 4.14: Rules of Origin and Customs Committee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Rules of Origin and Customs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o conside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and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2. The Committee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3. The operations of the Committee will include:

- (a) reviewing,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proposed modifications of, or additions to,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is Chapter or the Uniform Regulations;
- (b) preparing, in a timely manner, amendments to the Harmonized System with a view to reflecting these amendments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 (c) reviewing the amendments to the Harmonized System to ensure that each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e not altered, and consulting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 (i) amendments to the Harmonized System and Annex 2-D (Tariff Elimination); or
  - (ii) Annex 2-D (Tariff Elimination) and national nomenclature;

- (d) consulting on and endeavouring to resolve a difference that may arise among the Parties on matter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valuation of goods under the Harmonized System;
- (e) notifying the Commission of any agreed modification of, or addition to,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is Chapter or the Uniform Regulations under subparagraphs (a) and (b); and
- (f) endeavouring to agree on:
  - (i) the uniform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is Chapter and the Uniform Regulations;
  - (ii) modification of, or addition to,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is Chapter and the Uniform Regulations;
  - (iii) any other matter referred to it by a Party; and
  - (iv) any other customs-related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 Section G – Trade Facilitation

##### Article 4.15: Objectives and Principles

1. *With the objectives of facilitating trade under this Agreement and of cooperating in pursuing trade facilitation initiatives on a multilateral basis, each Party agrees to administer their import and export processes for goods traded under this Agreement on the basis that:*

- (a) procedures be efficient in order to reduce costs for importers and exporters and simplified where appropriate in order to achieve such efficiencies;
- (b) procedures be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instruments or international standards agreed upon by the Parties;
- (c) entry procedures be transparent in order to ensure predictability for importers and exporters;
- (d)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also support mechanisms to protect persons through effective enforcement of, and compliance with, national requirements;

- (e) the personnel and procedures involved in those processes reflect high standards of integrity;
- (f) the development of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procedures of a Party include, in advance of implementation, consultations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trading community of that Party;
- (g) procedures be based on risk assessment principles to focus compliance efforts on transactions that merit attention, thereby promoting effective use of resource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to importers and exporters; and
- (h) the Parties encourage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best practic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 Article 4.16: Release of Good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for the efficient release of good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2.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ustoms administration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hat:

- (a) provide for the release of unrestricted, uncontrolled, non-regulated, and non-prohibited goods within an amount of time no great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domestic law;
- (b)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or if applicable, for advance electronic submiss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efore physical arrival of goods to enable the release of goods on arrival;
- (c) allow goods, other than restricted, controlled, regulated, or prohibited goods, to be released at the first point of arrival, without temporary transfer to warehouses or other facilities; and
- (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llow importers to withdraw goods from customs before all applicable customs duties, taxes, and fees have been paid.<sup>6</sup>

<sup>6</sup> Before releasing the goods, a Party may require an importer to provide sufficient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some other appropriate instrument, covering the ultimate payment of the customs duties, taxes, and fees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the goods.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under which goods in need of emergency clearance may be released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including holidays.

4. The Parties recognise that, for certain goods o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goods subject to a quota or to health-related or public safety requirements, releasing the goods may require the submission of more extensive information, before, or at the time of arrival of the goods, to enable the authorities to examine the goods for release.

5.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their respective agencie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are coordinated to facilitate trade, regardless of whether these requirements are administered by an agency or on behalf of that agency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To further this objective, each Party shall take steps to harmonise the data requirements of its respective agencies with the objective of allowing importers and exporters to present all required data to one agency.

6. The Parties, through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establish means of consultation with their trade and business communities to promote greater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electronic information.

#### Article 4.17: Automation

Each Party shall use information technology that expedites procedures for the release of goods and shall:

- (a) establish a means of providing for the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at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and the trading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rapid release procedures;
- (b) endeavour to us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uch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 (c) endeavour to develop compatible electronic systems between the Parties' customs authorities, to facilitate government-to-government ex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data; and
- (d) endeavour to develop a set of common data elements and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WCO Customs Data Model, and related WCO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 Article 4.18: Risk Management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and simplify the process and procedures for the release of low-risk goods, and shall improve controls on the release of high-risk goods. For these purposes, the Parties shall base their examination and release procedures and their post-entry verification procedures on risk assessment principles, rather than examining each and every shipment offered for entry in a comprehensive manner for compliance with all import requirements. This shall not preclude the Parties from conducting quality control and compliance reviews, which may require more extensive examinations.

#### Article 4.19: Express Shipments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for express shipment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and selection. These procedures shall:

- (a) provide a separate and expedited customs procedure for express shipment, and where applicable, use the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 (b)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or where applicable, for advance electronic submiss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efore physical arrival of express shipments to enable their release upon arrival;
- (c)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clearance of certain goods with a minimum of documentation;
- (d)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release of express shipments within an amount of time no great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in its domestic law;
- (e) apply without regard to weight; and
- (f) consistent with the Party's legislation, provide simplified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the entry of low value goods as determined by that Party.

#### Article 4.20: Transparency

1. Each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including through electronic means, all its legislation, regulations, and notice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relating to its requirements for imported or exported goods, such as general agency requirements and entry procedures, hours of operation, and points of contacts for information enquiries.

2. This Article does not require a Party to publis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law enforcement procedures and internal operational guidelin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nducting risk assessment.

## Section H – Definitions

### Article 4.2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administration** means the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under the law of a Par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application of it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determination of origin** means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exporter** means an exporter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an exporter required under this Chapter to maintain record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regarding exportations of a good;

**express shipments** means shipments falling under the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identical goods** means goods that are the same in all respects, inclu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quality, and reputation, irrespective of minor differences in appearance that are not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origin of those goods unde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importer** means an importer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an importer required under this Chapter to maintain record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regarding importations of a good;

**indirect material** has the same meaning as “indirect material” in Article 3.14 (Indirect Materials);

**material** means “material” as defined in Article 3.20 (Definitions);

**net cost of a good** means “net cost of a good” as defined in Article 3.20 (Definition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eans the duty rate applicable to an originating good;

**producer** means “producer” as defined in Article 3.20 (Definitions);

**production** means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20 (Definitions);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means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of the good” as defined in Article 3.20 (Definitions);

**Uniform Regulations** means “Uniform Regul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4.12; and

**value** means value of a good or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customs duties or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 CHAPTER FIVE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5.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minimise the negative eff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trade while protecting human,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and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Article 5.2: Scope

This Chapter applies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5.3: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he Parties 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SPS Agreement.

#### Article 5.4: Dispute Settlement

This Chapter is not subject to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 Article 5.5: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who are responsible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2.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to coordinate the Committee meetings.
3. The objectives of the Committee are to enhance each Party's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while respecting each other's rights to adopt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enhance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and minimise negative effects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4. Each Party shall ensure the participation, as appropriate, of representatives with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from its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in the Committee meetings.

5. Recognising that the manag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must rely on science and risk-based assessment and is best achieved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the Committee shall seek to enhance present or futur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agencies with responsibility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For these purposes, the Committee shall:

- (a) recognise that scientific risk analysis shall be conducted and evaluated by the relevant regulatory agencies of each Party;
- (b)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Party'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each other's measures and the regulatory processes related to those measures;
- (c) consult on matte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r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at affect, or ma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 (d) promote bilateral consultation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issues under discussion in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WTO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nd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 (e) encourage and coordinate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programs; and
- (f) review progress on address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that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6.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Committee shall meet no later than on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rules of procedure at its initial meeting. Thereafter, the Committee shall meet once a year,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 CHAPTER SIX

## STANDARDS-RELATED MEASURES

**Article 6.1: Scope and Coverage**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is Chapter applies to all standards-related measures that may affect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 (a) purchasing specifications prepared by government bodies for production or consumption requirements of such bodies; and
  - (b)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s defined in Annex A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6.2: Extent of Obligations**

1. Article 1.4 (Extent of Obligations) does not apply to this Chapter. This Chapter applies only to national govern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2. Each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sub-national<sup>7</sup> and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to encourage their adherence to this Chapter, as appropriate.

**Article 6.3: Affirm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Further to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 (a) the Parties affirm with respect to each other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standards-related measures under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BT Agreement”) and all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 (b) Articles 2 through 9 and Annexes 1 and 3 of the TBT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Article 6.4: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tandards-related measures with a view to increas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respective markets.
2. The Parties shall mutually identify trade facilitating bilateral initiatives regarding standards-related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particular issues or secto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pective Parties’ experience in other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of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or member.
3. Further to paragraphs 1 and 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particular, by:
  - (a) encouraging their standardising bodies to cooperate with the standardising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their participation, as appropriate, in standardising activities, such as through membership in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sing bodies;
  - (b) encouraging their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ther than the governments of th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cooperation with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promote the mutual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 (c) promoting the accredit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n the basis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s; and
  - (d) promoting the acceptance of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that have been recognised under a relevant multilate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ir respective accreditation systems or bodies.
4. If a Party declines a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to engage in negotiations on an agreement for facilitating recognition in its territory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by bodies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it shall explain,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5.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4 and 5.4 of the TBT Agreement, as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it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sup>7</sup>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sub-national government does not include local government.

6. The Parties shall, within the context of this Article, expeditiously broade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give favourable consideration to any written request for discussion.

#### Article 6.5: Cooperation in Sector-Specific Initiatives

1. Each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that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omply with this Article, as appropriate.

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tor-specific initiatives, including by:

- (a)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standards-related measures in the area of medical devices, sharing information on, and promoting the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approaches;
- (b) reducing possibly redundant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by promoting the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including those related to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and Good Laboratory Practices (GLP);
- (c) taking steps to implement Phase II of the APE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998)*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 as soon as possible.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will publish notice of the changes in its legislation that it proposes to make to implement Phase II;
- (d) promoting the harmonisation and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standards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n the area of low voltage devices; encouraging their national certification bodies to be members of the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Certification Bodies' Scheme (IECEE-CB Scheme) and to accept each other's IECEE-CB test certificate as the basis for national certification to relevant electric safety requirements in order to reduce duplicative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 (e) pursuant to the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and the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s), promoting the acceptance of test reports for wood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issued by organisations accredited by the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and 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 (f)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Institute for Research in Construction (NRC-IRC),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to build confidence in their respective research results and test data for wood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To facilitate confidence building,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KICT and the NRC-IRC to negotiate a cooperation arrangement; and
- (g) establishing,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 technical *ad hoc* working group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related to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that would be composed of relevant officials responsible for standards-related measures in the building products sector.

#### Article 6.6: Transparency

1. When a Party notifies WTO Members of a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under the TBT Agreement, it shall transmit electronically, at the same time, the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o the other Party.

2. On request, each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for the technical regulation that the Party has adopted or is proposing to adopt, provided that it is publicly available.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ransparency procedur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llow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at an early appropriate stage, when amendments can still be introduced and comments taken into account, except if urgent problems of safety,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or national security arise or threaten to arise. If consultations respect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open to the public, each Party shall permit persons of the other Party to participate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its own persons.

4. Each Party shall recommend that non-governmental bodies in its territory observe paragraph 3 in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Each Party shall allow a period of at least 60 days for the public and the other Party to provide written comments on proposed standards-related measures, except if urgent problems of safety,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or national security arise or threaten to arise.

6.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2 and 5, a Party may transmit its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heir impact analysis statements for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comments on proposed standards-related measures of the other Party to the enquiry point of the other Party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of the TBT Agreement.

7. When appropriate, each Party shall publis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 print or electronically, its responses, or a summary of its responses, to significant comments it receives no later than the date it publishes the final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Article 6.7: Automotive Standards-Related Measures**

1. A Party shall allow on its market automotive good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afety Standards Incorporation or Equivalence*

2. Korea shall accept as complying with the corresponding Kore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MVSS”<sup>8</sup>), as amended, automotive goods originating in Canada that comply with:

- (a) the United State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listed in Annex 6-A; or
- (b) the UN regulations<sup>9</sup>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listed in Appendix 2-C-3 Table 1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sup>8</sup> KMVSS refers to the corresponding standards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f Korea.

<sup>9</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UN regulations means regulations covered by the *1958 Agreement of th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WP.29)*,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at Agreement, as amended.<sup>10</sup>

If Korea incorporates any additional FMVSS, UN regulations, or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into its domestic law or otherwise accepts any such additional standards or regulations as equivalent to KMVSS, it shall also accept as complying with the corresponding KMVSS automotive goods of Canada that comply with these standards or regulations, as they are incorporated into, including any adaptations, or deemed equivalent to, its domestic law.

3. Canada shall accept as complying with the corresponding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MVSS”<sup>11</sup>), as amended, automotive goods originating in Korea that comply with:

- (a) the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listed in Annex 6-B (Table 1), as incorporated into the corresponding CMVSS, including any adaptations provided for in CMVSS; or
- (b) the UN regulations listed in Annex 6-B (Table 2), as incorporated into the corresponding CMVSS, including any adaptations provided for in CMVSS.

If Canada incorporates any additional FMVSS, UN regulations, or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into its domestic law or otherwise accepts any such additional standards or regulations as equivalent to CMVSS, it shall also accept as complying with the corresponding CMVSS automotive goods of Korea that comply with these standards or regulations, as they are incorporated into, including any adaptations, or deemed equivalent to, its domestic law.

4. Notwithstanding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r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each Party may:

- (a) require that automotive goods be certified and marked as complying with its relevant domestic law;

<sup>10</sup> For greater certainty, when Korea accepts compliance with UN regulation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b), UN ECE type-approval certificates issued by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considered as providing a presumption of conformity. If Korea finds that a certain good covered by a type-approval certificate does not conform to the approved type, it shall inform Canada. This footnote is without prejudice to Korea’s righ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s set out in paragraph 4(b).

<sup>11</sup> CMVSS refers to the correspondingly numbered sections of Schedules IV and V.1 of the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Regulations and Motor Vehicle Tire Safety Regulations*.

- (b) verify by random sampling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hat the automotive good, including an automotive good self-certified by a manufacturer, complies as appropriate with:
- (i) an applicable standard or regulation of the Party; or
  - (ii) an applicable standard or regulation, as set out in paragraphs 2 and 3.

Each Party may require the supplier to withdraw the automotive good from the market in case the good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ndard or regulation as the case may be;

- (c)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ire a supplier to withdraw an automotive good from its market if there are urgent and compelling risks for road safety, public health, or the environment based on substantiated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Such a temporary emergency measure shall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ood of the other Part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fore it is implemented, any such measure shall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and to the supplier with an objective, reasoned, and sufficiently detailed explanation of the motivation for the measure; and
- (d) modify its domestic law, including by amending or revising any standard or the manner in which or the extent to which a standard is incorporated into, or deemed equivalent to, its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maintain the incorporation of the standards or regulations covered by paragraphs 2 and 3 into its domestic law or continue to otherwise accept those standards or regulations as equivalent to its domestic law, unless doing so would provide for a lower level of safety than the level of safety that would be achieved by a modification to its domestic law or, for Canada, would compromise North American integration.

5. If a Party modifies its domestic law pursuant to paragraph 4(d), th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modification.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4(d), if such modification renders inappropriate the continued incorporation into, or otherwise acceptance as equivalent to, its domestic law of the standards and regulations covered by paragraphs 2 and 3, the Parties may decide to amend accordingl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upon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 *Compliance Testing*

6. Each Party shall promptly communicate to the concerned manufacturer or importer a decision taken on compliance testing i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is deemed by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as well as the basis for any such decision and information on available legal remedies.

7. The Parties agree to use relevant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or other guides or recommendations issued by international standardising bodie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guides or recommendations”), or relevant parts of them, if they exist, as a basis for compliance testing procedures on automotive goods, except if such guides or recommendations are inappropriate for the Party concerned for reasons covered by Article 5.4 of the TBT Agreement and duly explained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sup>12</sup>. If a Party proposes to apply a compliance testing procedure that is not based on relevant guides or recommendations, it shall publish in advance the procedure it proposes to adopt, and provide interested person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 *New Technologies*

8. A Party shall not prevent or unduly delay the placing on its market of an automotive good on the ground that the good incorporates a new technology or a new feature which has not yet been regulated unless the Party demonstrate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based on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this new technology or new feature creates a risk for human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9. If a Party decides to refuse the placing on its market or require the withdrawal from its market of an automotive good on the ground that the good incorporates a new technology or a new feature creating a risk for human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the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he importer of the good of its decision.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all relevant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 *Cooperation*

10.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cooperation on automotive goods issues under discussion in th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WP.29)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or its successor.

<sup>12</sup> “Relevant” guides or recommendations in this paragraph are guides or recommendations on compliance testing procedures applicable to a standard or regulation that a Party has incorporated into its domestic law, either by reference or by duplica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standard or regulation.

### Article 6.8: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composed of trade and relevant regulatory officials, as set out in Annex 6-C.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include:
  - (a) monitoring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 (b) promptly addressing any issues that a Party rais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doption, application, or enforcement of standards-related measures;
  - (c) enhancing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tandards-related measures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 (d) exchanging information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in response to all reasonable requests for such information from a Party;
  - (e) exchanging information on developments in non-governmental,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a for standards-related measures;
  - (f)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light of any developments under the TBT Agreement and, if required, developing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for amendments to these provisions in light of such developments;
  - (g) taking any steps the Parties consider will assist them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 (h) as it considers appropriate, reporting to the Commi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 (i) as it considers appropriate, establishing working groups that may include or consult with non-governmental experts and stakeholder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and
  - (j) at the request of a Party, consulting on any matters arising under this Chapter.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 Article 6.9: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utomotive good** means all forms of motor vehicles, systems, and parts thereof falling under Chapters 40, 84, 85, 87, and 94 of the Harmonized System (HS), except the following goods:

- (a) tractors (in HS 8701.10, 8701.20, 8709.11, 8709.19, and 8709.90);
- (b) snow mobiles and golf carts (in HS 8703.10); and
- (c) construction machinery (in HS 8413.40, 8425.11, 8425.19, 8425.31, 8425.39, 8425.41, 8425.42, 8425.49, 8426.11, 8426.12, 8426.19, 8426.20, 8426.30, 8426.41, 8426.49, 8426.91, 8426.99, 8427.20, 8428.10, 8428.20, 8428.31, 8428.32, 8428.33, 8428.39, 8428.40, 8428.60, 8428.90, 8429.11, 8429.19, 8429.20, 8429.30, 8429.40, 8429.51, 8429.52, 8429.59, 8430.10, 8430.20, 8430.31, 8430.39, 8430.41, 8430.49, 8430.50, 8430.61, 8430.69, 8431.10, 8431.31, 8431.39, 8431.41, 8431.42, 8431.43, 8431.49, 8474.10, 8474.20, 8474.31, 8474.32, 8474.39, 8474.80, 8474.90, 8479.10, 8701.30, 8704.10, 8705.10, 8705.20, 8705.40, and 8705.90);

**Good Regulatory Practices** means Good Regulatory Practices as defined by the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Performance* (2005); and

**standards-related measures** means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s defined by the TBT Agreement.

**Annex 6-A**

List referred to in Article 6.7.2(a)<sup>13</sup>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KMVSS
Occupant crash protection	Frontal	FMVSS 208	KMVSS Article 102 para. 1, 3
	Side	FMVSS 214	KMVSS Article 102 para. 1
Steering control rearward displacement		FMVSS 204	KMVSS Article 89 para. 1 item 2
Fuel leakage in collision		FMVSS 301	KMVSS Article 91 para. 1
Windshield mounting		FMVSS 212	KMVSS Article 105 para. 2 items 1, 2
Windshield zone intrusion		FMVSS 219	KMVSS Article 105 para. 2 item 3
Seating systems		FMVSS 207	KMVSS Article 97
Head restraints		FMVSS 202a	KMVSS Articles 26, 99
Door lock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FMVSS 206	KMVSS Article 104 para. 2
Occupant protection in interior impact (instrument panel, seat back, armrest, sun visor)		FMVSS 201	KMVSS Articles 88, 98, 100, 101
Bumper impact		49 CFR Part 581	KMVSS Article 93
Inside rear view mirror impact		FMVSS 111	KMVSS Article 108
Impact protection for the driver from the steering control system		FMVSS 203	KMVSS Article 89 para. 1 item 1

<sup>13</su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for some subjects listed in this Table the applicable standard or regulation of a Party does not mandate installation of a part, but regulates requirements for that part if it is optionally installed on a motor vehicle. For those subjects, a Party may only require installation of the relevant part if doing so qualifies under the criteria established in Article 6.7.4(c) or (d).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KMVSS
Side door strength	FMVSS 214	KMVSS Article 104 para. 1
Roof crush resistance	FMVSS 216a	KMVSS Article 92
Seat belt assembly anchorages	FMVSS 210	KMVSS Article 27 para. 1, 2, Article 103 para. 1, 2, 3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KMVSS
Lighting and signalling system	Installation	FMVSS 108	KMVSS Articles 38, 39, 40, 41, 42, 43, 44, 45, 47
	Head lamp	FMVSS 108 <sup>14</sup>	KMVSS Article 38, Article 48 para. 3, Article 106 item 1
	Fog Lamp <sup>15, 16</sup>	SAE J583 (September 2005 Edition) and SAE J1319 (May 2005 Edition), or subsequent amendments to those standards	KMVSS Article 38-2, Article 106 item 2
	Backup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39, Article 106 item 3
	Clearance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40, Article 106 item 4
	Registration plate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41, Article 106 item 5
	Tail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42, Article 106 item 6
	Stop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43 para. 1, Article 106 item 7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FMVSS 108	KMVSS Article 43 para. 2, 3, Article 106 item 8

<sup>14</sup> For a motor vehicle fitted with either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head lamps or LED (Light Emitting Diode) head lamps, this equivalency only applies if the vehicle has an auto leveling device installed that enables the vehicle to automatically adjust the vertical optical axis of its head lamp.

<sup>15</sup> For a motor vehicle fitted with fog lamps, this equivalency only applies for those vehicles that conform to the applicable SAE standard.

<sup>16</sup> For a motor vehicle fitted with either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front fog lamps or LED (Light Emitting Diode) front fog lamps, this equivalency only applies if the vehicle has an auto leveling device installed that enables the vehicle to automatically adjust the vertical optical axis of its front fog lamp.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KMVSS
	Turn signal	FMVSS 108 <sup>17</sup>	KMVSS Article 44, Article 106 item 9
	Auxiliary turn signal	FMVSS 108	KMVSS Article 44, Article 106 item 10
	Signal lamp of bus transporting children	FMVSS 108	KMVSS Article 48 para. 4, Article 106 item 11
Driver's visibility		FMVSS 111	KMVSS Article 50 para. 1, 2, Article 94 para. 1
Engine power		ISO 1585 <sup>18</sup>	KMVSS Article 111
Device for securing driver's visibility	Windshield wiping system	FMVSS 104	KMVSS Article 51 para. 2, Article 109 item 1
	Defrosting system	FMVSS 103	KMVSS Article 109 item 2
	Defogging system	FMVSS 103	KMVSS Article 109 item 3
	Windshield washing system	FMVSS 104	KMVSS Article 109 item 4
Accelerator control		FMVSS 124	KMVSS Article 87
Fuel economy		40 CFR Part 600	KMVSS Article 111-4 para 1, para 2 item 1
Passenger car brake		FMVSS 135	KMVSS Article 15 para 1, 3, 8, Article 90 item 1
Rapid loss of inflation pressure		FMVSS 110	KMVSS Article 88-2
Flammability of interior materials		FMVSS 302	KMVSS Article 95
Interior compartment door		FMVSS 201	KMVSS Article 111-3

<sup>17</sup> This equivalency only applies for motor vehicles fitted with yellow or amber turn signals.

<sup>18</sup> This equivalency only appli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i.e. it does not include traction motors).

Annex 6-B

Table 1

List referred to in Article 6.7.3(a)<sup>19, 20</sup>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CMVSS
Controls and Displays	FMVSS 101	CMVSS 101
Windshield Defrost and Defog	FMVSS 103	CMVSS 103
Windshield Wiping and Wash	FMVSS 104	CMVSS 104
Hydraulic and Electric Brake Systems	FMVSS 105	CMVSS 105
Brake Hoses	FMVSS 106	CMVSS 106
Lighting System and Retro-reflective devices	FMVSS 108	CMVSS 108
Passenger Car Tires	FMVSS 109	CMVSS 109
Tire Selection and Rims	FMVSS 110	CMVSS 110
Hood Latch Systems	FMVSS 113	CMVSS 113
Theft Protection and Rollaway prevention	FMVSS 114	CMVSS 114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49CFR565	CMVSS 115
Motor Vehicle Brake Fluids	FMVSS 116	CMVSS 116
Power-operated Windows, Partition and Roof Panel	FMVSS 118	CMVSS 118

<sup>19</su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for some subjects listed in this Table the applicable standard or regulation of a Party does not mandate installation of a part, but regulates requirements for that part if it is optionally installed on a motor vehicle. For those subjects, a Party may only require installation of the relevant part if doing so qualifies under the criteria established in Article 6.7.4(c) or (d).

<sup>20</su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in this Annex are incorporated, in whole or in part, with the adaptations needed, into the corresponding numbered sections of Schedule IV of the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Regulations* and *Motor Vehicle Tire Safety Regulations*, which form the CMVSS, or other applicable provisions, as amended.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CMVSS
Systems		
Certain Tires, other than Passenger Car Tires	FMVSS 119	CMVSS 119
Tire Selection and Rims for Vehicles other than Passenger Cars	FMVSS 120	CMVSS 120
Air Brake Systems	FMVSS 121	CMVSS 121
Motorcycle Brake Systems	FMVSS 122	CMVSS 122
Motorcycle Controls and Displays	FMVSS 123	CMVSS 123
Accelerator Control Systems	FMVSS 124	CMVSS 124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FMVSS 126	CMVSS 126
School Bus Pedestrian Safety Devices	FMVSS 131	CMVSS 131
Light Vehicle Brake Systems	FMVSS 135	CMVSS 135
New Radial Ply Tires for Light Vehicles	FMVSS 139	CMVSS 139
Occupant Protection	FMVSS 201	CMVSS 201
Head Restraints	FMVSS 202	CMVSS 202
Driver Impact Protection	FMVSS 203	CMVSS 203
Steering Column Rearward Displacement	FMVSS 204	CMVSS 204
Glazing Materials	FMVSS 205	CMVSS 205
Door Lock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FMVSS 206	CMVSS 206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CMVSS
Anchorage of Seats	FMVSS 207	CMVSS 207
Occupant Protection Frontal Impact	FMVSS 208	CMVSS 208
Seat Belt Assemblies	FMVSS 209	CMVSS 209
Windshield Mounting	FMVSS 212	CMVSS 212
Bumpers (Passenger Cars)	49CFR581	CMVSS 215
Roof Crush Resistance	FMVSS 216	CMVSS 216
Windshield Zone Intrusion	FMVSS 219	CMVSS 219
Rollover Protection	FMVSS 220	CMVSS 220
Fuel System Integrity	FMVSS 301	CMVSS 301
Flammability of Interior Materials	FMVSS 302	CMVSS 302

Subject	FMVSS, and other standards or regulations	Corresponding CMVSS
Electrolyte Spillage and Electrical Shock Protection	FMVSS 305	CMVSS 305
Interior Trunk Release	FMVSS 401	CMVSS 401
Low Speed Vehicles	FMVSS 500	CMVSS 500

Table 2

List referred to in Article 6.7.3(b)<sup>15</sup>

Subject	UN Regulations	Corresponding CMVSS
Headlamps	UN-R 98	CMVSS 108
Headlamps	UN-R 112	CMVSS 108
Headlamps	UN-R 113	CMVSS 108
Passenger vehicle noise	UN-R 51	CMVSS 1106
Motorcycle noise	UN-R 41	CMVSS 1106
Door latche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UN-R 11	CMVSS 206
Immobilizer	UN-R 116 (immobilizer only)	CMVSS 114
Front and rear protective devices (Bumpers)	UN-R 42	CMVSS 215
Motorcycle brakes	UN-R 78	CMVSS 122
Headlamps	UN-R 8	CMVSS 108
Headlamps	UN-R 20	CMVSS 108
Headlamps	UN-R 31	CMVSS 108
Motorcycle Headlamps	UN-R 57	CMVSS 108
Motorcycle Headlamps	UN-R 72	CMVSS 108

<sup>15</su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UN regulations in this Annex are incorporated, in whole or in part, with the adaptations needed, into the corresponding numbered sections of Schedules IV and V.1 of the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Regulations*, which form the CMVSS, or other applicable provisions, as amended.

September 22, 2014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The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shall be coordinated by:

- (a) for Korea,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nd
- (b) for Canada,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Mr.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Dear Mr. Kyong-lim Choi,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negotiations relating to the Standards-Related Measures Chapter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During the negotiations, our delegations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a technical *ad hoc* working group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related to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We agreed that, pursuant to Article 6.5.2(g) (Cooperation in Sector-Specific Initiatives), a technical *ad hoc* working group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related to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will be established by Canada and Korea,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ithout delay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facilitate trade through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in this sector.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ut that 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regarding this letter.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confirmation by reply letter that the Korean delegation shares the above understanding.

Sincerely,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September 22, 2014

Mr.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Ottawa, Canada

Dear Mr. Ian Burne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September 22, 2014, with regards to the Standards-Related Measures Chapter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 hereby confirm that the Korean delegation shares the understanding with the Canadian delegation that, pursuant to Article 6.5.2(g) (Cooperation in Sector-Specific Initiatives), a technical *ad hoc* working group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related to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will be established by Canada and Korea,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ithout delay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facilitate trade through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in this sector.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ut that 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regarding this letter.

Sincerely,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SEVEN**  
**TRADE REMEDIES**

**Section A – Safeguard Measures**

**Article 7.1: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any successor agreements.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measures taken pursuant to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except that a Party taking a global safeguard measure may exclude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from such measure if those imports are not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2. A Party shall not apply or maintain, with respect to the same good, at the same time:

- (a)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 (b) a measure pursuant to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rticle 7.2: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Subject to paragraph 2, if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e good from that Party alone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 is being imported ma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remedy or prevent the injury: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 rate of customs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n the good;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the safeguard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 (c)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apply to a proceeding that may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1:

- (a) A Party shall, without delay, deliver to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and a request for consultations regarding, the initiation of a proceeding that could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against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completes any such investigation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proceeding. A Party shall apply any such safeguard measure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proceeding,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 (c) A Party shall not maintain a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two years if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and Article 7.3, that the safeguard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The total period of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including the period of initial application and any extension thereof, shall not exceed four years; and

- (d) On the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at Party's Schedule to Annex 2-D (Tariff Elimination) for the staged elimination of the customs duty,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safeguard measure.

- 3. (a) No later than 30 days after a Party applies a safeguard measure, that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consult regarding appropriate trade liberalis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The Party applying the safeguard meas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ying Party") shall provide such compensation as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 (b)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appli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with respect to originating goods of the applying Party that have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safeguard measure.
- (c) The applying Party's oblig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a) and the other Party's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b)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e safeguard measure terminates.

4. The right of suspen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24 months during which a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safeguard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Article 7.3: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1. In critical circumstances, if delay would cause damage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apply a safeguard measure on a provisional basis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by its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have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ose imports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2. Before a Party's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may mak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Party shall publish a public notice in its official journal setting forth how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importers and exporters, may obtain a non-confidential copy of the application requesting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and shall provide interested parties with at least 20 days after the date the Party publishes the notice to submit evidence and view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A Party shall not apply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until at least 45 days after the date its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initiates an investigation.

3.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which time the applying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7.5.4.

4. The applying Party shall promptly refund any customs duty increases if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Article 7.5.4 does not result in a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7.2.1 are met.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described in Article 7.2.2(c).

#### **Article 7.4: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 safeguard measure with respect to a good may only be appli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or that good.

#### **Article 7.5: Administration of Safeguard Measur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governing all safeguard measures.

2. Each Party shall entrust determination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in safeguard measure proceedings to a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subject to review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to the extent provided by its domestic law.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s are not subject to modification, except by such review.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empowered under its domestic law to conduct those proceedings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that Party to fulfil its duties.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safeguard measur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4.

4. A Party may apply a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Party's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4.2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o this end, Articles 3 and 4.2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 **Article 7.6: Dispute Settlement in Safeguard Measures Matters**

A Party shall not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under Article 21.6 (Establishment of a Panel) regarding proposed safeguard measures.

### **Section B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 **Article 7.7: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a)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Parties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disputes regarding any matter relating to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shall be settled under the WTO Agreement.
- (b) Except for paragraphs 2 and 4,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impose rights or obligations on a Party with resp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measures. A Party shall not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 matter arising under this Article.<sup>21</sup>

#####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2. Upon receipt by a Party's competent authority of a properly documented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cation in respect of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nd befor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hat Party shall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of its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afford the other Party a meeting or other similar opportunity regarding the application, consistent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 *Lesser duty*

<sup>21</sup> Although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is not available with respect to paragraphs 2 and 4, the Parties affirm that those paragraphs create binding rights and obligations.

3. (a) The Parties recognise the desirability of providing for the possibility of imposing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that are less than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amount of subsidy.
- (b) In this regard:
- (i) Korea shall apply its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 (ii) Canada shall consider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s to whether imposing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would not be in the public interest. After considering this inform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may consider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amount of subsidy, or a lesser amount that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of Canada.

#### *Undertakings*

4. (a) After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initiates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at Party shall transmit to the other Party's embassy or competent authority written information regarding the Party's law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consideration by its authorities of an undertaking as described in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o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cluding the time frames for offering and concluding any such undertaking.
- (b) In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where a Party's authority has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or subsidisation and injury caused by that dumping or subsidisation, that Party shall afford due consideration, an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to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regarding proposed undertakings which, if accepted, may result in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imposition of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through the means provided for in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procedures.

### **Section C – Committee on Trade Remedies**

#### **Article 7.8: Committee on Trade Remedie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Trade Remedie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relevant agencies of each Party who have responsibility for trade remedies matters, including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issues.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which operates on the basis of consensus in respect of all matters, are to:
- (a) enhance each Party'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other's domestic trade remed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b) overse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ncluding compliance with Articles 7.7.2 and 7.7.4;
- (c) improv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gencies having responsibility for trade remedies matters;
- (d) provide a forum for the Parties to exchange information on issues relating to trade remedies matters;
- (e) establish and overse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rade remedy law for officials of both Parties; and
- (f) provide a forum for the Parties to discuss other relevant topic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 (i) international issues relating to trade remedies,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and
- (ii) practices by the Parties' competent authorities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facts available" and verification procedures.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may meet more frequently as agreed by the Parties.

#### **Section D – Definitions**

## Article 7.9: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means:

- (a) for Korea, the Korea Trade Commission; and
- (b) for Canada,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domestic industry** means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producers whose collective production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goods;

**safeguard measure** means a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7.2;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of a domestic industry;

**substantial cause** means a cause that is important and not less important than any other cause;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means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ending on the date that is the earliest of:

- (a) 10 years after the end of the tariff elimination period for that good; or
- (b) 15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CHAPTER EIGHT

### INVESTMENT

#### Section A – Investment

#### Article 8.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 (a)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 (b) covered investments; and
  - (c) with respect to Articles 8.8, 8.10, and 8.16, all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 (a)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or
  - (b) a non-governmental body of a Party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of the Party.

#### Article 8.2: Relation to Other Chapters

1. In the event of an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e other Chapter prevails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2. A requirement by a Party that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post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of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does not of itself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such cross-border supply of the service.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the posted bond or financial security to the extent that such bond or financial security is a covered investment.
3.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vered by Chapter Ten (Financial Services).

####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3. The treatment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means, with respect to a sub-national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sub-national government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 **Article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sup>22,23</sup>**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 **Article 8.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sup>24</sup>**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sup>22</sup>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accorded by a Party under this Article means, with respect to a sub-national government,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sub-national government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 non-party.

<sup>23</sup> For greater certainty,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does not encompas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uch as those in Section B of this Chapter that are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treaties or trade agreements.

<sup>24</sup> This Article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8-A.

acc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paragraph 1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3.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4.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a breach of this Article.

#### **Article 8.6: Compensation for Losses**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to covered investment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existing measures relating to subsidies or grant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8.3, but for Article 8.9.5(b).

#### **Article 8.7: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 A Party shall not require an enterprise of that Party, which is a covered investment, to appoint natural person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to senior management positions.

2. A Party may require that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 committee, of an enterprise of that Party, which is a covered investment, be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 does not materially impair the ability of the investor to exercise control over its investment.

####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1. A Party shall not,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r opera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mpose or enforce a requirement or enforce a commitment or undertaking<sup>25</sup>:

- (a) to export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goods or services;
-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 (c)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or services suppli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 (d) to relate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that investment;
-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those sales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 (f) to transfer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 (g) to supply exclusively from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goods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the services that it supplies to a specific regional market or to the world market.

2. A measure that requires an investment to use a technology to meet generally applicable health, safety, or environmental requirements is not to be construed to b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f).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s 8.3 and 8.4 apply to the measure.

3. A Party shall not make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r opera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conditional on compliance with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a)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 (b)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sup>25</sup> For greater certainty, a condition for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pursuant to paragraph 3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 (c) to relate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that investment; or
- (d)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those sales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4. Paragraph 3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mak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conditional on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sup>26</sup>

5. Paragraph 1(f) does not apply:

- (a) if a Party authorises us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TRIPS Agreement, or to measures requiring the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and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9 of the TRIPS Agreement; or
- (b) if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by a court,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mpetition authority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under the Party's competition laws.<sup>27</sup>

6. The provisions of:

- (a) paragraphs 1(b), (c), (f) and (g), and 3(a) and (b) do not apply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goods or services with respect to export promotion and foreign aid programs;
- (b) paragraphs 1(b), (c), (f) and (g), and 3(a) and (b) do not apply to procurement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and
- (c) paragraphs 3(a) and (b) do not apply to requirements imposed by an importing Party relating to the content of goods necessary to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s or preferential quotas.

<sup>26</sup>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r opera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from imposing or enforcing a requirement or enforcing a commitment or undertaking to locate production, train or employ workers, or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ctivity is consistent with paragraph 1(f).

<sup>27</sup>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patent does not necessarily confer market power.

7. Paragraphs 1 and 3 do not apply to a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other than those set out in those paragraphs.

8.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enforcement of a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if a Party did not impose or require the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ivate parties include designated monopolies or state enterprises, if such entities are not exercising delegated governmental authority.

#### Article 8.9: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8.3, 8.4, 8.7, and 8.8 do not apply to:

- (a) an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 (i) the 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
  - (ii) a sub-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sup>28</sup>; or
  - (iii) a local government of a Party<sup>29</sup>;
-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 (c)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iminish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with Articles 8.3, 8.4, 8.7 and 8.8,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2. Articles 8.3, 8.4, 8.7, and 8.8 do not apply to a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3. A Party shall not, under a measure adop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by reason of its nationality,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 investment existing at the time the measure becomes effective.

<sup>28</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ub-national government does not include local government.

<sup>29</sup> For Korea, local government means a local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4. Articles 8.3 and 8.4 do not apply to a measure that is an exception to, or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6 (National Treatmen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at Article.

5. Articles 8.3, 8.4, and 8.7 do not apply to:

- (a) procurement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or
-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 Article 8.10: Investment and Environment

1.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 measur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investment by relaxing domestic health, safety, or environmental measures. Accordingly, a Party should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measures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If a Party considers that the other Party has offered such an encouragement, that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avoiding any such encouragement.

#### Article 8.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sup>30</sup>

1. A Party shall not expropriate or nationalise a covered invest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measure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s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 (a) for a public purpose;
-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c)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 (d)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sup>30</sup>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 8.11.1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8-B.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d) shall:
- (a) be paid without delay;
  -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 (c) include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 (d)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that occurs as a result of prior knowledge of the intended expropriation;
  - (e) be fully realisable and freely transferable; and
  - (f) be payable in a freely usable or freely convertible currency.
3. The affected investor shall have the right under the law of the expropriating Party to a prompt review,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of that Party, of its case and of the valuation of its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rticle.
4.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compulsory licenses grant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TRIPS Agreement, or to th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d that the issuanc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is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 Article 8.12: Transfers

1. Each Party shall permit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Those transfers include:
- (a) contributions to capital, including the initial contribution;
  - (b) profits, dividends, interest, capital gains, royalty payments, management fees,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fees;
  - (c)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part of the covered investment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covered investment;
  - (d)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investor, or the covered investment, including payments made pursuant to a loan agreement;

- (e) payments made pursuant to Articles 8.6 and 8.11; and
- (f) payments arising out of a dispute.

2. Each Party shall permit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ransfers shall be made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transfer.
3. Each Party shall permit returns in kind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as authorised or specified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2, and 3, a Party may prevent a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domestic law relating to:
-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 (c) criminal or penal offences;
  - (d) financial reports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r
  - (e)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5. A Party shall not require its investors to transfer, or penalise its investors for failure to transfer the income, earnings, profits, or other amounts derived from, or attributable to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6. Paragraph 5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imposing a measure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domestic law relating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4(a) through (e).
7.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arty may restrict transfers of returns in kind in circumstances where it could otherwise restrict those transfers under this Agreement and as set out in paragraph 4.

**Article 8.13: Subrogation** If a Party or an agency of a Party makes a payment to one of its investors under a guarantee or a contract of insurance that it has entered into in respect of an investment, the other Party shall recognise the validity of the subrogation in favour of that Party or the agency of the Party to a right or title held

by the investor.

2. A Party or an agency of a Party which is subrogated to the rights of an inves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s entitled in all circumstances to the same rights as those of the investor in respect of the investment. These rights may be exercised by the Party or an agency of the Party, or by the investor if the Party or an agency of the Party so authorises.

#### **Article 8.14: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that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or to its investments.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that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der whose domestic law it is constituted or organised and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 **Article 8.15: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1. Article 8.3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that prescribes special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cluding a requirement that investments be legall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Party, provided that those formalities do not materially impair the protections afforded by a Party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2. Notwithstanding Articles 8.3 and 8.4, a Party may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r its investment in the Party's territory, to provide routine information concerning that investment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The Party shall protect such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from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investor or the investment. This paragraph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otherwise obtaining or disclosing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quitable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

#### **Article 8.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ach Party should encourage enterprises operating within its territory or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o voluntarily incorporate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ir practices and their internal policies, including statements of principle that are endorsed or supported by the Parties. These principles address issues such as labour, environment, human rights, community relations, and anti-corruption.

### **Section B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Article 8.17: Purpos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this Section establishes a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Article 8.18: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An investor of a Part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that the other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ther than Articles 8.10, 8.15, and 8.16 and that the investor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 **Article 8.19: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1.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that the other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ther than Articles 8.10, 8.15, and 8.16 and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2. If an investor makes a claim pursuant to this Article and the investor or a non-controlling investor in the enterprise makes a claim pursuant to Article 8.18 arising out of the same events that gave rise to the claim under this Article, and two or more of the claims are submitted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8.23, the claims should be heard together by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8.28, unless the Tribunal finds that the interests of a disputing party would be prejudiced as a result.

3. An investment shall not make a claim under this Section.

**Article 8.20: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1. The disputing investor shall deliver to the disputing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otice of Intent") at least 90 days before submitting the claim. The Notice of Intent must specify:

-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disputing investor and, if a claim is made under Article 8.19,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nterprise;
- (b)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any other relevant provisions;
- (c) the legal and the factual basis for the claim, including the measures at issue; and
- (d) the relief sought and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2. The disputing investor shall also deliver, with its Notice of Intent, evidence establishing that it is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Examples of evidence that might be relevant include a copy of a title to property, a deed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share certificates, and a joint venture agreement.

**Article 8.21: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disputing investor and the disputing Party shall initially seek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which may include the use of non-binding third-party procedures.

**Article 8.22: Conditions Precedent to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A disputing investor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8.18 only if:

- (a) the disputing investor consents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 (b) at leas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 (c) not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ing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alleged breach and knowledge that the disputing investor has incurred loss or damage thereby;
- (d) the disputing investor has delivered the Notice of Intent required under Article 8.20; and
- (e) the disputing investor and, if the claim is for loss or damage to an interest in an enterprise of the other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disputing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e enterprise, waive their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domestic law of any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8.18, except as set out in Annex 8-C.

2. A disputing investor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8.19 only if:

- (a) both the disputing investor and the enterprise consent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 (b) at leas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 (c) not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alleged breach and knowledge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thereby;
- (d) the disputing investor has delivered the Notice of Intent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8.20; and
- (e) both the disputing investor and the enterprise waive their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domestic law of any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8.19, except as set out in Annex 8-C.

3. A consent and waiver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delivered to the disputing Party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4. A waiver from the enterprise under paragraph 1(e) or 2(e) shall not be required only if a disputing Party has deprived a disputing investor of control of the enterprise.

5. Failure to meet any of the conditions precedent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2, and 3 nullifies the consent of the Parties given in Article 8.24.

#### **Article 8.23: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Annex 8-C, a disputing investor who meets the conditions precedent provided for in Article 8.22 may submit the claim to arbitration:

- (a) under the ICSID Convention, if both Parties are party to the Convention;
- (b)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f only one Party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 (c)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 (d) if the disputing parties agre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unde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2.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govern the arbitration unless they are modified by this Section.

#### **Article 8.24: Consent to Arbitration**

1. Each Part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2. The consent given in paragraph 1 and the submission by a disputing investor of a claim to arbitration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 of:

- (a) Chapter II of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f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 (b) Article II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an agreement in writing.

#### **Article 8.25: Arbitrators**

1. Except in respect of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8.28, and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Tribunal shall be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one arbitrator appointed by each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third, who shall be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2. Arbitrators must:

- (a)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s, 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 (b)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or the disputing investor.

3. The disputing parties should agree on the arbitrators' remuneration. If the disputing parties do not agree on such remuneration before the Tribunal is constituted, the prevailing ICSID rate for arbitrators applies.

#### **Article 8.26: Constitution of a Tribunal by the Secretary-General**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appointing authority for an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f a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or the disputing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a presiding arbitrator.

2. If a Tribunal, other than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8.28, is not co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at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Secretary-General, at the request of either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he presiding arbitr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 **Article 8.27: Agreement to Appointment of Arbitrator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9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7 of Schedule C to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nd without prejudice to an objection to an arbitrator based on a ground other than nationality:

- (a) the disputing Party agrees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 (b) a disputing investor referred to in Article 8.18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if the disputing investor agrees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nd
- (c) a disputing investor referred to in Article 8.19.1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if the disputing investor and the enterprise

agree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 **Article 8.28: Consolidation**

1.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shall conduct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ose Rul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2. I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s satisfied that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8.23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the Tribunal may, in the interests of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laims, and after hearing the disputing parties, by order:

- (a)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or
- (b)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one or more of the claims, the determination of which it believes would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others.

3. A disputing party that seeks an order under paragraph 2 shall request that the Secretary-General establish a Tribunal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 (a) the name of the disputing Party or disputing investors against which the order is sought;
-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 (c) the grounds for the order sought.

4. The disputing party shall deliver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disputing Party or disputing investors against which the order is sought.

5. The Secretary-General shall,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establish a Tribunal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from the ICSID Panel of Arbitrators. To the extent arbitrators are not available from that Panel, appointments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General.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one member who is a national of the disputing Party, one member who is a national of the Party of the disputing investors and a presiding arbitrator, who is not a national of either Party.

6. If a Tribunal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rticle, a disputing investor that has submitted a claim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8.23 and that has not been named in a

request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Tribunal that it be included in an order made pursuant to paragraph 2,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disputing investor;
-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 (c) the grounds for the order sought.

7. A disputing investor referred to in paragraph 6 shall deliver a copy of its request to the disputing parties named in a request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8.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8.23 does not have jurisdiction to decide a claim, or a part of a claim, over which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rticle has assumed jurisdiction.

9. On the application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rticle, pending its decision pursuant to paragraph 2, may order that the proceedings of a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8.23 be stayed, unless the latter Tribunal has already adjourned its proceedings.

#### **Article 8.29: Notice to the Non-Disputing Party**

A disputing Party shall deliver to the non-disputing Party a copy of the Notice of Intent and other documents, such as the Notice of Arbitration and the Statement of Claim,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at those documents are delivered to the disputing Party.

#### **Article 8.30: Documents**

1. The non-disputing Party is entitled, at its cost, to receive from the disputing Party:

- (a) a copy of the evidence that has been tendered to the Tribunal;
- (b) copies of all pleadings filed in the arbitration; and
- (c) copies of the written arguments of the disputing parties.

2. The non-disputing Party receiving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reat the information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treats them.

**Article 8.31: Participation by the Non-Disputing Party**

1. On written notice to the disputing parties, the non-disputing Party may make oral or written submissions to a Tribunal on a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Upon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non-disputing Party shall submit its oral submission in writing.
2. The non-disputing Party shall treat the information it receives at hearings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treats them.

**Article 8.32: Place of Arbitration**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a Tribunal shall hold an arbitration in the territory of a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selected in accordance with:
  - (a)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f the arbitration is under those Rules or the ICSID Convention; or
  - (b)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f the arbitration is under those Rule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determine a place for meetings and hearings, other than the legal place of arbitration. In doing so, the Tribunal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its convenience for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the loc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proximity of the evidence.

**Article 8.33: Language of Proceeding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cluding hearings, decisions, and awards, shall be:
  - (a) Korean and English if Korea is a disputing Party; and
  - (b) French and English if Canada is a disputing Party.
2. Communications, submissions, witness statements and documentary evidence can be submitted in either one of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without a translation.

**Article 8.34: Preliminary Objections to Jurisdiction or Admissibility**

If issues relating to jurisdiction or admissibility are raised as preliminary objections, the Tribunal shall, whenever possible, decide the matter before proceeding to the merits.

**Article 8.35: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1. Subject to paragraphs 2, 3, and 4, the disputing Party shall, after receiving the following documents, promptly transmit them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 (a) the Notice of Intent;
  - (b) the Notice of Arbitration;
  - (c) pleadings, memorials, and briefs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a disputing party and any written submission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s 8.28, 8.31, and 8.36;
  - (d) minutes or transcripts of hearings of the Tribunal, if available; and
  - (e) orders, awards, and decisions of the Tribunal.
2. The Tribunal shall conduct hearings open to the public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ppropriate logistical arrangements. However, a disputing party that intends to use information designated as protected information in a hearing shall advise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tect the information from disclosure.
3. This Section does not require a disputing Party to disclose protected information or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at it may withhol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2.2 (National Security) and 22.5 (Disclosure of Information).
4. Any protected information tha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shall be protected from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 (a) subject to subparagraph (d), the disputing parties or the Tribunal shall not disclose to the non-disputing Party or to the public any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disputing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clearly designates i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 (b) a disputing party claiming that certain information constitutes protected information shall clearly designate the information at the time i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 (c) a disputing party shall, at the time it submits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also submit a redacted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does not contain such protected information. Only the redacted version shall be provided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de public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d) the Tribunal shall decide an objection by a disputing part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such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signated, the disputing party that submitted the information may:
- (i) withdraw all or part of its submission containing such information; or
  - (ii) agree to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ith corrected desig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and subparagraph (c).

In either case, the other disputing party shall, if necessary,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hich either remove the information withdrawn under (i) by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or redesignate the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designation under (ii) of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and

- (e)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issuing a decision in writing regarding a determination by the Tribunal that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was not properly designated. If the Commission issues a decision within 60 days of such a request, it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the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Commission does not issue a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s determination shall remain in effect only if the non-disputing Party submits a written statement to the Commission within that period that it agrees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5. This Section does not require a disputing Party to withhold from the public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6. Each Party may share with officials of its respectiv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ll relevant unredacted documents in the course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but it shall ensure that those persons protec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ose documents.

**Article 8.36: Submissions by a Non-Disputing Party**

1. Any person of a Party, or a person with a significant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that wishes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with a Tribun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shall apply for leave from the Tribunal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n accordance with Annex 8-D. The applicant shall attach the submission to the application.

2. The applicant shall serve the application for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and its written submission on all disputing parties and the Tribunal.
3. The Tribunal shall set an appropriate date for the disputing parties to comment on the application for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4. In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 (a)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arbitration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 (b)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d
- (c) the non-disputing party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5.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 (a)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s;
- (b)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does not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a disputing party; and
- (c) disputing partie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6. After consulting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f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s granted, the Tribunal shall set an appropriate date for the disputing parties to respond in writing to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By that date, the non-disputing Party may, pursuant to Article 8.31, address any issues of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presented in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7. The Tribunal that grants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s not required to address the submission at any point in the arbitration, and the non-disputing party that files the submission is not entitled to make further submissions in the arbitration.

8.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public access to hearings and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8.35 govern access to hearings and documents by non-disputing parties that file applic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 **Article 8.37: Governing Law**

1.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shall decide the issues in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2. The Commission's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and an awar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at interpretation.

#### **Article 8.38: Interpretation of Annexes**

1. If the disputing Party asserts as a defence that the measure alleged to be a breach is within the scope of a reservation or exception set out in Annex I, Annex II or Annex III, the Tribunal shall, at the request of that disputing Party, request the Commission to interpret the issue. Within 60 days of delivery of the request, the Commission shall submit in writing its interpretation to the Tribunal.

2. Further to Article 8.37.2, the interpretation by the Commiss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s binding on the Tribunal. If the Commission fails to submit an interpretative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 **Article 8.39: Expert Report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ointment of other kinds of experts, if authorised by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the Tribunal,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disapprove, on its own initiative,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to report to it in writing on a factual issue concerning environmental, health, safety or other scientific matters raised by a disputing party in a proceeding,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 **Article 8.40: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Tribunal may orde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to preserve the rights of a disputing party, or to ensur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is made fully effective, including an order to preserve evidence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disputing party

or to protect the Tribunal's jurisdiction. The Tribunal shall not order attachment or enjoin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8.18 or 8.19.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order includes a recommendation.

#### **Article 8.41: Final Award**

1. If the Tribunal makes a final award against a disputing Party, the Tribunal may awar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only:
  - (a)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or
  - (b) restitution of property, in which case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the disputing Party may pay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in lieu of restitution.

The Tribunal may also award cost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2. Subject to paragraph 1, if a claim is made pursuant to Article 8.19.1:
  - (a) an award of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shall state that the monetary damages and interest are paid to the enterprise;
  - (b) an award of restitution of property shall provide that restitution be made to the enterprise; and
  - (c)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it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a right that a person may have in the relief under applicable domestic law.
3. The Tribunal shall not order a disputing Party to pay punitive damages.

#### **Article 8.42: Finalit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1.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does not have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and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case.
2. Subject to paragraph 3 and the applicable review procedure for an interim award, a disputing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an award without delay.
3. A disputing party shall not seek enforcement of a final award until:
  - (a)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made under the ICSID Convention:

- (i) 12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requested revision or annulment of the award; or
  - (ii) revision or annulment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or
- (b)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i) 9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commenced a proceeding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or
  - (ii) a court has dismissed or allowed an application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and there is no further appeal.

4.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in its territory.

5. If the disputing Party fails to abide by or comply with a final award, the Party of the disputing investor may refer the matter to a dispute settlement panel under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The Party of the disputing investor may seek the following in these proceedings:

- (a) a determination that the failure to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 (b) a recommendation that the disputing Party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6. A disputing investor may seek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New York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proceedings ar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5.

7. A claim that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s considered to arise out of a commercial relationship or transac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 of the New York Convention.

#### **Article 8.43: Procedural and Other Matters**

##### *Time when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1.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when:

- (a) the Request for Arbi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the ICSID Conven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 (b) the Notice of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Schedule C of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r
- (c) the Notice of Arbitration give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s received by the disputing Party.

##### *Service of Documents*

2. Notices and other documents shall be delivered to a Party at the place named for that Party below:

- (a) for Korea:
  -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 Building #1, Government Complex-Gwacheon
  -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 Republic of Korea; and
- (b) for Canada:
  - Office of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nada
  - Justice Building
  - 284 Wellington Street
  - Ottawa, Ontario
  - K1A 0H8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 *Receipts under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s*

3. In an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disputing Party shall not assert, as a defence, counterclaim, right of setoff, or otherwise, that the disputing investor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pursuant to an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its alleged damages.

**Article 8.44: Exclusions**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of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Annex 8-F.

**Section C – Definitions****Article 8.4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otherwise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a Party's domestic law;

**covered investment**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exist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established, acquired, or expanded thereafter;

**disputing investor** means an investor that makes a claim under Section B;

**disputing Party** means a Party against which a claim is made under Section B;

**disputing party** means the disputing investor or the disputing Party;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domestic law of a Party, and a branch of that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freely usable currency** means "freely usable currency" a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er its Articles of Agreement and amendments thereto;

**ICSID**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rademark rights, rights in geographical indications, rights in the industrial designs, patent rights, rights in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nd rights in relation to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investment** means any asset that an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cluding such characteristics 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the assumption of risk, and a certain duration. Forms that an investment may take include:

- (a) an enterprise;
-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sup>31</sup>;
-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and other similar contracts;
-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 (g)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s<sup>32</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laim to payment that arises solely from the commercial sale of goods and services is not an investment, unless it is a lo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means an investment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of that Party;

**investor of a Party**<sup>33</sup> means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thereof, or a national or enterprise of a Party that seek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rovided however that:

- (a) a natural person who is a dual citizen is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citizenship; and
- (b)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f a Party and a permanent resident of the other Party is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Party of which that natural person is a citizen;

<sup>31</sup> Some forms of debt, such as bonds, debentures, and long-term notes, are more likely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while other forms of debt are less likely to have such characteristics.

<sup>32</sup>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sup>33</sup> For greater certainty, it is understood that an investor of a Party "seeks" to mak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ly if the investor has taken concrete steps necessary to make said investment, such as when the invest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it or license authoris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nd as specifically referenced in Article 8.5 results from a general and consistent practice of States that they follow from a sense of legal obligation. With regard to Article 8.5,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refers to al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at protect the investments of aliens.

**investor of a non-party** means an investor other than an investor of a Party, that seek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on 10 June 1958;

**non-dispu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under Section B;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ICSID;

**transfers** include international payments;

**Tribunal** means an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8.23 or Article 8.28;

**UNCITRAL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5 December 1976.

## Annex 8-B

### Expropriation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 (a) indirect expropriation results from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that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 (b)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an investment and eliminates all or nearly all of its value;
- (c)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sole fact that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sup>34</sup>; and
  -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Relevant considerations could include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the particular investor or investment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and
- (d)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are so severe in the light of their purpose that they cannot be reasonably viewed as having been adopted and applied in good faith,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of a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sup>34</sup>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re reasonable depends in part, on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For example, an investor's expectations that regulations will not change are less likely to be reasonable in a heavily regulated sector than in a less heavily regulated sector.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sation through, for example,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sup>35</sup>.

<sup>35</sup> For greater certainty, the list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in subparagraph (d) is not exhaustive.

Annex 8-C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An investor of Canada shall not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a claim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 (a) on the investor's own behalf pursuant to Article 8.18; or
- (b)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pursuant to Article 8.19,

if the investor or the enterprise, respectively, has alleged that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2. If an investor of Canada or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an investor of Canada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kes an allegation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that election is final and that investor shall not thereafter allege the same breach in an arbitration under Section B.

3. Paragraphs 1 and 2 do not preclude an investor of Canada from initiating an action that seeks interim injunctive relief and does not involve the payment of monetary damag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provided that the action is brought for the sole purpose of preserving the disputing investor's or the enterprise's rights and interests during the pendency of the arbitration.

4. An investor of Korea may initiate or continue proceedings for injunctive, declaratory or other extraordinary relief, not involving the payment of damag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under the domestic law of Canada.

Annex 8-D

Submissions by Non-Disputing Parties

1. An application for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must:

- (a) be made in writing, and be dated and signed by the person filing the application, and include the address and other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 (b) not exceed five typed pages;
- (c) describe the applicant, including, if relevant, its membership and legal status (for example, company, trade association or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its general objectives, the nature of its activities, and any parent organisation (including any organisation tha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the applicant);
- (d) disclose whether the applicant has an affiliation, direct or indirect, with a disputing party;
- (e) identify any government, person or organisation that has provided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to prepare the submission;
- (f) specify the nature of the interest that the applicant has in the arbitration;
- (g) identify the specific issues of fact or law in the arbitration that the applicant has addressed in its written submission;
- (h) explain, by referring to the factors specified in Article 8.36.4, why the Tribunal should accept the submission; and
- (i) be made in a language of the arbitration.

2. The submission filed by a non-disputing party must:

- (a) be dated and signed by the person filing the submission;
- (b) be concise, and not exceed 20 typed pages, including any appendices;
- (c) set out a precise statement supporting the applicant's position on the issues; and
- (d) only address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nex 8-E**

**Possibility of a Bilateral Appellate Mechanism**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consider whether to establish a bilateral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to review awards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8.42 in arbitrations commenced after they establish the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Annex 8-F**

**Exclusions from Dispute Settlement**

A decision by Canada following a review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to permit an investment that is subject to review, is not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Section B of this Chapter or of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 CHAPTER NINE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rticle 9.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by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including measures affecting:

- (a)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and delivery of a service;
- (b) the purchase or use of, or payment for, a service;
- (c) the access to and use of distribution, transport, o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a service;
- (d) the presence in its territory of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and
- (e) the provision of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for the provision of a servic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 (a)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or
- (b) a non-governmental body of a Party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of the Party.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s 9.4 and 9.7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by a covered investment<sup>36</sup> as defined in Article 8.45 (Definitions).

4.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 (a)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10.20 (Definitions);

<sup>36</sup> For greater certaint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4 and 9.7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by a covered investment is limited by the scope and coverage specified in this Article, subject to any applicable non-conforming measures and exceptions.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including this paragraph, is not subject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b) air service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services, whether scheduled or non-scheduled, and related services in support of air services, other than:

- (i)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 (ii) the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or
- (iii) computer reservation system (CRS) services;

(c) procurement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or

(d)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or insurance.

5.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impose an obligation on a Party with respect to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seeking access to its employment market, or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employed on a permanent basis in its territory, and does not confer that national a right with respect to that access or employment.

6.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in a Party's territory.

#### Article 9.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suppliers.

2. The treatment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sub-national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sub-national government to service supplie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 Article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 Article 9.4: Market Access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eithe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or on the basis of a sub-national government, a measure that:

- (a) imposes limitations on:
  - (i)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ii) the total value of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iii)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or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sup>37</sup>; or
  - (iv)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service sector or that a service supplier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a specific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or
- (b) restricts or requires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service supplier may supply a service.

#### Article 9.5: Local Presence

A Party shall not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 Article 9.6: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9.2 through 9.5 do not apply to:
  - (a) an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 (i) the 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

<sup>37</sup> This sub-subparagraph does not apply to measures of a Party that limit inpu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 (ii) a sub-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sup>38</sup>; or

- (iii) a local government of a Party<sup>39</sup>;

-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 (c)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s 9.2 through 9.5.

2. Articles 9.2 through 9.5 do not apply to a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3. Annex 9-A sets out specific commitments with regard to consultation regarding a non-conforming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a sub-national government.

#### Article 9.7: Domestic Regulation

1. If a Party requires authoris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covered by this Chapter, the Party, through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nsidered complete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inform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the Party, through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2. The Parties note their mutual obligations related to domestic regulation in Article VI:4 of the GATS and affirm their commitment respecting the development of any necessary disciplines pursuant to Article VI:4 of the GATS. To the extent that any such disciplines are adopted by the WTO Members, the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review them jointly with a view to determining whether this Article needs to be supplemented.

#### Article 9.8: Recognition

1. For the purposes of fulfilment, in whole or in part, of its standards or criteria for the authorisation,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service suppliers, and subject to the

<sup>38</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ub-national government does not include local government.

<sup>39</sup> For Korea, local government means a local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requirements of paragraph 5, a Party may recognise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s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a particular country. Such recognition, which may be achieved through harmonisation or otherwise, may be based 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country concerned or may be accorded autonomously.

2. If a Party recognises, autonomously or by agreement or arrangement,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s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Article 9.3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the Party to accord such recognition to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s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including appropriate descriptions, concerning a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that the Party or relevant bodies in its territory have concluded.

4. A Party that is a party to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ether existing or future,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if the other Party is interested, to negotiate accession to such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r to negotiate a comparable one with that other Party. If a Party accords recognition autonomously, it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demonstrate that education, experience, licenses, or certifications obtained or requirements met in that other Party's territory should be recognised.

5. A Party shall not accord recognition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application of its standards or criteria for the authorisation,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service supplie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6.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relevant bodie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a) exchange information and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relevant bodies of the other Party to develop an agreement or arrang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 (b) meet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develop an agreement or arrang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sectors set out in Annex 9-B;
- (c) be guided by Annex 9-C for the negotiations of such agreement or arrangement; and

- (d) provide notificat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r arrangement to the Commission.

7. On receipt of a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d),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Based on the Commission's review,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if appropriate, implement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a mutually agreed period of time.

#### Article 9.9: Temporary Licensing

1. If the Parties agree, each Party shall encourage the relevant bodies in its territory to develop procedures for the temporary licensing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2. Notwithstanding Article 9.8,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relevant bodie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a) exchange information and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relevant bodies of the other Party to develop procedures for the temporary licensing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 (b) meet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develop procedur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for the sectors set out in Annex 9-B;
- (c) be guided by Annex 9-C for the negotiations concerning procedur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 (d) provide notification to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ny such procedures by the relevant bodies in the Parties' respective territories.

3. On receipt of a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d),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procedur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Based on the Commission's review,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if appropriate, implement the procedures within a mutually agreed period of time.

4. If a relevant body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mplements procedures for the temporary licensing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the Party shall notify the existence of such procedures promptly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e informa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were agreed up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s.

#### Article 9.10: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that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rticle 9.11: Payments and Transfers

1. Each Party shall permit all payments and transfers relating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permit such payments and transfers relating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payment or transf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Party may prevent or delay a payment or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 relating to:

-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 (c)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 (d) criminal or penal offences; or
-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 Article 9.1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means such activities when undertaken on an aircraft or a part thereof while it is withdrawn from service and does not include so-called line maintenanc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CRS) services** means services supplied by computerised system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air carriers' schedules, availability, fares, and fare rules, through which reservations can be made or tickets may be issue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means the supply of a service:

- (a)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 (c)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supply of a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as defined in Article 8.45 (Definitions);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domestic law of a Party, and a branch of that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professional services** means services, the supply of which requires specialised post-secondary education, or equivalent training or experience or examination, and for which the right to practice is granted or restricted by a Party, but does not include services supplied by tradespersons or crew members of a vessel or aircraft;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means opportunities for the air carrier concerned to sell and market freely its air transport services including all aspects of marketing such as market research,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but does not include the pric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nor the applicable conditions;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means a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 and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that Party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service<sup>40</sup>.

**Annex 9-A**

**Consultations Regarding Non-Conforming Measures  
Maintained by a Sub-National Government**

If a Party considers that an Annex I non-conforming measure applied by a sub-national government of the other Party creates a material impediment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Party, an investor of the Party, or a covered investmen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regard to that measure. If a Party considers that an Annex I non-conforming measure applied by a sub-national government of the other Party prevents the development of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or prevents a service supplier of a Party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such an agreement or arrangement, it may also request consultations with regard to that measure.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exchanging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measure and to considering whether further step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sup>40</sup>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9.2 and 9.3, the treatment that a Party is required to accord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se Articles extends to the relevant services supplied by that service supplier.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9.2 and 9.3, "service suppliers" has the same meaning as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s used in Articles XVII and II of the GATS, respectively.

**Annex 9-B**

**Sectors to be Develope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1. Engineering Services
2. Architectural Services
3. Veterinary Services

**Annex 9-C**

**Guidelines f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for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

*Introductory Notes*

This Annex provides practical guidance for governments, negotiating entities or other entities entering into mutual recognition negotiations for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 These guidelines are non-binding and are intended to be used by the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They do not modify or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objective of these guidelines is to facilitate the negotiation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RAs”).

The examples listed under this Annex are provided by way of illustration. The listing of these examples is indicative and is intended neither to be exhaustive, nor as an endorsement of the application of such measures by the Parties.

**Section A – Conduct of Negotiations and Relevant Obligations**

*Introductory Note*

With reference to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rticle 9.8, this Section sets out elements considered useful in the discharge of these obligations.

*Opening of Negotiations*

1. The information supplied by a Party to the Commissio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 (a) the intent to enter into negotiations;
  - (b) the entities involved in discussions (for example, governments, national organisations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 or institutes which have authority, statutory or otherwise, to enter into such negotiations);

- (c) a contact point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 (d)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s (specific activity covered); and
- (e) the expected time of the start of negotiations and an indicative date for the expression of interest by third parties.

#### *Results*

2. Upon the conclusion of an MRA by a Party, the information it should supply to the Commission includes:

- (a) the content of a new MRA; or
- (b) the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an existing MRA.

#### *Follow-up Actions*

3. Follow-up actions by a Party supply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include ensuring that:

- (a) the conduct of negotiations and the MRA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in particular, Article 9.8; and
- (b) the Party adopts measures and undertakes actions require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MRA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7.

#### *Single Negotiating Entity*

4. Where no single negotiating entity exists,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one.

### **Section B – Form and Content of MRAs**

#### *Introductory Note*

This Section sets out various issues that may be addressed in MRA negotiations and, if so agreed during the negotiations, included in the MRA. It includes some basic ideas on what a Party might require of foreign professional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an MRA.

#### *Participants*

5. The MRA should identify clearly:

- (a) the parties to the MRA (for example, governments, national profess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es);
- (b)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isations other than the parties to the MRA, if any, and their position in relation to the MRA; and
- (c) the status and area of competence of each party to the MRA.

#### *Purpose of the MRA*

6. The purpose of the MRA should be clearly stated.

#### *Scope of the MRA*

7. The MRA should set out clearly:

- (a) its scope in terms of the specific profession or titles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t cover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 (b) who is entitled to use the professional titles concerned;
- (c) whether the recognition mechanism is based on qualifications, on the licence obtained in the country of origin or on some other requirement; and
- (d) whether it covers temporary access, permanent access, or both, to the profession concerned.

#### *MRA Provisions*

8. The MRA should clearly specify the conditions to be met for recognition in the territories of each Party and the level of equivalenc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MRA. The precise terms of the MRA depend on the basis on which the MRA is founded, as discussed above. In case the requirements of the various sub-national jurisdictions of a party to an MRA are not identical, the difference should be clearly presented. The MRA should address the applicability of the recognition granted by one sub-national jurisdiction in the other sub-national jurisdictions of the party to the MRA.

*Eligibility for Recognition - Qualifications*

9. If the MRA is based on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then it should, where applicable, state:

- (a) the minimum level of education required (including entry requirements, length of study, and subjects studied);
- (b) the minimum level of experience required (including location, length, and conditions of practical training or supervised professional practice prior to licensing, and framework of ethical and disciplinary standards);
- (c) examinations passed, especially examinations of professional competence;
- (d) the extent to which home country qualifications are recognised in the host country; and
- (e) the qualifications which the parties are prepared to recognise, for instance, by listing particular diplomas or certificates issued by certain institutions, or by reference to particular minimum requirements to be certifi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including whether the possession of a certain level of qualification would allow recognition for some activities but not others.

*Eligibility for Recognition - Registration*

10. If the MRA is based on recognition of the licensing or registration decision made by regulators in the country of origin, it should specify the mechanism by which eligibility for such recognition may be established.

11. (a)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ovide for additional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ervice, the MRA should set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requirements may apply, for example, in case of shortcomings in relation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the host country or knowledge of local law, practice, standards, and regulations. This knowledge should be essential for practice in the host country or required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licensed practice.

- (b) Where additional requirements are deemed necessary, the MRA should set out in detail what they entail (for example, examination, aptitude test, additional practice in the host country or in the country of origin, practical training, and language used for examination).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12. The MRA should state:

- (a) the rules and procedures to be used to monitor and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MRA;
- (b) the mechanisms for dialogue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 (c) the mean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the MRA.

13. As a guide to the treatment of individual applicants, the MRA should include details on:

- (a) the focal point of contact in each party for information on all issue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name and address of competent authorities, licensing formalities, information on additional requirements which need to be met in the host country, etc.);
- (b) the length of procedures for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host country;
- (c) the documentation required of applicants and the form in which it should be presented and any time limits for applications;
- (d) acceptance of documents and certificates issued in the country of origin in relation to qualifications and licensing;
- (e) the procedures of appeal to or review by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 (f) the fees that might be reasonably required.

14. The MRA should also include the following commitments:

- (a) that requests about the measures will be promptly dealt with;

- (b) that adequate preparation time will be provided where necessary;
- (c) that any exams or tests will be arranged with reasonable periodicity;
- (d) that fees to applicant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e terms of the MRA will be in proportion to the cost to the host country or organisation; and
- (e) that information on any assistance programmes in the host country for practical training, and any commitments of the host country in that context, be supplied.

*Licensing and Other Provisions in the Host Country*

15. Where applicable:

- (a) the MRA should also set out the means by which,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licence is actually obtain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eligibility, and what such licence entails (a licence and its content, membership of a professional body, use of professional or academic titles, etc.);
- (b) a licensing requirement, other than qualifications, should include, for example:
  - (i) an office address, an establishment requirement, or a residency requirement;
  - (ii) a language requirement;
  - (iii) proof of good conduct and financial standing;
  - (iv)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 (v) compliance with host country's requirements for use of trade or firm names; and
  - (vi) compliance with host country ethics, for instance independence and incompatibility;
- (c) in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e MRA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for each party:
  - (i)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be applied (disciplinary action, financial responsibility, liability, etc.);

- (ii) the principles of discipline and enforcement of professional standards, including disciplinary jurisdiction and any consequential limitations on the professionals;
- (iii) the means for ongoing verification of competence;
- (iv) the criteria for, and procedures relating to,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professionals; and
- (v) regulations relating to any nationality and residency requirements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MRA.

*Revision of the MRA*

16. If the MRA includes terms under which it can be reviewed or revoked, the details of such terms should be clearly stated.

September 22, 2014

Mr.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Ottawa, Canada

Dear Mr. Ian Burney,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 (1)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certain measures related to resource recycling and to policies to encourage low-emission motor vehicle distribution.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relating to: (i) the obligation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ii) the submission of recycling performance plans and results; (iii) payment of applicable recycling levies; (iv) the obligation to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low-emission motor vehicles; and (v) the submission and approval of plans to distribute low-emission motor vehicl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2)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prohibit an enterprise from concurrently holding two or more business licenses to supply different servic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for the purpos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3)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existing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extension, or transf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certain geographical area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4)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allows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jointly operate curricula only wit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r with foreig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obtained accreditation from a foreign government or authorised foreign accreditation bodi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a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s 8.3 (National Treatment) and 9.2 (National Treatment).

- (5)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may establish requirements regarding the types and quantities of raw materials for producing liquor under the *Liquors Act* (Law No. 11873, 7 June, 2013)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6)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control a rail transportation company's ability to stop supplying its service, including closure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7)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on zoning and land use.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measures concerning zoning and land use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2, 2014

Mr.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Dear Mr. Kyong-lim Choi,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 (1)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certain measures related to resource recycling and to policies to encourage low-emission motor vehicle distribution.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relating to: (i) the obligation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ii) the submission of recycling performance plans and results; (iii) payment of applicable recycling levies; (iv) the obligation to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low-emission motor vehicles; and (v) the submission and approval of plans to distribute low-emission motor vehicl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2)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prohibit an enterprise from concurrently holding two or more business licenses to supply different servic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for the purpos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3)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existing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extension, or transf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certain geographical area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4)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allows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jointly operate curricula only wit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r with foreig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obtained accreditation from a foreign government or authorised foreign accreditation bodi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a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s 8.3 (National Treatment) and 9.2 (National Treatment).
- (5)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may establish requirements regarding the types and quantities of raw materials for producing liquor under the *Liquors Act* (Law No. 11873, 7 June, 2013)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6)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control a rail transportation company's ability to stop supplying its service, including closure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 (7)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on zoning and land use.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measures concerning zoning and land use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Market Acces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September 22, 2014

Mr.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Ottawa, Canada

Dear Mr. Ian Burney,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Notwithstanding Article 8.1 (Scope and Coverage) or 9.1 (Scope and Coverage), cross-border trade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sup>41</sup> is not subject to Chapter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s not subject to Chapter Eight (Investment).

For greater certainty,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 relation to betting and gambl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or regulation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up>41</sup> For greater certainty,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cludes such services supplied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and services that use *sa-haeng-seong-ge-im-mul*. "*Sa-haeng-seong-ge-im-mul*," as defined in Article 2 of Korea'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cludes, *inter alia*, gaming instruments which result in financial loss or gain through betting or by chance.

September 22, 2014

Mr.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Dear Mr. Kyong-lim Choi,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Notwithstanding Article 8.1 (Scope and Coverage) or 9.1 (Scope and Coverage), cross-border trade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sup>42</sup> is not subject to Chapter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s not subject to Chapter Eight (Investment).

For greater certainty,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 relation to betting and gambl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or regulation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sup>42</sup> For greater certainty,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cludes such services supplied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and services that use *sa-haeng-seong-ge-im-mul*. "*Sa-haeng-seong-ge-im-mul*," as defined in Article 2 of Korea'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cludes, *inter alia*, gaming instruments which result in financial loss or gain through betting or by chance.

September 22, 2014

Mr.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Ottawa, Canada

Dear Mr. Ian Burney,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entrie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Parties' Schedules to Annex I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f a Party conditions the granting of a license to supply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on a finding tha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the Party shall ensure that it: (i) bases any such finding and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a finding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ii) employs a presumption in favour of finding that granting a license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iii) develops any such procedures through a rulemaking consistent with Article 11.10 (Transparency).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2, 2014

Mr. Kyong-lim Choi  
Chief Negotia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Dear Mr. Kyong-lim Choi,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entrie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Parties' Schedules to Annex I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f a Party conditions the granting of a license to supply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on a finding tha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the Party shall ensure that it: (i) bases any such finding and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a finding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ii) employs a presumption in favor of finding that granting a license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iii) develops any such procedures through a rulemaking consistent with Article 11.10 (Transparency).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Sincerely,

Ian Burney  
Chief Negotiator for Canada

**CHAPTER TEN**  
**FINANCIAL SERVICES**

**Article 10.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 (a)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 (b)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or investments of those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arty's territory; and
  - (c)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2. Chapters Eight (Investment) and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pply to measures described in paragraph 1 only to the extent that those Chapters or Articles of those Chapters are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 (a) Articles 8.10 (Investment and Environment), 8.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8.12 (Transfers), 8.14 (Denial of Benefits), 8.15(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9.10 (Denial of Benefit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Chapter.
  - (b)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Chapter solely for claims that a Party has breached Articles 8.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8.12 (Transfers), and 8.14 (Denial of Benefits) as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 (c) Article 9.11 (Payments and Transfer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Chapter to the extent that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is subject to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 10.5.
3.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cluding its public entities, from exclusively conducting or providing in its territory:
  - (a) activities or services forming part of a public retirement plan or statutory system of social security; or

- (b) activities or services for the account, with the guarantee or us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ty, including its public entities.

4.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domestic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 entities of financial services purcha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use in the supply of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financial institution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3. For the purposes of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n Article 10.5.1, a Party shall accord to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financial service supplier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4. The treatment that a Party is required to accord under paragraphs 1, 2 and 3 means, with respect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sub-national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sub-national government to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s of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Article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nvestors,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s of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in like circumstances.

####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with respect to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or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seeking to establish such institutions, eithe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or on the basis of a sub-national government, a measure that:

- (a) imposes limitations on:
  - (i)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ii) the total valu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iii) the total number of financial service operations or the total quantity of financial services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sup>43</sup>; or
  - (iv)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financial service sector or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financial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or
- (b) restricts or requires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may supply a service.

<sup>43</sup> This sub-subparagraph does not apply to measures of a Party which limit inputs for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5: Cross-Border Trade<sup>44</sup>

1. Each Party shall permit,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rd national treatment,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o supply the services specified in Annex 10-A.
2. Each Party shall permit persons located in its territory, and its nationals, wherever they are located, to purchase financial services from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is obligation does not require a Party to permit such suppliers to do business or solicit in its territory. Subject to paragraph 1, each Party may define “doing business” and “solici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obligation.
3. Without prejudice to other means of prudentia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 Party may require the registration of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nd of financial instruments.

#### Article 10.6: New Financial Services<sup>45</sup>

A Party shall permit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supply a new financial service that the Party would permit its own financial institutions, in like circumstances, to supply without additional legislative action by the Party. Notwithstanding Article 10.4(b), a Party may determine the institutional and juridical form through which the new financial service may be supplied and may require authorisation for the supply of the service. If a Party requires a financial institution to obtain authorisation to supply a new financial service, the Party shall decide within a reasonable time whether to issue the authorisation and the authorisation may only be refused for prudential reasons.

#### Article 10.7: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This Chapter does not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sup>44</sup> A Party may require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on the financial services it has suppli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Party shall protect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from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supplier.

<sup>45</sup>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prevent a financial institution of a Party from applying to the other Party to consider authorising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that is supplied in neither Party's territory. Such application is subject to the domestic law of the Party to which the application is made and, for greater certainty, is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this Article.

- (a) informa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r
- (b)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prejudic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 Article 1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sup>46</sup>

1. A Party shall not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to engage natural person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as senior managerial or other essential personnel.
2. A Party shall not require that more than a simple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Party, or natural person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 Article 10.9: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10.2 through 10.5 and Article 10.8 do not apply to:
  - (a) an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 (i) the 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as set out in Section A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 (ii) a sub-national government<sup>47</sup> of a Party as set out by that Party in Section A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or
    - (iii) a local government<sup>48</sup> of a Party;
  -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sup>46</sup>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does not limit a Party's ability to requi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its law to reside within its territory.

<sup>47</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ub-national government does not include local government.

<sup>48</sup> For Korea, local government means a local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 (c)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s 10.2, 10.3, 10.4, and 10.8.<sup>49</sup>

2. Articles 10.2 through 10.5 and Article 10.8 do not apply to a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by that Party in Section B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3. A non-conforming measure set out in a Party's Schedule to Annex I or II as not subject to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9.2 (National Treatment), or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hall be treated as a non-conforming measure not subject to Article 10.2 or 10.3, as the case may be,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sector, sub-sector, or activity set out in the non-conforming measure is covered by this Chapter.

#### Article 10.10: Exceptions

1. This Chapter, or Chapter Eight (Investment), Chapter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Eleven (Telecommunications), Chapter Twelve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Chapter Thirteen (Electronic Commerce), Chapter Fourteen (Government Procurement), or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are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sup>50</sup>,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f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2. This Chapter, or Chapter Eight (Investment), Chapter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Eleven (Telecommunications), Chapter Thirteen (Electronic Commerce), or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do not apply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a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8.8 (Performance

<sup>49</sup>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 10.5 applies to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ecreases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with Article 10.5.

<sup>50</sup>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measures covered by Chapter Eight (Investment) or under Articles 8.12 (Transfers) and 9.11 (Payments and Transfers).

3. Notwithstanding Articles 8.12 (Transfers) and 9.11 (Payments and Transfers), as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a Party may prevent or limit transfers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or for the benefit of, an affiliate of or person related to that institution or suppli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measures relating to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his paragraph does not prejudice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permits a Party to restrict transfers.

4.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 Party of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its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ose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5.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ccommodating new financial services in their markets consistent with prudential requirements. The Parties confirm that Article 10.6 does not apply to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or any new financial service that the Party would not permit its own financial institutions, in like circumstances, to supply. The Parties further confirm that a Party may apply prudential regulations to new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11: Transparenc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ransparent regulations and polici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are important in facilitating access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reign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o, and their operations in, each other's market. Each Party commits to promote regulatory transparency in financial servic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o which this Chapter appli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3. In lieu of Article 19.1 (Publication),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 (a) publish in advance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Chapter that it proposes to adopt;
- (b)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those proposed regulations; and
- (c) allow reasonable time between the publication of final regulations and their effective date.

4. Each Party should, at the time it adopts final regulations and to the extent practicable, address in writing substantive comments received from interested person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regulations.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adopted or maintained by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of the Party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person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6. Each Party shall maintain or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that will, as soon as practicable, respond to inquiries from interested persons regarding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covered by this Chapter.

7. Each Party's regulatory authorities shall make available to interested persons the requirements, including any documentation required, for completing applications relating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8.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a Party's regulatory authority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status of its application. If the authority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without undue delay.

9. A Party's regulatory authority shall make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a completed application of an investor in a financial institution,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relating to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within 120 days, and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An application shall not be considered complete until all relevant hearings are held and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received. If it is not practicable for a decision to be made within 120 days, the regulatory authority shall notify the applicant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endeavour to make the decision within a reasonable time.

10. At the request of an unsuccessful applicant, a regulatory authority that has denied an application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denial of the application.

**Article 10.12: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If a Party requires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be a member of, participate in, or have access to, a self-regulatory organisation to provide a financial service in or into its territory,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elf-regulatory organisation observes the obligations of Articles 10.2 and 10.3.

**Article 10.13: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rd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grant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access to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operated by public entities, or to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operated by any entity exercising any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a Party, and to official funding and refinancing facilities available in the normal course of ordinary business. This Article is not to be construed to confer access to the Party's lender of last resort facilities.

**Article 10.14: Recognition**

1. A Party may recognise prudential measures of a non-party in the application of measures covered by this Chapter. This recognition may be:
  - (a) accorded unilaterally;
  - (b) achieved through harmonisation or other means; or
  - (c) based up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non-party.
2. A Party according recognition of prudential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y to demonstrate that circumstances exist in which there are or would be equivalent regulation, oversight,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and, if appropriate, procedures concern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3. If a Party accords recognition of prudential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c) and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2 exist, the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accession to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or to negotiate a comparable agreement or arrangement.

**Article 10.15: Specific Commitments**

Annex 10-B sets out certain specific commitments by each Party.

**Article 10.16: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The principal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shall be an official of the Party's authority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set out in Annex 10-C.
2. The Committee shall:
  - (a)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its further elaboration;
  - (b) consider issues regarding financial services that are referred to it by a Party; and
  - (c) participate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ursuant to Article 10.19.
3. The Committee shall meet annually, or as it otherwise decides, to assess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as it applies to financial services.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each meeting.

**Article 10.17: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that affects financial services. The other Party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and any request to include regulatory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in these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ir consultations to the Committee.
2. Consult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include officials of the authorities specified in Annex 10-C.
3.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erogate from its relevant domestic law regarding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financial regulators or the requirements of an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or require regulatory authorities to take an action that would interfere with specific regulatory, supervisory, administrative, or enforcement matters.

#### Article 10.18: Dispute Settlement

1.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as modified by this Article, applies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this Chapter.
2. If a Party claims that a dispute arises under this Chapter, Article 21.7 (Panel Composition) shall apply, except that:
  - (a) if the Parties so agree, the panel must be composed entirely of panellists meeting the qualifications in paragraph 3; and
  - (b) in any other case:
    - (i) each Party may select panellists meeting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or in Article 21.7 (Panel Composition), except that each panellist may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and
    - (ii) the chair of the panel must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3. Financial services panellists must:
  - (a)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financial services law or practice, which may include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 (b)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Article 21.7 (Panel Composition) except that, other than the chair of the panel, each panellist may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4. Notwithstanding Article 21.11 (Non-Implementation – Suspension of Benefits), if a panel finds a measure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the measure affects:
  - (a) only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only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b)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any other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at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e effect of the measure in the Party's financial services sector; or
  - (c) only a sector other tha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shall not suspend benefit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Article 10.19: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 Financial Services

1. If an investor of a Party submits a claim under Article 8.18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or 8.19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the disputing Party invokes an exception pursuant to Article 10.10, the Tribunal shall, at the request of the disputing Party, refer the matter in writing to the Committee for a decision. The Tribunal shall not proceed until it receives the decision or report under this Article.
2. In a referral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mmittee shall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Article 10.10 is a valid defence to the claim of the investor.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 copy of its decision to the Tribunal and to the Commission. The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3. If the Committee has not decided the issue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ferral pursuant to paragraph 1,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pursuant to Article 21.6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panel shall be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8 and shall transmit its final report to the Committee and to the Tribunal. The report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4. If a Party does not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pursuant to paragraph 3 within 1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day period, the Tribunal may proceed to decide the matter.

#### Article 10.2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nd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cross-border supply of those services;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means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 (a)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 (c)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n investment in that territory;

**financial institution** means a financial intermediary or other enterprise that is authorised to do business and regulated or supervis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it is located;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means a financial institution, including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that is controlled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financial service** means a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Financial services include all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and all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as well as services incidental or auxiliary to a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Financial services include the following activities: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 (a) direct insurance (including co-insurance):
  - (i) life; or
  - (ii) non-life;
-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 (c)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 (d)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 (e) acceptance of deposits and other repayable funds from the public;
- (f) lending of all types, including consumer credit, mortgage credit, factoring, and financing of commercial transactions;
- (g) financial leasing;
- (h) payment and money transmission services, including credit, charge and debit cards, travellers checks, and bankers drafts;
- (i) guarantees and commitments;

- (j) trading for own account or for account of customers, whether on an exchange, in an over-the-counter market or otherwise, the following:
  - (i) money market instruments, including checks, bills, and certificates of deposits;
  - (ii) foreign exchange;
  - (iii) derivative products, including futures and options;
  - (iv)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struments, including products such as swaps, and forward rate agreements;
  - (v) transferable securities; or
  - (vi)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and financial assets, including bullion;
- (k) participation in issues of all kinds of securities, including underwriting and placement as agent,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and provision of services related to such issues;
- (l) money broking;
- (m) asset management such as cash or portfolio management, all forms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ment, pension fund management, custodial, depository and trust services;
- (n) settlement and clearing services for financial assets, including securities, derivative products, and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 (o)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by suppliers of other financial services; and
- (p) advisory, intermediation, and other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on all the activities listed in subparagraphs (e) through (o), including credit reference and analysis, investment and portfolio research and advice, and advice on acquisitions and 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trategy;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nvestment** means “investment” as defined in Article 8.45 (Definitions), except that, with respect to “loans” and “debt instrument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tate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 (a)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vestment only where it is treated as regulatory capital by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located; and
- (b) a loan granted by or debt instrument own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not an investment;

for greater certainty, a loan granted by or debt instrument owned by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ther than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vestment if such loan or debt instrument meets the criteria for investments set out in Article 8.45 (Definitions);

**investor of a Party**<sup>51</sup> means a Party or state enterprise thereof, or a person of a Party, that seek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 natural person who is a dual citizen is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a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citizenship.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f a Party and a permanent resident of the other Party is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Party of which he or she is a citizen;

**new financial service** means a financial service not supplied in a Party's territory that is suppli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includes a new form of delivery of a financial service or the sale of a financial product that is not sold in the Party's territory;

**person of a Party** means "person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nd, for greater certainty, does not include a branch of an enterprise of a non-party;

**public entity** means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of a Party, or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of a Party, or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performs a financial regulatory function and is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 is not considered a designated monopoly or a state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and

**self-regulatory organisation** means a non-governmental body, including securities or futures exchange or market, clearing agency, or other organisation or association, that exercises regulatory or supervisory authority ov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r financial institutions by statute or delegation from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A self-regulatory organisation is not considered a designated monopoly or a

<sup>51</sup> It is understood that an investor of a Party "seeks" to mak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ly if the investor has taken concrete steps necessary to make said investment, such as when the invest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it or license authoris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Annex 10-A**  
**Cross-Border Trade**

**Canada**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1. For Canada, Article 10.5.1 applies to the cross-border trade in, o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10.20, with respect to:

- (a) insurance of risks relating to:
  - (i) maritime transport, commercial aviation, and space launching and freight (including satellites), when that insurance covers any or all of the following: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he vehicle transporting the goods, and any liability deriving therefrom; and
  - (ii) goods in international transit;
-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 (c)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d)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and
- (d)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of insurance of risks related to services listed in subparagraphs (a) and (b).

2. Paragraph 1 applies only if an entity is not in itself or through an agent insuring in Canada a risk.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3. For Canada, Article 10.5.1 applies to the cross-border trade in, o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10.20, with respect to:

- (a)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financial data processing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o)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and

- (b)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and credit reference and analysis, excluding intermediation,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p)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4. Paragraph 3 applies only if neither the foreign bank nor one of its affiliates, if subject to the *Bank Act*, 1991, c. 46, maintains a financial establishment in Canada.

**Korea**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5. For Korea, Article 10.5.1 applies to the cross-border trade in, o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nd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10.20 with respect to:

- (a) insurance of risks relating to:
  - (i) maritime shipping, commercial aviation and space launching and freight, (including satellites), when that insurance covers any or all of the following: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he vehicle transporting the goods, and any liability arising therefrom; and
  - (ii) goods in international transit;
-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 (c)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sup>52</sup>, risk assessment<sup>53</sup>, actuarial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and
- (d)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of insurance of risks related to services listed in subparagraphs (a) and (b).

<sup>52</sup> "Consultancy" means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advice on corporate strategy formulation, marketing strategy, or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sup>53</sup> "Risk assessment" means activities such as risk analysis, risk prevention, or expert advice related to difficult or unusual risks.

6. Paragraph 5 applies only if an entity is not in itself or through an agent insuring in Korea a risk.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7. For Korea, Article 10.5.1 applies only with respect to:

- (a)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sup>54</sup>;
- (b)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o)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10.20; and
-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p)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10.20. This commitment applies to the supply of credit rating,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general fund administration, indirect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and bond appraisal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Once Korea allows the supply of certain of these services, it may not subsequently prohibit or limi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sup>54</sup> "Financi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7(a) does not include general financial or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included within a general circulation publication or provided for a general audience.

**Annex 10-B**

**Specific Commitments**

**Section A – Portfolio Management**

**Canada**

1. Subject to paragraph 2, Canada shall allow a financial institution organised outside its territory to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ocated in its territory:

- (a) investment advice; and
- (b)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excluding:
  - (i) custodial services, unless they are related to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ii) trustee services, but not excluding the holding in trust of investments by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stablished as a trust; and
  - (iii) execution services, unless they are related to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2. This commitment is subject to Articles 10.1 and 10.5.3.

3. This commitment does not apply to an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at the sub-national government,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such measure, or an amendment to a such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commitment.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Canada may requir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ocated in Canada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the funds that it manages.

5. For purposes of this commitment, in Canad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eans investment funds or fund management enterprises regulated or registered under relevant securities laws and regulations.

#### Korea

6. Korea shall allow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a trust company, organised outside its territory, to provide investment advice and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excluding custodial services, trustee services, and execution services that are not related to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ocated in its territory. This commitment is subject to Articles 10.1 and 10.5.3.

7.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with regard to Korean won-denominated assets, the supply of investment advice or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with respect to such assets. Once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with regard to Korean won-denominated assets, it may not subsequently prohibit or limi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n Kore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eans any of the schemes established for making collective investment as defined under article 9.18.1 through 9.18.6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Section B – Supervisory Cooperation

9. The Parties support the efforts of their respective financial regulators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regulators of the other Party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each regulators’ ability to prevent, detect and prosecute 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 The Parties confirm that their financial regulators have the legal authority to exchange information in support of those effort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financial regulators to continue their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this cooperation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ve mechanisms, such as memoranda of understanding or *ad hoc* undertakings.

#### Section C – Transfer of Information

10. The Parties shall allow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transfer information in electronic or other form, into and out of their territories, for data processing if such processing is required in the institution’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This Section does not restrict the right of a Party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 (a) to protect personal data, personal privacy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or
- (b) to require a financial institution to obtain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relevant regulator to designate a particular enterprise as a recipient of that information, based on prudential considerations<sup>55</sup>;

provided that such right is not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For greater certainty, considerations under subparagraph (a) include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of consumers and prohibitions on unauthorised reuse of the sensitive information. This Section does not restrict the Parties’ ability to have access to records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ating to the handling of such information and to maintain requirements for the location of technology facilities.

<sup>55</sup>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quirement is without prejudice to other means of prudential regulation.

**Section D – Certain Government Entities**

11. The Parties confirm that the following entities, as currently structured, are covered by this Chapter, but are not consider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Credit Guarantee Fu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at Korea Post is currently a government agency and it offers financial services that are regulated by regulatory authorities of Korea.

**Annex 10-C**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are:

- (a) for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 (b) for Canada,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CHAPTER ELEVEN**  
**TELECOMMUNICATIONS**

**Article 11.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 (a)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 (b)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obligations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 (c) oth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and
  - (d)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the supply of value-added services.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he transmission by an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broadcast or cable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intended for reception by the public.
3.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 (a) require a Party to authoris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construct, acquire, lease, operate, or supply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other than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 (b) require a Party, or require a Party to oblige any service supplier under its jurisdiction, to establish, construct, acquire, lease, operate, or supply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not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Article 11.2: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1. Subject to a Party's right to restrict the supply of a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s in its Schedule to Annex I or II, a Party shall ensure that enterprises of the other Party are accorded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s set out in paragraphs 2 through 6.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enterprises of the other Party have access to and use of any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offered within or across its borders, including private leased circuits, and to this end shall ensure, subject to paragraphs 5 and 6, that such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 (a) purchase or lease and attach terminal or other equipment which interfaces with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 (b) interconnect private leased or owned circuits with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of that Party or with circuits leased or owned by another enterprise;
  - (c) use operating protocols of their choice; and
  - (d) perform switching, signalling, and processing functions.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enterprises of the other Party may us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for the movement of information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including for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 of such enterprises, and for access to information contained in data bases or otherwise stored in machine-readable form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4. Further to Article 22.1(General Exceptions) and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arty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messages or to protect the privacy of us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s. These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condition is not imposed on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other than as necessary to:

- (a) safeguard the public service responsibilities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in particular their ability to make their networks or services available to the public generally;
- (b) protect the technical integrity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or
- (c)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do not supply services limited by the Party's reservations under Annex I or II.

6. Provided that they satisfy the criteria in paragraph 5, conditions for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may include:

- (a) restrictions on resale or shared use of such services;
- (b) a requirement to use specified technical interfaces, including interface protocols, for interconnection with such networks and services;
- (c) requirements, where necessary,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uch services;
- (d) type approval of terminal or other equipment which interfaces with the network and technical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attachment of such equipment to such networks;
- (e) restrictions on interconnection of private leased or owned circuits with such networks or services or with circuits leased or owned by another service supplier; and
- (f) notification, registration, and licensing.

**Article 11.3: Licensing Procedure**

1. If a license is required to supply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 (a) all the licensing criteria, and the amount of time normally required to reach a decision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and
- (b)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individual licenses.

2.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 license will be mad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in the event of a denial of a license, the reasons will be made known to the applicant upon request.

**Article 11.4: Conduct of Major Suppliers**

*Competitive Safeguards*

1. Each Party shall maintain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uppliers that, alone or together, are a major supplier from engaging in or continu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2.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must include in particular:

- (a) engaging in anti-competitive cross-subsidisation;
- (b)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competitors with anti-competitive results; and
- (c) not making available to other service suppliers, on a timely basis, technical information about essential facilities and commercially relevant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those suppliers to provide services.

*Interconnection*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provides interconnection:

- (a)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
- (b) under non-discriminatory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rates;
- (c) of a quality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ts own like services or for like services of non-affiliated service suppliers or of its subsidiaries or other affiliates;
- (d) in a timely fashion, on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cost-oriented rates that are transparent, reasonable, having regard to economic feasibility, and sufficiently unbundled so that the supplier need not pay for network components or facilities that it does not require for the services to be provided; and

- (e) on request, at points in addition to the network termination points offered to the majority of users, subject to charges that reflect the cost of construction of necessary additional facilities.

4. Each Party shall make the procedure applicable for interconnection to a major supplier publicly available.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makes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 Article 11.5: Universal Service

Each Party has the right to define the kind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t wishes to maintain. Such obligation is not anti-competitive *per se*, provided that it is administered in a transparent, non-discriminatory, and competitively neutral manner and is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for the kind of universal service defined by the Party.

#### Article 11.6: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1. Each Party shall administer its procedures for the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including frequencies, numbers, and rights of way, in an objective, timely,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2. Each Party shall make the current state of allocated frequency bands publicly available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provide detailed identification of frequencies allocated for specific government use.
3. Notwithstanding Article 9.4 (Market Access),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establish and apply its spectrum and frequency management policies, which may limit the number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s. Each Party also retains the right to allocate frequency bands based on present and future needs.

#### Article 11.7: Regulatory Body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gulatory body is separate from, and not accountable to,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and value-added servic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gulatory body's decisions and procedures are impartial with respect to all market participants.

#### Article 11.8: Enforcement

Each Party shall maintain appropriate procedures and authority to enforce domestic measur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ose procedures and authority must include the ability to impose appropriate sanctions, which may include financial penalties, corrective orders, or the modifica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ces.

#### Article 11.9: Resolution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Disputes

##### Recourse

1. Further to Article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 (a)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or value-added services of the other Party have timely recourse to its regulatory body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domestic measures relating to matters covered in Articles 11.2 and 11.4 excluding interconnection; and
- (b)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requesting interconnection with a major supplier in the Party's territory have, within a reasonable and publicly specified amount of time, recourse to a regulatory body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the appropriate terms, conditions, and rates for interconnection with that major supplier.

##### Reconsideration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or value added services that is aggrieved by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a regulatory body may petition that body to reconsider that determination or decision. This petition shall not constitute grounds for non-compliance with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the regulatory body.
3. Reconsideration shall not apply to a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a regulatory body with respect to:

- (a) disputes between service suppliers or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users; or
- (b)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spectrum and frequency management policies.

*Judicial Review*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that is aggrieved by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a regulatory body has the opportunity to appeal that determination or decision to an independent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obligation does not add to the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 19.4 (Review and Appeal).

**Article 11.10: Transparency**

In addition to the other provisions in this Chapter relating to transparency,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 (a) its measures relating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and value added services, including:
  - (i) tariff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 (ii) specifications of technical interfaces;
  - (iii) conditions applying to attachment of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 (iv) notification, permit, registration, or licensing requirements, if any; and
- (b) information on bodies responsible for preparing, amending, and adopting standards related measures.

**Article 11.11: Forbearance**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relying on market forces to achieve wide choices in the suppl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this end, and to the extent provided in its domestic law, each Party may refrain from applying a regulation to a service when:

- (a)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is not necessary to prevent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practices;
- (b)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is not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nd
- (c) it is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promoting and enhancing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Article 11.12: Conditions for the Provision of Value-Added Services**

1. A Party shall not require a person that provides value-added services to:
  - (a) supply those services to the public generally;
  - (b) cost-justify its rates;
  - (c) file a tariff;
  - (d) connect its networks with a particular customer or network; or
  - (e) conform with a particular standard or technical regulation for connecting to another network, other than a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arty may take the actions listed in paragraph 1 to remedy a practice of a supplier of value-added services that the Party has found in a particular case to be anti-competitive under its domestic law, or to otherwise promote competition or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Article 11.13: Relation to Other Chapters**

In the event of an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is Chapter prevails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Article 11.14: Relation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Agreements**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global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or services and undertake to promote those standards through the work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Article 11.1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ssential facilities** means facilities of a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or service that:

- (a) are exclusively or predominantly provided by a single or a limited number of suppliers; and
- (b) cannot feasibly be economically or technically substituted in order to supply a service;

**interconnection** means linking suppliers providing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s to allow the users of one supplier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another supplier and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supplier;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 means telecommunications through which an enterprise communicates within the enterprise or with or among its subsidiaries, branches and, subject to a Party’s domestic law, affiliates, but does not include commercial or non-commercial services that are provided to enterprises that are not related subsidiaries, branches or affiliates, or that are offered to customers or potential customers.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sidiaries, branches and, where applicable, affiliates are as defined by each Party in its domestic law;

**major supplier** means a supplier that has the ability to materially affect the terms of participation having regard to price and supply in the relevant market for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as a result of:

- (a) control over essential facilities; or
- (b) the use of its position in the market;

**network termination points** means the final demarcation of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at the user’s premises;

**non-discriminatory** means terms and condition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any other user of lik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under like circumstances;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means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permits telecommunications between and among defined network termination points;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means a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that a Party requires, explicitly or in effect, to be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that involves the real-time transmission of customer-supplied information between two or more points without any end-to-end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customer’s information. This service may include, *inter alia*, telegraph, telephone, telex, and data transmission;

**regulatory body** means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supplier**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seeking to supply or supplies a service, including a supplier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supply of a service** means the provision of a service:

- (a)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 (c)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as defined in Chapter Eight (Investment), in that territory; or
- (d)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elecommunication** means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signals by any electromagnetic means;

**user** means a service consumer or a service supplier; and

**value-added services** mean services that add value to the customer’s information by enhancing its form or content, or by providing for its storage and retrieval.

## CHAPTER TWELVE

###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Article 12.1: General Principles

This Chapter reflects the preferential tra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desirability of facilitating temporary entry on a reciprocal basis and of establishing transparent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emporary entry, and the need to ensure border security and to protect the domestic labour force and permanent employ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Article 12.2: General Obligations

1. Each Party shall apply its measures relating to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in particular, shall apply expeditiously those measures so as to avoid unduly impairing or delaying trade in goods or services or conduct of investment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2. This Chapter does not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o regulate the entry of natural persons into, or the temporary stay in, its territory, including thos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and to ensure the orderl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cross its border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unduly impair or delay trade in goods or services or the conduct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sole fact of requiring a visa, or other document authorising entry or work for a business person, or for natural persons shall not be regarded as unduly impairing or delaying trade in goods or services or the conduct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 Article 12.3: Grant of Temporary Entry

1.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to business persons who otherwise comply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related to public health,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including Annex 12-A.

2. A Party may refuse to issue a work permit or authorisation to a business person if the temporary entry of that person might affect adversely:

- (a) the settlement of a labour dispute that is in progress at the place or intended place of employment; or

- (b) the employment of a person who is involved in such dispute.

3. If a Party refuses pursuant to paragraph 2 to issue a work permit or authorisation, it shall inform in writing the business person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4. Each Party shall limit fees for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 Article 12.4: Provision of Information

1. Recognising the importance to the Parties of transparency of information on temporary entry and further to Article 19.1 (Publication), each Party shall,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ke available through any means, information on its measures relating to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collect and maintain data respecting the granting of temporary entry under this Chapter to business persons of the other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work permit or authorisation. On the request of a Party, the other Party shall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 Article 12.5: Contact Points

1. Each Party hereby establishes a contact point:

- (a) for Korea:

Director  
Border Control Division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and

- (b) for Canada:

Director  
Temporary Resident Policy  
Immigration Branc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2. The contact points shall meet at least once each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to exchange information as described in Article 12.4 and to consider matters pertaining to this Chapter, such as:

- (a)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 (b)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common criteria,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 (c)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further facilitate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on a reciprocal basis; and
- (d) proposed modifications to this Chapter.

#### Article 12.6: Dispute Settlement

1. A Party shall not initiate proceedings under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regarding a refusal to grant temporary entry under this Chapter unless:

- (a) the matter involves a pattern of practice; and
- (b) the business person has exhausted the normal administrative remedies regarding the particular matter.

2. The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are deemed to be exhausted if a final determination in the matter has not bee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thin one year of the initiation of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and the failure to issue a determination is not attributable to delay caused by the business person.

#### Article 12.7: Relation to Other Chapters

Except for this Chapter and Chapters One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Nineteen (Transparency), Twenty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on) and Twenty-Three (Final Provisions), this Agreement does not impose an obligation on a Party regarding its immigration measures.

#### Article 12.8: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business person** means a national of a Party who is engaged in trade in goods, the provision of services or the conduct of investment activities;

**contract service supplier** means an employee of an enterprise who is engaged in the supply of a contracted service as an employee of an enterprise. That enterprise has a service contract from an enterprise of the other Party, who is the final consumer of the service which is supplied. The contract and duration of stay shall comply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other Party;

**independent professional** means a self-employed professional who seeks to engage, as part of a service contract granted by an enterprise or a service consumer of the other Party, in an activity at a professional level, provided that the person possesses the necessary education, or satisfies accreditation or licensing requirements as stipulated for the profession;

**management trainee on professional development** means an employee who has a Bachelor or Baccalaureate degree or who has a license at a professional level concerning the intra-company activity, who is on a temporary work assignment intended to broaden an employee's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a company in preparation for a senior leadership position within the company;

**pre-arranged professional service** means a professional service to be provi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terms of which have been determined and documented prior to the entry of the professional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rofessional** means a national of a Party who is engaged in a specialty occupation as stated in Appendix 12-A-2 who is not engag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emporary entry** means entry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business person of the other Party without the intent to establish permanent residence, and does not apply to measures regarding citizenship or employment on a permanent basis.

## Annex 12-A

###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Section A – Business Visitors

1.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to a business person seeking to engage in a business activity set out in Appendix 12-A-1 without requiring that the business person obtain a work permit or authorisation, provided that the business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on presentation of:

- (a) proof of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t status of the other Party;
- (b) documentation demonstrating that the business person will be so engaged in a business activity set out in Appendix 12-A-1 and describing the purpose of entry; and
- (c) evidence demonstrating that the proposed business activity is international in scope and that the business person is not seeking to enter the local labour market.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business person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c) by demonstrating that:

- (a) the primary source of remuneration for the proposed business activity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granting temporary entry; and
- (b) the business person'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the actual place of accrual of profits, at least predominantly, remain outside such territory.

A Party shall normally accept an oral declaration as to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the actual place of accrual of profits. If the Party requires further proof, it shall normally consider a letter from the employer attesting to these matters as sufficient proof.

3. A Party shall not:
  - (a)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require prior approval procedures, labour certification tests or other procedures of similar effect; or
  - (b) impose or maintain a numerical restriction relating to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arty may require a business person seeking temporary entry under this Section to obtain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prior to entry. Before imposing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th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hose business persons would be affected with a view to avoiding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 Section B – Traders and Investors

5.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and provide a work permit or visa to a business person seeking to:
  - (a) carry on substantial trade in goods or services principally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which the business person is a national and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to which entry is sought; or
  - (b) establish, develop, administer or provide advice or key technical services to the operation of an investment to which the business person or the business person's enterprise has committed, or is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in a capacity that is supervisory, executive or involves essential skills, provided that the business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6. A Party shall not:
  - (a)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5, require labour certification tests or other procedures of similar effect; or
  - (b) impose or maintain a numerical restriction relating to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5.

7. Notwithstanding paragraph 6, a Party may require a business person seeking temporary entry under this Section to obtain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prior to entry. Before imposing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th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hose business persons would be affected with a view to avoiding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 Section C – Intra-Company Transferees

8.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and provide a work permit or visa to a business person employed by an enterprise who seeks to render services to that enterprise or a subsidiary or an affiliate or a branch thereof as an executive or manager, a specialist or a management trainee on professional development, provided that the business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A Party may require the business person to have been employed continuously by the enterprise for one year within the three-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9. A Party shall not:

- (a)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8, require labour certification tests or other procedures of similar effect; or
- (b) impose or maintain a numerical restriction relating to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8.

10. Notwithstanding paragraph 9, a Party may require a business person seeking temporary entry under this Section to obtain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prior to entry. Before imposing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th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hose business persons would be affected with a view to avoiding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 Section D – Professionals

11.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and provide a work permit or visa to a business person who is a professional seeking to engage in a business activity at a professional level, in a profession set out in Appendix 12-A-2, if the business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on presentation of:

- (a) proof of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t status of the other Party; and
- (b) documentation demonstrating that the business person is seeking to enter to provide pre-arranged professional services, either as a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or as an independent professional, in the field for which the business person has the appropriate qualifications.

12. A Party shall not:

- (a)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1, require prior approval procedures, labour certification tests or other procedures of similar effect; or
- (b) impose or maintain a numerical restriction relating to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1.

13. Notwithstanding paragraph 12, a Party may require a business person seeking temporary entry under this Section to obtain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prior to entry. Before imposing a visa or an equivalent requirement, th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hose business persons would be affected with a view to avoiding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Section E – Spouses**

14.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and provide a work permit or authorisation to a spouse of a business person qualifying for temporary entry under Section B, C , or D, if the spouse otherwise complies with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and meets the relevant employment qualifications.

15. A Party shall not:

- (a)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4, require prior approval procedures, labour certification tests or other procedures of similar effect; or
- (b) impose or maintain a numerical restriction relating to temporary entry pursuant to paragraph 14.

16. Notwithstanding paragraph 15, a Party may require a spouse of a business person seeking temporary entry under this Section to obtain a visa or its equivalent prior to entry. Before imposing a visa requirement on the spouse, th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avoiding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Appendix 12-A-1**

**Business Visitors**

*Research and Design*

Technical, scientific and statistical researchers conducting independent research or research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Growth, Manufacture and Production*

Purchasing and production management personnel condu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rketing*

Market researchers and analysts conducting independent research or analysis or research or analysis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rade-fair and promotional personnel attending a trade convention;

*Sales*

Sales representatives and agents taking orders or negotiating contracts for goods or services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not deliver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Buyers purchasing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Distribution*

Transportation operators transporting goods or passengers to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loading and transporting goods or passenger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no unloading in that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fter-Sales or After-Lease Service*

Installers, repair and maintenance personnel, and supervisors, possessing specialised knowledge essential to a seller’s contractual obligation, performing services or training workers to perform services, pursuant to a warranty or other service contract incidental to the sale or lease of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including computer software, purchased or leased from

an enterprise loc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to which temporary entry is sought, during the life of the warranty or service agreement;

*General Service*

- Professionals engaging in a business activity at a professional level;
- Management and supervisory personnel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Financial services personnel (insurers, bankers or investment brokers) engaging in commercial transactions for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Public relations and advertising personnel consulting with business associates, or attending or participating in conventions;
- Tourism personnel (tour and travel agents, tour guides or tour operators) attending or participating in a convention or conducting a tour that has begu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 Translators or interpreters performing services as employees of an enterpris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ppendix 12-A-2**

**Listed Professionals**

**Independent Professionals:**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Architect*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provincial license
Engineer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provincial license
Management Consultant	Bachelor degree***	Bachelor degree***
Veterinarian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Doctorate of Veterinary Medicine; or provincial license

**Contract Service Suppliers:**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Accountant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CPA), Chartered Accountant (C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CGA), or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
Actuary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and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ctuarial association
Agrolog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Bachelor degree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doctorate**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Architect*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provincial license
Landscape Architect	Bachelor degree	Bachelor degree
Apicultural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Bachelor degree
Auditor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CPA, CA, CGA or CMA
Biologist  <i>This category would include the following:</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otanist</li> <li>2. Biologist</li> <li>3. Ecologist</li> <li>4. Embryologist</li> <li>5. Toxicologist</li> <li>6. Enzymologist</li> <li>7. Etiologist</li> <li>8. Bacteriologist</li> <li>9. Geneticist</li> <li>10. Histologist</li> <li>11. Helminthologist</li> <li>12. Human Physiologist</li> <li>13. Pathologist</li> <li>14. Immunologist</li> <li>15. Mycologist</li> <li>16. Naturalist</li> <li>17. Physiologist</li> <li>18. Virologist</li> <li>19. Serologist</li> <li>20. Ecobiologist</li> <li>21. Echthyologist</li> </ol>	Bachelor degree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22. <i>Plant Pathologist</i> 23. <i>Crop Scientist</i> 24. <i>Anatomist</i> 25. <i>Bryologist</i> 26. <i>Cytochemist</i> 27. <i>Nematologist</i> 28. <i>Osteologist</i> 29. <i>Entomologist</i> 30. <i>Epidemiologist</i> 31. <i>Biochemist</i> 32. <i>Plant Breeder</i> 33. <i>Animal Breeder</i> 34. <i>Poultry Scientist</i> 35. <i>Soil Scientist</i> 36. <i>Food Scientist</i> 37. <i>Animal Scientist</i> 38. <i>Zoologist</i> 39. <i>Dairy Scientist</i>		
Chem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Bachelor degree
Engineer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Bachelor degree; or provincial license
Forester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Bachelor degree
Geoscientist  <i>This category would include the following:</i> 1. <i>Palaeontologist</i> 2. <i>Petrologist</i> 3. <i>Sedimentologist</i> 4. <i>Seismologist</i> 5. <i>Stratigrapher</i>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Bachelor degree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6. <i>Glaciologist</i> 7. <i>Hydrogeologist</i> 8. <i>Hydrologist</i> 9. <i>Mineralogist</i> 10. <i>Oceanographer</i> 11. <i>Petrophysicist</i> 12. <i>Quaternarist</i> 13. <i>Volcanologist</i> 14. <i>Metallurgist</i>		
Horticultural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	Bachelor degree
Management Consultant	Bachelor degree***	Bachelor degree***
Meteorolog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	Bachelor degree
Physical Scientist  <i>This category would include the following:</i> 1. <i>Physicist</i> 2. <i>Astronomer</i> 3. <i>Aerodynamicist</i> 4. <i>Cosmologist</i> 5. <i>Research Scientist</i> 6. <i>Radiation Biophysicist</i> 7. <i>Rheologist</i>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Post-graduate degree
Sylviculturalist	Master degre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or doctorate **	Bachelor degree
Urban and Land Use Planner	Bachelor degree***	Bachelor degree***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Veterinarian	Bachelor degree; or professional license	Doctorate of Veterinary Medicine; or professional license
Information System Analyst Database Analyst and Data Administrator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 in computer science or a related discipline and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s and nine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or  Engineering Mobility Forum (EMF) license in the case of Professional engineers	Bachelor degree in computer sciences or a related discipline and two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science;  Bachelor degree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or  A Canadian I.S.P. designation (Information Systems Professional of Canada) or a license or designation from a recognised foreign certification body
Computer Programmer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 in computer sciences or a related discipline and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s and nine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or	Bachelor degree in computer science or a related discipline and two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science;  Bachelor degree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or
	EMF license in the case of Professional engineers	A Canadian I.S.P. designation (Information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Systems Professional of Canada) or a license or designation from a recognised foreign certification body
Software Engineer and Designer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 in computer science or a related discipline and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Bachelor degree or Post-secondary diplomas and nine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or	Bachelor degree in computer sciences or a related discipline and two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er science;  Bachelor degree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or

Profession	Korean Requirements	Canadian Requirements
	EMF license in the case of Professional engineers	A Canadian I.S.P. designation (Information Systems Professional of Canada) or a license or designation from a recognised foreign certification body

\* Providing architectural services is subject to collaboration with architects registered under Korean law in the form of joint contracts.

\*\* If there is no conflict of laws in both countries, Korean educational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be met whenever a Canadian professional has met Canadian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the Korean client or employer has provided a letter indicating that the Canadian professional's qualifications are satisfactory and vice versa.

\*\*\* A license may be required to perform certain activities.

## CHAPTER THIRTEEN

### ELECTRONIC COMMERCE

#### Article 13.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confirm that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in Chapters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en (Financial Services), Eleven (Telecommunications), and Fourteen (Government Procurement). In particular,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rticle 11.2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in enabling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2. The Parties also confirm that this Chapter does not impose obligations on a Party to allow digital products to be delivered electronically,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ments of that Party in other Chapters.

#### Article 13.2: General Provision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pplicability of WTO rules to electronic commerce.

2.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electronic commerce as a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ol,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 (a) clar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ir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s in facilitating,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 (b) encouraging self-regulation by the private sector to promote trust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s of user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industry guidelines, model contracts, and codes of conduct;
- (c)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 (d) ensuring that global and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policy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business, consumers,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nd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and

- (e) facilitating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veloping countrie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by addressing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onic environment.

4.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voiding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Having regard to national policy objectiv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event measures that:

- (a) unduly hinder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or
- (b) have the effect of treating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more restrictively than trade conducted by other means.

#### **Article 13.3: Customs Duties**

1. A Party shall not apply customs duties, fees, o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digital products delivered electronically.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n digital products deliver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such tax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Article 13.4: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s,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Article 13.5: Paperless Trade Administration**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mak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in electronic form.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ccept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submitted electronically as the legal equivalent of the paper version of those documents.

#### **Article 13.6: Consumer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nd adopt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

2. To this end, the Parties should exchange information on their experiences in protecting consume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 **Article 13.7: Cooperation**

Recognising the global nature of electronic commerce, the Parties affirm the importance of:

- (a) working together to facilita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b)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laws, regulations, and programs pertaining to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ose related data privacy, consumer confidence, security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electronic authent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lectronic government;
- (c) working to maintain cross-border flows of information as an essential element in fostering a vibrant environment for electronic commerce;
- (d) fostering electronic commerce by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adopt codes of conduct, model contracts, guidelin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and
- (e) actively participating in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 **Article 13.8: Relation to Other Chapters**

In the event of an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e other Chapter prevails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 **Article 13.9: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delivered electronically** means delivered through telecommunications,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igital product** means computer programs, text, video, images, sound recordings, or other products that are digitally encoded an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rela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telecommunications** means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signals by any electromagnetic means;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 means forms that a Party issues or controls that must be completed by or for an import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and

**trad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means trade conducted through telecommunications,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CHAPTER FOURTEEN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14.1: Objectives

The Parties affirm their interest in further expanding bilateral trading opportunities in each Party'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 Article 14.2: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1. The Parties 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GPA.
2.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derogate from any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GPA.

### Article 14.3: Scope

1. This Chapter incorporates by referenc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 listed in the Annex to the WTO Protocol Amending the GP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sed GPA"),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s V and XVIII through XXII.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urement covered by Annexes 14-A through 14-G.
2.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nsistency with the revised GPA, should further revisions be made to the revised GPA tha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revisions shall be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except as agre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e amend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Amendments).

### Article 14.4: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1.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a proposed rectification of Annex 14-A, withdrawal of an entity from Annex 14-A, or other modification of Annex 14-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dification"). The Party proposing the mod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difying Party") shall include in the notification:
  - (a) for a proposed withdrawal of an entity from Annex 14-A in the exercise of its rights on the grounds that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entity's covered procurement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evidence

that such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or

- (b) for any other proposed modification, information as to the likely consequences of the change for the mutually agreed coverage provided under this Chapter.

2. If the other Party objects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it shall notify the modifying Party of its objection within 30 days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modification and include the reasons for its objection.

3. The Parties shall seek to resolve any objection through consultations. In such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ider the proposed modification and,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b), any claim for compensatory adjustments, with a view to maintaining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a comparable level of mutually agreed coverage provided in this Chapter prior to such notification.

4. If a Party proposes a mod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b), the modifying Party shall offer to the other Party appropriate compensatory adjustments, if such adjustment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level of coverage comparable to that which existed prior to the modification. Such modif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if the other Party does not notify the modifying Party of any objection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within 30 days of the notification. A Party need not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s if the Parties agree that the proposed modification covers a procuring entity over which a Party has effectively eliminated its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entity's covered procurement.

5. The Commission shall adopt a proposed modification only when the other Party:
- (a) does not object in writing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within 30 days of the notification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or
- (b) submits to the modifying Party a written notice withdrawing the objection.

#### **Article 14.5: Further Negotiations**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arty accords to a non-party greater access to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han the access that is accorded to the other Party, that Party may,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enter into negotiations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same access to the other Party on a reciprocal basis.

#### **Article 14.6: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1. Recognising the ongoing work of the WTO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in pursuing issues of mutual interest.

2. For issues of a bilateral nature,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shall meet as mutually agreed to address matters such as:

- (a) facilitating cooperation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Party's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 (b) exchanging relevant information;
- (c) exploring market access expansion; or
- (d) any other matter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is Chapter.

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each Party hereby designates the following governmental authority as its enquiry poi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 (a) for Kore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 (b) for Canada,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 **Article 14.7: Entry into Force**

This Chapter enters into force on the later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revised GPA for both Parties o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3.4 (Entry into Force).

## Annex 14

## Annex 14-A

## Schedule of Korea – Central Government Entities

Thresholds:	100,000,000 Korea Won	Goods
	100,000,000 Korea Won	Services
	5,000,000 SDR	Construction Services

## List of Entities:

1.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2.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5. Fair Trade Commission
6.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 Korea Coast Guard (except purchas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III of the revised GPA)
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9. Korea Customs Service
10. Korea Forest Service
1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14.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6. Ministry of Education
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8. Ministry of Environment
1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3.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4. Ministry of Justice
2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7.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8.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9.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0.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3. Ministry of Unification
34.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35.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3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7. National Police Agency (except purchas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III of the revised GPA)
38. National Tax Service
39.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40. Prime Minister's Secretariat
41. Public Procurement Service (Note 3)
4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3.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4. Statistics Korea
45. Supreme Prosecutors' Office

## Korea's Notes to Annex 14-A

1. The above central government entities cover their "subordinate linear organizations",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ttached organs",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entity with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at is not listed in this Annex is not covered.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the *Grain Management Act*,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Livestock Industry Act*.
3.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Chapter covers only those procurements carried out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its own behalf or for the entities listed in this Annex.

### Schedule of Canada – Federal Government Entiti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is Chapter covers procurement by entities listed in this Annex, subject to the following thresholds:

<i>Thresholds:</i>	Can\$100,000	<i>Goods</i>
	Can\$100,000	<i>Services</i>
	5,000,000 SDR	<i>Construction Services</i>

#### List of Entities:

- |     |  |     |   |
|-----|--|-----|---|
| 1.  |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on its own account)                        | 17. | Copyright Board   |
| 2.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18. |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 3.  | 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 19. |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
| 4.  | 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  | 20.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gri-Food                                 |
| 5.  | Canada Revenue Agency  | 21. |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 6.  | 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 22. |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
| 7.  |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23.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
| 8.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24. | Department of Finance   |
| 9.  |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 25. |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
| 10. |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 26.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
| 11. | Canadi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Secretariat                                | 27. | Department of Health  |
| 12.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 28. | Department of Indian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
| 13. |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29. | Department of Industry  |
| 14.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on its own account) | 30. | Department of Justice   |
| 15. | Canadian Transportation Accident Investigation and Safety Board                  | 31.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
| 16. |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on its own account)                              | 32. |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
|     |  | 33. |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
|     |  | 34.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on its own account) |
|     |  | 35.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     |  | 36. | Department of Transport   |
|     |  | 37.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     |  | 38. | Department of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on its own account)     |
|     |  | 39. | Director of Soldier Settlement  |
|     |  | 40. | Director, The Veterans' Land Act  |
|     |  | 41. |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
|     |  | 42.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

43.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44. National Battlefields Commission
45. National Energy Board (on its own account)
46. National Farm Products Council
47. National Parole Board
48.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49.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50. Northern Pipeline Agency (on its own account)
51.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52. Office of the Chief Electoral Officer
53.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ederal Judicial Affairs
54.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
55. Office of the Coordinator, Status of Women
56. 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s Secretary
57. Offices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of Canada
58.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59. Parks Canada Agency
60. Patented Medicine Prices Review Board
61. Privy Council Office
62.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63. Public Service Commission
64. Public Service Labour Relations Board
65. Registrar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66. Registry of the Competition Tribunal
67.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68.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External Review Committee
69.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Public Complaints Commission

70.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71. Statistics Canada
72. Transportation Appeal Tribunal of Canada
73. Treasury Board Secretariat

*Canada's Note to Annex 14-A*

No entity listed in Annex 14-A has the power to create subordinate entities.

## Annex 14-B

*Goods***Schedule of Korea**

1. This Chapter covers procurement of all goods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Annex 14-A,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2. Subject to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rticle III of the revised GPA, for procuremen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is Chapter covers the following FSC categories only.

<i>FSC</i>	<i>Description</i>		
2510	Vehicular cab, body, and frame structural components	4520	Space and water heating equipment
2520	Vehicular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4940	Miscellaneous maintenance and repair shop specialized equipment
2540	Vehicular furniture and accessories	5120	Hand tools, non-edged, non-powered
2590	Miscellaneous vehicular components	5410	Prefabricated and portable buildings
2610	Tires and tubes, pneumatic, except aircraft	5530	Plywood and veneer
2910	Engine fue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5660	Fencing, fences, gates and components
2920	Engine electrica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5945	Relays and solenoids
2930	Engine cooling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5965	Headsets, handsets, microphones and speakers
2940	Engine air and oil filters, strainers and cleaners, non-aircraft	5985	Antennas, waveguide, and related equipment
2990	Miscellaneous engine accessories, non-aircraft	5995	Cable, cord, and wire assemblies: communication equipment
3020	Gears, pulleys, sprockets and transmission chain	6505	Drugs and biologicals
3416	Lathes	6220	Electric vehicular lights and fixtures
3417	Milling machines	6840	Pest control agents disinfectants
3510	Laundry and dry cleaning equipment	6850	Miscellaneous chemical specialties
4110	Refrigeration equipment	7310	Food cooking, baking, and serving equipment
4230	Decontaminating and impregnating equipment	7320	Kitchen equipment and appliances
		7330	Kitchen hand tools and utensils
		7350	Tableware
		7360	Sets, kits, outfits, and modules,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7530	Stationery and record forms
		7920	Brooms, brushes, mops, and sponges
		7930	Cleaning and polishing compounds and preparations
		8110	Drums and cans
		9150	Oils and greases: cutting, lubricating, and hydraulic
		9310	Paper and paperboard

### Schedule of Canada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subject to paragraph 2, this Chapter covers all goods.

2.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III of the revised GPA, with respect to procurement by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nd the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for the Canadian Coast Guard, this Chapter covers only the goods described in the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s (FSC) listed below:

<i>FSC</i>	<i>Description</i>
22	Railway equipment
23	Motor vehicles, trailers and cycles (except buses in 2310 and except military trucks and trailers in 2320 and 2330 and tracked combat, assault and tactical vehicles in 2350 and wheeled combat, assault and tactical vehicles in 2355 formerly classified in 2320)
24	Tractors
25	Vehicular equipment components
26	Tires and tubes
29	Engine accessories
30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32	Woodworking machinery and equipment
34	Metal working machinery
35	Service and trade equipment
36	Special industry machinery
37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38	Construction, mining, excavating and highway maintenance equipment
39	Materials handling equipment
40	Rope, cable, chain and fittings
41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quipment
42	Fire fighting, rescue and safety equipment (except 4220: Marine lifesaving and diving equipment; and 4230: Decontaminating and impregnating equipment)
43	Pumps and compressors

44	Furnace, steam plant, drying equipment and nuclear reactors
45	Plumbing, heating and sanitation equipment
46	Water purification and sewage treatment equipment
47	Pipe, tubing, hose and fittings
48	Valves
49	Maintenance and repair shop equipment
52	Measuring tools
53	Hardware and abrasives
54	Prefabricated structures and scaffolding
55	Lumber, millwork, plywood and veneer
56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61	Electric wire and power and distribution equipment
62	Lighting fixtures and lamps
63	Alarm and signal systems
65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equipment and supplies
66	Instruments and laboratory equipment (except 6615: Automatic pilot mechanisms and airborne Gyro components; and 6665: Hazard detect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67	Photographic equipment
6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69	Training aids and devices
70	General purpose 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 software, supplies and support equipment (except 7010: 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 (ADPE) configurations)
71	Furniture
72	Household and commercial furnishings and appliances
73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equipment
74	Office machines, text processing system and visible record equipment
75	Office supplies and devices
76	Books, maps and other publications (except 7650: drawings and specifications)
77	Musical instruments, phonographs and home-type radios
78	Recreational and athletic equipment
79	Cleaning equipment and supplies
80	Brushes, paints, sealers and adhesives

81	Containers, packaging and packing supplies
85	Toiletries
87	Agricultural supplies
88	Live animals
91	Fuels, lubricants, oils and waxes
93	Non-metallic fabricated materials
94	Non-metallic crude materials
96	Ores, minerals and their primary products
99	Miscellaneous

## Annex 14-C

*Services***Schedule of Korea**

Of the Universal List of Services, as contained in document MTN.GNS/W/120, the following services are covered:

<i>GNS/W/120</i>	<i>CPC</i>	<i>Description</i>
I.A.b.	862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I.A.c.	863	Taxation services
I.A.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I.A.e.	8672	Engineering services
I.A.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I.A.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1.B.	84	Computer services	1.E.c.	83101, 83105*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transport equipment (only passenger vehicles for less than fifteen passengers)
1.B.a.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1.E.d.	83106, 83108, 83109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1.B.b.	842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83107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 relating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1.B.c.	843	Data processing services			
1.B.d.	844	Data base services			
1.B.e.	845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1.E.a.	83103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ships			
1.E.b.	83104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aircraft			

1.F.a.	8711, 8719	Advertising agency services	1.F.m.	86751, 86752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1.F.b.	864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services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1.F.c.	86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1.F.p.	875	Photographic services
1.F.d.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	1.F.q.	876	Packaging services
1.F.e.	86761*	Composition and purity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nly inspection,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f air, water, noise level and vibration level)	1.F.r.	88442*	Printing (screen printing, gravure printing, and services relating to printing)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1.F.s.	87909*	Stenography services Convention agency services
1.F.f.	8811*, 881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1.F.t.	87905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8814*	Services incidental to forestry (excluding aerial fire fighting and disinfection)			
1.F.g.	88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fishing			
1.F.h.	883*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mining			

2.C.j.	7523*	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retrieval
2.C.k.	752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2.C.l.	7523*	Enhanced/value-added facsimile services including store and forward, store and retrieve
2.C.m.	-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2.C.n.	843*	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including transaction processing)
2.D.a.	96112*, 96113*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excluding those services for cable TV broadcasting)
2.D.e.	-	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sound recording)

6.A.	9401*	Refuse water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of industrial waste water)
6.B.	9402*	Industrial refuse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transport, and disposal services of industrial refuse)
6.D.	9404*, 9405*	Cleaning services of exhaust gases and noise abatement services (services other than construction work services)
	9406*, 9409*	Environmental testing and assessment services (on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9.A	641	Hotel and other lodging services
9.A	642	Food serving services
9.A	6431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Excluding rail and air transport related facilities in CPC 6431)
9.B	7471	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services (except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11.A.b.	7212*	International transport, excluding cabotage
11.A.d.	8868*	Maintenance and repair of vessels
11.F.b.	71233*	Transportation of containerized freight, excluding cabotage

11.H.c

748\*

Freight transport agency services

- Maritime agency services
- Maritime freight forwarding services
- Shipping brokerage services
- Air cargo transport agency services
- Customs clearance services

11.I.

-

Freight forwarding for rail transport

***Korea's Note to Annex 14-C***

Asterisks (\*) designate "part of" as described in detail in the Revised Conditional Offer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Initial Commitments on Trade in Services.

### Schedule of Canada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is Chapter covers the services specified in paragraph 2. Such services are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for federal entities, Canada will use the “Common Classification System”.

2. This Chapter covers the following services:

<i>CPC</i>	<i>Description</i>
633	Repair services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641	Hotel and similar accommodation services
642-643	Food and beverage serving services
821	Real estate services involving own or leased property
822	Real estate services on a fee or contract basis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842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including systems and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systems analysis, design, programming and maintenance services
843	Data processing services, including processing, tabulation and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843	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including transaction processing)
844	Data base services
845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849	Other computer services
861	Legal Services (advisory services on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only)
862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863	Taxation Services (excluding legal services)

874	Building-cleaning services	8660	Services related to management consulting (except 86602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s)
876	Packaging services	8671	Architectural services
883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including drilling and field services	8672	Engineering services
940	Sewage and refuse disposal,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excluding 86731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urnkey projects)
7471	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services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7512	Commercial courier services (including multi-modal)	8676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including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except with reference to FSC 58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752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8814	Services incidental to forestry and logging, including forest management
7523	Electronic mail	8861	
7523	Enhanced/value-added facsimile services, including store and forward, store and retrieve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to 8864,	
7523	On-line information and data base retrieval	and 8866	Repair services incidental to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7523	Voice mail		

83106  
to 83109 only Leasing or rental services concerning machinery and equipment without operator

83203  
to 83209 only Leasing or rental services concerning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86501 General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86503 Marketing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86504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86505 Production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Canada's Notes to Annex 14-C*

1. This Chapter i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Canada's Schedule to the GATS.

2. Canada's coverag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limited to enhanced or value added services for the supply of which the underlyi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re leased from provid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3.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the following:

- (a) service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government facilities or privately owned facilities used for government purposes, including federally-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 (b) public utilities;
- (c)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related to airfield, communications and missile facilities;
- (d) shipbuilding and repair and related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 (e) all services, with reference to those goods purchased by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nd the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for the Canadian Coast Guard which are not covered by this Chapter; and
- (f) services procured in support of military forces located overseas.

**Annex 14-D**

***Construction Services***

**Schedule of Korea**

*Definition:*

1. A 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is a contract which has as its objective the realisation by whatever means of civil or building works, in the sense of Division 51 of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Such a contract includes a build-operate-trans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T”) contract, to which the BOT threshold applies.

2. A BOT contract is any contractual arran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r rehabilitat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s, plants, buildings, facilities, or other government-owned works and under which, as consideration for a supplier’s execution of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rocuring entity grants to the supplier,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emporary ownership or a right to control and operate, and demand payment for the use of such works f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Thresholds:* 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14-A

*BOT Thresholds:* 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14-A

*List of Construction Services:*

<i>CPC</i>	<i>Description</i>
51	Construction work

***Korea’s Note to Annex 14-D***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Schedule of Canada**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subject to paragraph 2, this Chapter covers all construction services identified in Division 51 of the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2.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the following:

- (a) dredging services; and
- (b) construction services procured by or on behalf of the federal Department of Transport.

## Annex 14-E

## General Notes

## Schedule of Korea

1. A service listed in Annex 14-C is covered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other Party has included that service in Annex 14-C.
2.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3. For greater clarity, procurement for airports is not covered under this Chapter.

## Schedule of Canada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following General Notes apply to this Chapter, including to Annexes 14-A through 14-D.

1.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 (a) shipbuilding and repair;
  - (b) urban rail and urban transportation equipment, systems, components and materials incorporated therein as well as all project related materials of iron or steel;
  - (c) FSC 58 (communications, detection and coherent radiation equipment);
  - (d) agricultural goods made in furtherance of agricultural support programmes or human feeding programmes; and
  - (e) transportation services that form a part of, or are incidental to, a procurement contract.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 (a) set-asides for small and minority owned businesses;
  - (b) any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with respect to Aboriginal peoples. It does not affect existing aboriginal or treaty rights of any of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under section 35 of the *Constitution Act, 1982*; and
  - (c) contracts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ntended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r exploitation of a project.
3.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 (a) Procurement in terms of Canadian coverage is defined as contractual transactions to acquire goods or services for the direct benefit or use of the government. The procurement process is the process that begins after an entity has decided on its requirement and continues through to and including contract award. It does not include procurements between one government entity or government enterprise and another government entity or government enterprise;
  - (b) Where a contract to be awarded by an entity is not covered by this Chapter,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cover any good or service component of that contract; and
  - (c) Any exclusion that is related either specifically or generally to Federal entities in Annex 14-A will also apply to any successor entity or entities, or enterprise or enterprises, in such a manner as to maintain the value of this offer.

**Annex 14-F**

***Publication of Notices***

For Korea: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s (KONEPS) at [www.g2b.go.kr](http://www.g2b.go.kr),  
or if necessary, Electronic Gazette at [gwanbo.korea.go.kr](http://gwanbo.korea.go.kr)

For Canada: The Government Electronic Tendering Service (GETS) at  
<https://buyandsell.gc.ca/>

**Annex 14-G**

***Threshold Adjustment***

1. Thresholds for goods and services referred to in Annex 14-A shall be adjusted, as necessary, based on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 Thresholds for construction services referred to in Annex 14-A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in the WTO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Decision GPA/1, Annex 3.
3. The Parties agree that the threshold for construction services shall be adjusted every two years, commencing with the first adjustment date applicable under the GPA,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Protocol Amending the GPA.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Article 15.1: Competition Law and Policy**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scribe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and take appropriate action with respect thereto, recognising that such measures will enhance the fulfil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consult from time to time on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undertaken by each Party.
2. Each Party recognises that the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to proscribe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and the enforcement actions it takes pursuant to those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and procedural fairness. Exclusions from these measures shall be transparent. Each Party should periodically assess its own exclu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necessary to achieve its overriding policy objectives.
3.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ir authorities to further effectiv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free trade area. The Parties shall cooperate on issue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olicy, including mutual legal assistance, notification, consult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the free trade area.
4. No recourse may be had to any form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rticle.

**Article 15.2: Monopolies<sup>56</sup>**

1.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maintaining or designating a monopoly.
2. If a Party intends to designate a monopoly and the designation may affect the interests of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e designating Party shall, whenever possible, provide prior notification, in writing, of the designation to the other Party.

<sup>56</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15.3, "maintain" means designat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existing on that date.

3. Each Party shall ensure, through regulatory control, administrative supervision, or the application of other measures, that a privately-owned monopoly that it designates or a government monopoly that it maintains or designates:
  - (a)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henever such a monopoly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in connection with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such as the power to grant import or expor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
  - (b) except to comply with terms of its designation<sup>57</sup>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subparagraph (c) or (d), acts solely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its purchase or sale of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relevant market<sup>58</sup>, including with regard to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sup>59</sup>;
  - (c) provide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to covered investments, to goods of the other Party, and to service providers of the other Party when it purchases or sells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relevant market<sup>60</sup>; and
  - (d) does not use its monopoly position to engage,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through its dealings with its parent, subsidiaries, or other enterprises with common ownership, in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a non-monopolised market in its territory, if such practices adversely affect a covered investment.
4. Paragraph 3 does not apply to government procurement.

<sup>57</sup> For greater certainty, terms of designation may be amended.

<sup>58</sup>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applies to the sale of the designated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case of a designated monopoly supplier and to the purchase of the designated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case of a designated monopoly buyer.

<sup>59</sup> This provision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designated monopoly from supplying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in accordance with specified rates approved, or other terms or conditions established, by a regulatory authority of a Party, provided that such rates or other terms or condi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subparagraph (c) or (d).

<sup>60</sup>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applies to the sale of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case of a designated monopoly supplier and to the purchase of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in the case of a designated monopoly buyer.

**Article 15.3: State Enterprises**

1.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enterprise.
2. Each Party shall ensure, through regulatory control, administrative supervision, or the application of other measures, that a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henever such enterprise exercises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such as the power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cord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sale of its goods or services to covered investments.

**Article 15.4: Differences in Pricing**

Articles 15.2 and 15.3 are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monopoly or state enterprise from charging different prices in different markets, or within the same market, if such differences are based on normal commercial considerations, such as taking account of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Article 15.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delegated** means transferring to the monopoly or state enterprise, or authorising the exercise by the monopoly or state enterpr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through a legislative grant, a government order, a directive, or other act;

**designate** means to establish, designate or authorise, or to expand the scope of, a monopoly to cover an additional good or service,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government procurement** means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goods or services, or a combination thereof,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sale or resale or with a view to u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or resale;

**government monopoly** means a monopoly that is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a Party, or by another such monopoly;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means consistent with normal business practices of privately-held enterprises in the relevant business sector or industry;

**market** means the geographic and commercial market for a good or service;

**monopoly** means an entity, including a consortium or government agency, that in a relevant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s designated as the sole provider or purchaser of a good or service, but does not include an entity that has been granted an exclus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olely by reason of such grant;

**non-discriminatory treatment** means the better of national treatment or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s set out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e relevant Annexes thereto; and

**state enterprise** means, except as set out in Annex 15-A,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a Party.

**Country-Specific Definitions of State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5.3.3, “state enterprise” means:

- (a) for Korea, a public corporation and a quasi-governmental ent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on-Departmental Public Entities*; and
- (b) for Canada, a Crown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a Crown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any comparable provincial law, or an equivalent entity that is incorporated under other applicable provincial law.

**INTELLECTUAL PROPERTY****Article 16.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 (a)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deas, technology, and creative works;
- (b) achieve an adequate and effective level of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c)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holder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users with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 (d) strengthen the Partie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6.2: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the subject of Sections 1 through 7 of Part II of the TRIPS Agreement.

**Article 16.3: Affirm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

The Parties 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Article 16.4: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

1. Each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within its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3.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ny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betwee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forcement of law in general.

#### Article 16.5: Public Health Concern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oha Declaration”) adopted on 14 November 2001 by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are entitled to rely on the Doha Declaration.

2. The Parties sha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and respect, the Decision of the WTO General Council of 30 August 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s well as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done at Geneva on 6 December 2005.

#### Article 16.6: National Treatment

1.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ursuant to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2. In respect of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 Party may satisfy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by providing national treatment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specifically granted in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done 20 December 1996 at Genev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PPT”).

#### Article 16.7: Exhaustion

This Chapter does not affect the freedom of the Parties to determine whether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es.

#### Article 16.8: Disclosure of Information

This Chapter does not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be contrary to that Party’s domestic law, or be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 Article 16.9: Trademarks

##### *Trademarks Protection*

1. A Party shall not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or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sup>61</sup>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include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A Party is not obligated to treat certification marks as a separate category in that Party’s domestic law, provided that such marks are protected.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has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at least for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owner’s trademark is registered, where such use would result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In the case of the use of an identical sign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a likelihood of confusion shall be presumed. The rights described above shall not prejudice any existing prior rights, nor shall they affect the possibility of each Party making rights available on the basis of use.

##### *Exceptions to Trademarks Rights*

4. Each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rights conferred by a trademark, such as fair use of descriptive terms, provided that those exceptions take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of third parties.

##### *Well-Known Trademarks*

5. A Party shall not require,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that a mark is a well-known mark, that the mark has been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in another jurisdiction.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remedies to the owner of a well-known trademark, whether or not such mark:

- (a) is registered;
- (b) is included on a list of well-known marks; or

<sup>61</sup> A Party may require an adequate representation, or description, of the sign.

(c) has already been recognised as being well-known.

6. Article 6bis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67) done 14 July 1967 at Stockhol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is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identified by a well-known trademark<sup>62</sup>, whether registered or not, provided that use of that trade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7.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 *Registration and Applications of Trademarks*

8. Each Party shall provide a system f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in which the reasons for a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are communicated in writing and may be provided electronically to the applicant. The Party shall provide to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contest that refusal and to judicially appeal a final refusal.

9. Each Party shall introduce the possibility to oppose trademark applications.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a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ered trademarks.

1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itial registration and each renewal of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hall be for a term of no less than 10 years.

#### **Article 16.10: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sup>63</sup>**

1. Canada shall, with respect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s<sup>64</sup> of “*GoryeoHongsam*”, “*GoryeoBaeksam*”, “*GoryeoSusam*”, and “*IcheonSsal*” and their translations, respectively,

<sup>62</sup>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well-known, a Party shall not requi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extend beyond the sector of the public that normally deals with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sup>63</sup>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sup>64</sup> For greater certainty, an individual component of a multi-component term that is protected as a geographical indication in a Party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protected in that Party where the individual component is a term customary in the common language as the common name for the associated goods.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and “*Icheon Rice*”, provide the legal means<sup>65</sup>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 (a)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in question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the true place of origin in a manner that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
- (b) the use of any of these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ginseng or rice, as the case may be, that does not originate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even where the true origin of the relevant good is indicated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ied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 and
- (c) any other use that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

2. Korea shall, with respect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Canadian Whisky*” and “*Canadian Rye Whisky*”,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 (a)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in question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the true place of origin in a manner that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
- (b) the use of any of these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 spirit that does not originate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even where the true origin of the spirit is indicated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ied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 and
- (c) any other use that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

3. If a trademark has been applied for or registered in good faith, or if rights to a trademark have been acquired through use in good faith,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Article in that

<sup>65</sup> “Legal means” includes recognition of these terms without additional action requir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holder and the provision of remedies consistent with Articles 16.13.1 through 16.13.4, 16.13.6, and 16.13.7. Parties shall discuss enforcement issues such as civil or border measures, etc. under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18. The Parties may apply opposition and cancellation procedures to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Party shall not prejudice the eligibility for or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or the right to use the trademark, on the basis that the trade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4. A Party is not obligated under this Article to protect geographical indications that are not, or cease to be protected in their place of origin, or that have fallen into disuse in that place.

5. A Party may provide that any request made under this Article in connection with the use 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must be presented within five years after the adverse use of the protected indication has become generally known in that Party or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n that Party provided that the trademark has been published by that date, if such date is earli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adverse use became generally known in that Party, provided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not used or registered in bad faith.

**Article 16.11: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tection Granted*

- 1.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 (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done at Rome on 26 October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Convention”);
  - (b)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done at Paris on 24 July 197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 (c) the *WIPO Copyright Treaty*, done at Geneva on 20 December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CT”); and
  - (d) the WPPT.

*Rights of Copyright Holder*

2. Each Party shall provide<sup>66</sup>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s including performances<sup>67</sup>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sup>68, 69</sup>

*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3. Each Party shall provide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sup>70</sup>

*Protec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4.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sup>71</sup> that are used by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sed by the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5. In order to provide th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each Part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t least:

- (a) to the extent provided by its law:
  - (i) the unauthorised circumvention of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carried ou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and

<sup>66</sup> The Parties reaffirm that it is a matter for each Party’s law to prescribe that works in general or any specified categories of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shall 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unless they have been fixed in some material form.

<sup>67</sup>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performance” means a performance fixed in a phonogram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p>68</sup> The agreed statements in the WCT and WPPT that are applicable to the rights of reproduction provided by the agreements and treaties listed in paragraph 1 apply as well to this paragraph, including any agreed statements concerning limitations and exceptions.

<sup>69</sup> A Party may determine limitations and exceptions with regard to temporary reproductions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sup>70</sup> A Party may satisfy the obligation in this paragraph by implementing such a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WPPT.

<sup>71</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echnological measures”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is designed to prevent or restrict acts, in respect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sed by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as provided for by a Party’s domestic law.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contained in a Party’s domestic law, technological measures are deemed effective where the use of protected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is controlled by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relevant access control or protection process, such as encryption or scrambling, or a copy control mechanism, which achieves the objective of protection.

- (ii) the offering to the public by marketing of a device or product, including computer programs, or a service, as a means of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and
- (b) the manufacture, importation, or distribution of a device or product, including computer programs, or provision of a service that:
  - (i)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 (ii) has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ther than circumventing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6. In implementing paragraphs 4 and 5, a Party is not obligated to require that the design of, 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parts and components for, a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or computing product provide for a response to a particular technological measure, so long as the product does not otherwise contravene that Party's measures implementing these paragraphs. This Agreement does not require a Party to mandate interoperability in that Party's law, *i.e.*,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to design devices, products, components, or services to correspond to certai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7. In providing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pursuant to paragraph 4,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ppropriat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4 and 5.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paragraphs 4 and 5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limitations, exceptions, or defences to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under a Party's domestic law.

#### *Protection of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8. To protec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sup>72</sup>,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without authority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sup>72</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 (a) information that identifies the work, the performance, or the phonogram; the author of the work, the performer of the performance, or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or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 (b)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 (c)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a) and (b) above;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ttached to a copy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of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the public.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 (a) 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b)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broadcast,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copies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9. In providing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pursuant to paragraph 8,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ppropriat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 8.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8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limitations, exceptions, or defences to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under a Party's law.

#### *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10. Each Party shall make it a criminal or civil offense:

- (a) to manufacture, import, sell, lea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a device or system that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 (b) to receive, in connection with commercial activities, or further distribute,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 tha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civil offense established under subparagraph (a) or (b) is actionable by any person that holds an interest in the content of the signal.

#### **Article 16.12: Patents**

1. Each Party shall make patents available for any invention, whether a product or proces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and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sup>73</sup>. In addition, each Party confirms that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new uses or methods of using a known product, provided that the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and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sup>73</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arty may treat the term "inventive step" as synonymous with "non-obvious" and the term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as synonymous with "useful."

*Exclusion from Patentability*

2. Each Party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 (a)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at Party's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at Party's domestic law;
  - (b)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and
  - (c)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Limited Exceptions to Patent Rights*

3. Each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those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Article 16.13: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General Obligation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enforcement procedures are available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so as to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remedies which constitute a deterrent to further infringements. These procedures shall be applied in a manner so as to avoid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and to provide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procedures adopted, maintained, or applied to implement this Chapter are fair and equitable, and provide for the rights of all participants subject to such procedures to be appropriately protected.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that these procedures are not unnecessarily complicated or costly, or entail unreasonable time-limits or unwarranted delays.

3. In implementing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proportionality between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and the applicable measures, remedies, and penalties.

4.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make its officials subject to liability for acts undertaken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Presumption of Authorship or Ownership*

5. In civi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erformer, or producer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s subsist in such subject matter.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sup>74</sup>*

6.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right holders<sup>75</sup> civil judicial procedur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7. To the extent that any civil remedy can be ordered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 merits of a ca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ose procedures conform to principles equivalent in substance to those set forth in this Article.

*Injunctions*

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ssue an order against a person to desist from an infringement, *inter alia*, to prevent goods that involve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entering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sup>74</sup> A Party may exclude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from the scope of this Article.

<sup>75</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right holder" includes a federation or an association having the legal standing and authority to assert such rights, and also includes a person that exclusively has any one or mor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compassed in a given intellectual property.

9.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a Party may limit the remedies available against use by governments or by third parties authorised by a governmen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to the payment of remuneration, provided that the Party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e TRIPS Agreement specifically addressing that use. In other cases, the remedies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or, where these remedies are inconsistent with a Party's law, declaratory judgments and adequate compensation shall be available.

#### *Damages*<sup>76, 77</sup>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 holder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sup>78</sup>.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consider, *inter alia*, any legitimate measure of value the right holder submits, which may include lost profits or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s or services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or the suggested retail price.

11. At least in case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the infringer's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A Party may presume those profits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12. At least with respect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rotecting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also establish or maintain a system that provides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pre-established damages;

<sup>76</sup>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case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where an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 in infringing activity.

<sup>77</sup>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is not obliged to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the remedies in paragraphs 10 through 12 to be ordered in parallel.

<sup>78</sup> A Party may also provide that the right holder is not be entitled to any of the remedies set out in paragraphs 10 through 14 in the case of a finding of non-use of a trademark.

- (b) presumptions<sup>79</sup>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r
- (c) at least for copyright, additional damages.

13. If a Party provides the remedy referred to in paragraph 12(a) or the presump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2(b),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either its judicial authorities or the right holder has the right to choose such a remedy or presumptions as an alternative to the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0 and 11.

1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where appropriate,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infringement of at least copyright or related rights, trademarks, and patents, that the prevailing party be awarded payment by the losing party of court costs or fees, appropriate lawyer's fees, or other expenses as provided for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 *Other Remedies*

15. At least with respect to pirated copyright goods and counterfeit trademark good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the infringing goods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16. Each Par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infringing goods, be, without undue delay and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estroyed or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a manner so as to minimis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17. A Party may provide for the remedies described in paragraphs 15 and 16 to be carried out at the infringer's expense.

#### *Information related to Infringement*

18. Without prejudice to each Party's domestic law governing privilege,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sources, 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sup>79</sup> The presumptions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may include a presumption that the amount of damages is:

- (a) the quantity of the goods infringing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question and actually assigned to third persons, multiplied by the amount of profit per unit of goods which would have been sold by the right holder if there had not been the act of infringement;
- (b) a reasonable royalty; or
- (c)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ques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o order the infringer or, in the alternative, the alleged infringer, to provide to the right holder or to the judicial authorities, at leas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relevant information as provided for in that Party's applicable domestic law that the infringer or alleged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This information may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a person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the channels of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or allegedly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ird persons alleged to be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uch goods or services and of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

1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relation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arty's judicial or other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a party,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connection with that proceeding.

*Provisional Measures*

2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 (a) against a party or, if appropriate, a third party over whom the relevant judicial authority exercises jurisdiction,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occurring, and in particular, to prevent goods that involve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entering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and
- (b) to preserve relevant evidence in regard to the alleged infringement.

2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if appropriate, in par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 In proceedings conducted *inaudita altera part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y to act expeditiously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to make a decision without undue delay.

22. At least in case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r other taking into custody of

suspect goods, and of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either originals or copies thereof,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2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does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procedures for such provisional measures.

24. Each Party may provide that if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revoked, if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if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applicant,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to provide the defendan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ese measures.

**Article 16.14: 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Scope of Border Measures*

-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e goods that are subject to footnote 14 of Article 51 of the TRIPS Agreement.
- 2.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 may apply to in-transit<sup>80</sup> shipments or goods.
- 3. A Party may apply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to goods put on the market in another country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Provision of Information from the Right Holder*

4. Each Party shall permit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to request that a right holder supply relevant information to assist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aking the border

<sup>80</sup> "In-transit " means the movement of shipments or goods under customs procedures under which shipments or goods are:

- (a) transported under customs control from one customs office to another; or
- (b) transferred under customs control from the importing means of transport to the exporting means of transport within the area of one customs office which is the office of bo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 Party may also allow a right holder to supply relevant information to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Ex Officio Action*

5.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with respect to import and export shipments under which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may action upon their own initiative to suspend the release of, or to detain,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pplication by the Right Holder*

6.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with respect to import and export shipments under which a right holder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providing the procedures to suspend the release of, or to detain,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7. Each Party may provide that, if the applicant has abused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is Article or if there is due cause,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deny, suspend, or void the application.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a right holder that requests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prevent abu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is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does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A Party may provide that such security may be in the form of a bond conditioned to hold the defendant harmless from any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any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or detention of, the goods in the ev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goods are not infringing.

*Determination as to Infringement*

9.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by which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may determin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e initiation of the procedures described in paragraphs 5, 6, and 7, if the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medies*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destruction of goods following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9 that the

goods are infringing. In cases where those goods are not destroyed,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ose goods are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a manner so as to avoid harm to the right holder.

11. In regard to counterfeit trademark goods, the simple removal of the trademark unlawfully affixed is not sufficient, other than in exceptional cases, to permit release of the goods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12. A Party may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following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9 that the goods are infringing.

*Fees*

1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application fee, storage fee, or destruction fee to be assessed by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is Article not be used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Disclosure of Information*

14. Each Party may, without prejudice to that Party's law pertaining to the privacy or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uthorise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where they have detained, or seized,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provide a right holder who has filed a request for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bout goods that could assist them in pursuing a remedy. This information may include the description and quantity of the good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signor, importer, exporter or consignee, and, if know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of the goods.

*Small Consignment and Personal Luggage*

15. Each Party ma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small quantities of goods of a non-commercial nature contained i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or sent in small consignments.

**Article 16.15: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1.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unauthorised copying of a cinematographic work,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in a movie theatre.

*Penalties*

3. For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each Party shall provide penalties that include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sup>81</sup> sufficiently high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acts of infringement,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penalties applied for crimes of a corresponding gravity.

*Seizure, Forfeiture, and Destruction*

4.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alleged offence,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alleged offence, and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alleged infringing activity.

5. If a Party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items subject to seizure as a prerequisite for issuing an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at Party shall not require the items to be described in greater detail than necessary to identify them for the purpose of seizure.

6.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In cases where counterfeit trademark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are not destroyed,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ose goods are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a manner so as to avoid causing harm to the right hold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those goods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to the infringer.

7.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predominantly used in the creation of counterfeit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and, at least for serious offences,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rfeiture or destruction of such materials, implements, or assets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to the infringer.

8. With respect to the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a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hat Party may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 (a) the seizure of assets,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allegedly infringing activity; and
- (b) the forfeiture of assets,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the assets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infringing activity.

*Ex Officio Criminal Enforcement*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appropriate cases,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may act upon their own initiative to initiate investigation or legal action with respect to the criminal offenc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for which that Party provides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Article 16.16: Special Measures against Copyright Infringers on the Internet**

1. Each Party's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to the extent set forth in this Chapter shall apply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over digital networks, which may include the unlawful use of means of widespread distribution for infringing purposes.

2. A Party may provide,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hat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y to order an online service provider to disclose expeditiously to a right holder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a subscriber whose account was allegedly used for infringement, if that right holder has filed a legally sufficient claim f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if that information is being sough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 enforcing those right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cooperative efforts within the business community to effectively address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while preserving legitimate competition and, consistent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preserving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air process, and privacy.

<sup>81</sup> For greater certainty, there is no obligation for a Party to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imprisonment and monetary fines to be imposed in parallel.

4. Each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to curtail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network.

5. Each Party shall implement these procedures in a manner that avoids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activity,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nd, consistent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preserves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air process, and privacy.<sup>82</sup>

#### Article 16.17: Cooperation

1. To further the objectives in Article 16.1, the Parties agree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 (a) patents, trade secrets, industrial design and related rights;
- (b) trademarks and related right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 (c)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registration and exploitation;
- (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facilita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commerce;
- (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mes;
- (g) issues related to non-partie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shared mutual concerns such as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 (h)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 (i)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and
- (j) other issues of mutual interest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2. This cooperation may include:

- (a)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ntacts among the Parties' respective agencies which have an interes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sup>82</sup> For instance, without prejudice to a Party's law, adopting or maintaining a regime providing for limitations on the liability of, or on the remedies available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while preserv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right holder.

(b) exchanging information on:

- (i) each Party's policies, legislative provisions, activitie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ii) the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imed at promoting the efficient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 (iii) appropriate initiativ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 providing to the other Party, and updating as required, contact points for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d) exchanging experts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nd experiences;

(e) policy dialogue on intellectual property in non-par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itiatives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forums;

(f) facilitating exchanges among relevant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g) those other activities as may be jointly determined by the Parties.

#### Article 16.18: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with expertise in intellectual property.

2. The Committee shall be co-chair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3. The Committee shall:

- (a) discuss topics relevant to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ed by this Chapter, and any other relevant issues;
- (b) provide a forum for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 16.19; and
- (c) oversee the Parties'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4. The Committee shall meet annually or as otherwise agreed.

## CHAPTER SEVENTEEN

## ENVIRONMENT

**Article 16.19: Consultations**

1. Either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actual or proposed measure or any other matter which that Party considers might negatively affect its intellectual property interests.
2. Upon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Parties agree to consul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ttee to consider ways of reaching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s. In doing so, the Parties shall:
  - (a) endeavour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full examination of the matter; and
  - (b) treat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3.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pursuant to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2, either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ssion.

**Article 17.1: Context and Objectives**

1. Recalling *Agenda 21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1992*, and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2002*,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s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nderline the benefit of cooperation 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issues as part of a global approach to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et or use their environmental law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7.2: Right to Regulate and Levels of Protection**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that Party'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that Party's relevant laws and policies, each Party shall seek to ensure that those laws and policies provide for and encourag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here relevant, are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7.3, and shall strive to continue to improve those laws and policies.

**Article 17.3: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valu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agreements as a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lobal 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mmit to consulting and cooperating as appropriate with respect to trade-related environmental issues of mutual interest.

2.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ir respective laws and practices of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 **Article 17.4: Trade Favou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strive to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through addressing related non-tariff barriers.

#### **Article 17.5: Upholding Levels of Protection in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Party has not failed to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 in a particular case if the action or inaction in question by agencies or officials of that Party reflects a reasonable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in respect of investigatory, prosecutorial, regulatory, or compliance matters, or results from *bona fide* decisions to allocate resources to enforcement in respect of other environmental matters determined to have higher priorities.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protections afforded in each Party's respective environmental law.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environmental law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the protections afforded in that law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7.6: Scientific Information**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when prepar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at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of taking accou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 **Article 17.7: Access to Remedies and Procedural Guarantees**

1.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ensure that its authorities competent to enforce environmental law give due consideration to alleged violations of that law brought to their attention by interested persons residing or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for the enforcement of its environmental law are available under its law, and are fair, equitable, transparent, and comply with due process of law. Hearings in those proceeding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applicable law, except i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therwise requires.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a legally recognised interest under that Party's law in a particular matter have appropriate access to procee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2 for the enforcement of that Party's environmental law and to seek remedies for violation of that law.

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inal decisions on the merits of a case in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e in writing, preferably state the reasons on which the decisions are based, and are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in a timely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o the public.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arties to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2 have the right,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o seek review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nd, where warranted, correction of decisions issued in those proceedings.

6. Articles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19.4 (Review and Appeal) do not apply to this Chapter.

#### **Article 17.8: Transparency**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respecting any matter covered by this Chapter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so that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can become acquainted with them.

2. Each Party shall publis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in advance, to the extent possible, any such law that it proposes to adopt, so that the other Party or interested persons may provide comments.

3. Article 19.1 (Publication) does not apply to this Chapter.

#### **Article 17.9: Public Information**

1. Each Party shall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at Party's environmental law by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law to the public.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receipt and the consideration of enquiries from persons residing or established in that Party's territory on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 **Article 17.10: Cooperation**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on trade-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al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commit to cooperate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e Parties may involve the public and interested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s appropriate, of cooperative activities. The areas of cooperation shall be determined and their implementation shall be monitored by the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Article 17.11: Institutional Mechanism**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fficial within that Party's administration who shall serve as a contact poin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Chapter.
2.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n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senior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matters from within the administration of each Party.
3. The Council shall meet within the first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as necessary, to discuss matters of common interest,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to review, as appropriate, progress under this Chapter.

#### **Article 17.12: Government Consultations**

1. The Parties shall at all times endeavour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Chapter through dialogu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2.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sup>83</sup> The request shall identify the matter at issue and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sufficient information for a full examination of the matter raised.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3.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4. If a Party considers that the matter needs further discussion, that Party may request that the Council be 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The Council shall convene promptly and endeavour to agree on a resolution of the matter. The resolution of the Council shall be made public unless the Council otherwise decides.
5. If the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4 fail to resolve the matter, a Party may request higher level consultations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Such consultations shall proceed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for such consultation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 **Article 17.13: Panel of Experts<sup>84</sup>**

1. If the matter is not satisfactorily addressed through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7.12, a Party may, 120 days after the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7.12.2, request that a Panel of Experts be convened to examine the matter.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to examine the matter referred to in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nvironment Chapter and to issue a report making recommend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matter".<sup>85</sup> The procedures set out in Annex 17-A apply to the selection of panellists.
2. If in the final report, the Panel of Experts determines that a Party has not complied with that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shall, within 90 days from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endeavour to ag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port in a mutually satisfactory manner. The agreed outcome by the Parties on the recommendations shall be made public promptly.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onitored by the Council.

<sup>83</sup> Consultations for Article 17.5.1 are restricted to those matters with merit where trade or investment effect can be established.

<sup>84</sup> Prior to the request for a Panel of Experts, a Party should consider whether that Party maintains environmental law that is substantially equivalent in scope to those that would be the subject of the panel review.

<sup>85</sup> For greater clarity, a report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only, and shall not address the issue of remedy, such as trade sanctions or fines.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nexes 21-B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 and 21-C (Model Rules of Procedure) apply, *mutatis mutandi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rticle 17.14: Protection of Information**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release information that would be otherwise prohibited or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at Party'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concern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rticle 17.15: Dispute Settlement**

A Party shall not have recourse to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Article 17.16: Application to the Provinces of Canada**

Notwithstanding Article 1.4 (Extent of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to the provinces of Canada is subject to Annex 17-B.

**Article 17.17: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environmental law** means any law, statutory or regulatory provision, or other legally binding measure, of a Party,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r the prevention of a danger to human life or health, through:

- (a) the prevention, abatement, or control of the release, discharge, or emission of pollutants or environmental contaminants;
- (b)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waste and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hereto; or
- (c)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ild flora or wild fauna,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their habitat, and protected natural areas,

but does not include any measure directly related to worker health and safety, nor a measure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managing the commercial harvest or exploitation, or subsistence or aboriginal harvesting, of natural resources.

**Annex 17-A**

**Procedures Related to Panel of Experts**

1. For the purposes of selecting the panellists,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
  - (a)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composed of three panel members;
  - (b)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request to establish a Panel of Experts, each Party shall select one panellist; and
  - (c) if a Party fails to select that Party's panellist within such period, the other Party shall select, within a further seven days, the panellist from among qualified individuals who are nationals of the Party that failed to select its panellist.
2. For the purposes of selecting the chair, the following procedures apply:
  - (a)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a request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names of three qualified candidates who are not nationals of either Party. The names shall be provided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request to establish a Panel of Experts;
  - (b) the requesting Party may choose one of the candidates to be the chair or if the names were not provided or none of the candidates are acceptable, provide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with the names of three candidates who are not nationals of either Party and who are qualified to be the chair. Those names shall be provided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receiving the names under subparagraph (a) or 37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of Experts; and
  - (c)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may choose one of the three candidates to be the chair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e names under subparagraph (b), failing which the chair shall be selected by lot from the candidates propos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subparagraphs (a) and (b) within a further seven days.

3. The experts proposed as panellists must be individuals with specialised knowledge or expertise in environmental law, or issues addressed in this Chapter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panellists must be independent,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not take instructions from any organisation or government with regard to issues related to the matter at stake, or be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f either Party.

4.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decide, the Panel of Experts shall perform its functions according to Annexes 21-B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 and 21-C (Model Rules of Procedure),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and shall ensure, in particular, that:

- (a) each Party has the opportunity to provide written and oral submissions to the Panel of Experts;
- (b)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stitutions, and persons with relevant information or expertise in the Parties' territories have the opportunity to provide written submissions to the Panel of Experts; and
- (c) at least one hearing is held before the Panel of Experts for each panel proceeding, which shall be open to the public, subject to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5.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of Experts shall, within 120 days of the last expert being selected, present to the Parties an interim report, setting out the findings of fact as well as any determinations the Panel of Experts has made and containing recommendations on the matter. Each Party may provide comments to the Panel of Experts on the interim report within 45 days of its issuance. After considering any such comments, the Panel of Experts may reconsider its report or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as appropriate. The Panel of Experts shall issue the final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6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interim report. Each Party shall make the final report publicly available within 30 days of its issuance.

#### Annex 17-B

#### Application to Provinces of Canada

1.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Canada shall provide to Korea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 written declaration indicating the provinces for which Canada is to be bound in respect of matter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declaration becomes effective on the date of receipt by Korea.
2. Canada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as many provinces as possible.
3. Canada shall notify Korea six months in advance of any modification to its declaration.
4. Canada shall not request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7.12, at the instance of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not included in the declaration noted above.

## CHAPTER EIGHTEEN

### LABOUR

#### Article 18.1: 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s

The Parties affirm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O”), including those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O Declaration”).

#### Section A – Obligations

#### Article 18.2: General Obligations

Affirming full respect for each Party’s Constitution and labour law and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abour standards in its territory,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labour law, and set its priorities in the execution of its labour polic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ollowing internationally recognised labour rights<sup>86</sup>:

-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a prohibi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sup>86</sup>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nsure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ly-recognised labour right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 (e) acceptable minimum employment standards, such as minimum wages and overtime pay, for wage earners, including those not covered by collective agreements;
- (f)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 (g) compensation in cases of occupational injuries or illnesses; and
- (h) non-discrimination in respect of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 Article 18.3: Non-derogation

A Party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at Party’s labour law implementing Article 18.2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set out in that Article.

#### Article 18.4: Government Enforcement Action<sup>87</sup>

1. Each Party shall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ppropriate government action, such as:

- (a) appointing and training inspectors;
- (b) monitoring compliance and investigating suspected violations;
- (c) requiring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 (d)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worker-management committees to address labour regulation of the workplace;
- (e) providing or encouraging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s; and

<sup>87</sup> To establish a viol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nd that the matter of dispute is covered by mutually-recognised labour law.

- (f) initiating, in a timely manner, proceedings to seek appropriate sanctions or remedies for violations of its labour law.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give due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law, to a request by an employer, employee or their representatives, or another interested person, for an investigation of an alleged violation of the Party's labour law.

#### **Article 18.5: Private Ac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person with a legally-recognised interest under that Party's domestic law has appropriate access to proceedings before a tribunal that can:

- (a) enforce the Party's labour law and give effect to such person's labour rights; and
- (b) remedy breaches of the Party's labour law or rights.

#### **Article 18.6: Procedural Guarante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referred to in Articles 18.4.1(b), 18.4.1(f), and 18.5:

- (a) are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and to this end that they comply with the due process of law;
- (b) are open to the public except if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se proceedings; and
- (c) do not entail unreasonable fees, delays or time limits.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inal decisions on the merits of the case in procee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in writing, preferably state the reasons on which the decisions are based, and are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in a timely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the public.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arties to those proceedings have the right,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domestic law, to seek review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nd, if warranted, correction of decisions issued in those proceedings.

#### **Article 18.7: Public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respecting its labour law, including information related to enforcement and compliance procedures.

#### **Section B – Institutional Mechanisms**

#### **Article 18.8: Labour Ministerial Council**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Labour Ministerial Council composed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labour affairs of the Parties or their designees.
2. The Council shall meet within the first yea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as often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discuss matters of common interest, an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and review progress under this Chapter.
3. The Council may consider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is Chapter and take such other action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s the Parties may agree.
4. The Council shall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hapter in the light of experience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agreed by the Council.

#### **Article 18.9: National Points of Contact**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ffice within their governmental department responsible for labour affairs that shall serve as a national point of cont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PC") and provide to the other Party its contact information by diplomatic note.

#### **Article 18.10: Public Communications**

1.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submission and receipt and periodically make available a list of public communications on labour law matters that:
  - (a) are raised by a national of the Party or an entity tha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 (b) aris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c) pertain to obligations under Section A.

2. Each Party shall review such matters,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procedures pursuant to Annex 18-B.

#### Article 18.11: Cooperative Activities

The Parties may initiate cooperative labour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enhancement of workers' welfare and the promotion of better understanding by each Party of the other Party's labour system, as set out in Annex 18-A.

#### Article 18.12: General Consultations

1. The Parties shall at all times endeavour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Chapter.

2.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NPC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consultation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o address a matter that might affect its operation.

3.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resolve the matter, the requesting Party may use the procedures provided under Article 18.13.

### Section C – Procedures for Review of Obligations

#### Article 18.13: Labour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at the ministerial level to discuss matters related to obligations in Section A.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shall respond within 60 days.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sufficient information under its control to allow a full examination of the matters raised, subject to a requirement in its domestic law regarding confidentiality of person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3. To facilitate discussion of the matters under consideration, either Party may call upon one or more independent experts to prepare a report, which shall be made public

within 90 days of its receipt by the Ministers.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gree upon selection of the expert or experts and shall cooperate with the expert or experts in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4. Labour consultations shall be concluded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reques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 Article 18.14: Review Panel<sup>88, 89</sup>

1. Following the conclusion of labour consultations, the Party that requested the consultations may request that a Review Panel be convened if it considers that:

- (a)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and
- (b) the matter has not been satisfactorily addressed through labour consultation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Review Panel shall be established and perform its function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3. The Review Panel shall determine, within 30 days after the last panellist is selected, whether the matter is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nd shall cease its functions if it determines that the matter is not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4. The review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nnex 18-D.

#### Article 18.15: Panellists

1. A Review Panel shall be composed of three panellists.

2. Panellists shall:

- (a) be chosen on the basis of expertise in labour matters or other appropriate disciplines, objectivity, reliability, and sound judgment;

<sup>88</sup> Recognis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prior to the request for a Review Panel, each Party shall consider whether the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apply to a reasonably meaningful portion of its own labour force in its own territory.

<sup>89</sup> A Party should resort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rticle only in cases with merit that are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 (b)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and
- (c)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set out in Annex 21-B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3. If either Party believes that a panellist is in violation of the code of conduct, the Parties shall consult and, if they agree, the panellist shall be removed and a new panellist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nnex 18-D that were used to select the panellist who was removed. The time limits shall run from the date of their agreement to remove the panellist.

4. Individuals shall not serve as panellists with respect to a review in which they have, or a person or organisation with which they are affiliated has, an interest.

5. The chairperson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6. Panellists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nnex 18-D.

#### **Article 18.16: Information for the Review Panel**

1. The Parties shall be entitled to make written and oral submissions to the Review Pane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nnex 21-C (Model Rules of Procedure)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2. The Review Panel may invite or receive and consider written submissions and any other information from organisations, institutions, the public and persons with relevant information or expertise.

#### **Article 18.17: Initial Report**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Review Panel shall base its report on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on information before it pursuant to Article 18.16.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Review Panel shall, within 180 days after the last panellist is selected, issue to the Parties an initial report containing:

- (a) findings of fact;
- (b) its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or any other determination requested in the terms of reference; and

- (c) its recommendations, if any, for addressing the matter.

3. Panellists may furnish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that are not the subject of unanimous agreement. The Review Panel, however, shall not disclose which panellists are associated with majority or minority opinions.

4. Either Party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Review Panel on its initial report within 45 days of presentation of the report.

5. After considering such written comments, the Review Panel, on its own initiative or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may:

- (a) request the views of the Parties;
- (b) reconsider its report; and
- (c)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 **Article 18.18: Final Report**

1. The Review Panel shall issue to the Parties a final report, including any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not unanimously agreed to, within 9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initial repor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The Parties shall make the final report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120 days after it is issued to the Parties.*

3. *If, in the final report, the Review Panel determines that the Party that was subject to the request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the Parties may develop, within the following 90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they may decide, a mutually satisfactory action plan to implement the Review Panel's recommendations.*

4. *Following the expiry of the period pursuant to paragraph 3,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decide on an action plan or the Party that was subject to the request is failing to implement the action plan according to its terms,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that the Review Panel be reconvened with a view to determining whether a monetary assessment needs to be set and paid in accordance with Annex 18-E.*

#### *Section D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8.19: Enforcement Principle**

This Chapter is not to be construed to empower a Party's authorities to undertake labour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8.20: Private Rights**

A Party shall not provide for a right of action under its domestic law against the other Party on the ground that the other Party has acted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rticle 18.21: Security of Domestic Procedures**

The decisions by each Party's tribunals, or pending decisions, as well as related proceedings, shall not be subject to revision or be reopened under this Chapter.

**Article 18.22: Protection of Information**

1. A Party that receives information identified by the other Party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shall protect such information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2.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Review Panel under this Chapter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2 of Annex 21-C (Confidentiality)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Article 18.23: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Parties may, as appropriate and by agreement, seek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r any other compet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 that has the necessary expertise and resources to enhance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Article 18.24: Dispute Settlement**

A Party shall not have recourse to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Article 18.2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due process** means that proceedings are conducted by decision-makers who are impartial and independent and do not have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matter, that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re entitled to support or defe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to present information or evidence, and that the decision is based on such information or evidence;

**forced or compulsory labour** does not includ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ertain civic obligations, prison labour not for private purposes and work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labour law** means laws, regulations, and, where applicable, jurisprudence that implement and protect the labour principles and rights set out in Article 18.2;

**mutually-recognised labour law** means labour law that addresses the same general subject matter in a manner in both Parties that provides rights, protections or standards, although for greater certainty the law of a Party need not b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law of the other Party in order to constitute a mutually-recognised labour law; and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an enterprise, or an organisation of employers or workers.

## Annex 18-A

## Cooperative Activities

1. The NPCs established under Article 18.9 shall serve as the contact points for cooperative labour activities.
2. Officials of the labour ministries and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ministries shall cooperate to:
  - (a) establish priorities for cooperative activities on labour matters;
  - (b) develop specific cooper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such priorities;
  - (c)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labour law and practices in each Party;
  - (d) exchange information on ways to improve labour law and practices, including best labour practices; and
  - (e) advance understanding of, respect for,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reflected in the ILO Declaration.
3.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Parties may include the following subjects:
  - (a) policy issues of common interest and their effective application: legislation, practice,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child labour, forced labou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pensation for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employment standards, work benefits, and migrant workers;
  - (b) labour-management relations: forms of coope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among workers, management and governments;
  - (c) social safety net programs: social programs for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 (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kills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and training;
  - (e) programs, methodologies and experience regarding productivity improvement;
  - (f) labour statistics; and
  - (g) such other matters as the Parties may agree.
4. Cooperative activities agreed upon under paragraph 3 may be implemented through:
  - (a) exchanges of delegations,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including study visits and other technical exchanges;
  - (b) exchange of information, standard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best practices, including publications and monographs;
  - (c) organisation of joint conferences, seminars, workshops, meetings, training sessions and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 (d)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ojects or demonstrations;
  - (e) joint research projects, studies and reports, including through engagement of independent experts with recognised expertise;
  - (f) cooperation within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ILO on labour-related issues; and
  - (g) other forms of technical exchanges or cooperation to which the Parties may agree.
5. In identifying areas for cooperation and carrying out cooperative activities, the Parties shall consider the views of their respective worker and employer representatives. The Parties shall carry out the cooperative activities with due regard for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legislative differences between them.

## Annex 18-B

## Public Communications

Public communication procedures of each Party regarding the right of a person to submit a public communication to the NPC shall indicate, *inter alia*:

- (a)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cceptance of communications, including that:
  - (i)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lief before domestic tribunals has been pursued and that matters pending before such tribunals will not be accepted, provided that the tribunal's proceedings conform to Article 18.5;
  - (ii)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atters pending before an international body will not be accepted;
  - (iii) communications that are trivial, frivolous, or vexatious will not be accepted; and
  - (iv) communication must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previous communications or include new or supplemental information not available in previous communications;
- (b) that there will be early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 (c) that the final report will consider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provided by the submitter, the other Party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as well as indicate how to obtain access to that information; and
- (d) that the public notification of the acceptance for review and of the release of the final report will indicate how to obtain access to any response of the other Party.

## Annex 18-C

## Extent of Obligations

1.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Canada shall provide to Korea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 written declaration with a list of any provinces for which Canada is to be bound in respect of matter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declaration shall be effective on delivery to Korea, and shall carry no implication as to the internal distribution of powers within Canada. Canada shall notify Korea six months in advance of any modification to its declaration.
2. Canada shall not request consultations, or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Panel, under Section C at the instance, or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not included in the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3. Korea shall not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Panel, under Section C, concerning a matter related to a labour law of a province unless that province is included in the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4. Canada shall,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Review Panel is convened pursuant to Article 18.14 respect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3, notify Korea in writing of whether any recommendation of the Review Panel in a final report under Article 18.18 or monetary assessment determined pursuant to Annex 18-E with respect to Canada shall be addressed to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Her Majesty in right of the province concerned.
5. Canada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as many of its provinces as possible.

## Annex 18-D

### Procedures Related to Review Panels

#### *Review Panel Selection Procedures*

1. For the purposes of selecting a panellist,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
  - (a) within 2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Panel, each Party shall select one panellist;
  - (b) if a Party fails to select its panellist within such period, the other Party shall select the panellist from among qualified individuals who are nationals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select its panellist; and
  - (c) the following procedures apply to the selection of the chairperson:
    - (i)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shall provide the Party that made the request with the names of three individuals who are qualified to be the chairperson. The names shall be provided no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Panel;
    - (ii) the Party that made the request may choose one of the individuals to be the chairperson or, if the names were not provided or none of the individuals is acceptable, provide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with the names of three individuals who are qualified to be the chairperson. Those names shall be provided no later than five days after receiving the names under sub-subparagraph (i) or 25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Panel; and
    - (iii) the Party that is subject to the request may choose one of the three individuals to be the chairperson, no later than five days after receiving the names under sub-subparagraph (ii), in default of which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request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o appoint a chairperson within 25 days.

#### *Rules of Procedure*

2. The rules of procedure under Article 21.8 (Rules of Procedure) apply *mutatis mutandis* to Review Panel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3. The Parties shall agree on a separate budget for each set of Review Panel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shall contribute equally to the budget, unless they agree otherwise.

#### *Terms of Reference of Panels*

4.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ithin 30 days after the Review Panel is convened,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be:

“To examine,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hapter, whether the Party that was subject to the request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and to mak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8.17.1 and 18.17.2.”

Annex 18-E

Monetary Assessments

1. The Review Panel shall be reconvened as soon as possible after delivery of the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8.18.4. Within 90 days after being reconvened, the Review Panel shall determine whether the terms of the action plan have been implemented or the non-compliance otherwise remedied.

2. In the event of a negative deter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the Review Panel shall assess an annual monetary assessment equivalent to the degree of adverse trade effects related to the non-complianc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14.1 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action plan and the Review Panel may adjust the assessment to reflect:

- (a) mitigating factors, such as good faith efforts made by the Party to begin remedying such non-compliance after the final report of the Review Panel, *bona fide* reasons for the Party's failure to comply with such obligations; and
- (b) aggravating factors, such as the pervasiveness and duration of the Party's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3. Monetary assessments shall be paid into an interest-bearing fund designated by the Council and shall be expended at the direction of the Council to implement the action plan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4.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view Panel determines the amount of the monetary assessment pursuant to paragraph 2, or at any time thereafter, the complaining Party may provide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demanding payment of the monetary assessment. The monetary assessment shall be paid in equal, quarterly instalments beginning 120 days after the requesting Party provides such notice and ending upon decision of the Parties or upon the date of the Review Panel deter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 5.

5. If the Party that was subject to the review considers that it has eliminated the non-compliance, it may refer the matter to the Review Panel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e Review Panel shall be reconvened within 60 days of that notice and issue its report within 90 days thereafter.

6. In Canada, the procedure for enforcement of the monetary assessment is the following:

- (a) Korea may file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 certified copy of a Review Panel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2 above only if Canada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erms of a notice provided under paragraph 4 within 180 days of the notice being provided;
- (b) when filed, the Review Panel determination, for purposes of enforcement, becomes an order of the court;
- (c) Korea may take proceedings for the enforcement of a Review Panel determination that is made an order of the court, in that court, against the person in Canada against whom the Review Panel determination is addres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Annex 18-C;
- (d) proceedings to enforce a Review Panel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an order of the court are to be conducted in Canada by way of summary proceedings, provided that the court shall promptly refer a question of fact or a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Review Panel determination to the Review Panel that made the determin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Review Panel shall be binding on the court;
- (e) a Review Panel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an order of the court is not subject to domestic review or appeal; and
- (f) an order made by the court in proceedings to enforce a Review Panel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an order of the court is not subject to review or appeal.

7. Korea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onetary assessment in its territory.

CHAPTER NINETEEN

TRANSPARENCY

Article 19.1: Publication

-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specting a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 2.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 (a) publish in advance any such measure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 (b)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Article 19.2: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 1.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actual or proposed measure that the Party considers might materiall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substantially affect the other Party's interests under this Agreement.
- 2.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pertaining to an actual or proposed measure, whether or not the other Party was previously notified of that measure.
- 3. Any notification or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as to whether the measure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With a view to administering in a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 it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pplying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9.1 to particular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n specific cases:

- (a) whenever possible, persons of the other Party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a proceeding are provided reasonable notice,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domestic procedures, when a proceeding is initiate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 statement of the legal authority under which the proceeding is initiated,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issues in controversy;

- (b)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facts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ir positions prior to any fin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permitted by time,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and
- (c) its procedures are consistent with the Party's domestic law.

Article 19.4: Review and Appeal

-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the prompt review and, if warranted, correction of final administrative actions regarding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uch tribunals are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office or authority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do not have any substant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matter.
-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 any tribunals or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pport or defe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 (b)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submissions of record or, if required by the Party's domestic law, the record compi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 3. Each Party shall ensure, subject to appeal or further review as provided in its domestic law, that the dec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b) are implemented by, and govern the practice of, the offices or authorities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Article 19.5: Cooperation on Promoting Increased Transparency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a on ways to promote transparency in respec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rticle 19.6: Policy on Non-Discriminatory Purchase and Use of Goods and Services**

Each Party affirms that it is not its policy to discourage private persons in its territory from purchasing or using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rticle 19.7: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means an administrative ruling or interpretation that applies to all persons and fact situations that fall generally within its ambit and that establishes a norm of conduct but does not include:

- (a) a determination or ruling made in an administrative or quasi-judicial proceeding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person, good, or service of the other Party in a specific case; or
- (b) a ruling that adjudicate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act or practice.

**CHAPTER TWENTY**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ON**

**Article 20.1: Joint Commission**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ss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he Commission shall be co-chaired by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t the Ministerial level, or their designees.
2. The Commission shall:
  - (a)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 (b) review the general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 (c) supervise the further elaboration of this Agreement;
  - (d) consider ways to further enhanc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 (e) supervise the work of all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listed in Annex 20-A;
  - (f)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conferred in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 endeavour to resolve disputes that may ari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 (g) consider any other matter that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Commission may:
  - (a) adopt interpretive decisions concerning this Agreement, which shall be binding on dispute settlement panels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Establishment of a Panel) and on Tribunals established under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b) seek the advice of non-governmental persons;
  - (c) take any other action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s the Parties may agree; and

- (d) consider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mendments to Annex 1-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e) establish the amounts of remuneration and expenses that will be paid to the dispute settlement panellists; and
- (f)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re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d) are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of either Party.

5.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shall work under a mandate approved by the Commission.

6.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taken by mutual agreement.

7. The Commission shall convene once a year, or upon the request, in writing, of either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sess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held alternately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or by any technological means available.

8. Each Party shall treat confidential information exchanged in relation to a meeting of the Commission or a body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 Article 20.2: Agreement Coordinators

1. Each Party shall appoint an Agreement Coordin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ordinator") and notify the other Party within 60 day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Coordinators shall:

- (a) coordinate the work of all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 (b) recommend to the Commission the establishment of other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as they consider necessary to assist the Commission;
- (c) follow up on any decisions taken by the Commission, as appropriate;
- (d) receive notifications and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nd, as necessary,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 (e) consider other matters that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as mandated by the Commission.

3. The Coordinators shall meet as often as required.

4.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in writing that a special meeting of the Coordinators be held. The meeting shall take place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Annex 20-A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1. The Committees established are:
  - (a) Committee on Trade in Goods;
  - (b) Rules of Origin and Customs Committee;
  - (c)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d)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 (e) Committee on Trade Remedies;
  - (f)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g)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 (h)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 (i)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2. The Sub-Committees established are:
  - (a) Sub-Committee on Trade in Forest Products; and
  - (b) Sub-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3. The Working Group, which may be established on request of a Party, is:

Working Group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related to Building Products and Related Assemblies;
4. Other Bodies established are:
  - (a)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and
  - (b) Labour Ministerial Council.

Annex 20-B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1. Recognising Korea's constitutional mandate and security interests, and the corresponding interests of Canada, and both Parties' commitment to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ortance of intra-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ward that goal,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ittee shall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ppropriate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outward processing zones.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officials of the Parties. The Committee shall meet on or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t least once annually thereafter, or at a time as mutually agreed.
3. The Committee shall identify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outward processing zones.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any such outward processing zone has met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also establish a maximum threshold for the value of the total input of the originating final good that may be added within the geographic area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

**CHAPTER TWENTY-ONE****DISPUTE SETTLEMENT****Section A – Dispute Settlement****Article 21.1: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ur at all times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operation and consultation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 matter that may affect its operation.

**Article 21.2: Scope and Coverag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Section apply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al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wherever a Party considers that:

- (a)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 (b) the other Party otherwise fail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 (c) there is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nnex 21-A.

**Article 21.3: Choice of Forum**

1. Subject to paragraph 2, disputes regarding a matter arising under both this Agreement and an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may be settled in either forum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laining Par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 Party complained against claims that its measures are subject to Article 1.3 (Relation t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requests in writing that the matter be considered under this Agreement, the complaining Party may, in respect of that matter, thereafter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olely under this Agreement.

3. If the complaining Party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settlement panel under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forum selected shall be used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unless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makes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21.4: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 matter referred to in Article 21.2.

2. The Party requesting consultations shall deliver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set ou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3. With respect to disputes relating to automotive goods, a Party may refer a matter referred to in Article 21.2 to the Sub-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established under Annex 2-C by deliver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2. This Sub-Committee shall endeavour to resolve the matter through consultation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6 and 7.

4. Subject to paragraph 5,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5.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that concern perishable goods or motor vehicles,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6.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 matter through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 (a)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full examination of the measure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 (b) treat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7. Consultations ar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 **Article 21.5: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1. The Parties may agree to undertake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2.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are conducted according to procedures agreed to by the Parties.
3.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may begin at any time and be suspended or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4. Proceedings involving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r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any other proceedings.

#### **Article 21.6: Establishment of a Panel**

1.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f a matter referred to Article 21.2 is not resolved by recourse to consultations referred to Article 21.4 within:
  - (a) 35 days of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or

- (b) 10 days of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in cases of urgency, as referred to in Article 21.4.5;

the complaining Party may, through written notification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refer the matter to a dispute settlement panel. The panel is established upon receipt by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of the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omplaining Party.

2. In its written notification of panel establishment, the complaining Party shall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 **Article 21.7: Panel Composition**

1. In this Section, the “Receipt Date” means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notification by one Pa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21.6.1 is received by the other Party.
2. The panel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3.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Date or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each Party shall appoint a panellist and propose up to four candidates, who are neither nationals of either Party nor have their usual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to serve as the chair of the pa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
4.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panel member appointment and its proposed candidates to serve as the chair. If a Party fails to appoint a panellis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panellist shall be selected by lot from the candidates proposed by each Party to serve as the chai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5. Within 60 days after the Receipt Date or 15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nd appoint the chair from among the candidates proposed.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hair within this time period,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seven days, or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four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the chair shall be selected by lot from the candidates propos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6. If a panellist appointed by a Party is unable to serve, withdraws or is removed, a replacement shall be appointed by that Party within 30 days, or within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failing which the replacemen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If the chair is unable to serve, withdraws or is removed, the Parties shall promptly agree on the appointment of a replacement, failing which the replacement shall

be appointed by a selection by lot from among the remaining candidates previously proposed by each Party to serve as the chai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If there are no remaining candidates, each Party shall propose up to three additional candidates satisfying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3 and the chair shall be selected by lot from among them. In any such case, any time period applicable to the proceeding is suspended for a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e panellist or the chair is unable to serve, withdraws or is removed and ending on the date the replacement is selected.

- 7. Each panellist shall:
  - (a)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ade, oth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or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 (b) be chosen strictly on the basis of objectivity, reliability, and sound judgment;
  - (c)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 (d) not be employed by either Party; and
  - (e)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s set out in Annex 21-B.

8. If a Party believes that a panellist does not satisfy a qualification set out in paragraph 7 or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s set out in Annex 21-B, the Parties shall consult and, if they agree, the panellist shall be removed.

**Article 21.8: Rules of Procedure**

- 1. A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Chapter shall follow the Model Rules of Procedure set out in Annex 21-C. A panel may establish,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supplementary rules of procedure that do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 2.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rules of procedure of a panel shall ensure:
  - (a) that each Party has the opportunity to provide initial and rebuttal written submissions;
  - (b) subject to subparagraph (g), that a Party may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either Party’s written submissions, written versions of its oral statements,

- and written responses to requests or questions from the panel at any time after such information is submitted to the panel;
- (c) that each Party has the right to at least one hearing before the panel;
- (d) subject to subparagraph (g), that hearings of the panel are open to the public;
- (e) that the panel considers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entities located in either Party’s territory to provide written views regarding the dispute that may assist the panel in evaluating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 (f) that all submissions and comments made to the panel ar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and
- (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sup>90</sup>.

3.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shall be: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matter referred to in the written notification of the panel establishment, and to mak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as provided in Article 21.9.”

4. If a complaining Party wishes to argue that there is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in the sense of Annex 21-A,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so indicate.

5. If a Party wishes the panel to make findings as to the degree of adverse effects of any measure determin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or as to the degre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nnex 21-A,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so indicate.

6.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the panel’s own initiative, the panel may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from any person or body that it deems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Parties so agree and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7. The panel may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8. Finding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in the sense of Article 21.9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its members. Panellists may provide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not unanimously agreed.

<sup>90</sup> As provided under Articles 22.2 (National Security) and 22.5 (Disclosure of Information), a panel shall not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type identified in those provisions.

9. The expenses of a panel proceeding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its members,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in equal shares.

#### Article 21.9: Panel Reports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shall issue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2. The panel shall base its reports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ppli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rticles 31, 32, and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done at Vienna on 23 May 1969, on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on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put before 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3. Within 90 days after the three panellists are appointed, or within 5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the panel shall issue to the Parties an initial report containing its findings of fact and its determinations as to:

- (a)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 (b) whether there is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nnex 21-A; or
- (c) any other issue included in the terms of reference.

4. The panel shall include in its initial report the basic rationale behind its findings and determinations.

5.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panel shall include in its initial report recommend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6. A Party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panel regarding its initial report. After considering these comments, the panel, on it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a Party, may:

- (a) request the views of a Party;
- (b) reconsider its report; or
- (c)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7. The panel shall issue to the Parties a final report within 3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initial report, or within 17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8.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8 and Annex 21-C, the initial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confidential. The final report of the panel may be published by either Party 15 days after it is issued to the Partie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Article 21.10: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1. On receipt of the final report of a panel, the Parties shall agree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ch,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if any, of the panel.

2. Wherever possible, the resolution shall be the removal of a measure not conforming to this Agreement or the remova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nnex 21-A. If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Parties may agree to compensation in lieu of the removal of a measure or of the remova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3.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resolution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3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of the panel, or within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or within anoth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greeing on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 Article 21.11: Non-Implementation – Suspension of Benefits

1. If no agreement on compensation is reached pursuant to Article 21.10.3 within 20 days, or within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from the date of the complaining Party's request for compensation, or if 30 days, or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have passed since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if compensation is not requested by the complaining Party pursuant to Article 21.10.3, the complaining Party may:

- (a) at any time thereafter,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hat i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of benefits of equivalent effect. The notification shall specify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complaining Party intends to suspend; or
- (b) implement the suspension 30 days, or 10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after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it provides notice to the other Party

under subparagraph (a) or the date on which the panel issues its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3, as the case may be.

2. In considering what benefits to suspend pursuant to paragraph 1:
  - (a) the complaining Party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as that or those affected by the measure or other matter that the panel ha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or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wher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nnex 21-A has been found to exist; and
  - (b) the complaining Party that does not consider it is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may suspend benefits in other sectors.
3.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considers that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complaining Party intends to suspend pursuant to paragraph 1 is manifestly excessive,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may request in writing that the original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be reconvened to rule on this matter. This request shall be notified to the complaining Party within 30 days, or within seven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of the receipt of the written notification provided by the complaining Party under paragraph 1(a). The panel shall be composed, to the extent possible, of the panellists who served on the original panel. If an original panellist is unable to serve on the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paragraph, a replacement panellis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7,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21.8 and 21.9 apply to procedures adopted and reports issued by a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paragraph, with the exception that the panel shall issue a single final report within 45 days, or within 25 days in cases of motor vehicles, of its establishment, or, if an original panellist is unable to serve on the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paragraph, from the date of the last appointment of any replacement panellist. A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anel ruling under this paragraph.
4. The suspension of benefits shall be temporary and shall only be applied by the complaining Party until the measu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has been withdrawn or amended so as to bring it into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or the Parties have otherwise reached agreement on a resolution of the dispute.

#### **Article 21.12: Compliance Review**

If there is disagreement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this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determinations or recommendations of a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a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 dispute settlement pa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liance panel”) through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e compliance panel is established upon receipt by the other Party of the written notification.<sup>91</sup> In the written notification of compliance panel establishment, the Party shall identify the matter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A compliance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composed, to the extent possible, of the panellists who served on the original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If an original panellist is unable to serve on the compliance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paragraph, a replacement panellis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7,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21.8 and 21.9 apply to procedures adopted and reports issued by a compliance panel. Where a complaining Party has suspende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1, it may continue to suspend such benefits during proceedings under this paragraph. A compliance panel may include in its final report a recommendation that such suspension be terminated or that the amount of benefits suspended be modified.

### **Section B – Domestic Proceedings and Privat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 **Article 21.13: Referrals of Matters from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1. If an issu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rises in a domestic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of a Party that either Party considers would merit its intervention, or if a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solicits the views of a Party, that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e Commission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n appropriate respons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2.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is located shall submit any agreed interpretation of the Commission to the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at forum.

<sup>91</sup> In interpreting the terms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nd “measures taken to comply”, a compliance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take into account relevant jurisprudence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3.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agree, either Party may submit its own views to the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at forum.

**Article 21.14: Private Rights**

A Party shall not provide for a right of action under its domestic law against the other Party on the ground that a measure of that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21.1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 established under Article 1.1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observance of agreements to arbitrate an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uch disputes.

3.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if it is a party to,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New York Convention.

**Annex 21-A**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1. If a Party considers that any benefit it could reasonably have expected to accrue to it under any provision of:

- (a) Chapters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Three (Rules of Origin), Four (Origin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and Seven (Trade Remedies);
- (b) Chapter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 (c) Chapter Fourteen (Government Procurement);

is nullified or impair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any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 the sense of Article XXIII(1)(b) of GATT 1994, Article XXIII(3) of GATS or Article XXII(2) of GPA, the Party may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Section A of this Chapter. A panel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A of this Chapter shall take into account relevant jurisprudence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concerning Article XXIII(1)(b) of GATT 1994, Article XXIII(3) of GATS or Article XXII(2) of GPA.

2. A Party shall not invoke:

- (a) paragraph 1(a),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arises from a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provision of Chapters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 Three (Rules of Origin ), Four (Origin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 and Seven (Trade Remedies); or
- (b) paragraph 1(b);

with respect to any measure subject to an exception under Article 22.1 (General Exceptions). In addition, a Party shall not invoke paragraphs 1(a), (b), and (c) with respect to any measure subject to the exception under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Annex 21-B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s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 (a) **panellist** means a member of a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 (b) **candidate** means a natural person who is under consideration for selection as a member of a panel under Article 21.7;
  - (c) **assistant** means a natural person who, under the terms of appointment of a panellist, conducts research or provides assistance to the panellist;
  - (d) **proceeding**, unless otherwise specified, means a panel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and
  - (e) **staff**, in respect of a panellist, means natural persons und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panellist, other than assistants.

*Responsibilities to the Process*

2. Every candidate and panellist shall avoid impropriety and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shall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shall avoid direct and indirect conflicts of interests, and shall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preserved. Former panellists mus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paragraphs 15 through 18.

*Disclosure Obligations*

3. Prior to confirmation of his or her selection as a panellist under this Agreement, a candidate shall disclose any interest, relationship or matter that is likely to affect his or her independence or impartiality or that might reasonably create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in the proceeding. To this end, a candidate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become aware of any such interests, relationships and matters.
4. A candidate or panellist shall only communicate matters concerning actual or potential violations of this Annex to the Commission for consideration by the Parties.
5. Once selected, a panellist shall continue to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become aware of any interests, relationships, or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nd shall

disclose them.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a continuing duty that requires a panellist to disclose any such interests, relationships, or matters that may arise during any stage of the proceeding. The panellist shall disclose such interests, relationships, or matters by informing the Commission, in writing, for consideration by the Parties.

*Duties of Panellists*

6. Upon selection, a panellist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thoroughly and expeditiousl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with fairness and diligence.
7. A panellist shall consider only those issues raised in the proceeding and necessary for a ruling and shall not delegate this duty to another person.
8. A panellist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his or her assistant and staff are aware of, and comply with paragraphs 2 through 5, 16, 17, and 18.
9. A panellist shall not engage in *ex parte* contacts concerning the proceeding.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Panellists*

10. A panellist shall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shall avoid creating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and shall not be influenced by self-interest, outside pressure, political considerations, public clamour, loyalty to a Party or fear of criticism.
11. A panellist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incur any obligation or accept any benefit that would in any way interfere, or appear to interfere, with the proper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12. A panellist shall not use his or her position on the panel to advance personal or private interests and shall avoid actions that may create the impression that others are in a special position to influence him or her.
13. A panellist shall not allow financial, business, professional, family or social relationships or responsibilities to influence his or her conduct or judgement.
14. A panellist shall avoid entering into a relationship or acquiring a financial interest that is likely to affect his or her impartiality or that might reasonably create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Obligations of Former Panellists*

15. All former panellists shall avoid actions that may create the appearance that they were biased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or derived advantage from the decision or ruling of the panel.

*Confidentiality*

16. Neither a panellist nor a former panellist shall disclose or use, at any time, non-public information concerning a proceeding or acquired during a proceeding, except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or disclose or use, in any case, such information to gain personal advantage or advantage for others or to adversely affect the interest of others.

17. A panellist shall not disclose a panel ruling or parts thereof prior to its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18. A panellist or former panellist shall not disclose, at any time, the deliberations of a panel or a panellist's view.

**Annex 21-C**

**Model Rules of Procedure**

*Application*

1. The following rules of procedure apply 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Definition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adviser** means a natural person retained by a Party to advise or assist the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panel proceeding;

**assistant** means a natural person who, under the terms of appointment of a panellist, conducts research or provides assistance to the panel;

**candidate** means a natural person who is under consideration for selection as a member of a panel under Article 21.7;

**complaining Party** means a Party that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under Article 21.6;

**public holiday** means every Saturday and Sunday and any other day designated by a Party as a holiday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and notified to the other Party;

**panel** means a dispute settlement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panellist** means a member of a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1.6;

**Party complained against** means the Party that is alle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Article 21.2; and

**representative of a Party** means an employee of a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or of any other government entity of a Party.

3. A reference made in these rules of procedure to an Article is a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Article in this Chapter.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4.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hearing takes place shall be in charge of the logistical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organisation of hearings,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Notifications*

5. The Parties and the panel shall transmit a request, notice, written submission, or other document by delivery against receipt, registered post, courier, facsimile transmission, telex, telegram, or any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that provides a record of the sending thereof.

6. A Party shall provide a copy of each of its written submissions to the other Party and to each of the panellists. A copy of the document shall also be provided in electronic format.

7. All notifications shall be addressed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or its successor and to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of Canada, or its successor, respectively.

8. Minor errors of a clerical nature in a request, notice, written submission, or other document related to the panel proceeding may be corrected by delivery of a new document clearly indicating the changes.

9. If the last day for delivery of a document falls on a public holiday of Korea or Canada, the document may be delivered on the next business day.

*Commencement of Panel Proceeding*

10.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the Parties shall meet with or contact the panel within seven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three panellists in order to determine such matters as the Parties or the panel deems appropriate, including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to be paid to the panellists, which will be in accordance with WTO standards.

11. The Parties shall notify the agreed terms of reference to the panel within two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three panellists.

*Initial Submissions*

12. The complaining Party shall deliver its initial written submission no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appointment of the three panellists.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deliver its written counter-submission no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delivery of the initial written submission.

*Conduct of Panel Proceedings*

13. The chair of the panel shall preside at all its meetings. The panel may delegate to the chair authority to make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decisions.

14.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e panel may conduct its activities by any means, including telephone, facsimile transmissions, or computer links.

15. Only panellists may take par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panel, but the panel may permit its assistants to be present at its deliberations.

16. The drafting of any ruling shall remain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panel and must not be delegated.

17. If a procedural question arises that is not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cluding this Annex, the panel may adopt an appropriate procedure that is compatible with those provisions.

18.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there is a need to modify any time limit applicable in the proceedings or to make any other procedural or administrative adjustment, it shall inform the Parties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change or adjustment and of the period or adjustment needed.

*Hearings*

19. The chair of the panel shall fix the date and time of the hearing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panel, and confirm this information in writing to the Parties. This information shall also be made publicly available by the Party in charge of the logistical administration of the proceedings unless the hearing is closed to the public.

20.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hearings shall alternate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with the first hearing to take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21. The panel may convene additional hearings if the Parties so agree.

22. All panellists shall be present during the entirety of any hearing.

23. The following persons may attend the hearing, irrespective of whether the hearing is closed to the public or not:

- (a)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 (b) advisers to the Parties;

- (c) administrative staff, interpreters, translators, and court reporters; and
- (d) panellists' assistants.

Only the representatives and advisers of the Parties may address the panel.

24. No later than five days before the date of a hearing, each Party shall deliver to the panel a list of the names of persons who will make oral arguments or presentations at the hearing on behalf of that Party and of other representatives or advisers who will be attending the hearing.

25. Hearing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Hearings shall be held in closed session when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a Party co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26. The panel shall conduct the hearing in the following manner, ensuring that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are afforded equal time:

*argument*

- (a) argument of the complaining Party; and
- (b) argument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rebuttal argument*

- (a) argument of the complaining Party; and
- (b) counter-reply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27. The panel may direct questions to either Party at any time during the hearing.

28. The panel shall arrange for a transcript of each hearing to be prepared and delivered to the Parti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hearing.

29. Each Party may deliver a supplementary written submission concerning a matter that arises during the hearing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the hearing.

*Questions in Writing*

30. The panel may at any time during the proceedings address questions in writing to a Party or both Parties. Each Party shall receive a copy of any questions put by the panel.

31. A Party shall also provide a copy of its written response to the panel's questions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written comments on the other Party's reply within five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Confidentiality*

32. The Parties and their advisers shall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panel hearings if the hearings are held in closed se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5. Each Party and its advise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an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other Party to the panel which that Party has designated as confidential. If a Party submits a confidential version of its written submissions to the panel, it shall also,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s submissions that c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either the request or the submission, whichever is later. This paragraph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disclosing statements of its own positions to the public to the extent that, when making reference to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other Party, it does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designated by the other Party as confidential.

*Ex Parte Contacts*

33. The panel shall not meet with or contact a Party in the absence of the other Party, nor shall a Party communicate with the panel or individual panellists without notifying the other Party.

34. Subject to paragraph 13, no member of the panel may discuss an a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edings with a Party or both Parties in the absence of the other panellists.

*Amicus Curiae Submissions*

35.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within three days of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three panellists, the panel may receive unsolicited written submissions from interested persons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y are made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three panellists, that they are concise and in no case longer than 15 typed pages, including any annexes, and that they are directly relevant to the factual and legal issues under consideration by the panel.

36. The submission must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submission, including its nationality or place of establishment, the nature of its activities and the source of its financing, and specify the nature of the interest that the person has in the proceeding.

37. The panel shall list in its ruling all the submissions it has received that conform to paragraphs 35 and 36. The panel is not obliged to address in its ruling the factual or legal arguments made in these submissions. A submission obtained by the panel under paragraphs 35 and 36 shall be submitted to the Parties for their comments.

*Cases of Urgency*

38. In cases of urgency referred to in Article 21.6.1(b), the panel shall adjust, as appropriate, the time limits referred to in this Annex.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39. During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1.4, and no later than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0,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 common working language for the proceedings before the panel.

40.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a common working language, each Party shall expeditiously arrange for and bear the costs of the translation of its written submissions into the language chosen by the other Party and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arrange for the interpretation of oral submissions into the languages chosen by the Parties.

41. Panel rulings shall be issued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chosen by the Parties.

42. The costs incurred for translation of a panel ruling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43. A Party may provide comments on any translated version of a document drawn up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0.

*Calculation of Time Limits*

44. If, by reason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9, a Party receives a document on a date other than the date of the last day for delivery of that document, any period of time that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date of the last day for delivery of that documen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that document was actually received.

**CHAPTER TWENTY-TWO****EXCEPTIONS****Article 22.1: General Exceptions**

1.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Three (Rules of Origin), Four (Origin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F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ix (Standards-Related Measures), Seven (Trade Remedies), and Thirtee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XX of the GATT 1994 and, for greater certainty,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X(b) of the GATT 1994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Parties further understand that Article XX(g) of the GATT 1994 applies to 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2.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Eleven (Telecommunications), Twelve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and Thirtee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XIV (a), (b) and (c) of GAT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IV(b) of GATS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3. For the purposes of Chapter Eight (Investment),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ose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investments or between investo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 (a)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b) to ens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 (c) f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rticle 22.2: National Security**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 (a) to require either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if that Party determines that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ould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b) to prevent either Party from taking action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traffic and transactions in other goods, materials, services, and technology undertake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or other security establishment;
  - (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 (iii)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respecting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 (c) to prevent either Party from taking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its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Article 22.3: Taxation

1. Except as set out in this Article,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 taxation measure.
2.
  - (a) This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ither Party under a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 tax convention, the tax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 (b)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at convention shall have the sol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at conven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 (a) Article 2.2 (National Treat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at Article apply to a taxation measure to the same extent as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nd

- (b) Articles 2.8 (Expor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and 2.9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or Internal Taxes and Emissions Regulations) apply to a taxation measure.

#### 4. Subject to paragraphs 2 and 5:

- (a) Articles 9.2 (National Treatment), 10.2 (National Treatment), and 10.5 (Cross-Border Trade) apply to a taxation measure on income, on capital gains, or on the taxable capital of corporations that relates to the purchase or consumption of particular services, except that this subparagraph does not prevent a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lating to the purchase or consumption of particular services on requirements to provide the service in its territory; and
- (b) Articles 8.3 (National Treatment) and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9.2 (National Treatment) and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nd Articles 10.2 (National Treatment) and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pply to all taxation measures, other than those on income, on capital gains, or on the taxable capital of corporations, or taxes on inheritances and gifts.

#### 5. Paragraph 4 does not:

- (a) impose a most-favoured-nation obligation with respect to an advantage accorded by a Party pursuant to a tax convention;
- (b) impose a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ing of a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lating to the contributions to, or income of, pension trusts or pension plans on a requirement that a Party maintain continuous jurisdiction over the pension trust or pension plan;
- (c) apply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 existing taxation measure;
- (d) apply to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 existing taxation measure;
- (e) apply to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 existing taxation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its conformity,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with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r

- (f) apply to a new taxation measure tha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and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including, for greater certainty, any measure that is taken by a Party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arty's taxation system or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nd that does not arbitrarily discriminate between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Parties.

6. Subject to paragraph 2,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paragraph 3,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applies to taxation measures.

7. Article 8.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pplies to a taxation measure. However, an investor shall not invoke Article 8.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s the basis for a claim under Article 8.18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or 8.19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if it has been determin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that the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The investor shall refer to the designated authorities, at the time that it gives its Notice of Intent under Article 8.20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the issue of whether that taxation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If the designated authorities do not agree to consider the issue or, having agreed to consider it, fail to agree that the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within a period of 180 days of such referral, the investor may submit its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8.23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8.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Party's law protect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taxation affairs of a taxpayer.

#### Article 22.4: Transfers

1. Chapters Eight (Investment), Nin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Ten (Financial Services) are not to be construed to prevent Korea from applying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provided that such measures<sup>92</sup>:

- (a) are in effect for a period not to exceed one year; however, if extremely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that Korea seeks to extend such measures, Korea will coordinate in advance with Canada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posed extension;

<sup>92</sup> Korea shall endeavour to provide that such measures will be price-based.

- (b) are not confiscatory;
- (c) do not constitute a dual or multiple exchange rate practice;
- (d) do not otherwise interfere with investors' ability to earn a market rate of return in the territory of Korea on restricted assets<sup>93</sup>;
- (e) avoid unnecessary damage to the commercial,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s of Canada;
- (f) are temporary and phased out progressively as the situation calling for imposition of such measures improves;
- (g) are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rticles 8.3, 9.2, and 10.2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s 8.4, 9.3, and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ubject to Korea's Schedules to Annex I, Annex II, and Annex III; and
- (h) are prompt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Bank of Korea,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measures that restrict:

- (a) payments or transfers for current transactions, unless:
- (i) the imposition of such measures complies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up>94</sup>; and
- (ii) Korea coordinates such measures in advance with Canada; or
- (b) payments or transfers associ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 Article 22.5: Disclosure of Information

1.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would be contrary to the Party's law protecting the deliberative and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sup>93</sup> For greater certainty, the term "restricted assets" in this subparagraph refers only to assets inves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by an investor of Canada that are restricted from being transferred out of the territory of Korea.

<sup>94</sup> "Current transactions" shall have the meaning set forth in Article XXX(d)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for greater certainty, shall include interest pursuant to a loan or bond on any restricted amortisation payments coming due during the period that controls on capital transactions are applied.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at the cabinet level, personal privacy, or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2.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require, during the course of an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is Agreement,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protected under its competition laws, or a competition authority of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other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otherwise protected from disclosure.

####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either Party with respect to cultural industries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Articles 1.6 (Cultural Cooperation) and 2.3 (Tariff Elimination).

#### Article 22.7: World Trade Organization Waivers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overlapp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and the WTO Agreement, measures adopted by a Party in conformity with a waiver decision adopted by the WTO pursuant to Article IX of the WTO Agreement are deemed to be also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The conforming measure of either Party shall not give rise to legal actions by an investor of a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under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Article 22.8: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mpetition authority** means:

- (a) for Ko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 (b) for Canada,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cultural industries** means persons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 (a)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sale of books, magazines, periodicals or newspapers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but not including the sole activity of printing or typesetting any of the foregoing;
- (b) the production, distribution, sale or exhibition of film or video recordings;

- (c) the production, distribution, sale or exhibition of audio or video music recordings;
- (d)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sale of music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 (e) radio communications in which the transmissions are intended for direct reception by the general public;
- (f) radio, television and cable broadcasting undertakings; or
- (g) satellite programming and broadcast network services;

**designated authority** means:

- (a) for Korea, the Deputy Minister for Tax and Custom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 (b) for Canada, the Assistant Deputy Minister for Tax Policy, Department of Finance,  
or their respective successors;

**information protected under its competition laws** means:

- (a) for Canada,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Section 29 of the *Competition Act*, or any successor provision; and
- (b) for Korea,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Articles 22-2, 50 and 6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ax convention** means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other international taxa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and

**taxes and taxation measures** do not include:

- (a) a “customs duty” as defined in Article 1.8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or
- (b) the measures listed in exceptions (b) and (c) to that definition.

**Taxation and Expropriati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taxation measure,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the factors listed in Annex 8-B (Expropriation) a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a)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an expropriation.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taxation measure or the imposition of a taxation measure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generally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expropriation;
- (b) a taxation measur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sed tax policies, principles, and practices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n particular, a taxation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ation measures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 (c) a taxation measure that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opposed to a taxation measure that is targeted at investor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at specific taxpayers, is less likely to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nd
- (d) a taxation measur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f it was already in force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n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was publicly available.

**FINAL PROVISIONS****Article 23.1: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he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o this Agreement constitute integral parts of this Agreement.

**Article 23.2: Amendments**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n the dat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3.3: Reservations**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ubject to unilateral reservations or unilateral interpretative declarations.

**Article 23.4: Entry into Force**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4.7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second of these notifications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Article 23.5: Duration and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Article 23.6: Authentic Tex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he Korean, English, and Frenc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Ottawa, this 22<sup>nd</sup> day of September 2014, in duplicate, in the Korean,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_\_\_\_\_  
**FOR THE REPUBLIC  
OF KOREA**

\_\_\_\_\_  
**FOR CANADA**

**ANNEX I**

**Reservations for Existing Measures**

**Schedule of Korea – Explanatory Notes**

1. Kore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8.9.1 and 9.6.1, Korea’s existing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 (a)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or 9.2 (National Treatment);
- (b) Article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 Article 8.7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d)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e) Article 9.4 (Market Access); or
- (f) Article 9.5 (Local Presence).

2. Each entry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pursuant to Articles 8.9.1(a) and 9.6.1(a),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3;
- (c) **Measures**<sup>95</sup>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element:
  -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 (ii) includes any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and

<sup>95</sup> For greater certainty, a change in the level of government at which a measure is administered or enforced does not, by itself,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with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8.9.1 and 9.6.1.

- (d) **Description** sets out commitments, if any, for liberalisa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 remaining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3. In the interpretation of an entry, all elements of the entry shall be considered. An entry shall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hapters against which the entry is made. To the extent that:

- (a) the **Measures** element is qualified by a liberalisation commitment from the **Description** element, the **Measures** element as so qualified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and
- (b) the **Measures** element is not so qualified, the **Measures** element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unless any discrepancy between the **Measures** element and the other elements considered in their totality is so substantial and material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Measures** element should prevail, in which case the other elements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at discrepancy.

4.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9.1(a) and 9.6.1(a), and subject to Articles 8.9.1(c) and 9.6.1(c),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dentified in the **Measures** element of that entry.

5. If Korea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provid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provision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Schedule entry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9.2 (National Treatment),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9.5 (Local Presence) shall operate as a Schedule entry with respect to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8.8 (Performance Requirements)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6. For greater certainty,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and Local Presence (Article 9.5)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Article 9.5)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 ANNEX I

### Schedule of Korea

<b>1. Sector:</b>	Construction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p><i>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i> (Law No. 12012, 6 August 2013), Articles 9 and 10</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i> (Presidential Decree No. 24616, 17 June 2013), Article 13</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10, 17 June 2013), Articles 2 and 3</p> <p><i>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14</p> <p><i>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i> (Law No. 11782, 22 May 2013), Articles 4 and 5</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17, 23 March 2013), Article 2 (Table 1)</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o. 3, 23 March 2013), Article 2</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construction services in Korea must, prior to the signing of the first contract related to such services,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b>2. Sector:</b>	Leasing, Rental, Maintenance, Repair, Sales, and Disposal Services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p><i>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i> (Law No. 11919, 16 July 2013), Article 21</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23 March 2013), Articles 13, 14, 15, and 15-2</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s 57 through 63, 65-2, and 65-3</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leasing, rental, maintenance, repair, sales, and disposal services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b>3.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Automobile Maintenance, Repair, Sales, Disposal, and Inspection Services; Automobile License Plate Issuing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p>Market Access (Article 9.4)</p> <p>Local Presence (Article 9.5)</p>
<b>Measures:</b>	<p><i>Automobile Management Act</i> (Law No. 11929, July 16, 2013), Articles 20, 44, 44-2, 45, 45-2 and 53</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4, 6 September 2013), Articles 7, 8, 83, 87, and 111</p> <p><i>Rule on Enforcement of Comprehensive Inspection of Automobiles, Etc.</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 16</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management services (which includes used car sales, maintenance, auto dismantling, and recycl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head of the <i>si/gun/gu</i> (municipal authorities),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as appropriate.</p> <p>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inspection services that is designated as a “designated repair facility”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p>A person that supplies license plate manufacturing, delivery, and seal services that is designated as a “license plate issuing agency”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4.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of Tobacco and Liquor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Tobacco Business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12, 13, and 16

*Enforcement Decree of the Tobacco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519, 26 April 2013),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obacco Busines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131, 3 March 2010), Articles 5, 7, and 7-3

*Liquors Act* (Law No. 11873, 7 June 2013), Articles 8 through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Liquor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28 June 2013), Article 9

*Notice on Sales of Liquor by Telecommunication Means* (Noti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o. 2012-68, 1 October 2012)

*Notice on Designation of Zone for Liquor License* (Noti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o. 2013-15, 1 April 201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tobacco wholesale (including importation) or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Only designated tobacco retailers may sell tobacco to retail buyers. The sale of tobacco to retail buyers by mail or in electronic commerce is prohibited.

The distance between places of business of tobacco retailers must be at least 50 meters.

A person that supplies liquor wholesale distribu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The sale of liquor by telephone or in electronic commerce is prohibited.

<b>5. Sector:</b>	Agriculture and Livestock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Measures:</b>	<p><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Law No. 11535, 11 December 2012), Article 4</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28 June 2013), Article 5</p> <p><i>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i>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30 May 2013), Attached table 2</p>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Foreign persons shall no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invest in an enterprise engaged in rice or barley farming; or</li> <li>(ii) hold 50 percent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an enterprise engaged in beef cattle farming.</li> </ul>

<b>6. Sector:</b>	Business Services – <i>An-gyung-sa</i> (Optician and Optometry)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p>Market Access (Article 9.4)</p> <p>Local Presence (Article 9.5)</p>
<b>Measures:</b>	<p><i>Medical Technicians Act</i> (Law No. 11860, 4 June 2013), Article 12</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193, 17 April 2013), Article 15</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Only a natural person that is a licensed <i>an-gyung-sa</i> (optician or optometrist) that has established an office in Korea may engage in optician or optometry services.</p> <p>An <i>an-gyung-sa</i> (optician or optometrist) shall not establish more than one office in Korea.</p>

<b>7. Sector:</b>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p><i>Pharmaceutical Affairs Act</i> (Law No.12074, 13 August 2013), Articles 42 and 45</p> <p><i>Enforcement Decree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s</i>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23 March 2013), Article 31-2</p> <p><i>Enforcement Decree on the Standards of Facilities of Manufacturer and Importers of Medicinal Products, Etc.</i>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23 March 2013), Articles 6</p> <p><i>Supply and Demand of Oriental Medicinal Herbs Regulations</i> (Noti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013-63, 18 April 2013), Articles 4 and 12</p> <p><i>Medical Devices Act</i> (Law No. 12107, 13 August 2013), Article 15</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i>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6, 23 March 2013), Article 20</p> <p><i>Health Functional Foods Act</i> (Law No. 11508, 22 October 2012), Article 6</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i>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0, 23 March 2013), Articles 2 and 5</p> <p><i>Food Sanitation Act</i> (Law No. 11819, 22 May 2013), Articles 24, 36 and 37</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800, 16 October 2013), Articles 23 and 24</p>

**Description:**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41, 25 October 2013), Articles 23 and 36 (attached table 14)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Law No. 11984, 30 July 2013), Articles 6 and 6-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wholesale trade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in order to receive an import business license to supply such services with respect to:

- (a) pharmaceuticals and related items;
- (b) medical devices; or
- (c)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To supply the following services a person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 (a) transportation, sales, and preservation (cold storage) of food and food additives;
- (b) food supply services;
- (c) food inspection services; or
- (d) narcotic drug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ntrols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wholesale distribution of imported designated *han-yak-jae* (Asian medicinal herbs).

Certain liquor-selling bars and the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of narcotics require authorisation by the relevant authority.

<b>8. Sector:</b>	Retail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Pharmaceutical Affairs Act</i> (Law No. 12074, 13 August 2013), Articles 20 and 21  <i>Enforcement Decree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23 March 2013), Article 22-2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pharmaceutical product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including distribution of <i>han-yak-jae</i> (Asian medicinal herbs)) must establish a pharmacy in Korea.</p> <p>That person shall not establish more than one pharmacy or establish a pharmacy in the form of a corporation.</p>

<b>9.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Rail Transportation and Incident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Market Access (Article 9.4)
<b>Measures:</b>	<i>Railroad Enterprise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5, 6, and 12  <i>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i> (Law No. 12025, 6 August 2013), Article 9  <i>Rail Construction Act</i> (Law No. 12023, 6 August 2013), Article 8  <i>Framework Act on Rail Industry Developmen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3, 20, 21, 26, and 38  <i>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7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The existing regulation broadly states that only juridical persons that have obtained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In practice, however, only juridical persons of Korean nationality (of which shares are 100 percent owned by the shareholders with Korean nationality) established by a Korean national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n railroad routes constructed on or before 30 June 2005.</p> <p>Only juridical persons that have obtained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n railroad route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2005. Such authorisation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p>

Only the nat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or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may supply rail construction services and maintain and repair government-owned rail facilities (including high-speed rail). However, juridical persons that meet the criteria in the *Private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Act* (Law No. 12345, 28 January 2014) may supply rail construction services.

**10.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not including Taxi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Law No. 12020, 6 August 2013),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23 March, 2013), Article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7 November 2013), Article 11

*Tramway Transportation Act* (Law No. 11647, 22 March 2013), Article 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ramway Transport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 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not including taxi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dang-hae-ji-yeok* (relevant geographic area) in Korea.

<b>11.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International Maritime Cargo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uxiliary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Maritime Transportation Act</i> (Law No. 12092, 13 August 2013), Articles 24 and 33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 1, 24 March 2013), Articles 16, 19, 22, and 23  <i>Pilotage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6  <i>Ship Investment Company Act</i> (Law No. 11756, 5 April 2013), Articles 3 and 31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international maritime cargo transportation must be organised as a <i>chu-sik-hoe-sa</i> (stock company) in Korea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i>Maritime Transportation Act</i> . A ship investment company must also be organised as a <i>chu-sik-hoe-sa</i> (stock company) in Korea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i>Ship Investment Company Act</i> .  A person that supplies shipping brokerage service, maritime agency services, and vessel maintenance services must be a company as stipulated under the <i>Korean Commercial Act</i>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i>Maritime Transportation Act</i> .  Only a Korean national may supply maritime pilotage services.

<b>12.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Air Transportation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b>Measures:</b>	<i>Aviation Act</i> (Law No. 12026, 6 August 2013), Articles 2, 3, 6, 112, 113, 114, 129, 132 and 135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15 February 2013), Articles 14-2, 15, 278, 278-3, 296-2, 298, and 299
<b>Description:</b>	<b>Investment</b>  The following persons shall not supply scheduled or non-scheduled domestic air transportation services or supply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services as Korean air carriers: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i>gong-gong-dan- che</i> (organization for public purposes);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d) an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c) owns 50 percent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or has control; or  (e)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i>dae-pyo-ja</i>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a foreign national or half or more of whose senior management are foreign nationals.

A person that owns an aircraft or is authorised to operate a chartered aircraft must register the aircraf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ersons list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e) are not allowed to register an aircraft.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non-scheduled air transportation services include point-to-point transportation services, flight tour services, and charter flight services.

<b>13.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Aircraft-Use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b>Measures:</b>	<i>Aviation Act</i> (Law No. 12026, 6 August 2013), Articles 3, 6, and 134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15 February 2013), Articles 15-2, 298, and 299-2
<b>Description:</b>	<b>Investment</b>  A person that supplies aircraft- <i>sa-yong</i> (use) services must register its self-owned or chartered aircraf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following persons shall not register an aircraft: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i>gong-gong-dan-che</i> (organization for public purposes);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d) an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c) owns 50 percent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or has control; or  (e)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i>dae-pyo-ja</i>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a foreign national or half or more of whose senior management are foreign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ircraft-*sa-yong* (use) services are services using an aircraft, and supplied upon request, for hire, other than for passenger or freight transportation, including aerial fire-fighting, forestry fire management, aerial advertising, flight training, aerial mapping, aerial investigation, aerial spraying, aerial photographing and other aerial agricultural activities, aerial inspections and observations, glider towing, parachute jumping, aerial construction, and heli-logging.

<b>14.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Roa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i> (Law No. 12020, 6 August 2013), Articles 36 and 37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7 November 2013), Article 73  <i>Parking Lot Service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12  <i>Road Traffic Act</i> (Law No. 12045, 13 August 2013), Article 36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parking lot services, bus terminal operation services, or car towing and storage services must establish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levant geographic area in Korea and obtain an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ad of local police, or head of <i>si/gun</i> , as appropriate,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b>15. Sector:</b>	Courier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Aviation Act</i> (Law No. 12026, August 6, 2013), Article 139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15 February 2013), Article 306 <i>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i> (Law No. 11933, 16 July 2013), Articles 3, 24, and 29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9, 11 July 2013), Articles 6, 34, and 41-2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i>To supply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s that include commercial document delivery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Servic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2, 23 March 2013), a person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i>  In order to obtain a trucking business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domestic courier services supplier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relevant geographic area. Such a license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who acquired an existing domestic courier business does not need to obtain a new trucking business license provided that the acquirer operate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acquiree's license.

<b>16. Sector:</b>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i> (Law No. 12035, 13 August 2013), Articles 6, 7, 8, 21, and 87 <i>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i> (Law No. 5385, 28 August 1997), Addenda Article 4 <i>Radio Waves Act</i> (Law No. 11712, 23 March 2013), Articles 13 and 20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a registration for non-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be granted only to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not be granted to or held by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holds in the aggregate more than 49 percent of the juridical person's total voting shares.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shall not, in the aggregate, hold more than 49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KT Corporation (KT),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shall not b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T, except if it holds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KT.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permit:

- (a) a deemed foreign person to hold up to 100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ther than KT and SK Telecom Co., LTD (SK Telecom); and
- (b)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deemed foreign person holds up to 100 percent of its total voting shares to obtain or hold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 foreign government, or its representative, or a foreign person shall not obtain or hold a radio station license.

A foreign person shall not supply cross-borde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o Korea, except through a commercial arrangement with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is licensed in Korea.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 (a) “deemed foreign person” means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person (including a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relevant Korean laws or regulations)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olds 15 percent or more of that juridical person’s total voting shares, but does not include a juridical person that holds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b) consistent with Article 5.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facilities-based supplier is a supplier that owns transmission facilities;
- (c) consistent with Article 5.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non-facilities-based supplier is a supplier that does not own transmission facilities (but may own a switch, router, or multiplexer) and supplies its publ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transmission facilities of a licensed facilities-based supplier; and
- (d)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transmission facilities” means wireline or wireless transmission facilities (including circuit facilities) that connect transmitting points with receiving points.

<b>17. Sector:</b>	Real Estate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p><i>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i> (Law No. 11866, 4 June 2013), Article 9</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i>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23 March 2013), Article 13</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 4</p> <p><i>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27</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i> (Presidential Decree No.23919, 29 June 2012), Articles 65, 66, and 68</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s 25 and 26</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or real estate appraisal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b>18. Sector:</b>	Retail, Leasing, Rental and Repair Services Related to Medical De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p><i>Medical Devices Act</i> (Law No. 12107, 13 August 2013), Articles 16 and 17</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i>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6, 23 March 2013), Articles 22 and 24</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person that supplies retail, leasing, rental, or repair services related to medical de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p>

<b>19. Sector:</b>	Rental Services – Automobil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i> (Law No. 12020, 6 August 2013), Articles 28 and 29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7 November 2013), Article 60, 61, 62, and 64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rental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b>20. Sector:</b>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b>Measures:</b>	<i>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 (Law No. 12091, 13 August 2013), Articles 6, 7, and 8  <i>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i> (Law No. 10524, 4 April 2011), Article 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A foreign person, a foreign government, or a Kore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a foreign person that intends to conduc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territorial waters or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of Korea must obtain prior authorisation or consent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hereas a Korean national or a Korean enterprise not owned or controlled by a foreign person need only to provide notification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b>21.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Leg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Attorney-at-law Act</i> (Law No. 11825, 28 May 2013), Articles 4, 7, 21, 34, 45, 58-6, 58-22, and 109  <i>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i> (Law No. 8920, 21 March 2008), Articles 2, 3, and 14  <i>Notary Public Act</i> (Law No. 11823, 28 May 2013), Articles 10, 16, and 17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Only a <i>byeon-ho-sa</i> (Korean-licensed lawyer) registered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supply legal services.  Only a <i>byeon-ho-sa</i> (Korean-licensed lawyer) may establish the following types of legal entity: <i>beop-yool-sa-mu-so</i> (law office), <i>beop-mu-beop-in</i> (law compa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i>beop-mu-beop-in (yoo-han)</i> (limited liability law company), or <i>beop-mu-jo-hap</i>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w office).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licensed lawyer shall not invest in any of such types of legal entity.  A <i>byeon-ho-sa</i> (Korean-licensed lawyer) or <i>beop-mu-sa</i>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 who practices in Korea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 <i>gong-jeung-in</i> (Korean notary public)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36 <sup>th</sup>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I.

<b>22.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Labou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i> (Law No. 10321, 25 May 2010), Articles 5, 7-2, 7-3, and 7-4  <i>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47, 23 March 2013), Articles 15 and 19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78, 23 March 2013), Articles 6 and 10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labou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be a <i>gong-in-no-mu-sa</i> (Korean-licensed labor affairs consultant) registered under the <i>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i> .  For greater certainty, an enterprise that supplies labou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must consist of at least two <i>gong-in-no-mu-sa</i> (Korean-licensed labor affairs consultant) (including the natural person who is the founder) and must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b>23.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Patent Attorney ( <i>byeon-ri-sa</i> )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Patent Attorney Act</i> (Law No. 11962, 30 July 2013), Articles 3, 5, 6-2, and 6-3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Only a <i>byeon-ri-sa</i>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who is register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supply patent attorney services.</p> <p>Only a <i>byeon-ri-sa</i>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may establish a <i>gae-in-sa-mu-so</i> (sole proprietorship) or a <i>teuk-heo-beop-in</i> (patent law firm).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shall not invest in either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p> <p>A <i>byeon-ri-sa</i>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may establish only one office.</p>

<b>24.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i>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s 2, 7, 12, 18, and 23  <i>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i> (Law No. 11845, 28 May 2013), Article 3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Only a <i>gae-in-sa-mu-so</i> (sole proprietorships), <i>gam-sa-ban</i> (auditing task forces) or <i>hoe-gye-boep-in</i> (limited liability accounting corporation) established in Korea by <i>gong-in-hoe-gye-sa</i>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under the <i>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i> may supply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register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not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p> <p>Only <i>gong-in-hoe-gye-sa</i>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an auditing task force or an accounting corporation may supply auditing services regulated under the <i>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i>.</p> <p>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37<sup>th</sup>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I.</p>

<b>25.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Tax Accountant ( <i>se-mu-sa</i> )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ertified Tax Accountant Act</i> (Law No. 11610, 1 January 2013), Articles 6, 13, 16-3, 16-4, and 20  <i>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824, 5 November 2013), Article 97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Tax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325, 23 March 2013), Article 50-3  <i>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574, 11 June 2013), Article 131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come Tax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323, 23 February 2013), Article 65-3  <i>Guidelines Governing the Work of Tax Agents</i> (Ord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o. 1761, 24 August 2009), Articles 20 and 22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Only a <i>se-mu-sa-mu-so</i> (tax office), <i>se-mu-jo-jeong-ban</i> (tax reconciliation task forces) or, <i>se-mu-beop-in</i> (limited liability tax agency corporation) established in Korea by <i>se-mu-sa</i>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under the <i>Certified Tax Accountant Act</i> may supply <i>se-mu-sa</i>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services, inclu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s and tax representative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registered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not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Only a *se-mu-jo-jeong-ban* (tax reconciliation task forces) or a *se-mu-beop-in* (limited liability tax agency corporation) may supply tax reconciliation services.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38<sup>th</sup>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I.

<b>26. 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 Customs Clearance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ustoms Broker Act</i> (Law No. 10570, 8 April 2011), Articles 3, 7, and 9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Only a <i>gwan-se-sa</i> (customs broker) licensed under the <i>Customs Brokers Act</i> , a corporation incorporated by such customs brokers, or a corporation licensed to engage in the customs-clearance brokerage business under the <i>Customs Broker Act</i> may supply customs-clearance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customs-clearance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b>27. Sector:</b>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 Industrial Safety, Health Institution, and Consulting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 (Law No. 11882, 12 June 2013), Articles 15, 16, and 52-4  <i>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684, 6 August 2013), Article 15-2, 15-3, 19-2, and 19-3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86, 6 August 2013), Articles 17, 18, 20, 21, and 136-8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r diagnostic services to industrial workpla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 person that supplies industrial safety or hygiene consulting services, such as evaluation and instruction on safety in a work process and evaluation and instruction on th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28. Sector:**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 Architectural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Certified Architects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23*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23 March 2013), Articles 22 and 2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23 March 2013), Article 13*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2299, 21 January 2014), Article 21*

*Professional Engineers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6*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Law No. 11928, 6 July 2013), Article 9*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23 March 2013), Article 11*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25 and 28*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390, 20 February 2013), Articles 91 and 108*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 1 April 2013), Article 48*

*Act on Land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Law No. 11943, 17 July 2013), Articles 44 and 54*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and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Presidential Decree No. 24596, 11 June 2013), Articles 34, 35, 36, 45, 46, and 47*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16*

*Thermal Spring Management Act (Law No. 11896, 16 July 2013), Article 7*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Law No. 11782, 22 May 2013), Article 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architectural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or survey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services by a foreign architect through a joint contract with a Korean-licensed architect.

**29. Sector:** Business Services – Electronic Billboard Operator Services and Outdoor Advertisemen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Broadcasting Act* (Law No. 12093, 13 August 2013), Articles 13 and 73  
*Outdoor Advertisements, Etc. Management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11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2, 21 June 2013), Articles 14 and 4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foreign national or a Korean national who serves as a *dae-pyo-ja*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f a foreign enterprise shall not serve as the *dae-pyo-ja*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r chief programmer of an enterprise that supplies electronic billboard operator services.

At least 20 percent of the electronic billboard programs must be non-commercial public advertisements provided b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 person that supplies outdoor advertis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30. Sector:** Business Services – Job Placement Services, Labor Supply and Worker Dispatch Services, and Education Services for Seafare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and 9.2)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Employment Security Act* (Law No.11048, 15 September 2011), Articles 19 and 33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76, 31 August 2012), Articles 21 and 3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72, 27 December 2012), Articles 18 and 36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Law No. 11668, 22 March 2013), Articles 7, 8, 9, and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Presidential Decree No. 23853, 12 June 2012), Article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64, 2 August 2012), Articles 3, 4, and 5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17  
*Seafarers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109, 110, 112, 115, 116, 117, 142, and 143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5

**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person that supplies job placement services for a fee, worker supply services, or worker dispatch (secondment)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For transparency purposes, as of 29 October 2013 the types of business to which workers may be seconded are limited to the 32 businesses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bu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xpand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secondment period, pursuant to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Free Economic Zone.

Only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regional office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ly seafaring labour supply services.

To become an agent for seafarer personnel management services, a person must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a *chu-sik-hoe-sa* (stock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ly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seafarers.

**31. Sect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3 and 4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19, 23 March 2013), Articles 3 and 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o. 20, 22 October 2013), Article 3

**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may supply security services in Korea.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five types of security services are permitted in Korea:

- (a) *shi-seol-gyung-bee* (facility security);
- (b) *ho-song-gyung-bee* (escort security);
- (c) *shin-byun-bo-ho* (personal security);
- (d) *gee-gye-gyung-bee* (mechanized security); and
- (e) *teuk-soo-gyung-bee* (special security).

<b>32. Sector:</b>	Transportation Services –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Aviation Act (Law No. 12026, 6 August 2013), Articles 137,137-2, and 138</i>  <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15 February 2013), Articles 16, 304, and 305</i>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b>33. Sector:</b>	Education Services – Higher Education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Market Access (Article 9.4)
<b>Measures:</b>	<i>Higher Education Act (Law No. 12036, 13 August 2013), Articles 3, 4, 32, 42, and 43</i>  <i>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847, 20 November 2013), Article 28</i>  <i>Private School Act (Law No. 11622, 23 January 2013), Articles 3, 5, 10, and 21</i>  <i>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65, 22 July 2013), Article 9-3</i>  <i>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idential Decree No. 24423, 23 March 2013), Articles 1 and 2</i>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At least 50 percent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ust be Korean nationals. If a foreign person contributes at least 50 percent of the basic property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less than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ch an institution may be foreign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basic property means real estate, property designated as basic property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property incorporated into the basic property according to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n annual budgetary surplus reserve of the institution.

Only non-profit school juridical person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ther than the types of institutions listed in Annex II) in Korea.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stric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per year in the fields of medicine, pharmacology, veterinary medicine, traditional Asian medicine, medical technicians, and higher education for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e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Onl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of Korea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training of primary school teachers. Only the national government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supply higher education services to the public through broadcasting.

**34. Sector:**

Education Services – Adult Education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arket Access (Article 9.4)

**Measure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2, 2-2, and 13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23, 23 March 2013), Article 12

*Lifelong Education Act* (Law No. 11770, 22 May 2013), Articles 30 and 33 through 38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11 December 2012), Article 4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30 May 2013), Attached table 1

**Description:**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that a foreign person may establish in Korea are limited to:

- (a) *hag-w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adults) related to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 (b)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lifelong adult education facilities operated for the purposes other than recognising educational qualifications or conferring diplomas, which include:
  - (i) education facilities annexed to workplace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schools, and media organisations;

(ii) educational facilit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and

(iii) on-lin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ll of which are established for adult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hag-w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adults) are facilities that provide tutoring services on subjects related to lifelong or vocational education to 10 people or more for a period of 30 days or longer.

A foreign national hired by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adults as a lecturer must possess at least a bachelor's degree or the equivalent and reside in Korea.

**35. Sector:** Education Services –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28, 32, and 36

*Enforcement Decree of the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28, 21 June 2013), Articles 24 and 26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57, 8 June 2012), Articles 12, 14, and 1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b>36. Sector:</b>	Veterinary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Veterinary Affairs Act</i> (Law No. 11354, 22 February 2012), Articles 17, 22-2, 22-4, and 22-5  <i>Civil Act</i> (Law No. 11728, 5 April 2013), Article 32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Only a person that is a licensed <i>soo-eui-sa</i> (veterinarian) that has established an office in Korea, <i>dong-mul-jin-ryo-bub-in</i> (animal hospital legal entity) or <i>bee-young-ri-bub-in</i> (non-profit legal entity) may engage in veterinary or aquatic animal disease inspection services.

<b>37. Sector:</b>	Environmental Services – Waste Water Treatment Services, Waste Management Services, Air Pollution Treatment Services, Environmental Preventive Facilities Busin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oil Remediation and Groundwater Purification Services, and Toxic Chemical Contro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i> (Law No. 11915, 16 July 2013), Article 62  <i>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ct</i> (Law No. 11713, 23 March 2013), Article 15  <i>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i> (Law No. 11464, 1 June 2012), Article 23-7  <i>Groundwater Act</i> (Law No. 11803, 22 May 2013), Article 29-2  <i>Clean Air Conservation Act</i> (Law No. 11750, 5 April 2013), Article 68  <i>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54  <i>Toxic Chemicals Control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20  <i>Wastes Control Act</i> (Law No. 11965, 30 July 2013), Article 25  <i>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s Control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543, 28 May 2013), Article 8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 person that supplies the environmental services listed in the Sector heading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b>38. Sector:</b>	Performance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b>Measures:</b>	<p><i>Public Performance Act</i> (Law No. 11048, 15 September 2011), Articles 6 and 7</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3759, 1 May 2012), Articles 4 and 6</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 94, 25 November 2011), Article 4</p> <p><i>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i>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No. 799, 10 October 2013), Table 5</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A foreign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public performance in Korea, or a person who intends to invite a foreign person to engage in a public performance in Korea must obtain a recommendation from the Korea Media Rating Board.</p>

<b>39. Sector:</b>	News Agency ( <i>News-tong-sin-sa</i> )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p>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p> <p>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p> <p>Market Access (Article 9.4)</p> <p>Local Presence (Article 9.5)</p>
<b>Measures:</b>	<p><i>Act on Promotion of News Communications</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7, 8, 9, 9-5, 16, and 28</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News Communications</i> (Presidential Decree No. 24183, 20 November 2012), Articles 4 and 10</p> <p><i>Radio Waves Act</i> (Law No. 11712, 23 March 2013), Article 20</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A <i>news-tong-sin-sa</i> (news agency) organised under foreign law may supply <i>news-tong-sin</i> (news communications) in Korea only under a contract with a news agency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ich has a radio station license, such as Yonhap News.</p> <p>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supply news agency services in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 foreign government;</li> <li>(b) a foreign person;</li> <li>(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i>dae-pyo-ja</i>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not a Korean national or is a person not domiciled in Korea; or</li> </ul>

- (d)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person holds 25 percent or more equity interest.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serve as a *dae-pyo-ja*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r editor of a news agency, or serve as *im-won*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Yonhap News or the News Agency Promotion Committee:

- (a) a foreign national; or  
 (b) a Korean national not domiciled in Korea.

A foreign news agency may establish a branch or office in Korea for the sole purpose of collecting news. For greater certainty, such branch or office may not distribute *news-tong-sin* (news communications) in Korea.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obtain a radio station license:

-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its representative; or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b>40. Sector:</b>	Manufacturing of Biological Products
<b>Obligations Concerned:</b>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Measures:</b>	<i>Pharmaceutical Affairs Act</i> (Law No. 12074, 13 August 2013), Article 42  <i>Regulations on Safety of Pharmaceuticals, Etc.</i>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22, 23 March 2013), Article 11
<b>Description:</b>	<b>Investment</b>  A person who manufactures blood products must procure raw blood materials from a blood management body in Korea.

<b>41. Sector:</b>	Distribution Services – Agriculture and Livestock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arket Access (Article 9.4)
<b>Measures:</b>	<i>Grain Management Act</i> (Law No. 11641, 22 March 2013), Article 12  <i>Livestock Industry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s 30 and 34  <i>Seed Industry Act</i> (Law No. 11704, 23 March 2013), Article 142  <i>Feed Management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6  <i>Ginseng Industry Act</i> (Law No. 11690, 23 March 2013), Article 20  <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Law No. 11535, 11 December 2012), Article 4  <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28 June 2013), Article 5  <i>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i>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30 May 2013), Attached table 2  <i>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i> (Law No. 12059, 13 August 2013), Articles 15, 17, and 43  <i>Notice on TRQ Products</i>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tice No. 2013-29, 16 May 2013), Articles 14 and 20-2

**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foreign person shall not hold 50 percent or more of the shares or equity interest of an enterprise engaged in *yook-ryu* (meat) wholesale.

Only the Livestock Cooperatives under the *Agriculture Cooperative Act* may establish and manage a *ga-chook-sijang* (livestock market) in Korea.

Only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gong-yeong-domae-sijang* (public wholesale market).

Only producers' organisations 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y establish a *gong-pan-jang* (joint wholesale market).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s 9.2 (National Treatment) and 9.4 (Market Access) do not prevent Korea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WTO Tariff-Rate-Quota.

<b>42. Sector:</b>	Energy Industry – Electric Power Generation Other Than Nuclear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up>96</sup>
<b>Measures:</b>	<p><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845, 28 May 2013), Article 168</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697, 27 August 2013), Article 187</p> <p><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Law No. 11535, 11 December 2012), Articles 4 and 5</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28 June 2013), Article 5</p> <p><i>Consolidated Public Notice for Foreign Investment</i>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102, 27 May 2013), Attached table</p> <p><i>Designation of Public Corporation</i> (Noti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2000-17, 28 September 2000)</p> <p><i>Financial Investment Service Regulations</i>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tice No. 2013-40, 4 December 2013), Sec. 6-2</p>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s (KEPCO) issued stocks shall not exceed 40 percent. A foreign person may not beco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EPCO.</p>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power generating facilities, including cogeneration facilities of heat and power (GHP) for the district heating system (DHS), shall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total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businesses should be less than 50 percent. A foreign person shall not be the largest shareholder.

<sup>96</sup> Paragraph (a) of the eighth entry of Korea's Schedule to Annex II does not apply to this entry.

<b>43. Sector:</b>	Energy Industry – Gas Industry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up>97</sup>
<b>Measures:</b>	<p><i>Act on the Improvement of Managerial Structur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i> (Law No. 11845, 28 May 2013), Article 19</p> <p><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845, 28 May 2013), Article 168</p> <p><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Law No. 11535, 11 December 2012), Articles 4 and 5</p> <p><i>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Korea Gas Corporation</i> (9 August 2013), Article 11</p>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Foreign persons, in the aggregate, shall not own more than 30 percent of the equity of Korea Gas Corporation KOGAS).</p>

## ANNEX I

## Reservations for Existing Measures

## Schedule of Canada – Explanatory Notes

1. Canad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8.9.1 and 9.6.1, Canada's existing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 (a)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or 9.2 (National Treatment);
- (b) Article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 Article 8.7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d)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e) Article 9.4 (Market Access); or
- (f) Article 9.5 (Local Presence).

2. Each reservation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b) **Sub-sector** refers, where applicable, to the specific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c) **Industry Classification** refers, where applicable, to the activity covered by the reservation according to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 (d) **Type of Reservation** specifies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which a reservation is taken;

<sup>97</sup> Paragraph (a) of the eighth entry of Korea's Schedule to Annex II does not apply to this entry.

(e) **Measures**<sup>98</sup>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as qualified, where indicated, by the **Description** element,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element:

-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 (ii) includes a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and

(f) **Description** sets out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measure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3. In the interpretation of a reservation, all elements of the reservation, with the exception of Industry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 reservation shall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hapters against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To the extent that:

- (a) the **Measures** element is qualified by a liberalisation commitment from the **Description** element, the **Measures** element as so qualified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and
- (b) the **Measures** element is not so qualified, the **Measures** element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unless a discrepancy between the **Measures** element and the other elements considered in their totality is so substantial and material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Measures** element should prevail, in which case the other elements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at discrepancy.

4.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9.1(a) and 9.6.1(a), and subject to Articles 8.9.1(c) and 9.6.1(c),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Type of Reservation** element of a reservation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dentified in the **Measures** element of that reservation.

5. Where Canada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a service provid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provision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reservation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9.2 (National Treatment),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9.4 (Market Access) or 9.5 (Local Presence) shall operate as a reservation with respect to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sup>98</sup> For greater certainty, a change in the level of government at which a measure is administered or enforced does not, by itself,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with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8.9.1 and 9.6.1.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8.8 (Performance Requirements)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6. For greater certainty,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and Local Presence (Article 9.5)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Article 9.5)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7. For purposes of this Annex:

**CPC** means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numbers as set out in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77,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1991; and

**SIC** mean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numbers as set out in Statistics Canad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urth edition, 1980.

**ANNEX I**  
**Schedule of Canada**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Measures:</b>	<i>Investment Canada Act</i> , R.S.C. 1985, c. 28 (1st Supp.)  <i>Investment Canada Regulations</i> , SOR/85-611, as qualified by paragraphs 8 through 12 of the <b>Description</b> element
<b>Description:</b>	<b>Investment</b>  1. Under the <i>Investment Canada Act</i> , the following acquisitions of Canadian businesses by a non-Canadian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Director of Investments:  (a) a direct acquisition of a Canadian business with assets of Can\$5 million or more;  (b) an indirect acquisition of a Canadian business with assets of Can\$50 million or more; and

(c) an indirect acquisition of a Canadian business with assets between Can\$5 million and Can\$50 million that represen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assets of all the entities the control of which is being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transaction in quest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non-Canadian” means an individual, government or agency thereof or an entity that is not Canadian; and

“Canadian” means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 government in Canada or agency thereof, or a Canadian-controlled entity as described in the *Investment Canada Act*.

3. In addition, the specific acquisition or establishment of a new business in designated types of business activities relating to Canada’s cultural heritage or national identity, which are normally notifiable, may be subject to review if the Governor-in-Council authorises a review in the public interest.

4. An investment subject to review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may not be implemented unles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Investment Canada Act* advises the applicant that the investment is likely to be of net benefit to Canada. This determin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6 factors described in the Act, summarised as follows:

(a)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the level and nature of economic activity in Canada, including the effect on employment, on the use of parts, components and services produced in Canada and on exports

- (b) the degree and significance of participation by Canadians in the investment;
- (c)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productivity, industrial efficienc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roduct innovation in Canada;
- (d)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competition within an industry or industries in Canada;
- (e) the compatibility of the investment with national industrial, economic and cultural polic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industrial, economic and cultural policy objectives enunciated by the government or legislature of any province likely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investment; and
- (f) the contribution of the investment to Canada's ability to compete in world markets.

5. In making a net benefit determination, the Minister, through the Director of Investments, may review plans under which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e net benefit to Canada of the proposed acquisition. An applicant may also submit undertakings to the Minister in connection with a proposed acquisition that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e event that an applicant fails to comply with an undertaking, the Minister may seek a court order directing compliance or any other remedy authorised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6. A non-Canadian who establishes or acquires a Canadian business, other than those that are subject to review as described above must notify the Director of Investments.

7. The Director of Investments will review an "acquisition of control", as defined in the *Investment Canada Act*, of a Canadian business by an investor of Korea if the value of the gross assets of the Canadian business is not less than the applicable threshold.

8. The higher review threshold, calculated as set out in paragraph 13, does not apply to an acquisition in the cultural businesses sector.

9. Notwithstanding the definition of "investor of a Party" in Article 8.45, only investors who are nationals of Korea or entities controlled by nationals of Korea as provided for in the *Investment Canada Act* may benefit from the higher review threshold.

10. An indirect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by an investor of Korea in a sector other than those sectors identified in paragraph 8 is not reviewable.

11. Notwithstanding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Canada may impose requirements or enforce a commitment or undertaking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conduct or opera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Korea or of a non-Party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national or enterprise, affiliated to the transferor, in Canada in connection with the review of an acquisition of an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12. Except for requirements, commitments or undertakings relating to technology transfer as set out in paragraph 11 of this reservation,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applies to requirements, commitments or undertakings imposed or enforced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shall not apply to any requirement, commitment or undertaking imposed or enforced in connection with a review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to locate production,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employ or train workers, or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in Canada.

13. For an investor of Korea, the applicable threshold for review is Can\$354 million for 2014. In January of each subsequent year the amount wi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using the following formula:

Annual Adjustment =

$$\frac{\text{Current Nominal GDP at Market Prices}}{\text{Previous Year Nominal GDP at Market Prices}} \times \text{amount determined for previous year}$$

“Current Nominal GDP at Market Prices” means the average of the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s at Market Prices for the most recent 4 consecutive quarters.

“Previous Year Nominal GDP at Market Prices” means the average of the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s at Market Prices for the 4 consecutive quarters for the comparable period in the year preceding the year used in calculating the Current Nominal GDP at Market Prices.

For the above-mentioned purposes, the amounts will be rounded to the nearest million dollars.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b>Measures:</b>	As set out in the Description element.
<b>Description:</b>	Investment  1.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when selling or disposing of its equity interests in, or the assets of, an existing state enterprise or an existing governmental entity, may prohibit or impose limitations on the ownership of such interests or assets and on the ability of owners of such interests or assets to control a resulting enterprise by investors of Korea or of a non-party or their investments. With respect to such a sale or other disposition,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may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lating to the nationality of senior management or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a)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at the time of sale or other disposition, prohibits or imposes a limitation on the ownership of equity interests or assets or imposes a nationality requirement described in this reservation is an existing measure; and

- (b) “state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and includes an enterprise establish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olely for the purposes of selling or disposing of equity interests in, or the assets of, an existing state enterprise or governmental entity.

**Sector:** All Sectors

**Sub-sector:**

**Industry Classification:**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Measure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SOR/2001-512*

*Canada Cooperatives Act, S.C. 1998, c.1*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SOR/99-256*

**Description:**

**Investment**

1. A corporation may place constraints on the issue, transfer and ownership of shares in a federally incorporated corporation. The object of those constraints is to permit a corporation to meet Canadian ownership or control requirements, under certain laws set out in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in sectors where Canadian ownership or control is required as a condition to receive licences, permits, grants, payments or other benefits. In order to maintain certain Canadian ownership levels, a corporation is permitted to sell shareholders' shares without the consent of those shareholders, and to purchase its own shares on the open market.

2. The *Canada Cooperatives Act* provides that constraints may be placed on the issue or transfer of investment shares of a cooperative to a person not resident in Canada, to permit cooperatives to meet Canadian ownership requirements to obtain a licence to carry on a business, to become a publisher of a Canadian newspaper or periodical or to acquire investment shares of a financial intermediary and in sectors where Canadian ownership or control is a required condition to receive licences, permits, grants, payments and other benefits. Where the ownership or control of investment shares would adversely affect the ability of a cooperative to maintain a level of Canadian ownership or control, the *Canada Cooperatives Act* provides for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investment shares that may be owned or for the prohibition of the ownership of investment shares.

3.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Canadian means "Canadian" as defined in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or in the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Sector:** All Sectors

**Sub-sector:**

**Industry Classification:**

**Type of Reservation:**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Measure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SOR/2001-512*

*Canada Cooperatives Act, S.C. 1998, c.1*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SOR/99-256*

*Canada Corporations Act*, R.S.C. 1970, c. C-32

Special Acts of Parliament incorporating specific companies

**Description:****Investment**

1.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equires, for most federally incorporated corporations, that 25 percent of directors be resident Canadians and, if such corporations have fewer than four directors, at least one director must be a resident Canadian. As provided in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a simple majority of resident Canadian directors is required for corporations in the following sectors: uranium mining; book publishing or distribution; book sales, if the sale of books is the primary part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and film or video distribution. Similarly, corporations that, by an Act of Parliament or Regulation, are individually subject to minimum Canadian ownership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have a majority of resident Canadian directors.

2. For the purposes of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esident Canadian" means an individual who is a Canadian citizen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 citizen who is a member of a class set out in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or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ther than a permanent resident who has been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for more than 1 year after becoming eligible to apply for Canadian citizenship.

3. In the case of a holding corporation, not more than 1/3 of the directors need be resident Canadians if the earnings in Canada of the holding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are less than 5 percent of the gross earnings of the holding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4. The *Canada Cooperatives Act* requires that not less than two-thirds of the directors be members of the cooperative. At least 25 percent of directors of a cooperative must be resident in Canada; if a cooperative has only three directors, at least one director must be resident in Canada.

5. For the purposes of the *Canada Cooperatives Act*, a resident of Canada is defined in the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as an individual who is a Canadian citizen and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 Canadian citize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nd who is a member of a class set out in the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or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ther than a permanent resident who has been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becoming eligible to apply for Canadian citizenship.

6. Under Part IV of the *Canada Corporations Act*, a simple majority of the elected directors of a Special Act corporation must be resident in Canada and citizens of a Commonwealth country. This requirement applies to every joint stock company incorporated subsequent to 22 June 1869 by any Special Act of Parliament.

**Sector:** All Sectors

**Sub-sector:**

**Industry Classification:**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Measures:** *Citizenship Act, R.S.C. 1985, c. C-29*

*Foreign Ownership of Land Regulations, SOR/79-416*

**Description:** **Investment**

1. The *Foreign Ownership of Land Regulations* are made pursuant to the *Citizenship Act* and the *Agricultural and Recreational Land Ownership Act*, RSA 1980, c. A-9. In Alberta, an ineligible person or foreign-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 may only hold an interest in controlled land consisting of a maximum of 2 parcels containing, in the aggregate, a maximum of 20 acr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ineligible person” means:

- (a) a natural person who is not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b) a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government agency; or
- (c) a corporation incorporated in a country other than Canada;

“controlled land” means land in Alberta but does not include:

- (a) land of the Crown in right of Alberta;
- (b) land within a city, town, new town, village or summer village; and
- (c) mines or minerals.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Measures:</b>	<p><i>Air Canada Public Participation Act</i>, R.S.C. 1985, c. 35 (4th Supp.)</p> <p><i>Canadian Arsenals Limited Divestiture Authorization Act</i>, S.C. 1986, c. 20</p> <p><i>Eldorado Nuclear Limited Reorganization and Divestiture Act</i>, S.C. 1988, c. 41</p> <p><i>Nordion and Theratronics Divestiture Authorization Act</i>, S.C. 1990, c. 4</p>

**Description:****Investment**

1. A “non-resident” or “non-residents” may not own more than a specified percentage of the voting shares of the corporation to which each Act applies. For some companies the restrictions apply to individual shareholders, while for others the restrictions may apply in the aggregate. If there are limits on the percentage that an individual Canadian investor can own, these limits also apply to non-residents. The restrictions are as follows:

- Air Canada: 25 percent in the aggregate;
- Cameco Limited (formerly Eldorado Nuclear Limited): 15 percent per non-resident natural person, 25 percent in the aggregate;
- Nordion International Inc.: 25 percent in the aggregate;

- Theratronics International Limited: 49 percent in the aggregate; and
  - Canadian Arsenals Limited: 25 percent in the aggreg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non-resident” includes:
- (a) a natural person who is not a Canadian citizen and not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 (b) a corporation incorporated, formed or otherwise organised outside Canada;
  - (c) the government of a foreign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government or foreign State, or a person empowered to perform a function or duty on behalf of such a government;
  - (d) a corporation tha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 person or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c);
  - (e) a trust:
    - (i) established by a person or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b) through (d), other than a trust for the administration of a pension fund for the benefit of natural persons the majority of whom are resident in Canada, or
    - (ii) in which a person or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d) ha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and
  - (f) a corporation tha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 trus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e).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b>	<i>Export and Import Permits Act</i> , R.S.C. 1985, c. E-19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Only a natural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n enterprise with its head office in Canada or a branch office in Canada of a foreign enterprise may apply for and be issued an import or export permit or transit authorisation certificate for a good or related service subject to controls under the <i>Export and Import Permits Act</i>.</p>

<b>Sector:</b>	Business Service Industries
<b>Sub-sector:</b>	Customs Broker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7794 Customs Brokers CPC 749 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b>Measures:</b>	<i>Customs Act</i> , R.S.C. 1985, c. 1 (2 <sup>nd</sup> Supp.) <i>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i> , SOR/86-1067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To be a licensed customs broker in Cana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 natural person must be a Canadian national;</li> <li>(b) a corporation must be incorporated in Canada with a majority of its directors being Canadian nationals; and</li> <li>(c) a partnership must be composed of persons who are Canadian nationals, or corporations incorporated in Canada with a majority of their directors being Canadian nationals.</li> </ul>

<b>Sector:</b>	Business Service Industries
<b>Sub-sector:</b>	Duty Free Shop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6599 Other Retail Stores, Not Elsewhere Classified (limited to duty free shops)  CPC 631, 632 (limited to duty-free shop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ustoms Act</i> , R.S.C. 1985, c. 1 (2nd Supp.)  <i>Duty Free Shop Regulations</i> , SOR/86-1072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1. To be a licensed duty free shop operator at a land border crossing in Canada, a natural person must:  (a) be a Canadian national;  (b) be of good character;  (c) be principally resident in Canada; and  (d) have resided in Canada for at least 183 days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the licence.  2. To be a licensed duty free shop operator at a land border crossing in Canada, a corporation must:  (a) be incorporated in Canada; and

- (b) have all of its shares beneficially owned by Canadian nationals who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b>Sector:</b>	Business Service Industries
<b>Sub-sector:</b>	Examin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Export and Import of Cultural Property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999 Othe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limited to cultural property examination services)
	CPC 96321 Museum services except for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limited to cultural property examination services)
	CPC 87909 Other business services n.e.c. (limited to cultural property examination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b>	<i>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i> , R.S.C. 1985, c. C-51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1. Only a resident of Canada or an institution in Canada may be designated as an expert examiner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i>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i>.</p> <p>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p> <p>“institution” means an entity that is publicly owned and operated solely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hat is established for educational or cultural purposes and that conserves objects and exhibits them;</p> <p>“resident of Canada” means a natural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or a corporation that has its head office in Canada or maintains an establishment in Canada to which employees employed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dinarily report for work.</p>

<b>Sector:</b>	Business Service Industries
<b>Sub-sector:</b>	Patent Agent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999 Othe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limited to patent agency)
	CPC 8921 Patent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Patent Act</i> , R.S.C. 1985, c. P-4
	<i>Patent Rules</i> , SOR/96-423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To represent a person in the prosecution of a patent application or in other business before the Patent Office, a patent agent must be resident in Canada and registered by the Patent Office.</p>

<b>Sector:</b>	Business Service Industries
<b>Sub-sector:</b>	Trade-mark Agent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999 Othe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limited to trade-mark agency) CPC 8922 Trademark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Trade-marks Act</i> , R.S.C. 1985, c. T-13 <i>Trade-marks Regulations</i> , SOR/96-195; SOR/2007-91, s.1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To represent a person in the prosecution of an application for a trade-mark or in other business before the Trade-Mark Office, a trade-mark agent must be resident in Canada and registered by the Trade-marks Office.

<b>Sector:</b>	Energy
<b>Sub-sector:</b>	Oil and Ga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071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CPC 883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Measures:</b>	<i>Canada Petroleum Resources Act</i> , R.S.C. 1985, c. 36 (2 <sup>nd</sup> Supp.) <i>Territorial Lands Act</i> , R.S.C. 1985, c. T-7 <i>Federal Real Property and Federal Immovables Act</i> , S.C. 1991, c. 50 <i>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i> , S.C. 1987, c. 3 <i>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 Accord Implementation Act</i> , S.C. 1988, c. 28
<b>Description:</b>	<b>Investment</b>  1. This reservation applies to production licences issued for “frontier lands” and “offshore areas” (areas not under provincial jurisdiction) as defined in the applicable measures.  2. A person who holds an oil and gas production licence or shares therein must be a corporation incorporated in Canada.

<b>Sector:</b>	Energy
<b>Sub-sector:</b>	Oil and Ga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071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CPC 883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b>Type of Reservation:</b>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anada Oil and Gas Production and Conservation Act</i> , R.S.C. 1985, c. O-7, as amended by the <i>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i> , S.C. 1992, c. 35  <i>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 Accord Implementation Act</i> , S.C. 1988, c. 28  <i>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i> , S.C. 1987, c. 3  Measures implementing the Canada-Yukon Oil and Gas Accord, including the <i>Canada-Yukon Oil and Gas Accord Implementation Act</i> , 1998, c.5, s. 20 and the <i>Oil and Gas Act</i> , RSY 2002, c. 162  Measures implementing the Northwest Territories Oil and Gas Accord, including implementing measures that apply to or are adopted by Nunavut as the successor territories to the former Northwest Territories  Measures implementing the Canada-Quebec Gulf of St. Lawrence Petroleum Resources Accord

**Description:**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Under the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a “benefits plan”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in order to be authorised to proceed with an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2. A “benefits plan” is a plan for the employment of Canadians and for providing Canadian manufacturers, consultants, contractors and service companies with a full and fair opportunity to participate on a competitive basis i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used in proposed work or activity referred to in the benefits plan.
3. The benefits plan contemplated by the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permits the Minister to impose on the applicant an additional requirement to ensure that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groups have access to train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r can participate i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used in proposed work referred to in the benefits plan.
4. Provisions continuing those set out in the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are included in laws which implement the *Canada-Yukon Oil and Gas Accord*.
5. Provisions continuing those set out in the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will be included in laws or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Northwest Territories Oil and Gas Accord and the Canada-Quebec Gulf of St. Lawrence Petroleum Resources Accord.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these accords shall be deemed, once concluded, to be existing measures.

6. The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 Accord Implementation Act* and the *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 have the same requirement for a benefits plan but also require that the benefits plan ensures that:

- (a) the corporation or other body submitting the plan establishes in the applicable province an office where appropriate levels of decision-making are to take place, prior to carrying out work or an activity in the offshore area;
- (b) expenditures be mad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carried out in the province, an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be provided in the province; and
- (c) first consideration be given to goods produced or services provided from within the province, where those goods or services are competitive in terms of fair market price, quality and delivery.

7. The Boards administering the benefits plan under these Acts may also require that the plan include provisions to ensure that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groups, or corporations owned or cooperatives operated by them, participate i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used in proposed work or activity referred to in the plan.

8. In addition, Canada may impose a requirement or enforce a 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of Canada in connection with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applicable Acts.

<b>Sector:</b>	Energy
<b>Sub-sector:</b>	Oil and Ga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071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CPC 883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b>Type of Reservation:</b>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Measures:</b>	<i>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i> , S.C. 1987, c. 3  <i>Hibernia Development Project Act</i> , S.C. 1990, c. 41
<b>Description:</b>	<b>Investment</b>  1. Under the <i>Hibernia Development Project Act</i> , Canada and the Hibernia Project Owners may enter into agreements. Those agreements may require the Project Owners to undertake to perform certain work in Canada and Newfoundland and to use their best efforts to achieve specific Canadian and Newfoundland target level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f a “benefits plan” required under the <i>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i> . “Benefits plans” are further described in the Schedule of Canada, Annex I at pages I-CA-25-27.  2. In addition, Canada may impose in connection with the Hibernia project a requirement or enforce a 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national or enterprise in Canada.

<b>Sector:</b>	Energy
<b>Sub-sector:</b>	Uranium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0616 Uranium Mines CPC 883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8.4)
<b>Measures:</b>	<i>Investment Canada Act</i> , R.S.C. 1985, c. 28 (1 <sup>st</sup> Supp.) <i>Investment Canada Regulations</i> , SOR/85-611 <i>Non-Resident Ownership Policy in the Uranium Mining Sector</i> , 1987
<b>Description:</b>	<b>Investment</b> 1. Ownership by “non-Canadians”, as defined in the <i>Investment Canada Act</i> , of a uranium mining property is limited to 49 percent at the stage of first production. Exceptions to this limit may be permitted if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property is in fact “Canadian controlled” as defined in the <i>Investment Canada Act</i> . 2. Exemptions from the policy are permitted, subject to approval of the Governor-in-Council, only in cases where Canadian participants i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are not available. Investments in properties by non-Canadians, made prior to December 23, 1987 and that are beyond the permitted ownership level, may remain in place. An increase in non-Canadian ownership is not permitted.

<b>Sector:</b>	Professional, Technical and Specialized Services
<b>Sub-sector:</b>	Professional Services
<b>Industry Classification:</b>	CPC 862 Auditing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Bank Act</i> , S.C. 1991, c. 46 <i>Insurance Companies Act</i> , S.C. 1991, c. 47 <i>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i> , S.C. 1991, c. 48 <i>Trust and Loan Companies Act</i> , S.C. 1991, c. 4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1. Banks are required to have a firm of accountants to be auditors of the bank. A firm of accountants must be qualified as set out in the <i>Bank Act</i> . Among the qualifications required is that two or more members of the firm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nd that the member of the firm jointly designated by the firm and the bank to conduct the audit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2. An insurance company, a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 and a trust or loan company require an auditor who can either be a natural person or a firm of accountants. An auditor of such an institution must be qualified as set out in the *Insurance Companies Act*, the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or the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as the case may be. In the case where a natural person is appointed to be the auditor of such a financial institution, among the qualifications required is that the person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In the case where a firm of accountants is appointed to be the auditor of such a financial institution, the member of the firm jointly designated by the firm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conduct the audit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Air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CPC 73 Air Transport Services (passenger and freight)  Specialty air services, as set out in the <b>Description</b> section below  CPC 7512 Courier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3)
<b>Measures:</b>	<i>Canada Transportation Act</i> , S.C. 1996, c. 10  <i>Aeronautics Act</i> , R.S.C. 1985, c. A-2  <i>Canadian Aviation Regulations</i> , SOR/96-433:  Part II, Subpart 2 “Aircraft Markings & Registration”;  Part IV “Personnel Licensing & Training”; and  Part VII “Commercial Air Services”.
<b>Description:</b>	<b>Investment</b>  The <i>Canada Transportation Act</i> , in Section 55, defines “Canadian” in the following manner:  “... ‘Canadian’ means a Canadian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i>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 , a government in Canada or an agent of such a government or a corporation or other entity that is incorporated or formed under the laws of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that is controlled in fact by Canadians and of which at least seventy-five per cent, or such lesser percentage as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regulation specify, of the voting interests are owned and controlled by Canadians...”

Regulations made under the *Aeronautics Act* incorporate by reference the definition of “Canadian” found in the *Canada Transportation Act*. These Regulations require that a Canadian operator of commercial air services operate Canadian-registered aircraft. These regulations require an operator to be Canadian in order to obtain a Canadian Air Operator Certificate and to qualify to register aircraft as “Canadian”.

Only “Canadians” may provide the following commercial air transportation services:

- (a) “domestic services” (air services between points, or from and to the same point, in the territory of Canada, or between a point in the territory of Canada and a point no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 (b) “scheduled international services” (scheduled air services between a point in the territory of Canada and a poi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where those services have been reserved to Canadian carriers under existing or future air services agreements;
- (c) “non-scheduled international services” (non-scheduled air services between a point in the territory of Canada and a poi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where those services have been reserved to Canadian carriers under the *Canada Transportation Act*;

- (d) “specialty air servi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erial mapping, aerial surveying, aerial photography, forest fire management, fire-fighting, aerial advertising, glider towing, parachute jumping, aerial construction, heli-logging, aerial inspection, aerial surveillance, flight training, aerial sightseeing and aerial crop spraying).

No foreign individual is qualified to be the registered owner of a Canadian-registered aircraft.

Further to the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a corporation incorporated in Canada, but that does not meet the Canadian ownership and control requirements, may only register an aircraft for private use where a significant majority of use of the aircraft (at least 60 percent) is in Canada.

The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also have the effect of limiting foreign-registered private aircraft registered to “non-Canadian” corporations to be present in Canada for a maximum of 90 days per twelve-month period. Such foreign-registered private aircraft would be limited to private use, as would be the case for Canadian-registered aircraft requiring a private operating certificate.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Air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Not CPC defined. <b>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b> , as defined in Article 9.12 (Definitions)
<b>Type of Reservation:</b>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Aeronautics Act</i> , R.S.C. 1985, c. A-2  <i>Canadian Aviation Regulations</i> , SOR/96-433:  Part IV “Personnel Licensing & Training”;  Part V “Airworthiness”;  Part VI “General Operating & Flight Rules”; and  Part VII “Commercial Air Services”.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Aircraft and other aeronautical product repair, overhaul or maintenance activities required to maintain the airworthiness of Canadian-registered aircraft and other aeronautical products must be performed by persons meeting Canadian aviation regulatory requirements (that is, approved maintenance organisations and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s). Certifications are not provided for persons located outside Canada, except sub-organisations of approved maintenance organisations that are themselves located in Canada.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Land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456 Truck Transport Industries  SIC 4572 Interurban and Rural Transit Systems Industry  SIC 4573 School Bus Operations Industry  SIC 4574 Charter and Sightseeing Bus Services Industry  CPC 7121 Other scheduled passenger transportation by land other than by railway  CPC 7122 Other non-scheduled passenger transportation by land other than by railway  CPC 7123 Freight transportation by land other than by railway  CPC 7512 Courier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Motor Vehicle Transport Act</i> , R.S.C. 1985, c. 29 (3 <sup>rd</sup> Supp.), as amended by S.C. 2001, c. 13  <i>Canada Transportation Act</i> , S.C. 1996, c. 10  <i>Customs Tariff</i> , 1997, c. 36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Only persons of Canada using Canadian-registered and either Canadian built or duty-paid trucks or buses, may provide truck or bus services between points in the territory of Canada.

<b>Sector:</b>	Transportation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b>Sub-sector:</b>	Water Transportation		1. To register a vessel in Canada, the owner of that vessel or the person who has exclusive possession of that vessel must be: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4541 Freight 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Industry		(a) a Canadian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i>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 ;
	SIC 4542 Ferry Industry		(b) a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or
	SIC 4543 Marine Towing Industry		(c) when the vessel is not already registered in another country, a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a country other than Canada if one of the following is acting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lating to the vessel, namely:
	SIC 4549 Other Water Transport Industries		(i) a subsidiary of the corporation that is incorpora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SIC 4553 Marine Salvage Industry		(ii) an employee or director in Canada of a branch office of the corporation that is carrying on business in Canada, or
	SIC 4559 Other Service Industries Incidental to Water Transport		(iii) a ship management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CPC 721 Transport services (passenger and freight)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 services (passenger and freight) by non-sea-going vessels		
	CPC 745 Supporting services for water transport		
	CPC 5133/5223 Construction for waterways, harbours, dams and other water works		
	Any other commercial marine activity undertaken from a vessel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b>	<i>Canada Shipping Act, 2001</i> , S.C. 2001, c. 26		

2. A vessel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which has been bareboat chartered may be listed in Canada for the duration of the charter while the vessel's registration is suspended in its country of registry, if the charterer is:

- (a)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subsection 2(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r
- (b) a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Water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4541 Freight 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42 Ferry Industry
	SIC 4543 Marine Towing Industry
	SIC 4549 Other Water Transport Industries
	SIC 4553 Marine Salvage Industry
	SIC 4554 Piloting Service,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59 Other Service Industries Incidental to Water Transport
	CPC 721 Transport services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 services by non-sea-going vessels
	CPC 745 Supporting services for water transport
	CPC 5133/5223 Construction for waterways, harbours, dams and other water works
	Any other commercial marine activity undertaken from a vessel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Measures:</b>	<i>Canada Shipping Act, 2001</i> , S.C. 2001, c. 26
	<i>Marine Personnel Regulations</i> , SOR/2007-115

**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Masters, mates, engineers and certain other seafarers must hold certificates granted by the Minister of Transport as a requirement of service on Canadian-registered vessels. Such certificates may be granted only to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Sector:**

Transportation

**Sub-sector:**

Water Transport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IC 4554 Piloting Service, Water Transport Industry

CPC 74520 Pilotage and berthing services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s:***Pilotage Act*, R.S.C. 1985, c. P-14*General Pilotage Regulations*, SOR/2000-132*Atlantic Pilotage Authority Regulations*, C.R.C., c. 1264*Laurentian Pilotage Authority Regulations*, C.R.C., c. 1268*Great Lakes Pilotage Regulations*, C.R.C., c. 1266*Pacific Pilotage Regulations*, C.R.C., c. 1270**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Subject to the Schedule of Canada, Annex II, at pages II-CA-12-13, a licence or a pilotage certificate issued by the relevant regional Pilotage Authority is required to provide pilotage services in the compulsory pilotage waters of the territory of Canada. Only a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may obtain such a licence or pilotage certificate.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who has been issued a pilot's licence or pilotage certificate must become a Canadian citizen within 5 years of receipt of such licence or pilotage certificate in order to retain it.

**Sector:** Transportation

**Sub-sector:** Water Transport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IC 454 Water Transport Industry  
CPC 721 Transportation services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ation services by non-sea-going vessels

**Type of Reservation:** Local Presence (Article 9.5)

**Measure:** *Shipping Conferences Exemption Act, 1987, R.S.C. 1985, c. 17 (3<sup>rd</sup> Supp.)*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Members of a shipping conference must maintain jointly an office or agency in the region of Canada where they operate. A shipping conference is an association of ocean carriers that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regulating rates and conditions for the transportation by those carriers of goods by water.

**Sector:** Transportation

**Sub-sector:** Water Transport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IC 4541 Freight 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42 Ferry Industry  
SIC 4543 Marine Towing Industry  
CPC 721 Transportation services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ation services by non-sea-going vessels

**Type of Reservatio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3)

**Measure:** *Coasting Trade Act, S.C. 1992, c. 31*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prohibitions under the *Coasting Trade Act*, set out in Schedule of Canada, Annex II, at pages II-CA-9-11, do not apply to a vessel that is owned by the U.S. Government when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goods owned by the U.S. Government from the territory of Canada to supply Distant Early Warning sites.

<b>Sector:</b>	Communications
<b>Sub-sector:</b>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Radiocommunic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CPC 752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b>Measures:</b>	<i>Telecommunications Act</i> , S.C. 1993, c. 38 <i>Canadian Telecommunications Common Carrier Ownership and Control Regulations</i> , SOR/94-667 <i>Radiocommunication Act</i> , R.S.C., 1985, c. R-2 <i>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i> , SOR/96-484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1.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p> <p>(a) limiting foreign investment in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uppliers, provided that th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Canada does not limit foreign investment to less than a cumulative total of 46.7 percent of voting interest, based on 20 percent direct investment and 33.3 percent indirect investment;</p> <p>(b) requiring that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uppliers be controlled in fact by a Canadian;</p> <p>(c) requiring that at least 80 percent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uppliers be Canadian; and</p>

2. The following exceptions apply to this reservation:
- (a) foreign investment is allowed up to 100 percent for suppliers conducting operations under an international submarine cable licence;
- (b) mobile satellite systems of a foreign service supplier may be used by a Canadian service provider to provide services in Canada;
- (c) fixed satellite systems of a foreign service supplier may be used to provide services between points in Canada and all points outside Canada;
- (d) foreign investment is allowed up to 100 percent for suppliers conducting operations under a satellite authorisation; and
- (e) foreign investment is allowed up to 100 percent for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uppliers that have revenues, including those of its affiliates, from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Canada representing less than 10 percent of the tot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nual revenues in Canada.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Measure:</b>	All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of all provinces and territories.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For purposes of transparency only, Appendix I-A sets out an illustrative, non-binding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 maintained at the sub-national level of government.

## Appendix I-A

Illustrative List of Canada's Sub-National Non-conforming Measures<sup>99</sup>

Sector	Non-conforming measure by jurisdiction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u>Residency:</u> Saskatchewan, British Columbia, Ontario, Nova Scotia, Quebec,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 Labrador, Manitoba, Alberta  <u>Local Presence:</u> Saskatchewan, Newfoundland & Labrador, Manitoba, Ontario
Architectural services	<u>Residency:</u> Nova Scotia, Newfoundland & Labrador  <u>Corporate Form:</u> Prince Edward Island requires non-resident firms to maintain a higher percentage of practitioners in a partnership
Engineering services and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u>Residency:</u> Saskatchewan, British Columbia, Ontario, New Brunswick, Alberta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rvices	<u>Residency:</u> Newfoundland & Labrador, Saskatchewan
Real estate services	<u>Residency:</u> Alberta, Quebec, Yukon, Manitoba,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 Labrador  <u>Local Presence:</u> Saskatchewan, Ontario,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 Labrador, Alberta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u>Residency:</u> Newfoundland & Labrador

<sup>99</sup> This document is provided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and is neither exhaustive nor bind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drawn from Canada's May 2005 Revised Conditional Offer on Services (TN/S/O/CAN/Rev.1, 23 May 2005).

Sector	Non-conforming measure by jurisdiction
Toll refining	<u>Performance Requirement:</u> Ontario requires treatment or refinement of base metals in Canada
Placement and supply services of personnel	<u>Local Presence:</u> Ontario
Investigation and security services	<u>Senior Managers and Board of Directors:</u> Newfoundland & Labrador <u>Local Presence:</u> Ontario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u>Residency:</u> Ontario, British Columbia, Newfoundland & Labrador <u>Citizenship:</u> British Columbia, Manitoba. <u>Local Presence:</u> Saskatchewan <u>Training Requirement:</u> Ontario requires training to be completed in province for accreditation for land surveyors
Other business services	<u>Residency:</u> Saskatchewan, Ontario, Nova Scotia <u>Local Presence:</u> Saskatchewan, Newfoundland &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Distribution services	<u>Citizenship:</u> Quebec. <u>Local Presence:</u> Quebec, Saskatchewan, Newfoundland & Labrador, Nova Scotia, British Columbia, Ontario <u>Economic Needs Test:</u> Prince Edward Island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u>Residency:</u> Alberta, British Columbia, Ontario

Sector	Non-conforming measure by jurisdiction
	<u>Residency/Citizenship:</u> Alberta, Saskatchewan, Nova Scotia, Newfoundland & Labrador, Quebec <u>Local Presence:</u> Ontario, Quebec <u>Taxation:</u> Ontario requires non-residents to pay 20 percent land transfer tax
Road transport services (Passenger transportation)	<u>Economic Need Test:</u>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Quebec, Nova Scotia, Newfoundland & Labrador, Nunavut, Northwest Territories
Road transport services (Freight transportation)	<u>Local Presence:</u> Quebec <u>Economic Need Test:</u> Saskatchewan, Newfoundland & Labrador

## ANNEX II

### Reservations for Future Measures

#### Schedule of Korea – Explanatory Notes

1. Kore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8.9.2 and 9.6.2,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Korea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obligations imposed by:
  - (a)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or 9.2 (National Treatment);
  - (b) Article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 Article 8.7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d)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e) Article 9.4 (Market Access); or
  - (f) Article 9.5 (Local Presence).
2. Each entry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pursuant to Articles 8.9.2 and 9.6.2,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scheduled in the entry; and
  - (c)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3.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9.2 and 9.6.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4. In the interpretation of an entry, all elements of the entry shall be considered equally.

5. For greater certainty,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and Local Presence (Article 9.5)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Article 9.5)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 ANNEX II

## Schedule of Korea

<b>1. Sector:</b>	All Sector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r acquisition of an investment, a measure that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12) and Article 5 of the <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12),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12), <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12), and other applicable law.</p> <p>2.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that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s 8.18 and 8.19, a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ment) a claim that:</p> <p>(a) Korea has adopted or maintained a measure for which it has provided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1; and</p> <p>(b) the claimant or, as the case may be,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claiman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e measure.</p>

In the event of such a claim,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all references in Section B of Chapter Eight (Investment) to a breach, or to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f Chapter Eight (Investment) shall be understood to refer to the measure, which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f Chapter Eight (Investment) but for this entry. However, no award may be made in favour of the claimant, if Korea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tribunal that the measure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listed in paragraph 1.

3.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a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subject to Chapter Ten (Financial Services).

<b>2. Sector:</b>	All Sector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r disposition of equity interests or assets held by state enterprises or governmental authorities.</p> <p>Such a measure shall be implemented pursuant to of Chapter Nineteen (Transparency).</p> <p>Notwithstanding Article 10.9.3, this entry is not treated as a non-conforming measure not subject to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p> <p>This entry does not apply to former private enterprises that are owned by the state as a result of corporate reorganisation processes.</p> <p>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p> <p>A state enterprise includes any enterprise created for the sole purpose of selling or disposing of equity interests or assets of state enterprise or governmental authorities.</p>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Without prejudice to Korea's Schedules to Annex I and Annex II,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of all or any portion of services provid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p>

<b>3. Sector:</b>	Acquisition of Land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land by foreign persons, except that a juridical person shall continue to be permitted to acquire land where the juridical person:</p> <p>(a) is not deemed foreig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i>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i>; and</p> <p>(b) is deemed foreign under the <i>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i> or is a branch of a foreign juridical person subject to approval 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i>, if the land is to be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legitimate business purposes:</p> <p>(i) land used for ordinary business activities;</p> <p>(ii) land used for housing for senior management; and</p> <p>(iii) land used for fulfilling land-holding requirements stipulated by pertinent laws.</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farmland by foreign persons.</p>

<b>4. Sector:</b>	Firearms, Swords, Explosives, and Similar Items
<b>Obligations Concerne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li> <li>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li> <li>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li> <li>Local Presence (Article 9.5)</li> </ul>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firearms, swords, explosives, gas sprays, electric shocks, and crossbows sector, including the manufacture, use, sale, storage, transport, import, export, and possession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gas sprays, electric shocks, and crossbows.</p>

<b>5. Sector:</b>	Disadvantaged Groups
<b>Obligations Concerne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li> <li>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li> <li>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li> <li>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li> <li>Local Presence (Article 9.5)</li> </ul>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rights or preferences to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persons wh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ethnic minorities.</p>

<b>6. Sector:</b>	State-Own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any state-own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that contains proprietary government information or information gathered pursuant to the regulatory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overnment.</p> <p>This entry does not apply to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related to financial services.</p>

<b>7. Sector:</b>	Soci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and the following servic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public purposes: income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welfare, public training, health, and child care.</p>

<b>8. Sector:</b>	All Sectors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Article 9.4)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Korea's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 XVI of GATS as set out in Kore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p> <p>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only, Korea's Schedule is subject to the following modifica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with regard to which Korea's Annex I contains an entry (other than an entry with regard to "All Sectors") that does not list Market Access as one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None"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for modes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is inscribed for mode 4;</li> <li>(b)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with regard to which Korea's Annex I contains an entry (other than an entry with regard to "All Sectors") that lists a limitation to the Market Access obligation, that limitation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 mode of supply; and</li> <li>(c)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listed in Appendix II-A, Korea's Schedule is modified as indicated in the Appendix II-A.</li> </ul>

These modifications does not affect any limitation relating to sub-paragraph (f) of paragraph 2 of Article XVI of GAT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of Korea's Schedule.

For greater certainty, an entry of "None" in the Market Access column of Korea's Schedule is not construed to alt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9.5 (Local Presence) as modified by Article 9.6 (Non-Conforming Measures).

<b>9. Sector:</b>	All Sectors
<b>Obligations Concerned:</b>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volv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viation;</li> <li>(b) fisheries;</li> <li>(c) maritime matters, including salvage; or</li> <li>(d) railroad transportation.</li> </ul>

<b>10. Sector:</b>	Environmental Services – Treatment and Supply Services for Potabl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Municipal Sewage;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Services for Municipal Refuse;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Services (Excep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p>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p> <p>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p> <p>Local Presence (Article 9.5)</p>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environmental services: treatment and supply of potabl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of municipal sewage;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municipal refuse;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and 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services (excep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p> <p>This entry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the aforementioned services pursuant to a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to the extent private supply of such services is permitted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p>

**11. Sector:** Atomic Energy – Nuclear Power Generation; Manufacturing and Supply of Nuclear Fuel; Nuclear Materials;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including treatment and disposal of spent and irradiated nuclear fuel);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on Facilities; Monitoring Services for Radiation; Services Related to Nuclear Energy; Plann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tomic energy industry.

**12. Sector:** Energy Services – Electric Power Generation Other Than Nuclear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Electricity Busines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Any such measure shall not decrease the level of foreign ownership permitted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s provided by the 42<sup>nd</sup>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  
Notwithstanding this entry, Korea shall not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consistent with Article 8.8.1(f).

<b>13. Sector:</b>	Energy Services – Gas industry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import and wholesale distribution of natural gas and the operation of terminals and the national high pressure pipeline network.</p> <p>Any such measure does not decrease the level of foreign ownership permitted in the gas industry as provided by the 43<sup>rd</sup>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p>

<b>14. Sector:</b>	Distribution Services – Commission Agents' Services, Wholesaling and Retailing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s ( <i>nong chuk san mul</i> )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p> <p>(a) commission agents' services;</p> <p>(b) wholesaling (including importation) services; and</p> <p>(c) retailing services,</p> <p>with respect to rice, ginseng, and red ginseng.</p>

**15.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Taxi Service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axi service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16.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Freight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not including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Related to Courie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freight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not including road transportation of containerised freight (excluding cabotage) by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and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related to courier services.

**17.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Internal Waterways  
Transportation Services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ternal waterways transportation services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18.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related to rice.

**19.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Non-monopoly Post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 (a) the supply of support services to postal offices by military service personnel or other personnel of equivalent status; and
- (b) the determination of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that belo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allocation of those vehicles to postal offices, for which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does not need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greater certainty, the Korean Postal Authority reserves its exclusive rights under domestic law for collecting, processing, and deliv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tters. This exclusive right is not affected in any way or form by any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Such exclusive right of the Korean Postal Authority includes the right of access to its postal network and operation thereof.

**20.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Market Access (Article 9.4)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means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that are supplied to end-users over dedicated transmission capacity that the supplier owns or controls (including by leasing) and includes Internet Protocol-based Television (IPTV) and Interactive Broadcasting.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21.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preferential co-production arrangement for film or television productions. Official co-production status, which may be granted to a co-production produced under such a co-production arrangement, confers national treatment on works covered by a co-production arrangement.

**22.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sett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or audio-visual programs are Korean.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b>23. Sector:</b>	Business Services – Real Estate Services (not including Real Estate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real estate development, supply, management, sale, and rental services, except for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b>24. Sector:</b>	Business Services – Insolvency and Receivership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solvency and receivership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corporate restructuring services, including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ies, corporate restructuring partnership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s.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not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current legitimate investment banking services subject to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hapter Ten (Financial Services).

<b>25. Sector:</b>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o ensure that, upon a finding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at Korean digital audio or video content or genres thereof is not readily available to Korean consumers, access to such content is not unreasonably denied to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targeted at Korean consumer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o promote the availability of such content.</p> <p>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pursuant to the paragraph above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Chapter Nineteen (Transparency) as applicable, be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be no more trade-restrictive or burdensome than necessary.</p> <p>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provides streaming audio content, films, or other video downloads or streaming video cont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ransmission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does not include broadcasting services as defined by the <i>Broadcasting Act</i> or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as defined in the 20<sup>th</sup> entry in this Annex.</p> <p>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p>

<b>26. Sector:</b>	Business Services –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Cadastral Map-Related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p>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cadastral map-related services.</p>

**27. Sector:** Business and Environmental Services – Examination, Cer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s (*nong chuk san mul*)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examination, cer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 products.

**28. Sector:** Business Services –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including genetic improvement, artificial insemination, rice and barley polishing, and activities related to a rice processing complex.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Forestry Cooperatives, and the Fisheries Cooperatives.

**29. Sector:** Fishing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fishing activities 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30. Sector:** Publishing of Newspape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ublishing (including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newspapers.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b>31. Sector:</b>	Education Services –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Other Education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ealth and medicine-relate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for prospective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professional graduate education in law; distance education at all education levels (except adult education services, provided that such services do not confer academic credit, diplomas, or degrees); and other education services.

<b>32. Sector:</b>	Social Services – Human Health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human health services.

<b>33. Sector:</b>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 Motion Picture Promotion, Advertising, or Post-Production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motion picture promotion, advertising, or post-production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2.6 (Cultural Industries).

<b>34. Sector:</b>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 Museum and Other Cultural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conservation,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ies, including the excavation, appraisal, or dealing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ies.

**35. Sector:** Other Recreat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ourism in rural, fishery, and agricultural sites.

**36. Sector:** Legal Services – Foreign Legal Consul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a) restrictions on certification, approval, registration, admission, and supervision of, and any other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foreig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supplying any type of legal services in Korea;

(b) restrictions on foreig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entering into partnerships, commercial associations, affiliations, or any other type of relationship regardless of legal form, with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Korean law firms,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s),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customs brokers);

- (c) restrictions on foreig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hiring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s),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customs brokers) in Korea; and
  - (d)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foreign legal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Canadian law firms to establish representative office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or FLC offices) in Korea, and attorneys licensed in Canada to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Korea;
  - (b)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FLC office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jointly deal with cases wher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nd to share profits derived from such cases; and

- (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Canadian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such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4.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Canadian law firm" means a law firm organised under Canadian law and headquartered in Canada.

**37.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 (a) restrictions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accounting corporations registered under foreign laws hiring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 restrictions on foreig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viding auditing services in Korea; and
- (c)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cy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i) Canadian Chartered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or accounting corporations organised under Canadian law to supply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Canadian or international accounting laws and standards through offices established in Korea; and

- (ii) Canadian Chartered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to work in *hoe-gye-beop-in* (Korean accounting corporations); and

(b)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Canadian Chartered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to invest in any *hoe-gye-beop-in* (Korean accounting corporation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 (i) *gong-in-hoe-gye-sa* (Korean register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hall ow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 of the *hoe-gye-beop-in*; and
- (ii) any single Canadian Chartered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own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hoe-gye-beop-in*.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4.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Canadian accounting corporation” means an accounting corporation or partnership organised under Canadian law and headquartered in Canada.

**38.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ertified Tax Accoun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 (a) restrictions o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tax agency corporations registered under foreign laws hiring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 restrictions on foreign-certified tax accountants provi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s and tax representative services in Korea; and
- (c)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certified tax accountancy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i) the establishment of offices in Korea by Canad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or tax agency corporations organised under Canadian laws to provide tax consulting services with respect to Canadian or international tax laws and taxation system; and

- (ii) Canad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to work in *se-mu-beop-in* (Korean tax agency corporations); and

- (b)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Canad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Canada to invest in any *se-mu-beop-in* (Korean tax agency corporation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 (i)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shall ow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se-mu-beop-in*; and
- (ii) any single Canadian 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ered in Canada own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se-mu-beop-in*.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4.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Canadian tax agency corporation” means a tax agency corporation or partnership organised under Canadian law and headquartered in Canada.

<b>39. Sector:</b>	Business Service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exportation and re-exportation of controlled commodities, software, and technology.  Only persons residing in Korea may apply for a license to export or re-export such commodities, software, or technology.

<b>40. Sector:</b>	All Sectors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Description:</b>	<b>Investment</b>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to supply a service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s defined in Article 9.1 (Scope and Coverage) such as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a) an investor or covered investment that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Korea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uch services; or  (b)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Korea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is subject to Chapter Ten (Financial Services).

**41.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Maritime Cabotag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maritime cabotage, and the operation of Korean vessels, including the following measures:

- (a) A person that supplies international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b)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of activities which may be considered as cabotage under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maritime cabotage is reserved for Korean vessels, which are assumed to cove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goods between a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any adjacent Korean islands and another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any adjacent Korean islands, including on its continental shelf as provided in the UNCLOS, and traffic originating and terminating in the same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any adjacent Korean islands. “Korean vessel” means:

- (i) a vessel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 state enterprise, or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ii) a vessel owned by a Korean national;
- (iii) a vessel owned by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 (iv) a vessel owned by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that has its principal office in Korea and whose *dae-pyo-ja* (representative;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a Korean national. In the event there is more than one, all *dae-pyo-ja* must be Korean nationals.

APPENDIX II-A

Korean Sectors Covered by Article XVI of the GATS

For the following Sectors/Sub-sectors, Korea's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 X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et out in Kore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 are improved as described.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b>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b>	
a.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on natural scien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s 1 and 2, "Unbound" for mode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b.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c.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s 1 and 2, "Unbound" for mode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b>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services</b>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b>Services incidental to mining</b>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b>Packaging services</b>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b>Convention services other than Convention agency services</b>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b>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b>	
a.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Excluding rail and air transport related facilities in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Insert new commitments with "Unbound*" for mode 1, "None" for mode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b. Tour operator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c. Tourist guides services	Modify mode 3 from "Only travel agencies are allowed to supply tourist guide services" to "None"

## ANNEX II

## Reservations for Future Measures

## Schedule of Canada – Explanatory Notes

1. Canad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8.9.2 and 9.6.2,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Canada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obligations imposed by:
  - (a)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or 9.2 (National Treatment);
  - (b) Article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9.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 Article 8.7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d) Article 8.8 (Performance Requirements);
  - (e) Article 9.4 (Market Access); or
  - (f) Article 9.5 (Local Presence).
2. Each reservation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b) **Sub-sector** refers, where applicable, to the specific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c) **Industry Classification** refers, where applicable, to the activity covered by the reservation according to domestic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 (d) **Type of Reservation** specifies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which a reservation is taken;
  - (e)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 sub-sector,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reservation; and
  - (f) **Existing Measures** identifies, for transparency purposes, existing measures that apply to the sector, sub-sector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reservation.
3.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9.2 and 9.6.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Type of Reservation** element of a reservation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reservation.
4. In the interpretation of a reservation, all elements of the reservation, with the exception of Industry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The **Description** element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5.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CPC** means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numbers as set out in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77,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1991; and

**SIC** mean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numbers as set out in Statistics Canad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urth edition, 1980.
6. For greater certainty,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and Local Presence (Article 9.5)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Article 9.5)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 ANNEX II

## Schedule of Canada

<b>Sector:</b>	Aboriginal Affai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denying investors of Korea and their investments, or service providers of Korea, rights or preferences provided to aboriginal peoples.
<b>Existing Measure:</b>	<i>Constitution Act</i> , 1982, being Schedule B of the <i>Canada Act 1982</i> (U.K.), 1982, c. 11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Description:</b>	<b>Investment</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lating to residency requirements for the ownership of oceanfront land by investors of Korea, or their investments.
<b>Existing Measures:</b>	

<b>Sector:</b>	Fisheries
<b>Sub-sector:</b>	Fishing and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031 Fishing Industry SIC 032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CPC 882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b>Description:</b>	<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with respect to licensing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entry of foreign fishing vessels to Canada's exclusive economic zone, territorial sea, internal waters or ports and use of any services therein.
<b>Existing Measures:</b>	<i>Fisheries Act</i> , R.S.C. 1985, c. F-14  <i>Coastal Fisheries Protection Act</i> , R.S.C. 1985, c. 33  <i>Coastal Fisheries Protection Regulations</i> , C.R.C. 1978, c. 413  <i>Commercial Fisheries Licensing Policy</i>  <i>Policy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Canadian Fisheries Sector</i> , 1985

<b>Sector:</b>	Government Finance
<b>Sub-sector:</b>	Securities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8152 Finance and Economic Administration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8.3)
<b>Description:</b>	<b>Investment</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lating to the acquisition, sale or other disposition by nationals of Korea of bonds, treasury bills or other kinds of debt securiti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or a Canadian sub-national government.
<b>Existing Measure:</b>	<i>Financial Administration Act</i> , R.S.C. 1985, c. F-11

**Sector:** Minority Affairs

**Sub-sector:**

**Industry Classification:**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conferring rights or privileges to a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minority.

**Existing Measures:**

**Sector:** Social Services

**Sub-sector:**

**Industry Classification:**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with respect to providing public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as well as the following servic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a public purpose: income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welfare, public education, public training, health, and child care.

**Existing Measures:**

**Sector:** Transportation

**Sub-sector:** Air Transport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Not CPC-defined, rather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s defined in th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Type of Reservatio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selectively negotiate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other States, organisations of States, aeronautical authorities or service providers, to recognise their accreditation of repair, overhaul and maintenance facilities and certification by such facilities of work performed on Canadian-registered aircraft and other related aeronautical products.

**Existing Measures:**

**Sector:** Transportation

**Sub-sector:** Air Transport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Not CPC-defined, rather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as defined in th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affecting the selling and marketing of an air transportation service.

**Existing Measures:**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Water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4129 Other Heavy Construction
	SIC 4541 Freight 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42 Ferry Industry
	SIC 4543 Marine Towing Industry
	SIC 4549 Other Water Transport Industries
	SIC 4552 Harbour and Port Operation Industries (limited to berthing, bunkering and other vessel operations in a port)
	SIC 4553 Marine Salvage Industry
	SIC 4554 Piloting Service,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59 Other Service Industries Incidental to Water Transport (not including landside aspects of port activities)
	CPC 5133/5223 Construction work for waterways, harbours, dams and other water works
	CPC 721 Transportation services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ation services by non-sea-going vessels
	CPC 745 Supporting services for water transport
	Other marine activities of a commercial nature, as set out in the <b>Description</b> section below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s 8.3 and 9.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Local Presence (Article 9.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7)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8.8)

**Description:****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affecting the investment in or provision of marine cabotage services, including:

- (a) the transportation of either goods or passengers by vessel between points in the territory of Canada or above the continental shelf of Canada, either directly or by way of a place outside Canada; but with respect to waters above the continental shelf of Canada, the transportation of either goods or passengers only in relation to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or transportation of the mineral or non-living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Canada; and
- (b) the engaging by vessel in any other marine activity of a commercial nature in the territory of Canada and, with respect to waters above the continental shelf, in such other marine activities of a commercial nature that are in relation to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or transportation of the mineral or non-living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Canada.

This reservation relates to, among other things, local presence requirements for service providers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to criteria for the issuance of a temporary cabotage licence to foreign vessels and to limits on the number of cabotage licences issued to foreign vessels.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servation applies, *inter alia*, to feeder services.

**Existing Measures:**

*Coasting Trade Act*, S.C. 1992, c. 31

*Canada Shipping Act, 2001*, S.C. 2001, c. 26

*Customs Act*, R.S.C. 1985, c. 1 (2<sup>nd</sup> Supp.)

*Customs and Excise Offshore Application Act*, R.S.C. 1985, c. C-53

<b>Sector:</b>	Transportation
<b>Sub-sector:</b>	Water Transportation
<b>Industry Classification:</b>	SIC 4541 Freight 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42 Ferry Industry
	SIC 4543 Marine Towing Industry
	SIC 4549 Other Water Transport Industries
	SIC 4551 Marine Cargo Handling Industry
	SIC 4552 Harbour and Port Operation Industries
	SIC 4553 Marine Salvage Industry
	SIC 4554 Piloting Service, Water Transport Industry
	SIC 4559 Other Service Industries Incidental to Water Transport
	CPC 721 Transport services by sea-going vessels
	CPC 722 Transport services by non-sea-going vessels
	CPC 745 Supporting services for water transport
	Any other marine activity of a commercial nature in waters of mutual interest
<b>Type of Reservation:</b>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arrangements and other formal or informal undertakings with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maritime activities in waters of mutual interest in area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cluding double hull requirements for oil tankers), safe navigation, barge inspection standards, water quality, pilotage, salvage, drug abuse control and maritime communications.

**Existing Measures:**

**Sector:**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Sub-sector:**

Maritime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Industry Classification:**

CPC 8676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Type of Reservation:**

Local Presence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8.4 and 9.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affecting the statutory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vessels on behalf of Canada.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8.4)
<b>Description:</b>	<p><b>Investment</b></p> <p>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prior to 1 January 1994.</p> <p>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a country under an existing or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ing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viation;</li> <li>(b) fisheries; or</li> <li>(c) maritime matters, including salvage.</li> </ul>
<b>Existing Measures:</b>	

<b>Sector:</b>	All Sectors
<b>Sub-sector:</b>	
<b>Industry Classification:</b>	
<b>Type of Reservation:</b>	Market Access (Article 9.4)
<b>Description:</b>	<p><b>Cross-Border Trade in Services</b></p> <p>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Canad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GATS.</p> <p>For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only, Canad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s modified as indicated in Appendix II-A.</p>
<b>Existing Measures:</b>	

## Appendix II-A

## Canadian Sectors Covered by Article XVI of the GATS

For the following Sectors, Canad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GATS are improved: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Audit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 and Quebec</li>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Ontario</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Audit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 and Quebec</li>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Ontario</li> </ul>
Architectural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Architect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Engineering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Consulting 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p><u>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Consulting 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li> </ul> <p><u>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Consulting 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li> </ul> <p><u>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Consulting 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rcial pres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Manitoba</li> </ul> <p><u>Engine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li>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Community/ Urban Plann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Real estate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Chartered Apprais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Agrologist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Professional Administrators and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p>Professional Corporation of Administrators</p> <p><u>Industrial Relations Counsello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Agrologist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Investigation and security services	<p>Under Mode 3 remove:</p> <p><u>Business and Personnel Information Investigation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 to 25% in total and 10% by any individual holding shares: Ontario</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Land Surveyo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ova Scotia and Quebec</li> </ul> <p><u>Subsurface Surveying Servic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Professional Technologis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Chemist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Land Surveyo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Nova Scotia and Quebec</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p><u>Subsurface Surveying Servic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accreditation: Quebec</li> </ul>
Other business services	<p>Under Mode 1 remove:</p> <p><u>Certified Translators and Interpret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p>Under Mode 2 remove:</p> <p><u>Certified Translators and Interpreter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zenship requirement for use of title: Quebec</li> </ul> <p>Under Mode 3 remove:</p> <p><u>Collection Agenci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 to 25% in total and 10% by any individual: Ontario</li> </ul>
Courier services	<p>Under Mode 3 remo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nomic needs test (Criteria related to approval include: examination of the adequacy of current levels of service; market conditions establishing the requirement for expanded service; the effect of new entrants on public convenience, including the continuity and quality of service, and the fitness, willingness and ability of the applicant to provide proper service.): Nova Scotia and Manitoba</li> </ul>
General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p>Under Mode 3 remove:</p> <p><u>Construction</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 applicant and holder of a water power site development permit must be incorporated in Ontario</li> </ul>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Wholesale trade services	Under Mode 1 remove:  Marketing of Fish Products (Nova Scotia): Nova Scotia residents require ministerial approval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non-residents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Railway passenger and freight transport	Under Mode 1 remove:  - cabotage limitation
Road Passenger Transportation	Under Mode 3 remove:  <u>Interurban bus transport and scheduled services:</u>  - Public convenience and needs test (Criteria related to approval include: examination of the adequacy of current levels of service; market conditions establishing the requirement for expanded service; the effect of new entrants on public convenience, including the continuity and quality of service, and the fitness, willingness and ability of the applicant to provide proper service.): Prince Edward Island
Road Freight transportation	Under Mode 3 remove:  <u>Highway freight transportation</u>  - Public convenience and needs test (Criteria related to approval include: examination of the adequacy of current levels of service; market conditions establishing the requirement for expanded service; the effect of new entrants on public convenience, including the continuity and quality of service, and the fitness, willingness and ability of the applicant to provide proper service.): British Columbi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Telecommunications	Under Mode 3 remove:  Nova Scotia: no person may vote more than 1,000 shares of Maritime Telegraph and Telephone Ltd.

ANNEX III

Financial Services

Schedule of Korea – Explanatory Notes

1. Kore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 (a) headnotes that limit or clarify the commitments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and (c);
  - (b) in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10.9.1, the existing measures of Korea that do not conform with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 (i)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 (ii) Article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ii)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iv) Article 10.5 (Cross-Border Trade); or
    - (v) Article 1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nd
  - (c) in Section B, pursuant to Article 10.9.2,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Korea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10.5 (Cross-Border Trade), or 1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2. Each entry in Section A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c)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that, pursuant to Article 10.9.1(a),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4;
  -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scheduled measure(s);
  - (e) **Measures** identify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element:
    -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 (ii) includes any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and
  - (f) **Description** provides a general, non-binding description of the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3. Each entry in Section B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 (c)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c) that, pursuant to Article 10.9.2,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scheduled in the entry;
  -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listed measure(s); and
  - (e)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4. For entries in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10.9.1(a), and subject to Article 10.9.1(c),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dentified in the Measures element of that entry,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non-conforming aspects are inconsistent with Annex 10-B (Specific Commitments).

5. For entries in Section B, pursuant to Article 10.9.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6. Where Korea adopts or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suppli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Schedule entry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r 10.5 (Cross-Border Trade) operates as a Schedule entry with respect to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8.8 (Performance Requirements)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7. Appendix III-A lists certain measures that the Parties consider to b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or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r subject to Article 10.10.1.

8. An entry in Annex I or Annex II specifying that Article 9.2 (National Treatment) does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a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s not construed as limiting a Party's obligation under Article 10.5.1 to accord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ervices specified in Annex 10-A (Cross-Border Trade) to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 Headnotes

1. Commitments in these sub-sectors under the Agreement are undertaken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se headnotes and in the Schedules below.

2. To clarify the commitment of Korea with respect to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juridical persons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and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are subject to non-discriminatory limitations on juridical form<sup>100</sup>.

3. The commitments of Korea pursuant to Articles 10.2 (National Treatment) and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bject to the limitation that in order to establish or acquire a controlling interest in a financial institution in Korea, a foreign investor must own or control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engages in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within the same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in its home country.

4. Korea limits its commitments pursuant to Article 10.9.1(c) with respect to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manner: Article 0.9.1(c) shall apply only to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10.4 (a) and not to those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10.4 (b).

<sup>100</sup> For example, partnerships and sole proprietorship are generally not acceptable juridical forms for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is headnote is not itself intended to affect, or otherwise limit, a choice by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between branches or subsidiaries.

**ANNEX III**  
**Schedule of Korea**

**Section A**

<b>1.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Insurance Business Act</i>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s 91 and 100  <i>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097, 7 September 2012), Article 40
<b>Description:</b>	Only two employees of a commercial bank, mutual saving bank, or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sell insurance products at any one time at a single location.  For transparency purposes, Korea restricts the manner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s including by limiting the number of windows in a single bank location devoted to the sale of insurance, the percentage of insurance sold by a bank that may be underwritten by a single insurer, and the type of insurance products which may be sold by a bank, and restric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such as compelling the purchase of insurance products in return for a loan.

<b>2.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Cross-Border Trade (Article 10.5)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ssurance Act</i> (Law No. 11369, 22 February 2012)  <i>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i> (Law No. 10695, 19 May 2011)  <i>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i> (Law No. 11140, 31 December 2011)  <i>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i> (Law No. 10711, 24 May 2011)  <i>Urban Gas Business Act</i> (Law No. 10959, 25 July 2011)  <i>Seafarers Act</i> (Law No. 11141, 31 December 2011)  <i>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i> (Law No. 11169, 17 January 2012)  <i>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i> (Law No. 11344, 22 February 2012)  <i>Elevators Safety Management of Act</i> (Law No. 11343, 22 February 2012)  <i>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i> (Law No. 10458, 9 March 2011)  <i>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i> (Law No. 10660, 19 May 2011)  <i>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i> (Law No. 9740, 27 May 2009)  <i>Air Transport Business Promotion Act</i> (Law No. 11196, 17 January 2012)

*Road Traffic Act* (Law No. 11298, 10 February 2012)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Law No. 10893, 21 July 2011)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Law No. 10804, 15 June 2011)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Law No. 11569, 18 December 2012)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Law No. 11180, 17 January 2012)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Law No. 10912, 25 July 2011)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Law No. 11473, 1 June 2012)

*Social Welfare Services Act* (Law No. 11442, 23 May 2012)

*Anglers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Law No. 10801, 15 June 2011)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ct* (Law No. 11461, 1 June 2012)

*Digital Signature Act* (Law No. 10465, 29 March 2011)

*Attorney-at-Law Act* (Law No. 10922, 25 July 2011)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Act* (Law No. 10874, 21 July 2011)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Law No. 10916, 25 July 2011)

*Safety Management Act on Amusement Facilities for Children* (Law No. 11394, 21 March 2012)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Law No. 11461, 1 June 2012)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Law No. 10580, 12 April 2011)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Tourism Promotion Act* (Law No. 10599, 14 April 2011)

*Tramway Transaction Act* (Law No. 11060, 16 September 2011)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91, 7 September 2012)

*Door-To-Door Sales, Etc. Act* (Law No. 11461, 1 June 2012)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Law No. 10136, 17 March 2010)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Law No. 11610, 1 January 2013)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1235, 26 January 2012)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Law No. 11276, 1 February 2012)

*Compensation for Aerospace Damage Guarantee Act* (Law No. 8852, 29 February 2008)

*The Aero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Law No. 10447, 9 March 2011)

*Regulation on the Designation and Control of Recreational Fishing Sites* (Decre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o. 296, 20 July 2012)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247, 21 December 2012)

*Standing Timber Act* (Law No. 11303, 10 February 2012)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Law No. 11461, 1 June 2012)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Law No. 11461, 1 June 2012)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Law No. 11048, 15 September 2011)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Law No. 9408, 3 February 2009)

*Housing Act* (Law No. 11590, 18 December 2012)

*Aviation Act* (Law No. 11244, 26 January 2012)

*Maritime Transport Act* (Law No. 11480, 1 June 2012)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Law No. 11037, 4 August 2011)

**Descrip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natural person residing in Korea or juridical persons established in Korea has satisfied a legal obligation to purchase “compulsory” insurance services not listed in Annex 10-A (Cross-Border Trade), any such service supplied 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o such person is not considered.

However, services supplied outside the territory of Korea may be considered in satisfaction of the legal obligation if the required insurance cannot be purchased from an insurer established in Korea.

**3.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Banking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s 15, 15-2, 15-3, and 16-2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23427, 28 December 2011), Articles 1-6, 5, 9, 10, and Annex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Law No. 10361, 8 June 2010), Articles 8 and 8-2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644, 29 February 2012), Article 6-3

**Description:**

1. A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may own more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that institution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sup>101</sup>.”
2. For the purposes of transparency:
  - (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pplies additional criteria for approval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the approval of ownership by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1;

<sup>101</sup>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 includes any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been rated by an international rating organisation at a level acceptable to the relevant Korean regulator or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demonstrated by alternative means acceptable to the relevant Korean regulator that it has an equivalent status.

- (b) a natural person shall not own more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 (c) a corporate entity other than a financial institution, the main business of which is not financial services, shall not own more than nine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However, the ownership percentage can be increased to 10 percent if the corporate entity waives its abil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relating to the shares in excess of nine percent; and
- (d) a corporate entity or a private equity fund invested by a corporate entity which is the largest stockholder of the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 or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it intends to hold more than four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b>4.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Banking Act</i>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 58  <i>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i> (Presidential Decree No.23427, 28 December 2011), Article 24-8 and Annex  <i>Regulation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i> (Notic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 2012-31, 26 December 2012), Articles 5-4, 11, and Annex
<b>Description:</b>	Each branch location in Korea of a bank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requires a separate license. A branch of a banking subsidiary, including one owned or controlled by investors of another country does not require such a license.

**5.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s 78, 373, 375, 379, and 386

**Description:** Only the Korea Exchange and any other alternative trading systems licens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ay operate a securities or derivatives market in Korea.

**6.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s 166 and 294 through 323

**Description:** Onl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may serve as the depository for listed and unlisted securities issued in Korea or as the intermediary for transfer of those securities between accounts of depositors in Korea.

<b>7.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s 298, 323-2, 323-3, 323-10 and 378
<b>Description:</b>	<p>Onl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e Korea Exchange may perform clearing and settlement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listed or traded on the Korea Exchange.</p> <p>Only central counter parties licensed under the <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may perform clearing and settle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including securities and derivatives.</p>

<b>8.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Cross Border Trade (Article 10.5)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 166
	<i>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97, 5 April 2013), Article 184
<b>Description:</b>	A non-professional investor and some professional investors <sup>102</sup> shall make transactions through an investment broker licensed in Korea when the investor intends to trade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on foreign securities markets or foreign derivatives markets.

<sup>102</sup> Institutional investors by Article 1-2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2, 3 February 2009) are excluded.

<b>9.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p><i>Banking Act</i>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s 62 and 63</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i> (Presidential Decree No.23427, 28 December 2011), Articles 25 and 26</p> <p><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 65</p> <p><i>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Presidential Decree No. 24497, 5 April 2013), Article 65</p>
<b>Description:</b>	<p>A branch, located in Korea, of a bank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must bring and maintain operating funds within Korea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funds to be raised or loans to be extended by such local branch.</p> <p>A branch, located in Korea,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must bring and maintain operating funds within Korea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managing risks arising from the business conducted by such local branch.</p> <p>For the purposes of the <i>Banking Act</i> and the <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such a branch is considered a separate legal entity from the bank 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p>

<b>10.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p><i>Credit Unions Act</i> (Law No. 11545, 11 December 2012), Article 7</p> <p><i>Mutual Savings Bank Act</i>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 6</p> <p><i>Specialized Credit Financing Business Act</i> (Law No. 11410, 21 March 2012), Article 5</p> <p><i>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 254, 258, 263, and 355</p> <p><i>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i> (Law No. 10465, 29 March 2011) Article 5</p> <p><i>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i> (Law No. 11407, 21 March 2012), Article 9</p>
<b>Description:</b>	<p>The following types of business shall not be conducted by a branch of a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redit unions;</li> <li>(b) mutual savings banks;</li> <li>(c) specialized capital finance companies;</li> <li>(d) foreign and won currency capital brokerage firms;</li> <li>(e) credit information companies;</li> <li>(f) general fund administration firms;</li> </ul>

- (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companies;  
and
- (h) bond appraisal companies.

**11.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ct* (Law No. 11461, 1 June 2012), Article 30

**Description:** A non-financial institution that seeks to offer certai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Korea may establish only as a subsidiary.

<b>12.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p><i>Korea Development Bank Act</i> (Law No. 10303, 17 May 2010)</p> <p><i>Industrial Bank of Korea Act</i> (Law No. 11501, 16 September 2011)</p> <p><i>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i> (Law No.10924, 25 July 2011)</p> <p><i>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ct</i> (Law No. 11532, 11 December 2012)</p> <p><i>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i> (Law No. 11320, 17 February 2012)</p>
<b>Description:</b>	<p>Korea may grant:</p> <p>(a)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collectively, Government-Sponsored Institutions or G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the Korea Development Bank;</li> <li>(ii) the Industrial Bank of Korea;</li> <li>(iii)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li> <li>(iv) the National Agricultural Bank; and</li> <li>(v)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li> </ul>

- (b) special treatment, including the following:
- (i) guarantees of loans to or bonds issued by the GSIs;
  - (ii) permission to issue more bonds per capital than similarly-situated non-GSIs;
  - (iii) reimbursement of losses incurred by GSIs; and
  - (iv) exemption from public assets and certain taxes on capital, surplus, profit, or assets.

**13.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0.8)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Law No. 10924, 25 July 2011), Article 16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ct* (Law No. 11532, 11 December 2012), Article 49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Law No. 11320, 17 February 2012), Article 51

**Description:** Chief, deputy executive officers and al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hall be Korean nationals.

**14.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Housing Act* (Law No. 11243, 26 January 2012), Article 75

*Rules on Provision of Housing*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No. 554, 21 December 2012), Article 5.2

**Description:** Korea may limit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ated to hold housing accounts, such as the National Housing Subscription Deposit Accounts.

<b>15.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i>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i> (Law No. 11407, 21 March 2012), Article 9
<b>Description:</b>	Interbank Brokerage of Korean won spot transactions is limited to the two existing brokerage companies in the business.

**Section B**

<b>16. 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Insurance
<b>Obligations Concerned:</b>	Cross-Border Trade (Article 10.5)
<b>Level of Government:</b>	National
<b>Measures:</b>	None
<b>Description:</b>	<p>Korea reserves the right not to consider any “compulsory” third-party insurance service supplied 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o a natural person in Korea or juridical person established therei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natural or juridical person has satisfied a legal obligation to purchase such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service not listed in Annex 10-A (Cross-Border Trade).</p> <p>However, services supplied outside the territory of Korea may be considered in satisfaction of the legal obligation if the required insurance cannot be purchased from an insurer established in Korea.</p>

**17.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None

**Description:** In the context of privatising government-owned or government-controlled entities that supply financial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relating to the continued guarantee or time-limited additional guarantee, of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se entities.

**18.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758, 5 April 2013)

**Descrip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to limit ownership by foreign investors of the Korea Exchange and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 the event of public offering of shares of the Korea Exchange or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orea reserves the right to limit shareholding by foreign persons in the relevant institution, if Korea ensures that:

- (a) any shareholding interests held by foreign persons at the time of the public offering is preserved; and
- (b) following the public offering, the Korea Exchange or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ssures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f Canada on the terms that are no less favourable than financial institutions of Korea in like circumstances.

APPENDIX III-A

Certain Measure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0.2 or 10.4  
or Subject to 10.10.1

1. The following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a) an insurance company constituted in Korea may engage only in activities permitted by the relevant laws (Articles 10, 11, 11-2 and 11-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nd Articles 15 and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97, 7 September 2012));
- (b) residents of Korea are not permitted to settle payment in Korea won f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s supplied to them by residents of foreign countries. (Articles 5-11 and 7-8 to 7-10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30 September 2009));
- (c) banks and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are required to extend loans to small- or medium-sized companies. (Article 2 of the *Bank of Korea's Regulations on Credit Extension* (Monetary Policy Committee, 19 August 1999); and Article 11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nd Article 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987, 24 July 2012));
- (d) the overall net open position of foreign exchange banks, measured by the sum of the net short position or the sum of the net long positions, whichever is greater (short-hand method), is limited to 50 percent of the total equity capital at the end of the previous month (Article 11.2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Law No. 11407, 21 March 2012); and Article 2-9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30 September 2009));

- (e) securities credit extension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on the maximum credit amount and use of proceed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s only permitted to extend credit for the purpose related to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Article 7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758, 5 April 2013); Article 6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97, 5 April 2013));
- (f) the value of lending to an individual credit card holder may be capped. (Article 24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ng Business Act* (Law No. 11410, 21 March 2012));
- (g) a bank,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in Korea may only engage in activities permitted by the relevant laws (Articles 27, 27-2, and 28 of the *Banking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s 40 and 4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758, 5 April 2013); and Articles 43 and 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97, 5 April 2013));
- (h) a financial institution is prohibited from acquiring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 (Article 38 of the *Banking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rticle 10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 (i) non-resident of Korea may convert foreign currency into KRW (Korean won) only for actual use in Korea. (Articles 7-8 through 7-10 and Articles 7-36 through 7-39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Noti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30 September 2009)); and
- (j) Korea may restrict deposit interest rates, loan interest rates, other interest rates, maturity of deposit, and related fees (Article 30 of the *Banking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the *Regul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Loans and Deposit Rates* (Monetary Policy Committee, 24 December 2003); Articles 8, 11-2, and 15 of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Law No. 11544, 11 December 2012); and Articles 5 and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Presidential Decree No. 24076, 31 August 2012)).

2. The following measures fall within Article 10.10.1 and that, therefore,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does not prevent Korea from maintaining them:

- (a) the operating fund of a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will be considered as capital and the head office's capital wi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funds to be raised or loans to be extended by such local branch (Article 9.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and Article 2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97, 7 September 2012)); and
- (b) A branch in Korea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must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Korea assets equal to the aggregate of the reserve for performance of liability and the reserve for emergency relating to the insurance contracts executed in Korea (Article 7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10866, 21 July 2011)).

### ANNEX III

#### Financial Services

##### Schedule of Canada – Explanatory Notes

1. Canada's Schedule to this Annex sets out:
  - (a) headnotes that limit or clarify commitments of Canada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and (c);
  - (b) in Section A, the reservations taken by Canada, pursuant to Article 10.9.1, with respect to existing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obligations imposed by Articles relating to:
    - (i)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 (ii) Article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ii)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iv) Article 10.5 (Cross-Border Trade); or
    - (v) Article 1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nd
  - (c) in Section B, the reservations taken by Canada, pursuant to Article 10.9.2, for measures that Canada may adopt or maintain that do not conform with obligations imposed by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10.5 (Cross-Border Trade), or 1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2. Each reservation in Section A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c) **Type of Reservation** specifies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b)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measure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e) **Measures**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as qualified by the **Description** element,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element:
  -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 (ii) includes a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and
- (f) **Description** sets out references, if any, for liberalisa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other sections of Canada's Schedule to this Annex, and the remaining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existing measures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3. Each reservation in Section B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in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c) **Type of Reservation** specifies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measure for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and
- (e)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reservation.

4. In the interpretation of a reservation in Section A, all elements of the 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 reservation shall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pter against which the reservation is taken. To the extent that:

- (a) the **Measures** element is qualified by a specific reference in the **Description** element, the **Measures** element as so qualified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and

- (b) the **Measures** element is not so qualified, the **Measures** element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unless a discrepancy between the **Measures** element and the other elements considered in their totality is so substantial and material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Measures** element should prevail, in which case the other elements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at discrepancy.

5. In the interpretation of a reservation in Section B, all elements of the 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The **Description** element shall prevail over all other elements.

6. Where Canada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suppli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reservation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10.2 (National Treatment), 10.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r 10.5 (Cross-Border Trade) shall operate as a reservation with respect to Article 8.3 (National Treatment), 8.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8.8 (Performance Requirements)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Headnotes**

1.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sub-sectors listed in this Schedule, are undertaken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se headnotes and in the Schedule below.
2. To clarify the commitment of Canada with respect to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juridical persons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and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Canada are subject to non-discriminatory limitations on juridical form. For example, partnerships and sole proprietorships with limited or unlimited liability are generally not acceptable juridical form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Canada. This headnote does not affect or otherwise limit a choice by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between a branch or subsidiary.
3. The listing of a measure as a reservation in Section A or B does not mean that it cannot otherwise be justified as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for prudential reasons pursuant to Article 10.10 (Exceptions).
4. Canada limits its commitments pursuant to Article 10.9.1(c) with respect to Article 10.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manner: Article 10.9.1(c) shall apply only to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10.4(a) and not to those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10.4(b).

**ANNEX III**

**Schedule of Canada**

**Section A**

<b>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All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b>Level of Government:</b>	Federal
<b>Measures:</b>	<i>Bank Act – s.s. 159(2)</i> <i>Insurance Companies Act – s.s. 167(2)</i> <i>Trust and Loans Companies Act – s.s. 163(2)</i> <i>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 s.s. 169(2)</i>
<b>Description:</b>	A simple majority of the directors at a financial institution are required to be resident Canadians.

<b>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All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Most-Favoured-Nation (Article 10.3) Cross-Border Trade (Article 10.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0.8)
<b>Level of Government:</b>	Sub-national
<b>Measures:</b>	
<b>Description:</b>	All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of all provinces and territories.

**Section B**

<b>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All
<b>Type of Reservation:</b>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0.4)
<b>Description:</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Canad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i>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i> as set out in Canad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GATS/SC/16/Suppl.4/Rev.1).  For purposes of this entry only, Canad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s modified as follows:
<b>Sector/Sub-sector:</b>	<b>Market Access Improvements</b>
All	Under Mode 3 (All sectors) remove:  Federally-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having capital in excess of Can\$750 million are required, within five years of having reached the threshold, to have 35 percent of their voting shares widely-held and listed and posted for trading on a Canadian Stock Exchange.  Under Mode 3 (All sectors) add:  Federally-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having equity in excess of Can\$1 billion are required within three years of having reached the threshold, to have 35 percent of their voting shares widely-held and listed and posted for trading on a stock exchange in Canada.

Under Mode 3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delete:

No one person (Canadian or foreign) may own more than 10 percent of any class of shares of a Schedule I bank.

Under Mode 3 (All sectors) add:

No person (Canadian or foreign) may own more than 10 percent of any class of shares of a federally-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 without Ministerial approval.

No person (Canadian or foreign) may own more than 20 percent of any class of voting shares, or 30 percent of any class of non-voting shares, of federally-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 with more than Can\$5 billion in equity.

<b>Sector:</b>	Financial Services
<b>Sub-sector:</b>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b>Type of Reservation:</b>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b>Level of Government:</b>	Federal
<b>Description:</b>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quiring that a foreign bank establish a subsidiary in order to accept or maintain retail deposits of less than Can\$150,000.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prohibiting full service bank branches and lending bank branches from becoming member institutions of the Canadi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Type of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Article 10.2)

**Level of Government:** Federal

**Description:**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quiring that foreign banks that have been authorised to establish a branch in Canada be members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anada also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prohibiting foreign lending branches from being members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Type of Reservatio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0.3)

**Level of Government:** Federal and sub-national

**Description:**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 measure relating to cross-border trade in securities services.